

가족변화에 대응한 출산·육아 지원 방안 연구

－ 출산의 고령화를 중심으로

이정원 유해미 김문정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머 리 말

인간이 태어나 경험하는 최초의 사회인 ‘가족’은 사회의 기본 단위로서, 가장 작으면서도 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사회구성원의 재생산은 인류의 외적인 지속을 위해 필수적인 핵심 기능이며, 이에 ‘출산’은 개인적인 의미를 넘어서 국가정책의 주된 관심사가 되고 있다.

그런데, 사회의 전반적인 변화와 함께 가족에도 가족의 형성과 해체, 가치관, 규모, 구성원 관계 등 크고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가족의 주요 기능인 ‘생산’ 기능에도 적신호가 켜진지 오래다.

본 연구는 가족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변화 중에서도 특히 법적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들 사이에서 출산을 저하를 가속화시키는 ‘출산의 고령화’에 주목하였다. 1990년에 20대의 초산이 91.1%로 보편적이었다면, 2011년에는 30~34세 초산이 41.9%, 35세 이상 초산 비율이 10.7%로 30대 이후의 초산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등 첫 자녀 출산 연령이 급격히 높아졌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출산의 고령화’를 주로 부정적인 측면에서 주목하여 그 위험성을 경고하며 출산연령을 앞당기는데 초점을 두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전반적인 사회 변화 속에서 인간의 생애주기 내 결혼과 출산, 양육 시점도 점차 늦어질 수밖에 없는 변화를 인정하고 이에 적응하여 출산을 저하를 방지하고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집중하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 수행한 결혼과 출산 실태 및 요구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점점 출산연령이 높아질 상황에서 ‘비자발적인’ 결혼·출산지연을 방지하며, 출산연령이 높아지더라도 건강한 출산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 고령출산가족에서도 다자녀 출산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고, 사회적 양육 지원 시스템 강화의 필요성을 재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고령출산의 위험성을 지나치게 강조하였던 기존의 시각에 균형감을 제공할기 위한 연구로 이해되어야 하며, 본 보고서에서의 주장은 연구진의 의견으로 육아정책연구소의 공식적 입장은 아님을 밝혀둔다.

2013년 12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이 영

차 례

요약	1
I. 서론	17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7
2. 연구내용	20
3. 연구방법	21
4. 용어 정의	28
II. 연구의 배경	30
1. 가족생활주기와 출산연령의 변화	30
2. 선행연구 검토	39
3. 출산·양육지원 정책의 현황: 출산의 고령화에 대한 대응 가능성을 중심으로 ...	56
III. 초산 연령대에 따른 결혼·출산 실태	71
1. 결혼 실태	71
2. 임신·출산 실태	90
3. 초혼 및 초산연령별 집단	128
4. 소결	131
IV. 초산연령대에 따른 자녀 양육 실태 및 요구	135
1. 기관 이용 실태	135
2. 자녀 양육지원 관련 사회적 관계망 실태	138
3. 일·가정 양립 실태	152
4. 소결	166
V. 고령출산 가족의 출산·육아 실태 심층 분석	169
1. 고령출산 가족의 특성	169
2. 고령출산 가족의 당면문제	172
3. 고령출산가족의 일·가정 양립 지원 요구	188
4. 소결	191

VI. 정책 제언	193
1. 정책의 기본 방향	193
2. 출산의 고령화에 대응한 출산·육아 지원 방안	195
참고문헌	206
Abstract	209
부록	213
부록 1. 출산·양육 실태 조사 질문지	215
부록 2. 심층면담 질문지	229

표 차례

〈표 1〉 초혼 및 초산연령별 집단 구분	9
〈표 I-3-1〉 설문내용	23
〈표 I-3-2〉 응답자 특성(초산연령 구분)	25
〈표 I-3-3〉 심층면담 사례	27
〈표 II-1-1〉 가족생활주기	30
〈표 II-1-2〉 여성의 초혼연령별 혼인 건수 변화(2000~2012)	33
〈표 II-1-3〉 모의 연령별 출산율 변화(2000~2012)	35
〈표 II-1-4〉 모의 초산연령별 출생아 비율 추이	36
〈표 II-1-5〉 연도별 모의 평균 출산/초산연령	37
〈표 II-2-1〉 미혼남녀(20~44세)의 결혼필요성에 대한 태도(2005-2012)	43
〈표 II-2-2〉 미혼남녀(20~44세) 자녀 필요성에 관한 태도	44
〈표 II-2-3〉 여성의 교육정도별 미혼율(1970~2005)	46
〈표 II-2-4〉 여성의 유·무업 미혼율(1980~2005)	51
〈표 II-2-5〉 미혼남녀(20~44세) 첫 자녀 출산 여건 - 1순위	53
〈표 II-3-1〉 임신 지원 정책 - 난임 부부 지원	57
〈표 II-3-2〉 임신 지원 정책 - 일반 임신부 지원	58
〈표 II-3-3〉 임신 지원 정책 - 경제적 지원	59
〈표 II-3-4〉 출산 지원 정책 - 출산·의료비 지원	61
〈표 II-3-5〉 출산 지원 정책 - 취업부모 출산 전후 휴가 지원	63
〈표 II-3-6〉 출산 지원 정책 -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63
〈표 II-3-7〉 보육/교육/양육비 지원 정책 - 미취학 아동 기관 이용 지원	64
〈표 II-3-8〉 보육/교육/양육비 지원 정책 - 미취학 아동 가정내 양육 지원	66
〈표 II-3-9〉 보육/교육/양육비 지원 정책 - 취학연령 이상 자녀 교육 지원	67
〈표 II-3-10〉 취업모의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방지 정책	68
〈표 II-3-11〉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 정책	69
〈표 III-1-1〉 결혼 전 생각한 결혼의 필요성	71
〈표 III-1-2〉 결혼 적령기 유무	72
〈표 III-1-3〉 남녀의 결혼 적령기 범위	74

〈표 III-1-4〉 결혼을 하기위한 경제적 조건 - 직업	75
〈표 III-1-5〉 결혼을 하기위한 경제적 조건 - 주택 마련	76
〈표 III-1-6〉 초혼연령 - 여성	77
〈표 III-1-7〉 초혼연령 - 배우자(남편)	77
〈표 III-1-8〉 본인의 결혼 시기의 적절성	78
〈표 III-1-9〉 결혼을 늦게 한 이유	80
〈표 III-1-10〉 늦은 결혼에 대한 만족도	81
〈표 III-1-11〉 늦은 결혼에 대한 불만족 이유	82
〈표 III-1-12〉 결혼 당시 교육정도 - 여성	83
〈표 III-1-13〉 결혼 당시 교육정도 - 배우자(남편)	84
〈표 III-1-14〉 결혼 시 대출여부	85
〈표 III-1-15〉 결혼 시 대출금액	86
〈표 III-1-16〉 부모님의 조력 여부	87
〈표 III-1-17〉 결혼 시 부모님의 조력 금액	89
〈표 III-1-18〉 부모의 제 특성별 출산에 대한 중요도	89
〈표 III-2-1〉 미혼 부모 됨에 대한 생각	92
〈표 III-2-2〉 임신·출산 적령기 유무	93
〈표 III-2-3〉 남녀의 임신·출산 적령기 범위	94
〈표 III-2-4〉 고령 임신출산에 대한 의견	96
〈표 III-2-5〉 자녀의 필요성	98
〈표 III-2-6〉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 기간	99
〈표 III-2-7〉 첫 자녀의 임신 계획 여부	101
〈표 III-2-8〉 결혼 후 첫 자녀 출산 계획 시기	103
〈표 III-2-9〉 첫 출산 시기 계획시 고려사항	105
〈표 III-2-10〉 첫 출산 시기를 계획하는데 가장 큰 고려사항 - 1순위	105
〈표 III-2-11〉 임신 처음 계획후 실제 자녀 임신까지 기간	107
〈표 III-2-12〉 자녀 출산 전까지 유산·사산 등의 경험 유무	109
〈표 III-2-13〉 첫자녀 임신 방법	110
〈표 III-2-14〉 제특성별 자연임신 여부	111
〈표 III-2-15〉 인공수정, 시험관 기술을 통한 임신	112
〈표 III-2-16〉 출산방법	113

〈표 III-2-17〉 산후조리방법	114
〈표 III-2-18〉 첫 자녀 임신·출산 시 문제 경험 및 비용 발생 정도	115
〈표 III-2-19〉 임신부의 건강문제 - 문제경험여부	116
〈표 III-2-20〉 임신·출산지원정책의 인지 및 수혜	117
〈표 III-2-21〉 초산연령별 임신·출산지원 정책 인지율	118
〈표 III-2-22〉 임신·출산지원정책 수혜시 만족도	119
〈표 III-2-23〉 향후 자녀출산계획	120
〈표 III-2-24〉 임신 시도시 보조생식술을 받을 의사	121
〈표 III-2-25〉 자녀출산 시 터울 고려	122
〈표 III-2-26〉 터울 계획 시 고려사항	123
〈표 III-2-27〉 자녀를 더 낳을 생각이 없거나 고민 중인 이유	124
〈표 III-2-28〉 자녀를 더 낳을 생각이 없거나 고민 중인 이유 - 1순위	125
〈표 III-2-29〉 정부 출산양육지원 확대 시 자녀출산 계획	127
〈표 III-3-1〉 초혼 및 초산연령별 집단 구분	129
〈표 III-3-2〉 초혼 및 초산연령별 집단의 특성	130
〈표 IV-1-1〉 기관 이용 여부	135
〈표 IV-1-2〉 자녀 이용 기관	136
〈표 IV-1-3〉 기관 이용 시 불만 사항	137
〈표 IV-2-1〉 첫 자녀 출산 당시 조모의 생존 여부	139
〈표 IV-2-2〉 첫 자녀 출산 당시 조모의 연령대	140
〈표 IV-2-3〉 첫 자녀 출산 당시 조모의 건강 상태	140
〈표 IV-2-4〉 조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	141
〈표 IV-2-5〉 부모 외 자녀를 정기적으로 돌봐주는 사람 유무	143
〈표 IV-2-6〉 현재 부모 외 자녀를 정기적으로 돌봐주는 사람	144
〈표 IV-2-7〉 자녀를 돌봐주는 사람에 대한 비용 지불 여부 및 금액	145
〈표 IV-2-8〉 급한 일이 생길 경우 자녀 양육을 도와 줄 수 있는 사람	145
〈표 IV-2-9〉 육아 관련 지식이나 조언의 습득 경로	146
〈표 IV-2-10〉 부부의 주중/주말 양육 시간	147
〈표 IV-2-11〉 배우자(남편)의 자녀 양육 참여 정도	148
〈표 IV-2-12〉 배우자(남편)의 자녀양육 참여가 부족한 이유 - 1,2순위	149
〈표 IV-2-13〉 제특성별 배우자(남편)의 자녀 양육 참여가 부족한 이유 - 1순위 ...	149

〈표 IV-2-14〉 배우자(남편)의 자녀 양육 참여가 충분한 이유	150
〈표 IV-2-15〉 제특성별 배우자의 자녀 양육 참여가 충분한 이유 - 1순위	151
〈표 IV-3-1〉 부부의 첫 취업 시기(정규직 기준)	152
〈표 IV-3-2〉 모의 취업 특성	153
〈표 IV-3-3〉 모의 현재 종사상 지위	155
〈표 IV-3-4〉 부의 현재 종사상 지위	156
〈표 IV-3-5〉 모의 향후 취업 지속 의향	157
〈표 IV-3-6〉 향후 취업 계획 및 애로사항	158
〈표 IV-3-7〉 자녀 임신·출산 또는 양육관련 경력단절 경험	158
〈표 IV-3-8〉 제특성별 출산·양육으로 인한 첫 번째 경력단절 시기	159
〈표 IV-3-9〉 첫 번째 경력단절 사유	160
〈표 IV-3-10〉 제특성별 첫 번째 경력단절 사유	160
〈표 IV-3-11〉 출산·양육에 따른 경력 단절 이후 재취업 여부 및 사유	161
〈표 IV-3-12〉 취업모의 일과 자녀 양육 병행 시 어려움	162
〈표 IV-3-13〉 긴급 상황 시 도움을 받을 곳이 없어 겪는 어려움	163
〈표 IV-3-14〉 취업 경험자의 일·가정 양립지원제도 이용 경험	164
〈표 IV-3-15〉 정부 육아지원사업의 인지/수혜/도움 정도	165
〈표 IV-3-16〉 초산 연령대별 양육수당 인지/수혜/도움 정도	165
〈표 V-1-1〉 만 35세 이상 고령 초산 이유	172
〈표 V-2-1〉 고령초산여부에 따른 임신 특성	173
〈표 V-2-2〉 초산연령별 첫 자녀 임신출산 시 문제 경험을	173
〈표 V-2-3〉 고령초산여부에 따른 임신·출산 시 문제 경험	174
〈표 V-2-4〉 고령출산모의 특성별 임신·출산 시 문제 경험	175
〈표 V-2-5〉 첫 임신 시 담당의사로부터 권유받은 검사	176
〈표 V-2-6〉 고령초산여부에 따른 임신유지·출산방법 특성	177
〈표 V-2-7〉 초산연령에 따른 후속출산계획 여부	178
〈표 V-2-8〉 고령출산모의 제 특성별 후속출산계획 여부	178
〈표 V-2-9〉 고령출산 가족의 추가 자녀 출산 계획이 없는 이유	179
〈표 V-2-10〉 취업모의 고령출산여부에 따른 기관 이용	182
〈표 V-2-11〉 고령초산여부에 따른 취업 특성	185
〈표 V-3-1〉 경력단절경험자가 이용하였다면 취업유지에 도움이 되었을 제도 ...	188

〈표 V-3-2〉 초산연령대별 취업 유지에 도움이 되었을 제도 - 1순위	189
〈표 V-3-3〉 취업 유지에 도움이 되는 사항	190
〈표 VI-2-1〉 아동수당(안)	201
〈표 VI-2-2〉 난임휴가(안)	203

그림 차례

[그림 II-1-1]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변화추이(2000, 2011)	32
[그림 II-1-2] 여성의 초혼연령별 혼인건수 변화추이(2000, 2012)	34
[그림 II-1-3] 연령별 출산율 변화추이(2000, 2012)	35
[그림 III-1-1] 초혼연령별 본인의 결혼 시기가 늦다고 생각한 비율	79
[그림 III-1-2] 결혼을 늦게 한 이유(전체, 만 35세 이상 결혼)	80
[그림 III-1-3] 늦은 결혼에 대한 불만족 이유	83
[그림 III-1-4] 결혼 시 부모님의 조력 여부	88
[그림 III-1-5] 부모의 제 특성별 출산에 대한 중요도	90
[그림 III-2-1] 초산 연령별 미혼 부모 됨 찬성 비율	91
[그림 III-2-2] 고령 부모의 임신·출산·양육의 어려움에 대한 동의율	97
[그림 III-2-3] 초산연령별 첫 출산 시기 계획시 고려사항 - 1순위	106
[그림 V-1-1] 35세 이상 고령 초산의 이유	170
[그림 V-2-1] 고령초산 여부별 위급상황 시 자녀 양육 지원인력	183
[그림 V-2-2] 배우자(남편)의 양육 참여가 부족한 이유 - 1순위	184
[그림 V-2-3] 고령출산 여부에 따른 첫 번째 경력단절 시기	187
[그림 V-2-4] 고령초산모의 경력단절 이유	187
[그림 V-3-1] 초산연령대별 이용하였다면 취업 유지에 도움이 되었을 제도 ..	189
[그림 V-3-2] 취업 유지에 도움이 되는 사항	190
[그림 VI-2-1] 생애주기에 따른 정책방안	205

요 약

1.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 본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족의 변화’를 감지하고 이에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연구임.
- ☐ 가족변화 중 ‘출산의 고령화’에 주목한 연구의 필요성
 - 초산의 지연은 출산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요인이기 때문임. 초산 시기의 지연은 잔여 가임기를 줄이며, 자연스런 생식력의 저하도 초래하여 출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출산이 늦은 가족들의 건강한 다자녀 출산·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됨.
 - 출산의 고령화는 기존의 보편적 가족주기에 변화를 가져오며 이로 인해 보편적인 생애주기에 따라 설계되어 있는 출산·육아지원 정책이 가족들의 출산·육아지원을 하는데 한계를 지니게 되기 때문임.
- ☐ 연구의 목적
 - 출산의 고령화에 대응한 적절한 출산·양육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나. 연구내용

- ☐ 본 연구는 정책적 지원과 노력을 통해 출산의 고령화가 출산력 저하에 미치는 영향력을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다는 관점에 기반함. 이같은 관점에 기반한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출산의 진입장벽인 ‘결혼’과 ‘출산’ 지연 현상을 관련 선행연구와 통계자료를 통해 파악함.
 - 선행연구와 문헌 자료를 통해 출산 지연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을 분석함.

- 출산의 고령화에 대한 현재 출산·양육지원 제도의 대응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함.
- 사례조사와 설문조사를 통해 출산 시기에 따른 가족의 결혼·출산·양육 행태를 비교 분석함.
- 비자발적 출산·양육 지연을 방지하고 고령 출산 가족의 출산·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함.

다. 연구 방법

☐ 문헌연구: 출산 고령화 원인 관련 통계 및 선행연구 분석

☐ 설문조사

- 전국의 0~5세 아동(미취학 영유아)이 1명 있는 가구 1,000사례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 실시
- 표본설계 시 어머니의 초산연령 및 영유아 비율에 따라 일정 사례 할당을 하여, ‘초산연령’ 만 35세 이상인 사례가 전체 30%로 과대표집 됨.¹⁾
- 설문내용은 ‘응답가구의 특성’, ‘결혼’, ‘임신과 출산’, ‘자녀 양육 및 일-가정 양립실태(요구)’의 범주의 주제와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됨.

☐ 35세 전후의 출산 경험이 있는 15사례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함.

☐ 연구 방향 설정, 설문내용 검토, 정책방안 의견 수렴을 위한 자문회의 실시

라. 용어 정의

☐ 만혼: 만 30세 이상 나이에 결혼(초혼연령 기준)한 경우로 정의함.

☐ 고령출산: 만 35세 이상 나이에 출산한 경우로 정의함.

1) 2011년 기준 만35세 이상 초산은 20년간 약 8.2배에 이르는 급속한 증가세를 보여 30~34세 내에서의 초산 증가율보다 증가율은 높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비중은 아직 전체 초산 중 10.7%에 불과하여, 완전한 무선표집의 경우 전체 사례에서 약 10% 전후에 불과한 사례수만 표집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를 위한 조사에서는 표본 추출시 이러한 사례에 대한 의도적인 목표사례수 할당을 시도하였다.

2. 연구의 배경

가. 가족생활주기와 출산연령의 변화

- ☐ 2013년 현재 약 30년 전과 비교 시 가족주기의 지연이 뚜렷하게 나타남.
 - 이는 교육 기간 연장, 경제활동참가율이 가장 높은 여성 연령의 20대 후반으로의 변동, 결혼·출산·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 회복 시기의 40대 초반으로의 지연 등 다양한 요인에 기인함.

나. 출산의 고령화

- ☐ 주요 출산 연령대는 1990년 25~29세 사이였으나, 만혼화 현상으로 2012년에는 30~34세로 상향 이동함.
 - 평균 초혼 연령은 2000년 약 26.5세에서 2012년 약 29.4세로 상승하였고, 최다 혼인 건수 연령대는 2006년 이후 30대 초반으로 변동함.
 - 초산 연령이 35세 이상인 모의 비율은 1990년대 1.3%에서, 2011년 10.7%로 급증함.
- ☐ 고령출산이 곧 출산력의 저하를 의미하지는 않으며, 일·가정 양립 등 장애요인으로 인해 특정 시기 이후 출산 포기가 초래됨.

다. 출산의 고령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 평균 수명의 연장은 특정 시기에 결혼하려는 경향을 약화시키고, 출산의 적령기도 상향 인식토록 하여 출산 지연을 야기할 수 있음.
- ☐ 결혼과 자녀 출산의 필요성에 대한 동의 정도가 연령이 낮을수록, 여성일수록 낮은 경향을 보이는 등 출산 관련 가치관의 변화가 두드러짐.
- ☐ 특히 교육 수준 향상은 여성들에게 결혼을 통한 경제적 이득을 과거에 비해 낮추어 고학력 일수록 미혼율이 높고 결혼 시기가 늦어져 출산도 연기되는 경향을 보이게 됨.
- ☐ 여성의 경제적 독립성 증가는 결혼 시기의 지연 가능성을 높이며, ‘취업 및 경제적 문제’는 만혼의 주된 변수로 지적됨.

라. 고령출산에 따른 출산 양육 환경

- ☐ 늦부모는 부모의 건강상 우려 등 부정적인 측면을 지닐 수 있으나, 부모 효능감이 높고 사회경제적 이점이 생물학적 불이익을 보완할 수 있어 적절한 양육지원이 제공될 경우 건강한 임신 및 출산, 양육이 가능함.

마. 출산 양육지원 정책의 현황: 고령출산 경향에의 대응을 중심으로

- ☐ 임신·출산 지원 전반은 결혼한 부부와 임신모에 한정되므로 대상 범위의 확대가 요구되며, 특히 난임 부부 지원은 만 44세 이하로 한정되고 시술 비용도 4회로 제한되어 고령출산 대응에 한계를 지님.
- ☐ 출산 지원은 고위험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에 주력하며, 저소득 출산가정에 대한 산모 및 신생아 가정방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 보육·교육비와 기관 미이용 자녀에 대한 양육수당은 보편적 방식으로 지원되므로 고령출산모에 대한 별도 지원은 전무함.
- ☐ 육아휴직 등 취업모 경력단절 예방 대책에는 남성의 양육 참여 활성화 방안이 미흡하고,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 정책은 저소득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므로 고령출산에 따른 양육 시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음.

3. 초산 연령대에 따른 결혼·출산 실태

가. 결혼 실태

- ☐ 결혼에 대한 가치관
 - 설문조사 대상자 중에는 75%이상이 결혼 전 결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 것으로 나타남. 한편 만 35세 이상의 나이에 결혼한 경우는 35세 미만
에 결혼한 경우에 비해 결혼을 선택으로 생각했던 경우가 많아(31.2%) 결혼
가치관의 차이가 결혼 시기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짐작됨.
 - 남자에 대해서는 52.9%, 여자에 대해서는 59.6%가 결혼적령기가 있다고
응답하여 남자보다 여자에 대해 결혼적령기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약
7% 많았음.

- 결혼적령기는 남성의 경우 평균 28.3~35.5세, 여성의 경우 평균 26.4~33.3세로 응답되었고, 결혼적령기의 최소 최대 연령은 약 7세 차이가 나고, 남녀간에는 최소·최대 연령 각각 약 2세의 차이가 나타남.
- 만 35세 이상의 나이에 결혼한 경우 만 25세 미만에 결혼한 경우에 비해 최대 연령을 약 3세 정도 높게 생각하고 있고, 만 35세 이상의 나이에 출산을 한 경우 그 이전에 출산한 경우보다 전반적으로 결혼적령기를 약 1세씩 높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결혼을 위한 경제적 조건 중 직업에 대해서는 96.9%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응답하였고, 주택 마련에 대해서는 전세 이상이면 된다가 67.5%로 가장 많았고,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의 집이 있어야 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21.3%로 그 다음으로 많았음.
-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의 집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읍면지역에 비해 더 많았음. 한편 만 35세 이상의 나이에 결혼한 경우 자가 소유의 집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30.1%로 그 이전에 결혼한 경우보다 현격히 높은 비율을 보였음.

□ 결혼 시기 및 만족도

- 설문 조사 대상이었던 여성의 초혼연령은 만 25세 이상~30세 미만이 47.2%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만 30세 이상~35세 미만인 경우로 38.4%에 해당함. 평균 초혼 연령은 29.6세였으며 거주 지역 규모, 응답자의 결혼 당시 학력에 따른 차이는 없었음.
- 결혼 전 결혼의 필요성에 대해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고 생각했던 경우는 평균 29.9세에 결혼을 하여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경우보다 1세 정도 늦게 결혼한 것으로 나타남.
- 배우자(남편)의 초혼연령은 평균 31.6세로 여성보다 2세 정도 많고 만 30세 이상~35세 미만에 결혼한 경우가 51.1%로 가장 많았음. 남편의 결혼 당시 학력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 4년제 대졸 이상인 경우 평균 31.9세로 초혼연령이 가장 높았음.
- 본인의 결혼 시기의 적절성에 대하여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67.2%로 가장 많고 22.0%는 늦게 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만

35세 이상의 나이에 결혼한 경우에는 결혼이 늦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76.3%로 가장 높았음.

- 본인의 결혼이 늦었다고 생각하는 경우, 39.1%는 '특별한 이유 없이' 늦게 한 것으로 나타났고 '배우자감이 없어서'인 경우가 37.7%로 만혼 이유 중에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음. 한편 만 35세 이상의 나이에 결혼한 경우는 '독신의 삶을 즐기기 위해서'라는 응답이(8.5%) 35세 미만에 결혼한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음(5.2%).
- 결혼을 늦게 한 것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이 가장 많고(66.4%) 불만족하는 경우가(23.7%) 만족하는 경우(10.0%) 보다 더 많았음.
- 늦은 결혼에 대해 불만족하는 경우는 고령출산을 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늦게 결혼하여 불만족하고 있는 총 52사례 중 47사례가 만 30세 이상의 나이에 결혼하여 만 35세 이상의 나이에 출산한 경우였음.
- 불만족 이유로는 초혼연령이 만 30~35세 미만인 집단은 '양육의 체력적 부담'이, 만 35세 이상 집단은 '임신·출산의 어려움'이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났음.

□ 결혼 당시의 사회경제적 상황

- 전문대졸 이하 학력 여성의 약 50% 정도는 자신보다 더 높은 학력의 남성과 결혼을 하고 4년제 대졸 이상 학력 여성은 대부분이 자신과 유사한 학력의 남성과 결혼을 하는 것으로 보임. 한편 자신보다 낮은 학력의 남성과 결혼하는 경우는 3.2% 정도로 소수임.
- 결혼 시 대출은 여성의 경우 95.3%, 남편의 경우 82.3%가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남편의 경우에는 거주 지역 규모에 따른 차이가 있어 도시지역 거주자가 읍면지역 거주자 보다 대출을 받은 경우가 많았음.
 -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금액은 부인의 경우 평균 1,530만원, 남편의 경우 평균 3,130만원으로 남편의 경우가 약 2배 가량 대출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남.
 - 남성의 경우는 대출금액이 결혼연령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 결혼 시 연령이 높을수록 대출금액이 더 컸던 것으로 나타남.
- 여성의 43.9%, 남성의 55.8%가 결혼비용 마련 시 부모님으로 조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부모님의 도움을 받은 경우는 남녀 모두 읍면지역 거주자와 만 35세 이상의 나이에 결혼한 경우에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남.

- 부모님의 도움을 받은 경우 금액은 여성이 평균 약 2,200만원, 남성은 약 4,470만원으로 대출금액과 유사하게 남성이 여성의 약 2배로 나타남.
- 대출 및 부모님 조력 등 설문 응답 내용을 통해 결혼 시 남성의 경제적 부담이 클 것으로 짐작됨.

☐ 출산 관련 부모 요인의 중요도

- 출산에 있어서 부모의 나이, 건강상태, 가치관, 경제력의 중요성 정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네 변인 모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중 특히 부모의 건강상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나. 임신·출산 실태

☐ 임신·출산에 대한 가치관

- 응답자들 중 자녀의 필요성에 대해 부정적인 경우는 0.5%에 불과하여 대부분 긍정적인 자녀가치관을 보였음. 그러나, '미혼 부모됨'에 대해 찬성하는 경우는 17.1%에 불과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음(82.9%).
- 여성에게 임신·출산 적령기가 있다는 응답은 75.2%, 남성에게 대해서는 54.0%로 응답되어, 임신·출산 적령기가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결혼적령기가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보다 오히려 높게 나타남.
- 적당한 임신·출산 시기는 여성 26~34세, 남성 28~36세로 결혼적령기와 유사한 연령대로 응답됨.
- 여성연령 만 35세 이상의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해서는 취약성에 동의하는 비율이 50%이상으로 높았음.
- 만 35세 이상의 임신이 어렵다고 보는 비율이 가장 높고(77.8%), 반면 '양육'이 어렵다는 견해는 가장 낮았음(54.3%).

☐ 임신·출산력

- 첫 자녀 임신을 계획한 경우는 35.1%로 계획을 하지 않은 경우가 더 많고, 임신 계획 시 대부분 결혼 후에 출산하기로 계획한 것으로 나타남(89.7%).

- 초혼연령이 30~34세 사이인 경우 첫 임신을 계획한 비율이 가장 높고 (38.8%), 가장 많은 경우 결혼 후 1년 이내 출산하기로 계획함(57.1%).
- 첫 출산 시기 계획 시 '경제력' 31.9%, '부모의 연령' 31.1%로 가장 많이 고려함. 만 35세 이상 초산 집단은 '부모의 연령'을 출산 시기 계획에 가장 많이 고려하고 있었음(48.1%).

□ 임신·출산 당시 상황

- 95.8%가 '자연임신'으로 첫 자녀를 임신하였으나, 35세 이상 고령출산한 경우는 과배란 유도, 인공수정, 시험관 시술에 의한 임신이 10.7%로 비교적 높게 나타남.
- '자연분만'으로 출산한 경우가 76.0%로 가장 많았음. 그러나, 초산연령 35세 이상인 경우 자연분만 비율이 62.0%로 35세 미만의 82.0%와 20%의 격차를 보였고, '계획된 제왕절개'의 비율은 만 35세 미만의(9.3%) 3배 이상인 28.3%로 제왕절개를 계획적으로 높게 선택하는 경향을 보임.

□ 후속출산 계획

- 전체 1,000사례 중 40%가 추가자녀 출산 계획이 있으며, '낳지 않겠다'는 응답은 34.3%, '생각중'으로 유보적인 입장은 25.7%로 나타남.
 - 어머니의 현재 연령이 높을수록, 초산을 35세 이상에 한 경우, 초혼연령이 높을수록 추가 자녀를 출산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 추가출산 계획이 없거나 고민 중인 1순위 이유는 '양육비 부담'이 가장 크며(48.3%), '부모의 나이가 많아서'가 21.2%, '자녀 양육과 (직장) 사회생활의 양립이 어려워서' 11.0%, '자녀 양육이 체력적으로 힘들어서' 10.7% 순으로 응답됨.

□ 초혼 및 초산 연령별 집단

- 본 연구의 응답자는 결혼(초혼) 연령과 출산(초산) 연령을 기준으로 4개 집단으로 구분됨.
 - 만혼의 기준인 '만 30세' 결혼과 고령출산의 기준인 '만 35세' 출산을 기준으로 '결혼적령기 결혼, 출산적령기 출산 집단', '결혼적령기 결혼, 고령 출산 집단', '만혼, 출산적령기 출산 집단', '만혼, 고령 출산 집단'으로 구분됨.

〈표 1〉 초혼 및 초산연령별 집단 구분

구분	비고	단위: %(명) 계
결혼 적령기 결혼, 출산 적령기 출산 집단	만 30세 미만 결혼, 만 35세 미만 초산	49.7(497)
결혼 적령기 결혼, 고령 출산 집단	만 30세 미만 결혼, 만 35세 이상 초산	2.6(23)
만혼, 출산 적령기 출산 집단	만 30세 이상 결혼, 만 35세 미만 초산	20.3(203)
만혼, 고령 출산 집단	만 30세 이상 결혼, 만 35세 이상 초산	27.4(274)
계		100.0(1,000)

4. 초산 연령대에 따른 자녀양육 실태 및 요구

가. 기관 이용 실태

- ☐ 모의 연령이 높을수록 기관 이용율이 높게 나타남. 40세 이상 모의 기관 이용율은 84.4%로 압도적으로 높음.
- ☐ 기관 이용 시 불만 정도는 소득이 높을수록 높고, 500만원 이상 소득 가구의 주된 불만 사항으로는 기관 운영 시간에 대한 불편과 긴급 상황 시 이용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 지적됨.

나. 자녀 양육지원 관련 사회적 관계망 실태

- ☐ 초산 연령이 35세 이상인 모는 출산 당시 65세 이상 조모의 비율이 높고, 조모의 유병율도 높아 이들의 양육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 첫 자녀 출산 시 65세 이상 친조모의 비율은 초산 연령이 35세 미만인 경우 35.3%, 35세 이상인 경우 57.2%이고, 친조모의 유병율은 초산 연령 35세 미만인 경우 17.1%, 35세 이상인 경우 31.28%로 뚜렷한 차이를 보임.
- ☐ 초산 연령이 35세 이상인 경우 부모 이외에 자녀를 정기적으로 돌봐주는 사람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6.3%로 35세 미만의 해당 비율인 22.7%에 비해 낮게 나타남.
 - 초산 연령이 35세 이상인 모는 해당 인력이 남편(배우자)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67.0%로 상대적으로 높고,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도

17.0%로 초산 연령 35세 미만인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배우자의 양육 참여가 부족한 이유로는 ‘직장일이 바빠서’가 77.8%로 압도적으로 높았음. 초산연령이 35세 이상인 모는 해당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나(83.3%), 남편의 양육 참여를 기대하기 더 어려울 것으로 우려됨.

다. 일·가정 양립 실태

- 초산 연령 35세 이상인 모는 35세 미만 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용직 비율은 낮고 임시직과 계약직 비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현재 모의 연령이 40대 이상인 경우에는 배우자의 상용직 비율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고령 초산, 연령이 높은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 우려가 제기됨.
- 초산 연령이 35세 이상인 모의 취업 의지는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취업할 의지가 있는 경우 ‘자녀를 믿고 맡길 데가 없다’는 것이 취업 계획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응답되므로(40%) 이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초산 연령 35세 이상인 모는 첫째 임신 전에 경력 단절한 비율이 65.5%에 달하며, ‘임신 준비’가 주된 경력단절 사유로 응답됨(50.0%). 결혼과 출산이 지연되는 상황에서는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를 위해 출산·양육 지원 이전에 임신준비와 직장 생활의 양립 지원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초산 연령 35세 이상인 모는 일·가정 양립 시 주된 애로사항으로는 ‘긴급 상황 시 도움을 받을 곳이 없는 어려움’을 지적함(59.3%).
- 일·가정 양립지원 제도 중 배우자 육아휴직에 대한 이용 만족도가 평균 4.17점(만점 5점)으로 가장 높았음. 또한 정부의 육아지원 사업 중 보육정보센터는 인지도는 낮으나 이용 만족도는 3.16점(만점 4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임.

5. 고령출산 가족의 출산·육아 심층 분석

가. 고령출산 가족의 생애주기 유형 및 특성

- 만 35세 이상의 나이에 첫 자녀를 출산한 가족을 본 연구에서는 ‘고령출산’ 가족으로 정의함.

- 고령출산모 집단은 초혼 및 초산 연령에 따라 2가지 유형으로 구분됨. 30세 미만 결혼적령기에 결혼하였으나 35세 이상에 첫 출산이 이루어진 집단과 30세 이상 만혼에 출산도 35세 이상 출산한 집단임.
- 각각 8.7%(26사례), 91.3%(274사례)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35세 이상에 초산을 하는 집단은 임신이 어려워 출산이 지연된 경우보다는 결혼이 늦어짐으로써 초산도 지연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음.

나. 제 특성별 고령출산의 이유

- 35세 이상 늦은 나이에 첫 출산을 한 이유로 약 60%는 ‘결혼이 늦어져서’, 약 30%는 ‘임신이 잘 안되어서’ 고령출산 가족이 되게 된 것으로 응답함.
- 30세 미만의 결혼적령기에 결혼했으나 자녀 출산은 35세 이상에 하게 된 ‘결혼적령기 결혼, 고령출산 집단’에서는 ‘임신이 잘 안되어서’, ‘유·사산을 겪어서’가 주된 고령출산 이유로 이들은 곧 ‘난임부부’로서 분류될 수 있는 집단임이 드러남.
- ‘만혼, 고령 출산 집단’은 무엇보다 ‘결혼 자체가 늦어져 출산이 늦어졌다’라는 응답이 주된 고령출산의 이유였음(63.5%). 한편 ‘임신이 잘 안되어서’도 26.3%로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함.

다. 고령출산 가족의 당면문제

□ 임신·출산 문제

- 고령출산 가족의 임신 특성은 ‘임신의 어려움’으로 요약될 수 있음.
- 임신 계획률은 35세 미만 초산 집단과 별 차이가 없었고, 출산 시기를 결혼 후 2년 이내로 계획하는 경우가 72.4%에 달하여 임신은 결혼 후 1년 이내로 계획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실제 결혼 후 1년 이내 임신률은 50%에 불과하였음.
- 임신이 1년 이내 되지 않은 경우 실제 임신까지 걸린 기간이 만 35세 미만에서 평균 20.6개월임에 비하여 만 35세 이상 초산 시 38개월가량 소요된 것으로 나타남.
- 보조생식술을 이용한 임신 비율이 10.7%로 만 35세 미만에 비해 7배 이

상의 차이를 보임.

- 만 35세 미만 초산한 경우에 비해 만 35세 이상 초산한 경우 모든 임신·출산 시 문제 경험 비율이 높아짐.
 - 35세 이상 초산모 집단에서는 임신 과정에서 산모 자신과 태아의 건강 문제를 경험한 비율이 높고 산후회복기에 어려움을 겪은 경우가 35세 미만 초산 집단보다 많음.
 - 30세 미만 결혼한 고령출산 집단 중 42.3%가 임신·출산 시 문제를 경험한 경우로 30세 이상 결혼한 고령출산 집단(20.4%)에 비해 문제를 경험한 비율이 현저히 높게 나타남.
 - 취업중인 어머니에게서 이러한 임신·출산 시 문제 경험 비율이 32.1%로 비취업모에(18.9%) 비해 높게 나타남.
 - 태아의 이상이 의심될 때 많이 시행하는 검사들을 담당 의료진으로부터 권유받은 비율은 초산 연령에 따라 높아지며, 특히 35세를 기점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만 35세 이상 초산 집단은 35세 미만 초산 집단에 비해 유·사산을 경험한 비율이 12.3%로 높아 과거 임신유지에 문제를 겪었던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출산 방법에 있어서는 만 35세 이상 초산 집단이 만 35세 미만 초산 집단에 비해 제왕절개 출산을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나며 특히 ‘계획된 제왕절개’가 만 35세 이상 초산모에게서 현저히 높았음.
- 만 35세 이상 나이에 첫 자녀를 출산한 집단에서는 후속출산계획을 가진 경우가 18.0%로, 35세 미만 초산모의 후속출산계획률 50%에 비해 현저히 낮게 나타남.
 - 35세 이상에 초산한 고령출산모만을 대상으로 살펴보면 가구소득과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차이는 없었음. 한편 어머니의 현재 연령이 40세 미만인 경우 22.5%가, 40세 이상은 이에 절반에 못 미치는 10.1%만이 추가자녀를 출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음.
 - 고령출산 가족에서 추가 자녀 출산을 계획하지 않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도 ‘부모의 나이가 많아서’로 42.3%가 이에 해당하였고, 그

다음으로 '양육비 부담 때문에'가 30.5%로 나타났음.

- 현재 어머니의 연령이 40세 이상일 경우 '나이가 많아서'가 56.1%로 절대적인 추가 출산 포기의 이유였으며, 현재 연령이 35~40세 미만인 경우는 '양육비 부담'이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남(35.1%).
- 가구소득이 높아질수록 양육비 부담보다는 '나이 때문에' 자녀를 낳지 않으려 한다는 응답률이 높아지고,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때문에'의 이 유도 높아짐.

□ 양육문제: 지원인력 부족

- 고령출산 가족의 양육 특성은 '지원인력 부족'과 이에 따른 '높은 기관 의존성'으로 요약될 수 있음.
 - 고령출산 가족의 친조모, 외조모의 연령은 35세 미만 초산 가족에 비해 현저히 높으며, 이들의 유병율 또한 35세 미만 초산 가구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경향을 보임.
 - 고령출산 가족은 부부 외에 자녀를 돌봐줄 다른 사람이 없다는 경우가 83.7%이며, 35세 미만 출산한 가족의 77.3%에 비해 높게 나타남.
 - 두 집단의 모의 취업율은 35세 미만 초산 집단 25.9%, 35세 이상 초산 고령출산가족이 26.0%로 양육 지원에 대한 요구도는 유사한 수준임.
- 고령출산 여부를 불문하고 남편의 양육 참여에 대해 약 60% 이상은 현재 불만족하고 있으며, 불만족하는 경우 남편의 양육참여가 불충분한 가장 큰 이유로 '직장일이 바빠 절대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을 꼽고 있음.
- 이에, 고령출산가족은 35세미만 초산 가족에 비해 어린이집, 유치원 등 '기관' 이용 비율이 높음(74.4%).

□ 일-가정 양립

- 결혼 전 정규직 취업률은 35세 이상 초산한 고령 초산모 집단이 35세 미만 초산 집단보다 더 높게 나타나나 결혼 당시 정규직 취업률은 두 집단 모두 현저히 낮아진 상태로, 취업한 미혼 여성들 중 상당 비율이 결혼 전에 취업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짐작됨.
 - 결혼 후 총 경력에 있어서는 고령 초산모 집단의 총 경력이 약 7.7개월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임신·출산·양육과 관련된 이유로 경력단절을 겪은 비율이 35세 미만 초산모 집단보다 고령초산모 집단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임신·출산·양육으로 인해 가장 많이 경력이 단절된 시기는 35세 미만 초산 집단에서는 ‘첫째 임신중’이나(58.8%), 만 35세 이상 고령출산 집단은 ‘첫째 임신 전’인 것으로 나타남(65.5%).
- 고령초산모의 가장 큰 경력단절 이유는 ‘임신준비를 위해’인 것으로 응답됨(53.4%).

라. 고령출산가족의 일-가정 양립 지원 요구

☐ 경력단절 방지를 위한 지원

- 경력단절을 경험한 경우, 이용할 수 있었다면 취업을 지속하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제도로 ‘유연근무제’(31.1%)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그 다음으로 ‘육아휴직 사용’(26.6%)을 선택함.
- 초산 연령대별로 30세 미만인 경우는 육아기 근로기간 단축제, 35세 이상인 경우는 난임(불임) 휴가 이용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고령출산 가족의 양육 지원

- 현재 취업중인 어머니를 대상으로 향후 취업을 지속하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사항을 살펴본 결과, ‘시간제 정규직 등 자녀 양육과 병행하기 용이한 일자리의 확대’가 32.0%로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기관교육·보육서비스 지원이 23.3%로 높았음.
- 초산 연령에 따라서 35세 미만 초산 집단에서 ‘자녀 양육 병행이 용이한 일자리의 확대’에 대한 요구가 34.8%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35세 이상 초산 집단에서는 ‘기관 교육·보육 서비스 지원’이 28.2%로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남.

6. 정책 제언

☐ 정책의 기본 방향

- ‘출산의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이 지향해야 할 방향으로 1) 비자발적인 출산 지연 방지, 2) 고령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와 건강한 다자녀 출산 지원, 3) 고령출산 시의 취약점 보완을 제시함.

□ 출산의 고령화에 대응한 출산·양육 지원 방안

○ 임신·출산 지원

- 비자발적 결혼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신혼부부주택 특별 공급의 지원 대상에 결혼예정자를 포함한 확대를 제안함.
- 비자발적인 출산 지연 가족인 난임 부부를 위한 지원사업의 여성 연령 기준과 법률혼 기준을 삭제하여 단기적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원 대상 소득기준의 상향과 건강보험 적용을 통한 모든 난임 부부의 시술비용 경감을 제안함.
- 초·중·고생 대상의 예비부모로서의 건강 유지·증진을 위한 교육 제공과 대학생 대상 (생식)건강검진을 산부인과에서 주기적으로 제공할 것을 제안함.

○ 양육 지원

- 조부모 등 전통적인 양육지원 인력을 활용하기 어려운 고령출산 가족이 증가할 것을 고려하여, 기관의 교육·보육 서비스와 파견 인력에 대한 지원 강화를 제안함.
- 아이돌보미 인력풀 확충 및 시간제 어린이집의 지정 기준과 운영에 대한 융통성 부여로 긴급양육지원 시스템을 강화할 것을 제안함.
- 출산의 고령화 경향이 심화될수록 기타의 양육 자원 없이 자녀 양육에 ‘부부’ 자신의 참여가 가능한 형태가 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다양한 자녀 양육의 욕구 해결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휴가 제도를 아버지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의 조성 및 정서·친근 문화의 조성이 필요함.
- 고령출산 가구가 증가하여 부모의 은퇴 후에도 미성년 자녀의 양육 부담이 있는 경우가 증가할 것을 고려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모든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만 18세 미만의 자녀 각각에 지급하는 ‘아동수당’ 도입을 제안함.

- 취학전 아동이 있는 가구는 '양육수당'과 '기관보육료·교육비 지원' 중 선택하도록 하고, 학령기 이후 만 18세까지 자녀가 있는 일정 소득 이하 가구는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형태임.
- 난임으로 인한 취업모 경력단절 방지 방안
 - '난임'에 초점을 둔 독립적인 휴가로 적극적 임신 시도 후 1년이 지나 난임으로 분류될 수 있는 취업여성에게 6개월~1년까지 연장 가능한 '난임휴가' 도입을 제안함.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본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족의 변화’를 감지하고 이에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가족 변화’에 주목하고 이에 대응해야 하는 이유는, 전통적으로 자녀 출산·양육에 있어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였던 ‘가족’이 사회구조적 변동 속에서 변화할 때 출산·양육 환경도 변화되며, 이는 결과적으로 가족원의 출산과 양육 행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영향력의 차이는 있지만 ‘가족의 변화’는 결과적으로 가족의 중요한 기능으로 인식되고 있는 ‘생산’ 기능, 즉 사회구성원을 재생산 해내는 기능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곧 ‘출산율’이라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런데, 가족의 변화는 매우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핀란드 Jyväskylä 대학 가족연구소의 Kimmo Jokinen 교수에 따르면 유럽 국가의 가족 생활에서 나타나는 주된 변화는 이혼 및 별거율의 증가 및 성역할 변화, 동거 커플 및 혼외 출생, 비관례적·비전통적 가족 형태(동성가족, 비동거 커플 등)의 비율 증가와 결혼과 출산 시기의 지연이라고 하였다(Jokinen, 2013: 143). 이혼율의 증가나 1인 가구의 증가, 만혼 및 출산의 고령화 경향은 우리나라에서도 공통된 주요한 가족변화로 지적된다(이명진·최슬기, 2011: 3~22).

본 연구는 이러한 다양한 측면의 가족 변화 중에서도 ‘고령출산’, 특히 ‘첫 출산’이 고령화 되는 경향, 즉 ‘출산의 고령화’를 주요한 변화로 주목한다.

흔히 의료적 기준에서 35세 이후의 출산을 ‘고령출산’ 혹은 ‘고위험 출산’으로 분류하는데, 이러한 30대 후반의 출산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²⁾ 2005년 이전에는 20대 후반 여성의 출산율³⁾이 30대 초반 출산율보다 높고 전 연령대를 통하여 가장 출산율이 높았으나, 2006년 20대 후반 여성의 출산율과 30대 초반 여성의 출산율이 동일하게 집계된 이후 2007년부터는 오히려 30대 초반의 출산

2) 본 연구 II장 1절 참조.

3) 해당연령 여성인구 천명당 출산아 수로 산출함.

율이 20대 후반 출산률을 추월하여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더하여 2000년에는 1,000명당 17.2명에 불과하였던 30대 후반 여성의 출산률도 2012년에는 38.9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하여 증가세로는 어떠한 연령대보다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는 상황이다.

또한 첫 출산 시점인 초산연령 상승도 급격하여, 평균 초산연령이 2010년 이후 30세를 넘어서기 시작하여 2011년 기준 전체 초산 중 모연령 30세 이상 초산에 의한 출생아 비율이 52.6%에 이르고 있다.⁴⁾

본 연구에서 다양한 측면의 가족 변화 중에서도 이처럼 첫 출산시점이 지연되는, ‘출산의 고령화’에 주목하여 논의를 전개하고자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출산률 제고가 절실한 상황에서 이처럼 첫 출산시기가 늦어지는 것은 출산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요인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결혼한 부부라면 대부분 한 명의 자녀 출산에 대해서는 출산 여부가 아닌 ‘출산 시기’의 선택만이 존재한다고 보는데(조복희·현은강, 1994: 98; 신은숙, 2005: 65, 이정원, 2007: 8에서 재인용), 첫 임신·출산 시기가 늦어진다면 잔여 가임 기간이 줄어들어 출산 가능 절대 자녀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첫 출산 시점의 지연 자체가 자연스럽게 생식력 저하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처럼 첫 출산이 늦은 고령출산 가족이 증가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출산률 회복을 어렵게 하는 주요한 변화인데,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출산률을 회복해야 한다면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이에 출산의 고령화 경향 속에서도 출산이 늦은 가족들의 건강한 다자녀 출산·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의 필요성이 더욱 제기된다 하겠다.

둘째, 출산의 고령화는 기존의 보편적 생애주기에 변화를 가져오며 이로 인해 기존의 생애주기에 따라 설계된 출산·육아지원 정책이 변화한 출산·육아 상황을 지원하는데 한계를 보이게 되기 때문이다.

흔히 의료적 기준에 의한 35세 이상 ‘고령출산’을 포함해 출산이 전반적으로 늦어진다면 보편적인 생애주기에 따라 설계되어 있는 출산·육아지원 정책이 새로운 생애주기에서의 임신·출산 및 양육의 어려움에 대처하는데 한계를 지닐 수 있다. 약 30년 전에는 20대 초·중반 결혼 및 첫 출산, 2살~3살 터울로 2~3자녀 출산 및 30대 중반 이내 단산이라는 생애주기가 보편적이었다면, 결혼과 출

4) <표 II-14>참조.

산 시기가 점차 지연되어 2013년 현재 평균 결혼(초혼)연령은 20대 후반, 평균 초산 연령은 30세가 넘어가고, 30대 후반~40대의 출산이 급증하고 있는 등 생애 주기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이 눈에 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30년 전, 혹은 10년 전의 보편적 생애주기에 맞추어 설계된 출산·육아지원 정책이 출산 시점이 지연되는 현재 상황에 완벽히 대응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출산이 지연된 가족이 현재 존재하는 출산·육아지원 정책에서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점검하여 고령출산이 더욱 확산되어 일반적인 현상이 될 때를 대비한 보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본 연구는 출산 지연을 문제로 보는 시각이 아닌 이를 일반적인 상황으로 받아들이는 관점에서 대응 방안 마련, 즉 초산지연에도 불구하고 희망하는 자녀수를 출산할 수 있도록 출산과 육아를 돕는 방안 마련에 주력하고자 한다.

셋째, 출산이 늦어지는 원인별 맞춤형 출산·육아지원 방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흔히 결혼이 늦어지기 때문에 출산이 늦어진다고 보아, 결혼을 앞당기기 위한 정책도 마련되고 있으나 출산 지연에는 만혼 외에도 다양한 원인이 존재할 수 있다. 즉, 사회 초년생 부부의 경제적·사회적 기반 마련까지의 의도적 출산 지연, 비정규직 증가 등 청년들의 근로조건 악화, 근로조건 악화 속에서의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등 다양한 원인으로 결혼 후에도 출산이 지연될 요인들은 다양하게 존재한다. 결혼이 늦지 않은 경우에도 난임으로 인해 비의도적으로 출산이 지연될 수 있다. 반대로 결혼이 늦었어도 초산까지의 간격과 이후의 후속출산간격이 좁아 단시간에 다자녀 출산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즉, 예전에 비해 생애주기의 다양성이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다양한 생애주기에서 개인과 가족에게 적절한 시점에 희망하는 자녀를 건강하게 출산·양육할 수 있는 지원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더불어 비자발적인 출산 지연과 이로 인한 출산 자녀수의 감소가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는 방안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출산 지연의 다양한 원인을 고려한 출산·육아지원 방안을 통해서 향후 고령출산이 일반화되는 상황에서 고령출산 가족 뿐 아니라 출산 시기가 빠르거나 적령기 출산이 이루어진 가족에게도 지금보다 더 나은 출산·양육 환경, 일-가정 양립 환경이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출산의 고령화 실태와 이를 유발하는 개인적·심리적·사회구조적 요인을 살펴보고, 이러한 고령출산이 이루어졌을 때 양육환경은 어떻

게 변화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여, 출산·양육 환경 변화에 따르는 적절한 출산·양육의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닌다.

2. 연구내용

본 연구는 ‘출산의 고령화’가 한국 가족의 출산력 저하에 중요한 원인이 됨을 인정함과 동시에 정책적인 지원과 노력을 통해 출산의 고령화가 출산력 저하에 미치는 영향력을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다는 관점에 기반한다.

또한 본 연구는 급속한 인구구조의 변화와 사회·구조적 변동 속에서 ‘출산의 고령화’가 더 이상 일부 가족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결국 대부분의 가족이 직면하게 될 보편적인 변화라는 관점에 기초하고 있고,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를 통해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첫째, 출산의 고령화 현상을 관련 선행연구와 통계자료를 통해 파악한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출산’을 위한 진입장벽으로 간주되는 ‘결혼’은 얼마나 지연되고 있는지를 출산 시기와 연동하여 살펴본다.

둘째, 출산 지연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을 분석한다. 인구학적인 변화와 이와 맞물린 가족관련 가치관의 변화, 가족형성의 전제조건으로서의 취업 현황의 변화 등 관련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및 기타 문헌자료와 함께 설문조사 및 사례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이를 통해 정책적으로 개입 가능한 부분을 파악하고자 한다.

셋째, 현재 출산·양육지원 제도가 출산 및 양육 시기가 고령화되고 있는 현실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어떠한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넷째, 사례조사와 설문조사를 통해 출산 시기에 따라 가족의 일반적 특징과 결혼·출산·양육 행태를 비교 분석한다.

다섯째, 출산의 고령화가 보편적인 상황을 고려한 출산·양육지원의 변화 방향을 제시하고, 비자발적인 출산·양육시기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과 고령출산가족의 출산·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

가. 문헌연구

출산의 고령화 현상, 출산 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출산·양육지원 제도, 출산 시기(연령대)에 따른 출산·양육의 실태 파악을 위해 통계자료와 선행연구 등 관련 문헌을 분석하였다.

나. 설문조사

본 연구의 주된 연구방법은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에 대한 통계분석이다. 본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의 모집단과 조사대상, 표본추출 방법과 설문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모집단 및 조사대상

본 연구는 전국의 0~5세 아동(미취학 영유아)이 1명 있는 가구를 조사의 모집단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본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에는 초산 시점의 환경과 첫째아(즉, 첫 출산에 의한 자녀)의 양육환경을 어머니의 초산 연령에 따라 비교하기 위한 설문이 다수 포함되는데, 자녀수를 제한하지 않고 표집하였을 때 어느 자녀의 양육 상황인지에 혼란이 있어 자료의 정확성이 떨어질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는 둘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에 일반화 하는 데는 제한이 있음을 밝혀둔다.

이 조사는 전국 16개 시·도(제주도 제외)에서 1,000사례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최종 응답자는 현재 미취학 영유아 1명을 둔 가구의 어머니로 설정되었다.

2) 표본설계 및 표본추출

본 연구에서는 전국 16개 시·도에서 총 1,000사례를 조사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 16개 시·도의 0~5세 영유아의 주민등록인구수를 고려하여 1차적으로 시·도별 사례 할당을 하고, 시·도별로 할당된 사례가 한 조사구당 10~20 사례 정도 될 수 있도록 시·도내 기초자치체(시·군·구) 수준의 거점 지역을 2차적으로 선정하였다.

이와 함께, 본 연구에서는 완전한 ‘무선표집’이 아닌 두 가지 기준에 의한 일정 ‘사례할당’이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 고려한 두 가지 기준은 ‘어머니의 초산연령’과 ‘영/유아의 인구비율’이었다.

그중 어머니의 초산연령에 따른 사례할당은 본 연구에서 초점을 두고 있는 대상인 ‘고령출산가족’이 일정 부분 조사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초산연령’을 기준으로 만 35세 이상 초산집단이 전체 30% 이상 과대표집 되도록 설계하였다⁵⁾. 만 35세 이상의 출산을 ‘초산’ 기준으로 한 이유는 평균 초산연령이 2011년 기준으로 30세를 초과하여 둘째 자녀 이상의 출산에서는 35세를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초산’이 만 35세를 넘어갈 때의 위험성이 더 크기 때문이다.

3) 설문내용

본 연구를 위해 실시된 설문조사는 크게 ‘응답가구의 특성’, ‘결혼’, ‘임신과 출산’, ‘자녀 양육 및 일·가정 양립실태(요구)’의 범주로 구분되어 각각 범주의 주제와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표 I-3-1 참조).

‘응답가구의 특성’으로는 부모와 자녀뿐 아니라 조부모에 관한 설문 항목을 두고 있다. 이는 출산이 고령화될 때 확대가족의 성원인 조부모의 연령도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이로 인해 조부모의 건강상태, 경제적 조력의 필요성 등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양육조력 자원의 양적·질적 변화 요인이다. 1자녀 가구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자녀에 대해서는 성별, 연령만을 포함하였다. 이밖에 자녀 출산 시 부모의 연령, 임신·출산방법, 산후조리방법 등 자녀의 임신·출산 당시의 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설문 내용이 포함되었다.

‘결혼’과 ‘임신·출산’ 부분은 초혼과 초산 경험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결혼’ 부분에서는 결혼의 필요성, 결혼적령기에 대한 생각, 결혼을 위한 조건 등 결혼관련 가치관에 대한 설문과 결혼(초혼) 당시의 상황(초혼연령, 초혼

5) 2011년 기준 만 35세 이상 초산은 20년간 약 8.2배에 이르는 급속한 증가세를 보여 30~34세 내에서의 초산 증가율보다 증가율은 높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비중은 아직 전체 초산 중 10.7%에 불과하여, 완전한 무선표집의 경우 전체 사례에서 약 10% 전후에 불과한 사례수만 표집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를 위한 조사에서는 표본추출시 이러한 사례에 대한 의도적인 목표사례수 할당을 시도하였다.

당시의 취업여부, 교육정도 등), 결혼 당시 부모 조력, 대출 등 경제적 자원 마련에 대한 설문 등을 포함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본인의 결혼 연령의 적정성, 늦었다고 생각하는 경우 만족 여부, 불만족 이유, 결혼 지연의 이유 등을 살펴볼 수 있는 문항이 포함되었다.

다음으로 ‘임신과 출산’ 부분은 자녀출산과 관련된 가치관(미혼부모됨에 대한 생각, 자녀의 필요성,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 시기, 임신·출산 적령기 유무 및 적정 시기), 임신·출산력(첫임신까지의 임신소모력, 어려움 경험 여부, 보조생식술의 이용 여부, 출산방법 등), 고령출산의 이유, 임신·출산시 겪었던 문제, 출산계획과 필요로 하는 출산지원 정책에 대한 생각을 살펴보기 위한 질문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자녀 양육 및 일-가정 양립 실태와 요구’ 범주는 자녀의 양육 실태와 어려움, 부모의 취업력과 일-가정 양립실태, 양육지원 제도의 이용 경험 및 요구를 살펴보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러한 문항들을 통해서는 영유아가 있는 가구의 부모 연령별, 세대별, 출산 시기별 양육실태 차이를 살펴볼 수 있고, 특히 고령출산가족에서 예상되는 가족 내 양육지원인력의 부족은 출산적령기 가족에 비해 어떤 상태이며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출산 시기가 늦어지는 가족의 경우 출산시기가 상대적으로 이른 가구와는 취업력과 일-가정 양립의 현실이나 애로사항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취업력에서는 노동시장 첫 진입시기와 탈퇴시기를 부모의 연령과 결혼 전후, 출산 전후 등 생애주기상의 시기 구분으로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설문 내용은 사례면담 조사를 통해 항목 구성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은 후 1차적으로 연구진이 구성하고, 이후 부모 면담과 원내 워크숍 검토 의견을 거쳤으며, 전문가 검토의견, 예비조사 결과를 반영해 수정·보완되었다.

〈표 1-3-1〉 설문내용

구분		설문항목
I. 응답 가구의 특성	부모 특성	어머니 연령·학력·소득, 아버지 연령·학력·소득
	조부모 특성	첫 자녀 출산시 친조부모, 외조부모의 생존여부, 첫 자녀 출산시 조부모 연령·건강상태, 현재 친조부모·외조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여부 및 금액
	자녀 특성	성별, 나이, 자녀 출산시 부모 연령, 임신·출산 방법, 산후조리 방법
II. 결혼	결혼가치관	결혼전 생각했던 결혼의 필요성, 남녀별 결혼적령기에 대한 관점, 결혼 적령기,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관점

(표 I-3-1 계속)

구분		설문항목
II. 결혼	결혼(초혼) 당시 상황	결혼형태(초혼재혼여부), 부부의 초혼연령, 재혼시 재혼연령, 초혼시기의 적절성, 결혼을 늦게 한 이유, 늦은 결혼의 만족여부 및 불만족 이유, 결혼 당시의 교육정도
	결혼의 경제적 조건	결혼 비용 마련시 대출부모님 조력 여부 및 금액, 결혼에 필요한 경제적 조건(배우자(남편)의 직업에 대한 관점, 주택에 대한 관점)에 대한 관점
III. 임신·출산	임신·출산·자녀 가치관	미혼부모됨에 대한 동의 정도, 자녀의 필요성,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 기간, 남녀의 임신·출산 적령기 유무 및 적정 연령대, 부모 연령과 임신·임신유지, 출산양육의 관계
	임신·출산력	첫 자녀의 임신계획 여부, 첫 출산 계획시기 및 고려사항, 첫임신 계획 후 첫 출산까지 걸린 시간, 첫 출산 이전 유사산 경험, 출산방법(자연분만 여부), 산후조리방법, 출산당시 35세 이상 여부 35세 이상의 첫 출산 이유, 첫 자녀 임신 방법, 난임부부지원사업 수혜 여부, 시험관인공수정 시술 비용, 첫 임신·출산시 문제 경험 여부 및 발생 비용, 첫 임신시 권유받은 산전 검사 종류
	출산계획과 정책	출산에 도움이 된 출산양육지원 정책, 추가출산계획 및 추가출산계획 자녀수, 추가출산 계획 있는 경우 터울 고려 여부 및 고려 사항, 적절 터울, 추가출산계획 없는 이유, 임신이 어려울 경우 보조생식술 이용 계획, 정부 지원 확대시 추가출산계획 가능성 여부, 출산양육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 수혜경험, 만족도
IV. 자녀 양육 및 일-가정 양립 상태	자녀 양육 실태	1일 3시간 이상 기관 이용 여부 및 이용 기관, 기관 이용의 불만사항, 부모 외 정기적으로 돌봐주는 사람 유무, 자녀를 돌봐주는 사람에 대한 양육비용, 위급시 도와줄 수 있는 인력 유무, 육아 지식이나 조언을 주는 사람, 부부의 양육 참여 정도(주중주말)와 참여시간, 배우자 참여 정도의 적절성 정도, 참여 충분부족시 이유, 자녀양육의 애로사항
	부모의 취업력	부모의 첫 취업(정규직 기준)시기 및 연령, 결혼당시 취업 여부, 부모의 결혼 후 취업경력, 현재 취업상태 및 직업, 직위
	취업자의 일-가정 양립	취업자의 근로 지속 희망 기간, 일-가정 양립 문제 상황의 어려움 정도,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사용 경험, 급여 수급, 만족도, 향후 취업 지속에 도움이 될 영역
	미취업자의 취업계획	향후 취업계획 유무, 취업 계획시 어려운 점
	취업 중단 경험	출산양육을 위한 취업 중단 경험 여부, 경력단절 첫 번째·마지막 시기 및 이유, 취업 지속에 도움이 되었을 지원, 재취업 여부 및 재취업하지 않은 이유
	양육지원 제도	양육지원 제도 인지 여부, 이용 경험, 자녀양육 도움 정도

4) 전문가 검토 및 예비조사

설문지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 3인의 검토를 받았으며, 조사대상자에 대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질문지의 구성, 질문의 연구 목적에의 타당성, 추가 질문 필요성, 오류 등을 검토 받고 예비조사 결과를 토대로 질문지를 수정·보완하였다.

5) 응답자 특성

본 설문조사 응답자들의 간략한 인적 특성은 아래 <표 I-3-2>에 전체 1,000사례와 초산연령 만 35세 미만과 만 35세 이상에 대해 각각 제시하였다.

〈표 I-3-2〉 응답자 특성(초산연령 구분)

단위: %(명)			
구분	전체	만 35세 미만	만 35세 이상
지역규모			
대도시	45.4	45.3	45.7
중소도시	39.1	39.1	39.0
읍면지역	15.5	15.6	15.3
모연령			
만30세 미만	11.5	16.4	-
만30~35세 미만	45.2	64.6	-
만35~40세 미만	32.4	19.0	63.7
만40세 이상	10.9	-	36.3
모 최종학력			
고졸이하	26.5	25.3	29.3
2년제 대졸	27.5	28.1	26.0
4년제 대졸 이상	46.0	46.6	44.7
초혼연령			
만25세 미만	5.1	7.0	0.7
만25~30세 미만	47.2	64.0	8.0
만30~34세 미만	38.4	28.7	61.0
만35세 이상	9.3	0.3	30.3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32.2	38.0	18.7
300~400만원 미만	36.2	35.9	37.0
400~500만원 미만	17.5	14.6	24.3
500만원 이상	14.1	11.6	20.0

(표 I-3-2 계속)

구분	전체	35세 미만	35세 이상
현 취업상태			
취업	25.9	25.9	26.0
취업 중단	53.5	53.0	54.7
취업한 적 없음	20.6	21.1	19.3
자녀 연령			
영아	53.5	53.9	52.7
유아	46.5	46.1	47.3
계	100.0(1,000)	100.0(700)	100.0(300)

만 0~5세 영유아의 주민등록인구 통계 결과를 근거로 제공된 비례 배분에 의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에 각각 45.4%, 39.1%, 15.5%로 1,000사례를 배분하여 이러한 비율로 표본추출되었으므로, 현재 응답자의 분포도 이러한 비율을 보여준다.

현재 영유아 1명이 있는 응답가구의 어머니 연령은 30세 미만 11.5%, 30~35세 미만 45.2%, 35세~40세 미만 32.4%, 40세 이상 10.9%이며, 초산연령별 집단에 따라서는 현재 모 연령의 분포는 매우 크게 차이가 난다. 초산이 만 35세 미만에 이루어진 집단에서는 64.6%의 분포로 현재 30~34세에 해당하는 사례가 가장 많고, 초산이 만 35세 이상인 집단에서는 현재 35~40세 미만인 30대 후반이 63.7%를 차지하고 있다.

최종학력은 4년제 대졸 이상이 46%로 가장 많고, 학력 분포에 초산연령별 집단에 따른 큰 차이는 없으나 35세 미만 초산 집단의 고졸 비율이 조금 더 낮고(25.3%), 4년제 대졸 이상 비율이 조금 더 높다(46.6%).

초혼연령은 20대 후반에 가장 많이 분포하여 47.1%가 해당하며 35세 미만 초산 집단은 이러한 20대 후반에 결혼한 경우가 64.0%에 달한다. 이에 반해 35세 이상 초산 집단 중에서는 초혼연령이 30~35세 미만인 30대 초반인 경우가 61.0%이며 만 35세 이상인 경우도 30.3%로 20대 후반 결혼한 경우가 현격히 적었다.

가구소득은 300~400만원 미만인 경우가 가장 많아 36.2%가 이에 해당하였다. 초산연령 집단에 따라서는 300~400만원 수준에 모두 가장 많이 분포하나, 만 35세 이상 초산 집단에서는 400만원 이상의 비중이 44.3%로 만 35세 미만 초산집단의 26.2%에 비해 소득수준이 대체로 높게 나타난다.

현재 취업중인 비율은 전체 1,000사례 중 25.9%에 해당하며, 이는 초산연령별 집단구분에 따른 차이가 거의 없었다.

현재 자녀 연령은 0~2세 사이의 영아가 53.5%, 3~5세 유아가 46.5%이며 만 35세 이상 초산 집단에서 유아의 비율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다. 사례연구

본 연구의 주요 대상인 고령 출산 가족의 출산·양육 실태와 애로사항, 지원요구 등에 대하여 설문조사만을 통해 얻기 어려운 심층적 자료를 수집하고 설문 항목 구성에 도움을 받기 위해 결혼 시기가 늦거나 주로 35세 전후의 출산 경험에 있는 사례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가족생활주기가 지연되지 않은 사례와의 비교를 위해서 혼인과 초산이 비교적 빨랐던 사례도 일부 포함되도록 하였다.

면담 사례는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구 중에서 30세 이후 만혼과 35세 이상 고령 출산이 모두 일어난 사례, 만혼은 아니나 출산이 지연된 사례, 만혼이었으나 출산은 35세 전에 이루어진 사례, 결혼과 초산이 모두 30세 전에 이루어진 사례 등 다양한 생애주기 유형의 사례가 포함되었다. 각각의 생애주기 유형의 특징을 고려하여 면담 시의 질문은 기본 항목을 기초로 조절되었으며, 특히 결혼·임신·출산시기와 관련된 요인, 임신·출산시의 어려움과 양육상황에서의 어려움, 일·가정 양립의 특징 등을 중심으로 면담을 구성하였고, 총 15사례에 대해 면담을 실시하였다.

심층면담의 피면접자는 현재 취학 전 영유아 자녀가 있는 어머니들로서 이들의 간략한 인적사항은 <표 I-3-3>에 제시한 바와 같다.

사례 면담시 질문 사항은 부록2에 제시하였다.

〈표 I-3-3〉 심층면담 사례

사례 번호	피면접자 정보								
	연령	배우자 연령	결혼 연령	초산 연령	임신 방법	첫 자녀 임신 준비기간	취업 여부	소득 수준 (만원)	재취 수
1	32	32	28	31	자연임신	1년미만	미취업	280	1
2	35	37	33	34	자연임신	1년미만	미취업	-	1
3	38	38	35	37	자연임신	1년이상	미취업	500	1

(표 I-3-3 계속)

사례 번호	피면접자 정보								
	연령	배우자 연령	결혼 연령	초산 연령	임신 방법	첫 자녀 임신 준비기간	취업 여부	소득 수준 (만원)	자녀수
4	36	40	30	35	과배란 유도	1년이상	미취업	450	1
5	42	43	28	42	자연임신	1년이상 (10년)	취업	500	1
6	37	39	32	35	자연임신	1년이상 (3년)	취업	1,000	1
7	43	46	29	42	시험관 시술	1년이상 (3년)	미취업	-	1
8	36	36	30	35	자연임신	1년이상 (2년)	취업	800	1
9	36	36	28	35	시험관 시술	1년이상 (7년)	미취업	600	1
10	36	38	27	29	자연임신	1년이상	미취업	600	2
11	34	41	31	33	시험관 시술	1년이상	미취업	400	1
12	34	40	28	29	자연임신	1년미만	미취업	300	3
13	41	41	38	40	자연임신	1년이상 (2년)	미취업	500	1
14	47	38	37	47	시험관 시술	1년이상 (10년)	취업	300	1
15	37	42	30	37	자연임신	1년이상 (6년)	미취업	300	1

라. 자문회의

관련 학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연구의 방향 설정, 설문 내용 검토, 정책방안 의견 수렴을 위한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4. 용어 정의

본 연구에서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본 연구에서 주요하게 사용된 용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가. 만혼

‘만혼(晩婚)’이란 사전적으로 ‘나이가 들어 늦게 결혼함’을 뜻한다.⁶⁾ ‘늦은 결혼’의 기준은 시대와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변화되며 달리 해석될 수 있는데, 선행 연구에서는 ‘결혼적령기’로 인식되는 연령대와 실제 평균혼인연령 등을 고려하여 만 30세 이상 결혼한 경우 잠정적으로 ‘만혼’인 것으로 보고 있다(김태홍 외, 2011: 96).

본 연구에서도 선행연구에서의 조작적 정의인 만 30세 이상에 결혼한 경우를 ‘만혼’으로 정의하여 사용하였다.

나. 고령출산

‘고령출산(高齡出産)’이란 ‘늦은 나이에 출산하는 것’을 의미하며, 세계보건기구와 국제산부인과학회에서는 고령출산의 기준이 되는 나이를 3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⁷⁾ 의학계에서는 이처럼 만 35세를 기준으로 한 ‘고령산모’, ‘고령출산’ 등의 용어가 빈번히 사용되고 있다(황지영, 2003; 박상화·임달오·한정호, 2009). 이는 다분히 임신 결과에 대한 여성의 연령이 지닌 영향력이 절대적이라고 보는 생물학적 관점(김동식·김영택·김태희, 2011: 19)에 기반한 것이다. 여성의 연령이 임신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이처럼 절대적으로 보는 것에 반발하는 의견이 존재하기는 하나, ‘고령출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만 35세’ 이외 다른 연령 기준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본 연구에서도 ‘고령출산’은 만 35세 이상에 출산한 경우로 정의하기로 한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현재 1자녀가 있는 가구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본 연구에서의 ‘고령출산’이란 곧 만 35세 이상에 첫 자녀를 출산한 ‘고령초산’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6) 출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www.korean.go.kr)

7) 출처: 두산백과사전(www.doopedia.co.kr)

II. 연구의 배경

1. 가족생활주기와 출산연령의 변화

가. 가족생활주기 단계의 지연

‘가족생활주기’는 “가족생활에서 경험하는 미혼·결혼·출산·양육·노후의 각 단계에 걸친 시간적 연속”을 의미한다(정옥분·정순화·홍계옥, 2005: 22; 김승권·김유경 외, 2012: 765). 가족주기는 시대에 따라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변화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평균수명의 연장, 저출산의 경향도 가족생활주기를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예를 들면 소자녀화로 인해 자녀 출산 및 양육에 투자하는 기간이 단축되고 상대적으로 부부만의 생활기간이 연장된다든지, 평균수명이 연장됨으로써 가족형성부터 해체까지 가족주기의 전 생애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등의 변화를 보이게 된다(김승권·김유경 외, 2012: 766).

이러한 ‘가족생활주기’의 단계는 다양하게 구분될 수 있으나, ‘결혼’을 시작으로 자녀의 여부, 자녀의 연령과 결혼 등을 기준으로 6단계로 구분한 한 연구(유영주, 1984)에서는 결혼 후 첫 자녀 출산까지의 시기인 ‘형성기’, 첫 자녀 출산으로부터 첫 자녀가 초등학교⁸⁾ 입학 전까지로 구분되는 ‘자녀출산 및 양육기’, 첫 자녀의 초등~고등학교 교육시기인 ‘자녀교육기’, 첫 자녀가 대학에 다니거나 취업, 군복무, 가사를 협조하는 시기인 ‘자녀성년기’, 첫 자녀 결혼부터 막내 자녀 결혼까지의 ‘자녀결혼기’, 막내 자녀 결혼으로부터 배우자 및 본인이 사망하기까지 기간인 ‘노년기’로 가족생활주기를 구분하였다(유영주, 1984: 125).

〈표 II-1-1〉 가족생활주기

단계	구분 기준	연령구분
① 형성기	결혼부터 첫 자녀 출산까지	23세 - 24세(약 1년)
② 자녀출산 및 양육기	첫 자녀 출산으로부터 첫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24세 - 30세(약 6년)
③ 자녀교육기	첫 자녀의 초등학교~고등학교 교육시기	30세 - 42세(약 12년)

8) 연구 당시 ‘국민학교’라고 표기됨. 유영주(1984). p.125

(표 II-1-1 계속)

단계	구분 기준	연령구분
④ 자녀성년기	첫 자녀가 대학, 취업, 군복무, 가사를 협조하는 시기	42세 - 46~48세 (약 4~6년)
⑤ 자녀결혼기	첫 자녀 결혼부터 막내자녀 결혼까지	42세 - 46~57세 (약 15년간)
⑥ 노년기	막내자녀 결혼부터 배우자·본인 사망까지	57세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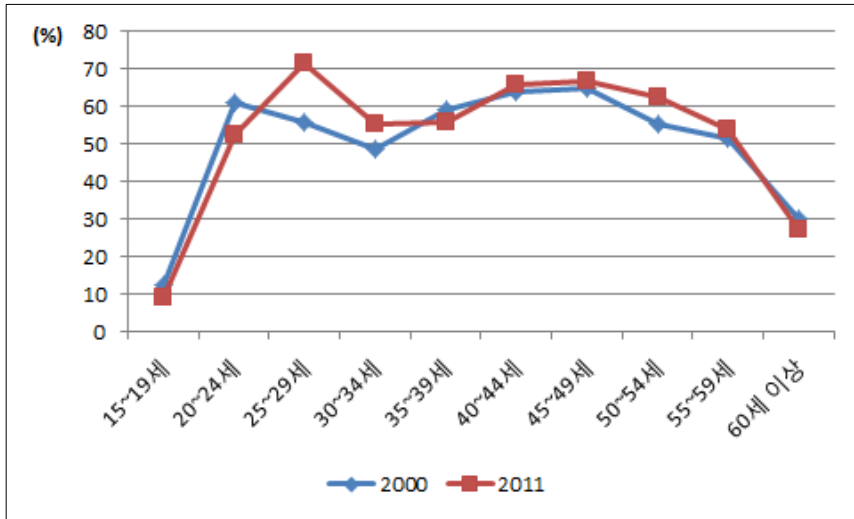
자료: 유영주(1984). 한국도시가족의 가정생활주기 모형 설정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 p. 125.

이 연구에서는 20대의 출산 자녀수와 터울을 각각 2명, 2세로 추정하여 계산하였으나, 이후 가족생활주기 변화와 관련된 연구에서는 다시 초혼연령과 초산연령이 높아지는 만큼 자녀출산 시기는 더 앞당겨지고 자녀수는 줄고 터울이 짧아짐으로써 단산연령이 빨라지게 되었음을 보여준다(표영희, 1997, 김승권·김유경 외, 2012: 770에서 재인용). 2013년의 한국사회를 약 30년 전의 가족생활주기 단계 시작 시점과 비교해보면, 가족주기의 시작점인 결혼 시기 자체가 매우 지연되었고 이로 인해 전반적인 가족생활주기의 각 단계가 시작되는 시점도 지연되고 있음이 뚜렷이 드러난다. 물론 이러한 가족주기 단계의 시작 시점의 지연에는 교육기간의 연장, 청년실업률의 증가로 인한 취업 시기의 지연과 같은 요인이 관련되어 있다. 또한 여성의 경우에는 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가 자체도 예전에 비해 결혼 시기나 출산시기를 늦추는 요인이 된다.

2000~2012년간 15세 이상 여성 인구를 교육정도별로 살펴보면 초졸 이하와 중졸 인구는 감소하고 있고 고졸은 비슷한 수치를 보이며 전문대졸과 대학교졸 이상 인구는 점차 증가하여, 전반적으로 교육기간이 길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교육기간의 연장은 그 자체로 혼인 시기와 출산 시기를 늦추는데 영향을 미치는, 즉 가족생활주기 단계별 시점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된다(이삼식·최효진, 2010: 33).

또한 2000년과 2011년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경제활동참가율이 최고인 연령이 2000년 20대 초반에서 2011년에는 20대 후반으로 변동되었고 그 수치 또한 61.2%에서 71.4%로 증가되었다. 이로 인해 결혼, 출산 및 육아 등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이 감소하였다가 회복되는 시점도 점점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00년에는 30대 후반부터 회복되기 시작한 반면 2011년에는 40대 초반으로 그 시기가 늦춰졌다. 이는 반대로 말하면 결혼과 출산·자녀 양육으로 구분되는 가족생활주기가 여성의 교육·경제활동 참가

시기에 맞춰 지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II-1-1]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변화추이(2000, 2011)

자료: 통계청(각년도), 경제활동인구연보.

다만, 지금까지는 교육과 취업은 결혼 전, 즉 가족생활주기가 시작되기 전에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는 인식을 가졌으나, 가족생활주기의 변화와 복잡화 경향을 보면 향후 교육과 취업을 반드시 가족형성기(결혼) 전에 이루어지는 전제 조건으로 볼 수 없게 될 가능성도 다분해 보인다. 한 예로서 핀란드의 Jokinen 교수는 핀란드의 가족 변화 경향을 설명하면서 예전보다 '성인기'로 가는 경로가 복잡해졌음을 지적하였다. 즉, 예전 같으면 교육을 마치면 결혼으로 이행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삶의 경로이나 이제는 교육을 마치고 결혼이 아닌 동거, 원가족으로의 회귀, 취업, 재교육 등 한 사람이 성인기에 이르는 시간이 연장되고 경로가 복잡해졌다는 것이다(Jokinen, 2013).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가족생활주기의 변화 양상 속에서 출산 연령이 고령화됨으로 인한 변화가 개별 가족의 출산과 양육에 초래하는 애로사항이나 새로운 욕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나. 출산의 고령화

1) 출산의 진입 장벽 상승: 만혼화

2000~2012년간 여성의 초혼연령별 혼인 건수와 평균 초혼연령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II-1-2>와 같다. 평균 초혼연령은 2000년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0년 약 26.5세에서 2012년 약 29.4세로 상승되었다. 초혼연령별 혼인 건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최다 혼인건수 연령은 여전히 20대 후반이나 그 다음으로 혼인건수가 많은 연령이 2000~2005년까지는 20대 초반이었음에 비하여 2006년 이후부터는 30대 초반으로 변동하였음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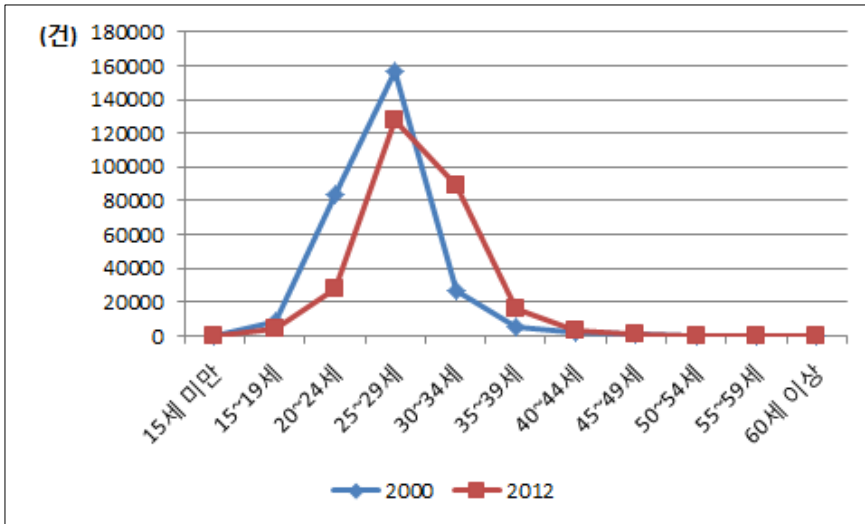
<표 II-1-2> 여성의 초혼연령별 혼인 건수 변화(2000~2012)

단위: 건

년도	15세 미만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50~54세	55~59세	60세 이상	평균 초혼 연령
2000	57	8,105	84,105	156,846	26,286	5,104	1,714	639	253	134	109	26.49
2001	38	6,719	71,637	149,735	28,947	5,235	1,683	667	265	128	105	26.78
2002	25	5,581	62,745	143,540	32,166	5,086	1,507	620	222	122	86	27.01
2003	33	4,909	56,205	140,672	35,761	5,428	1,627	637	240	105	95	27.27
2004	29	4,881	51,341	138,480	39,519	6,138	1,786	764	272	125	110	27.52
2005	13	5,685	46,227	139,329	43,475	7,152	1,872	905	329	131	108	27.72
2006	13	7,612	47,312	152,308	49,772	8,880	2,040	829	332	112	102	27.79
2007	0	6,055	43,542	161,676	55,194	10,602	2,176	942	372	121	58	28.09
2008	8	6,414	36,300	150,195	56,834	11,071	2,139	886	390	118	114	28.32
2009	0	5,285	29,712	139,409	60,148	12,007	2,446	930	417	176	144	28.71
2010	0	5,746	31,062	142,014	70,913	14,171	2,872	1,023	474	130	136	28.91
2011	0	5,078	29,624	137,781	80,517	14,774	3,089	940	447	173	120	29.14
2012	5	4,658	27,562	128,008	88,922	16,120	3,542	923	466	157	132	29.4

자료: 통계청(각년도). 인구동향조사(혼인).

2000년과 2012년도의 초혼연령별 혼인 건수를 그래프로 비교해보면 다음의 [그림 II-2-1]과 같다. 2012년도에도 여전히 전 연령 중 20대 후반의 혼인건수가 가장 많으나 2000년에 비하여 2012년에는 20대 이하의 혼인건수는 감소하고 30대 이상의 혼인건수는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1-1-2] 여성의 초혼연령별 혼인건수 변화추이(2000, 2012)

자료: 통계청(각년도), 인구동향조사(혼인).

30세 이상의 결혼을 ‘만혼’이라고 해석할 때(김태홍 외, 2011: 96) 30세 이상의 혼인이 증가하는 ‘만혼화 현상’은 법적인 혼인 내에서의 출산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우리나라에서는(김태홍 외, 2011: 44) 출산의 진입장벽으로 기능함으로써 고령출산을 부추기는 한 원인이 될 수 있다 하겠다.

2) 출산 시기의 변화

만혼화와 함께 여성의 주요 출산 연령대도 1990년에는 25~29세 사이였으나 2012년에는 30~34세로 상향 이동하였고(통계청, 각년도), 여성연령별 출산률이 1990년 35~39세 여성 인구 천명당 9.4명, 40~44세 여성 천명당 1.5명에 불과하였으나, 2012년에는 35~39세 여성 인구 천명당 38.9명, 40~44세 여성 천명당 4.9명으로 증가하는 등 고령 출산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난다(통계청, 각년도).

2000~2012년간 출산율을 살펴보면 가임여성 1명당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이 2000년 1.47명에서 2002년 1.17명으로 감소한 후 2007년 황금돼지의 해라는 사회적인 분위기에 의해 1.25명으로 소폭 증가하였고 2012년 현재 1.30명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출산율을 살펴보면 출산율이 가장 높은 연령이 20대 후반에서 점차 30대 초반으로 고령화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II-1-3〉 모의 연령별 출산율 변화(2000~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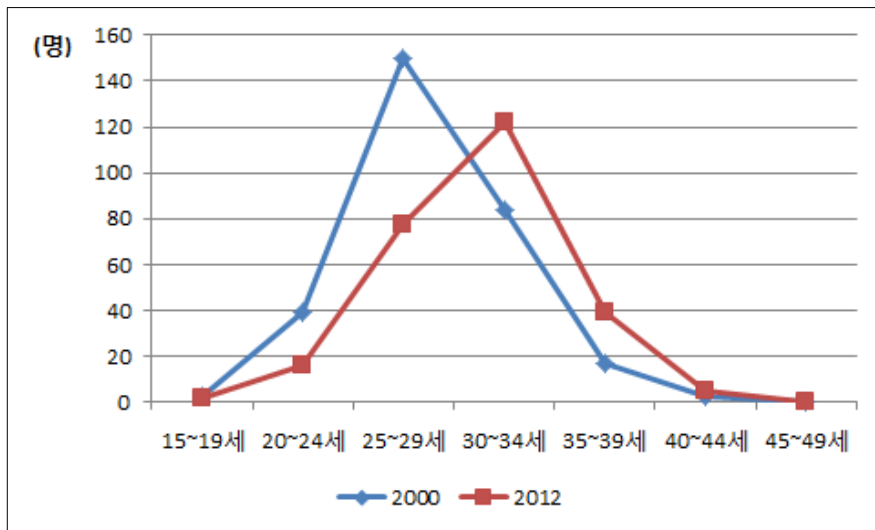
단위: 명

연도	연령별 출산율 ¹⁾							합계출산율 ²⁾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2000	2.5	38.8	149.6	83.5	17.2	2.5	0.2	1.47
2001	2.2	31.4	129.2	77.5	17.0	2.4	0.2	1.30
2002	2.6	26.5	110.9	74.5	16.6	2.4	0.2	1.17
2003	2.5	23.6	111.7	79.1	17.1	2.4	0.2	1.18
2004	2.3	20.6	104.5	83.2	18.2	2.4	0.2	1.15
2005	2.1	17.8	91.7	81.5	18.7	2.4	0.2	1.08
2006	2.2	17.6	89.4	89.4	21.2	2.6	0.2	1.12
2007	2.2	19.5	95.5	101.3	25.6	3.1	0.2	1.25
2008	1.7	18.2	85.6	101.5	26.5	3.2	0.2	1.19
2009	1.7	16.5	80.4	100.8	27.3	3.4	0.2	1.15
2010	1.8	16.5	79.7	112.4	32.6	4.1	0.2	1.23
2011	1.8	16.4	78.4	114.4	35.4	4.6	0.2	1.24
2012	1.7	16.0	77.4	121.9	38.9	4.9	0.2	1.30

주: 1) 해당연령 여성인구 천명당 출산아 수입.

2) 가임여성 1명당 평균 출생아 수입.

자료: 통계청(각년도). 인구동향조사(출생).



[그림 II-1-3] 연령별 출산율 변화추이(2000, 2012)

주: 해당연령 여성인구 천명당 출산아 수입.

자료: 통계청(각년도). 인구동향조사(출생).

2000년과 2012년의 연령별 출산율을 비교해보면 다음의 [그림 II-2-2]과 같다. 2000년에 비해 2012년에는 20대의 출산율은 낮아지고 30대 초반~40대 초반의 출산율은 높아진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출산율이 가장 높은 연령도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변동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이 첫 자녀를 출산하는 '초산'연령으로 비교해 보면 출산 지연의 현상은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 최근 20년간 출생아의 출생순위별 어머니 연령 비율이 나타나 있는 통계청 자료를 통해 분석한 '초산연령'의 변화를 살펴보면 1990년에는 첫째아를 출산한 어머니의 91.1%가 30세 미만이었으나, 2011년에는 절반에 못 미치는 47.4%만이 초산을 30세 이전에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령출산의 기준이 되는 35세 이상에 첫 자녀를 출산한 경우는 1990년에는 1.3%에 불과하였으나 2011년에는 10.7%로 급격히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표 II-1-4 참조).

초혼 연령의 상승과 함께 초산도 자연스럽게 지연되어 현재는 30~34세 사이에 첫 자녀를 출산하는 집단과 35세 이상 초산 집단이 20년 전에 비해 각각 5.5배, 8.2배가량 증가하는 출산의 고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표 II-1-4〉 모의 초산연령별 출생아 비율 추이

구분	단위: %(명)			
	1990	2000	2005	2011
30세 미만	91.1	79.8	62.7	47.4
30~34세	7.6	16.6	31.2	41.9
35세 이상	1.3	3.6	6.1	10.7
총 출생아수(첫째아)	100.0(347,849)	100.0(298,088)	100.0(222,639)	100.0(239,489)

자료: 통계청(각년도). 인구동향조사(출생).

법적 혼인 상태에서의 출산이 대부분인 우리나라에서 여성의 초혼연령의 상승은 당연한 순서로 초산 연령의 상승을 이끌고 있는 형국이다. 앞서 초산을 30세 이후에 하는 비율이 급속히 증가하여 2011년에는 50% 이상이 30세 이후에 초산을 경험하고 있음이 드러나는데, 정확한 연령을 살펴보면 1993년의 초산연령은 26.23세였음에 비해 2011년에는 평균 초산연령이 30.25세로 초산모의 연령이 약 4세 상승하였고 특히 2010년부터는 초산연령이 30세를 넘어가고 있어 주목된다. 이를 같은 시기 평균 초혼연령의 변화와 함께 살펴보면 1993년 대비 2011년의 초혼연령이 25.01세에서 29.14세로 약 4세가량 상승한 것과 거의 동일한 경향을 보임을 알 수 있다(표 II-1-5 참조).

〈표 II-1-5〉 연도별 모의 평균 출산/초산연령

단위: 세

구분	1993	1996	2000	2005	2010	2011
평균 출산연령	27.55	28.09	29.02	30.22	31.26	31.44
평균 초산연령	26.23	26.65	27.68	29.08	30.10	30.25
평균 초혼연령(아내)	25.01	25.45	26.49	27.72	28.91	29.14

자료: 통계청(각년도). 인구동향조사(출생); 통계청(각년도). 인구동향조사(혼인).

3) 출산의 고령화 결과

이처럼 출산이 고령화되는 것은 출산율과 관련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출산 시기의 지연은 임신과 출산의 가능성 및 결과에 악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어 왔다(김동식 외, 2011; 김승권·김유경 외, 2012: 142; 김태홍 외, 2011).

법적인 혼인상태에서 대부분의 출산이 이루어지는 우리나라에서는 출산연령의 상승을 논하기에 앞서 결혼시기가 늦어진다는 것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해 왔다. 그러나 국가간 비교를 통해 보면 만혼과 출산, 정확하게는 초혼연령과 초산연령간의 상관성은 국가별로 일치되는 결과를 보이지 않는다. 즉, 국민들이 결혼을 늦게 하는 국가라 해서 평균 초산연령이 반드시 늦는 것은 아니며 높은 초혼연령이 출산율 저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도 있다(김태홍 외, 2011: 43). 이러한 국가별 차이는 상당부분 그 사회의 '결혼규범'과 관련이 있어서, 혼외출산에 대한 허용적인 분위기, 동거커플의 비율과 동거커플 내에서의 출산율 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만혼화는 출산율과 관련해 특히 우리나라처럼 '혼외출산'이나 '동거커플 내에서의 출산'에 허용적이지 않은 사회규범이 있는 국가에서 출산율을 낮추는 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즉, 만혼은 절대적인 출산율 저하의 요인이 아니며, 특정한 문화와 규범이 존재하는 사회에서만 출산율 저하를 이끄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출산 연령'이 상승하는 것, 즉 '출산의 고령화'는 어떠한가?

첫 자녀를 출산하는 연령이 상승하고 있는 점도 일반적으로 가임연령이라고 칭해지는 49세까지의 잔여기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출산율 저하의 주된 요인이라 지목되고 있으나, 이 또한 국가별로 비교해 볼 때 반드시 초산연령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낮은 결과를 보이고 있지는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2009년 현재 EU 27개 국가의 평균 자녀 출산 연령은 29.7세이며 평균 출산 연령이 30세 이상인

국가에 13개국이 해당되었는데, 이 중에는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인 프랑스, 스웨덴, 핀란드 등의 국가가 포함된 것으로 보고된다(신윤정, 2013). 이러한 EU국가들의 합계 출산율과 평균 자녀 출산 연령을 평균점을 기준으로 분석해 본 결과, 가족지원정책이 발달한 국가에서 자녀 출산 연령과 합계 출산 연령이 모두 평균 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은(신윤정, 2013)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2000년 이후 EU 국가에서는 출산율이 회복되는 긍정적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출산율 상승에는 여성들이 출산 시점을 미루다가 실현한 출산이 기여한 바가 크며, 이에 30세 이상 여성의 출산이 전체 출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이미 과반수를 넘어 30대 이후의 출산이 일반화되는(신윤정, 2013)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출산연령이 지연되는 것은 산술적 측면에서 가임기간을 줄이는 주범이 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2~3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20대의 출산모나 30대의 출산모가 출산력에 있어 결정적인 차이를 보일 정도는 아닐 수 있다. 바꿔 말하면, 30대 이후의 출산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출산율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겠다. 초산이 다소 늦었다 해도 다자녀를 출산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면 출산간격을 줄이며 희망자녀수에 도달하려는 시도는 충분히 가능하다. 다만, 취업모가 30대 이후에 출산을 시작할 경우, 대부분 취업 경력이 어느 정도 되어 중간관리자급에 위치하거나 업무에 대한 책임이나 부담이 커져 자녀 출산에 대한 부담이 더욱 클 수 있어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이 가중됨으로 인해 다자녀 출산 시도가 어려울 수 있다. 즉, 신체적인 임신·출산의 어려움으로 인한 출산력 저하 보다 오히려 이러한 고령출산 가족의 일-가정 양립 환경에서의 어려움으로 인한 출산력 저하에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여성의 출산 연령이 높아지고 있는 국내 현실에서는 출산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그 연령에 상관없이 희망하는 수만큼의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신윤정, 2013).

한 예로 주요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연령계층별 출산율을 비교한 연구에서는 우리나라보다 합계출산율이 높은 주요 선진국에서는 20대 초반과 30대 후반, 40대의 합계출산율이 높아 연령별 출산율의 분산(variance)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나는데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지나치게 특정 연령대에 출산이 집중되는 경향을 보임을 지적하고 있다(김태홍 외, 2011: 48). 이는 비록 우리나라

의 주요 출산연령대가 20대에서 30대로 이동하고 있지만 충분히 출산 가능한 가임기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시기를 넘어서면 출산을 자발적으로 포기하거나 비자발적으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장애 요인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이는 향후 출산을 제고를 위해서는 초산 시점이 평균 초산 연령인 30세를 넘어가거나 ‘고령출산’으로 분류되는 만 35세 이상 ‘고령출산 가족’이 증가하는 ‘출산의 고령화’의 경향에서 연령대별 출산율 분산을 고르게 하며, 특히 30대 후반~40대 출산·양육을 지원하는 방안을 주목하여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2. 선행연구 검토

가. 출산의 고령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일반적으로 출산 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으로는 인구학적 요인인 ‘기대수명’, ‘결혼시기(만혼화)’, 가치관적 요인으로서 출산(자녀)과 관련된 ‘가족 가치관’, 경제적·사회적 요인으로서 ‘교육수준(기간) 변화’, 사회구조적 요인인 ‘경제활동 상황’ 등이 지적된다. 출산이 법적 혼인 내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우리나라에서는 ‘결혼 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곧 ‘출산 시기’에도 영향 요인이 될 수 있어, 각 요인별로 결혼연령(만혼)과 초산연령 등 출산 시기와의 관련성에 관한 기존 연구결과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한다.

1) 평균수명(기대수명)의 연장

어떤 연령의 사람이 평균해서 몇 년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한 기댓값을 ‘평균수명’이라하는데, 이는 0세아를 기준으로 했을 때의 평균여명(平均餘命)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⁹⁾

의료기술의 발전과 영양·위생 상태의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이러한 인간의 평균수명은 급속히 연장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인간이 예전에 비해 점차 오래 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은 이들의 생애주기에도 영향을 미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생애 전체의 소득과 자산에 대한 최적의 소비와 저축 배분을 지시하는 모형

9) 출처: 두산백과사전(<http://doopedia.co.kr>).

인 ‘생애주기이론’에 따르면(김은정 외, 2010: 35) 모든 조건이 일정할 때 기대수명이 연장된다면 은퇴 후 길어진 여생 동안 생활유지를 하기 위해 보다 많은 저축을 필요로 하게 되고 동시에 인적자본 투자의 수익을 향유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인적자본투자 수요의 증가도 예상된다. 또한 부모 세대에서는 자신의 소득을 현재 소비, 노후를 위한 저축, 자녀 양육과 교육에 배분하는데, 기대수명이 증가하면 노후를 위한 저축과 자녀 양육 및 교육적 투자에 대한 수요가 동시에 증가되므로 결혼과 출산률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김은정 외, 2010: 36).

이러한 이론에 따를 때 자신의 노후가 길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는 본인의 인적자본에 투자하기 위한 교육 기간은 길어질 수 있고, 출산·육아로 인한 기회비용을 상승시켜 결혼과 출산의 감소 및 지연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김은정 외(2010: 68-70)의 연구에서는 노인(부모)세대의 평균수명 연장이 자녀 세대의 생애주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됨을 지적하고 있다. 즉, 노인(부모)세대는 평균수명이 연장됨을 인식하면서 길어진 노후에 대한 대비를 하고자 하는 욕구가 높아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자녀 세대로의 부의 이전을 축소하게 된다. 한국사회처럼 교육과 결혼, 심지어 손자녀의 양육에까지 많은 도움을 주어왔던 부모세대가 이처럼 부의 이전을 축소하게 되면 이는 곧바로 자녀 세대의 결혼 지연과 출산 지연 등 생애주기 지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연구에서는 특히 자녀세대의 생애주기 지연이 부모로부터 이전되는 부가 단절되거나 제한되었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즉, 자녀세대는 부모세대의 길어진 노후 기간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보고 학습한 바에 따라 자녀들 본인의 노후에 대한 우려를 하게 된다. 이로 인해 스스로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 변화가 생기며 이는 출산의 지연과 감소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다(김은정 외, 2010: 70).

이와 같이 평균수명의 증가가 ‘위기’로 인식되고 이로 인해 자녀 출산의 기회비용이 증가하여 출산을 늦추며 생애주기를 지연시킨다는 논리적 설명도 가능하나, 좀 더 단순하게는 인간의 생애가 예전보다 길어졌다는 인식에서 예전에 비해 출산 시기를 좀 더 미루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도 증가할 수 있다.

즉, 평균수명 연장으로 예전보다 결혼기간이 길어질 것이 예측되므로 특정 시기에 맞춰 서둘러 결혼하려는 경향은 감소하고, 가능한 독신의 삶을 연장하려는 경향이 증가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출산 시기도 늦춰질 수 있다. 평균수명 연장과 함께 건강상태도 나이에 비해 증진됨에 따라 자녀 출산을 감안한다면

신체적 노화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적절한 임신·출산시기에 대한 인식까지도 확대해줄 수 있다.

2012년에 이루어진 한 조사에서 기혼 남성과 여성이 생각하는 적절한 결혼연령에 대해 질문한 결과 응답자들은 남성은 30.9세가 결혼연령으로 적당하며, 여성은 28.74세가 적절한 것으로 응답하였는데, 이는 3년 전의 동일 조사에서의 응답결과인 남성의 적정결혼연령 30.38세, 여성의 적정결혼연령인 28.08세 보다 상승한 것이다(김승권·김유경 외, 2012: 144-148). 또한 미혼자들을 대상으로 적정한 결혼 연령이 언제인가를 질문한 한 조사에서는 남성의 적정결혼연령은 31.4세, 여성은 29.5세로 기혼자들의 응답보다 한층 늦은 연령을 적절한 결혼연령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미혼자들이 결혼하지 않고 있는 이유에서도 ‘결혼하기에 나이가 어림’이라는 응답이 50.9%로 가장 큰 이유로 지목되었다(조희금 외, 2010: 212-220). 즉, 결혼적령기라고 인식하는 시기가 점차 지연되고 있으며, 미혼자들이 ‘결혼하기에는 이른 나이’로 인식하는 시기가 예전보다 훨씬 길어질 수 있는 특징을 보여준다 하겠다.

같은 방식으로 질문할 때, ‘출산의 적령기’에 대한 관점도 평균수명이 점차 연장된다고 기대할 때 달라질 수 있고, ‘아직 출산하기에는 이르다’라고 생각하는 연령대도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즉, 전체적인 평균수명의 연장은 가족생활에 변화를 일으키는 사항(예: 자녀출산)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시기에 대한 관점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출산(결혼) 관련 가치관의 변화

앞서 평균수명의 증가가 출산(결혼) 관련 가치관에 영향을 미쳐 출산 시점을 지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인구학적 요인의 변화에 의해서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측면에 의해 가치관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가족가치관의 차이는 결혼 시기의 차이를 설명하는 주된 변수로 지적된다(김태홍 외, 2011: 71). 코호트는 가치관을 공유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코호트별 가치관의 차이를 분석한 바에 의하면, 최근 코호트 일수록 비전통적인 가치관과 성역할 가치관을 나타내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코호트에 따른 가치관의 변화는 결혼 시기에도 영향을 미쳐 비전통적인 가족가치관을 공유하는 최근 코호트 일수록 이전 코호트에 비해 결혼을 연기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

로 분석된다(Raymo, 2003, 김태홍 외, 2011: 71에서 재인용).

다음으로 가족에 대한 개인의 가치와 인식의 변화를 통해 가치관의 변화 가능성이 타진하고 있는 김혜영, 김상돈, 그리고 박선애(2012)의 연구에서는 최근 증가하는 만혼 현상의 원인으로 가족 가치관의 변화를 들고 있다. 즉 과거에는 남녀 모두 결혼에 대한 연령 규범의 구속을 강하게 받았으나 최근 들어 결혼의 필요성은 물론 연령 규범의 구속력 또한 급속히 약화되어 결혼 보다는 노동시장 진입이나 개인의 스펙 확장이 우선시되고 있고, 이러한 변화는 특히 청년 세대와 여성에게서 두드러진다고 언급한다. 그리고 향후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보편화됨에 따라 특히 여성들의 경우는 제도화된 결혼이나 자녀 출산에 대한 중요도가 과거에 비해 낮아질 수 있다고 전망한다(김혜영·김상돈·박선애, 2012).

또한 같은 연구에서 2010년 결혼 및 재혼에 관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¹⁰⁾, 결혼의 필요성에 대해 남성들은 여성들에 비해 동의 정도가 높게 나타나며, 이는 미혼 남성들에서 보다 두드러진다. 즉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응답은 미혼 남자는 62.6%, 미혼 여성은 46.8%로 나타난다. 연령별로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에 동의하는 정도는 60세 이상이 4.26점(만점 5점)으로 가장 높고, 50대(3.98점), 40대(3.73점), 30대(3.62점) 순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김혜영 외, 2012: 89). 그 밖에도 29세 이하 집단은 이외 연령 집단들에 비해 ‘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아도 함께 살수도 있다’에 대한 동의 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다(2.53점). 이처럼 젊은 세대일수록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동의 정도가 낮게 나타나므로 이들의 결혼 지연이나 포기 현상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차이는 단지 20대와 이외 연령들에서 뿐만 아니라 30대와 40대 간에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30~40대 여성의 생활 실태에 주목한 장미혜, 송효진, 그리고 이인선(2012)의 연구에서도 30대와 40대의 상이한 결혼과 출산에 대한 상이한 가치관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30대는 40대에 비해 돈과 시간을 조금 더 투자하는 편이고(2.66점, 2.46점), 결혼 전에 경제적 여건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2.93점, 2.68점)(장미혜 외, 2012: 56-57). 또한 비혼 여성은 기혼 여성에 비해 자신에게 더 많이 투자하고

10) 2011년 통계청 사회조사는 2011년 5월 17일부터 5월 29일 사이에 전국 17,000 표본가구 중 상주하는 만 15세 이상 가구원(37,000명)을 대상으로 함(김혜영·김상돈·박선애, 2012: 87).

통계청 원자료 중 비교적 주기 조사로서의 성격을 확실하게 보여주면서 결혼 및 가족과 관련한 의식과 태도에 관한 조사를 포함하기 시작한 1998년부터 2012년 사이에 이루어진 조사 중 가족 부문이 포함된 연도(1998, 2002, 2006, 2010)의 자료를 상호 비교하거나 필요한 경우 재분석한 결과임.

직장 경력을 중시하며, 결혼 전에 경제적 여건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장미혜 외, 2012: 57). 자녀 출산에 대해서는 기혼 여성(3.05점)에 비해 비혼 여성은 결혼 후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낮고(3.01점), 또한 비혼 여성은 가족내 남편과 아내와의 성역할, 부모 부양에서 아들과 딸의 역할과 관련하여 기혼 여성보다 평등한 성역할 인식을 지닌 것으로 분석된다(장미혜 외, 2012: 57). 취업 여성은 비취업 여성에 비해 자신에 대해 더 많이 투자하고 있고, 직장 경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결혼 후에도 직업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취업여성은 결혼 후 자녀 출산에 대해서 비취업 여성에 비해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덜한 것으로 나타났다(장미혜 외, 2012: 59).

한편 2012년 이루어진 전국 단위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혼인과 자녀에 대한 가치관이 급변하는 것을 알 수 있다(김승권·박종서 외, 2012). 미혼 남녀(20~44세)가 결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성은 67.5%, 여성은 56.7%로 남성이 10.8%p 높게 나타났다. 해당 응답률을 2005년과 2009년 조사결과와 비교한 바에 의하면, 미혼 남성은 2005년 71.4%, 2009년 69.8%로 3년 주기로 약 2%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미혼 여성은 2005년 49.2%, 2009년 63.2%로 2005년 대비 2009년에는 증가하였으나, 2012년에 다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김승권·박종서 외, 2012: 261-262)(표 II-2-1 참조).

〈표 II-2-1〉 미혼남녀(20~44세)의 결혼필요성에 대한 태도(2005~2012)

단위: %(명)

구분	반드시 해야 함	하는 편이 좋음	해도 좋고 않아도 됨	하지 않는 편이 좋음	모르겠음	계
미혼남성						
2005년	29.4	42.0	23.5	2.2	3.0	100.0(1,466)
2009년	23.4	46.4	25.1	2.4	2.8	100.0(1,732)
2012년	25.8	41.7	26.5	3.4	2.6	100.0(1,855)
미혼여성						
2005년	12.9	36.3	44.9	3.7	2.2	100.0(1,205)
2009년	16.9	46.3	31.8	2.8	2.2	100.0(1,580)
2012년	13.3	43.4	37.2	4.4	1.7	100.0(1,615)

자료: 1) 2005년 자료: 이삼식 외(2005).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2009년 자료: 이삼식 외(2009). 2009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보건복지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김승권·박종서 외(2012). 2012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 260-261.

그 밖에도 미혼 남녀가 생각하는 남성의 이상적인 결혼 연령은 31.50~31.94세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2005년(30.57~31.34세)보다 다소 늦어졌고, 2009년 조사와는 유사한 수준(31.94~31.92세)이다. 여성의 이상적인 결혼 연령은 28.67~29.60세으로, 2005년(27.60세~28.94세)와 비교하여 다소 높아졌으나, 2009년(28.94~29.45세)와는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결혼 적령기에 대한 이 같은 인식 변화에 의하면, 결혼 시기는 완만한 추세이기는 하나 점차 지연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미혼 남녀의 자녀 필요성에 대한 가치관을 살펴보면, 남성 83.8%, 여성 78.8%가 자녀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9년의 해당 비율은 미혼 남성이 84.1%, 미혼 여성이 81.8%로, 자녀가 필요하다는 인식은 점차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김승권·박종서 외, 2012: 313)

〈표 11-2-2〉 미혼남녀(20~44세) 자녀 필요성에 관한 태도

단위: %(명)

구분	꼭 있어야한다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나을 것이다	없어도 상관없다	모르겠음	계
미혼남성					
2009년	21.6	62.5	12.9	3.1	100.0(1,732)
2012년	43.6	40.2	14.2	2.0	100.0(1,855)
미혼여성					
2009년	20.3	61.5	14.6	3.7	100.0(1,580)
2012년	31.2	47.6	19.0	2.2	100.0(1,615)

자료: 1) 2009년 자료: 이삼식 외(2009). 2009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보건복지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김승권·박종서 외(2012). 2012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314.

이들 연구에 의하면, 결혼의 필요성과 자녀 출산의 필요성에 대한 동의 정도는 연령이 낮고 여성일수록 낮게 나타나며, 결혼 적령기는 완만한 수준이기는 하나 2005년에 비해 남녀 모두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30, 40대 여성을 비교한 연구에 의하면, 비혼 여성들은 기혼 여성에 비해 결혼 전 경제적 여건 확보를 보다 중시하는 경향이 있고, 취업 여성과 비혼 여성은 비취업 여성과 기혼 여성에 비해 자녀의 필요성 인식이 낮게 나타난다. 따라서 이러한 결혼과 자녀에 대한 인식 변화로 인한 결혼 및 출산 지연 현상은 지속적으로 야기될 것으로 예측된다.

3) 교육 수준, 교육 참여 시기의 변화

저출산과 결혼 시기를 연관 짓는 논의들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되는 결혼·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교육 수준을 들 수 있다. 특히 여성들의 경우 교육 수준의 향상은 비전통적인 성역할을 사회화하고 사회적 기회 및 노동시장에서의 기회를 증가시켜 결혼을 통한 경제적 이득이 과거에 비해 낮아진다고 분석된다(김태홍 외, 2011: 70). 그러나, 교육 수준의 효과는 한 사회의 문화적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대체로 남성과 여성의 평등한 역할 분담이 일반화된 가정과 사회에서는 여성의 교육 수준 향상이 결혼 시기를 늦추는 경향이 약하게 나타나는 반면, 전통적인 성역할 인식이 강한 사회에서는 여성의 교육 수준 증가가 결혼 시기를 유의미하게 늦추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된다(김태홍 외, 2011: 72). 우리나라는 성역할 인식이 점차 약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의 일차적인 책임이 여성에게 있다는 점에서 교육 수준별로 결혼 시기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김태홍 외, 2011: 72).

같은 연구에서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만혼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만혼의 원인과 상호 관련성을 제시하는데, 특히 결혼과 출산에서 교육 수준이 지닌 함의를 제기한다(김태홍 외, 2011).¹¹⁾ 최근 고등교육기관의 진학을 변화로 인해 남녀 모두 최종학교를 졸업하고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연령이 높아지고 있으며, 그로 인해 결혼 연령도 증가하여 동일한 연령대에 미혼 비율이 증가하는 특징을 보인다는 것이다(김태홍 외, 2011: 26).

2010년 남성의 경우 20~24세, 25세~29세 연령층의 미혼 비율은 교육 수준과 상관없이 유사한 수준을 보이나, 30세 이후에는 특히 대학원 졸업 남성의 비율이 25세~29세 81.8%에서 30~34세에는 37.9%로 급감하는 반면 중졸 남성의 미혼 비율은 30~34세 67.0%로 소폭 감소한 데 그쳐 30세 이전까지는 교육 수준에 상관없이 미혼 인구 비율이 유사하나, 30세 이후부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미혼 인구 비율이 더 낮아지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난다(김태홍 외, 2011: 29). 2010년 남성의 연령별 미혼 비율을 2000년과 비교해보면, 연령과 관계없이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미혼 비율이 더 낮은 경향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11) 교육수준과 취업과 결혼관계를 통계청 2000, 2010 인구센서스,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임(김태홍 외, 2011: 15).

또한 2010년 30세 이전에는 중졸 이하 여성 인구의 미혼 비율은 20~24세 68.2%, 25~29세 50.5%인데 반해, 다른 학력 집단의 경우 20~24세 미혼 비율은 모두 95%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25세 이후부터는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미혼 비율이 더 높은 특징을 보였다. 또한 2000년대 중졸 이하 여성의 미혼율은 20대 초반에 67.1%에서 20대 후반 28.8%, 30대 초반 8.7%로 급격히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된다(김태홍 외, 2011: 30~31).

다음으로 생애과정의 각 요소 중 교육 참가와 혼인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주된 출산 연령층 여성들의 학력 수준별 미혼율은 다소 불규칙하나 시기와 상관없이 고학력일수록 높고, 이러한 현상은 점차 뚜렷해지는 것으로 지적된다. 즉 25세~29세 여성의 경우 무학부터 대학 이상 고학력에 이르기까지 미혼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여 중·고등학교 학력 여성의 미혼 비율은 43.5%, 초대 전문대 60.5%, 대학(4년제) 69.0%, 대학원 석사 과정 73.6%, 대학원 박사 과정 75.6% 등으로, 학력이 높아질수록 미혼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이삼식·최효진, 2010: 51). 이러한 현상은 30~34세 여성에서도 유사한 경향을 보여 초대 전문대와 대학 학력 이상의 경우 미혼 비율은 20% 수준이고, 대학원 석사 과정은 30% 수준, 대학원 박사 과정은 40% 수준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난다(이삼식·최효진, 2010: 51~52). 이 연구에서 과거 35~39세 미혼율은 학력 수준을 불문하고 매우 낮은 수준이나, 2005년에는 이 연령층 미혼율이 10% 전후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대학원 석·박사 학력 여성의 경우 미혼율이 20% 수준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이삼식·최효진, 2010: 52). 즉 대학원 이상 학력 여성들은 30대 후반에 이르기까지 결혼하지 않는 경향이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II-2-3〉 여성의 교육정도별 미혼율(1970~2005)

구분	단위: %						
	1970	1975	1980	1985	1990	2000	2005
25~29세	9.4	11.3	13.7	18.4	21.7	39.7	58.7
무학·초등학교	5.0	6.0	6.9	8.2	11.7	39.2	59.0
중·고등학교	16.1	15.3	16.0	17.8	18.6	27.9	43.5
초대·전문대	25.5	25.0	27.1	37.2	35.2	49.4	60.5
대학(교)	-	-	-	-	36.5	55.1	69.7
대학원(석사)	-	-	-	-	40.8	67.2	73.6
대학원(박사)	-	-	-	-	-	-	75.6

(표 II-2-3 계속)

구분	1970	1975	1980	1985	1990	2000	2005
30~34세	1.3	1.9	2.7	4.3	5.3	10.6	18.6
무학·초등학교	0.7	1.1	1.5	2.0	3.4	16.2	36.8
중·고등학교	2.9	3.1	3.4	4.5	4.9	7.8	14.1
초대·전문대	6.9	5.5	6.0	9.2	10.1	13.5	20.0
대학(교)	-	-	-	-	9.5	15.1	22.8
대학원(석사)	-	-	-	-	18.2	26.9	34.0
대학원(박사)	-	-	-	-	-	-	42.3
35~39세	0.4	0.6	1.0	1.6	2.5	4.2	7.4
무학·초등학교	0.2	0.4	0.6	0.8	1.5	4.6	15.3
중·고등학교	1.0	48.1	1.5	1.8	2.4	3.1	5.6
초대·전문대	4.5	4.0	3.1	4.4	6.6	5.9	8.6
대학(교)	-	-	-	-	5.4	6.6	9.3
대학원(석사)	-	-	-	-	15.7	16.5	17.8
대학원(박사)	-	-	-	-	-	-	24.9

자료: 통계청(각년도). 인구주택총조사

출처: 이삼식·최효진(2010). 생애주기 변화와 출산행태간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52.

또한 이 연구는 교육 참가의 변화에 따른 출산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인구 센서스 자료를 이용하여 교육정도에 따른 연령별 평균 출생아수를 측정하였다. 우선 완결출산력으로서 40~49세 평균 출생아 수는 초등학교 이하 학력 여성의 경우 4.7명에서 2.0명으로, 초대 전문대 이상 학력의 여성은 4.1명에서 1.9명으로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이삼식·최효진, 2010: 62~63). 최근 들어 30대 출산이 거의 종료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35세~39세 출생아수를 비교해보면, 초등학교 이하 학력 여성의 평균 출생아수는 1970년대 4.7명으로 높으나, 2005년에는 1.9명으로 감소하였다(이삼식·최효진, 2010: 61~62). 중고등학교 졸업자의 경우는 3.7명에서 1.9명으로, 초대 전문대 이상 학력의 경우는 3.0명에서 1.8명으로 감소하여 과거에 비해 최근의 감소폭이 보다 줄어든 경향을 보이며 특히 저연령층에서 학력 간 출생아수의 차이가 크나 고연령층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고학력 여성들은 만혼화 등으로 출산을 늦추고는 있으나 출산이 완결되는 시기에는 저학력 여성만큼 출산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이삼식·최효진, 2010: 62).

이외에도 교육 참가 정도와 출산간의 연관성을 1951년~1970년생까지 5세 간격 코호트별로 출산순위이행율(PPR: Parity Progression Ratio)을 분석한 바에

의하면(이삼식·최효진, 2010), 각 학력 간에 커다란 차이를 보인다. 즉 모든 학력층에서 둘째 자녀 출산 이후 단산하는 확률이 높고, 이러한 경향은 최근 코호트일수록 그리고 고학력층일수록 높게 나타난다. 게다가 고학력일수록 첫째 자녀와 둘째 자녀로의 출산 이행율도 낮고, 셋째 자녀의 출산 이행율이 급격하는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이삼식·최효진, 2010: 63~67).

이들 연구에 의하면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출산력은 전반적으로 낮으며, 특히 고학력일수록 둘째 자녀 출산 이후 단산하는(이삼식·정경희 외, 2010: 62) 경향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사회진출을 위한 교육 참여 기간이 점차 증가하는 상황은 결혼을 보다 지연시키고, 출산력을 더욱 낮추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경제 상황 및 경제활동 참여

다양한 연구들에서 경제활동 또는 노동시장 지위는 결혼 시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논의된다(Easterlin, 1977; Oppenheimer, 1997; Calrkberg, 1999; Sweeney, 2002; Ono, 2003, 김태홍 외, 2011: 87에서 재인용).

결혼 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으로는 여성의 경제적 독립성의 증가를 들 수 있다. 여성들은 노동시장에서의 기회 및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결혼을 미루거나 회피하는 경향이 강해진다고 지적된다(김태홍 외, 2011: 74). 경제적 상황 또는 지위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결혼 시기를 결정짓는 중요한 변인으로 지적되나, 여성의 경우 경제적 독립성의 증가는 남성에 대한 경제적 독립성의 영향과는 상반되는 결과를 보여, 결혼 시기를 늦추거나 비혼으로 남을 가능성을 높인다.

즉, 여성의 경제적 지위 향상은 여성들이 경험하는 결혼의 기회비용을 증가시키며, 이로 인해 결혼의 가능성을 낮추는 효과를 지닌다고 해석된다(김태홍 외, 2011: 72).

또한 서구에 비해 합법적 결혼 내에서의 출산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는 취업이 결혼 및 출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지적된다(김태홍 외, 2011: 16). 실제 남녀의 경제활동 상태는 결혼에 큰 영향을 미쳐, 2010년 남성 취업자의 미혼 비율은 25~29세 이후 급격히 감소하여 해당 비율은 25~29세 77.0%, 30~34세 40.1% 그리고 35세~39세는 19.5%로 나타나며, 40~44세는 9.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김태홍 외, 2011: 32). 그러나 여성의 경우는 이와

대조적인 양상을 보여, 20~24세와 40~44세 연령층을 제외한 25~39세 연령대에서 여성 미취업자의 미혼 비율이 여성 취업자보다 더 낮았다. 그 결과 25~29세 여성 미취업자의 미혼 비율은 42.9%인데 비해 취업자는 77.2%, 30~34세의 경우 미취업자는 10.6%, 취업자는 31.5%로 나타난다. 또한 2010년의 상황을 2000년과 비교한 결과에 의하면, 2000년에도 남성 취업자는 미취업자 보다 빨리 결혼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여성은 미취업자가 취업자에 비해 빨리 결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우리나라의 20~44세 연령대 인구의 미혼 비율을 살펴보면, 2000년과 2010년 모두 취업자의 결혼 시기가 미취업자에 비해 빠른 것으로 분석된다(김태홍 외, 2011: 33).

이처럼 남성과 여성의 취업 상태가 결혼 위험에 미치는 효과가 상반되는 분석 결과는 우리나라의 노동시장과 결혼제도에서 여성과 남성이 경험하는 현실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우리나라의 결혼제도 및 결혼 후 여성이 경험하는 불리한 상황은 최소한의 소득이 확보되는 취업 상태라면 결혼을 지연하는 결정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김태홍 외, 2011: 89). 이는 남성과 달리 불안정한 비정규직의 취업 상태일지라도 비경제활동 상태의 여성들 보다는 결혼할 확률이 현저히 낮아지는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다(김태홍 외, 2011: 89).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여성의 교육 수준이 노동시장에서의 기회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상황에서 노동시장에 일단 진입한 여성들은 결혼을 미루거나 또는 포기하더라도 취업 상태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반영되는 것으로 이해된다(김태홍 외, 2011: 89).

다른 한편 만혼한 여성들의 출산이행율을 분석한 바에 의하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경우 낮아지지 않으며, 첫째 출산의 경우에는 오히려 노동시장에 참여할 때 출산이행율이 높게 나타나며(김태홍 외, 2011: 119), 첫 출산에서 나타난 노동시장 참여의 영향력이 둘째·셋째 자녀의 출산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율과 지속성을 높일 수 있다면 만혼한 여성들의 출산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김태홍 외, 2011: 119).

반면 남성들의 경우는 여전히 가정 내 주 소득자로서의 역할 부담으로 인해 고용의 안정성과 가정의 경제적 수준의 유지가 가능한 정규직 취업 상태는 결혼의 가능성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김태홍 외, 2011: 89). 이에 따라 이 연구는 우리나라 여성의 경우는 노동시장에서의 지위(즉 취업의 질)

보다는 취업 여부가 결혼 시기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변수인 반면, 남성의 경우는 취업여부 뿐만 아니라 경제적 지위 또는 고용의 안정성 정도가 결혼 결정에 보다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김태홍 외, 2011: 91).

그 밖에도 이 연구는 취업과 결혼을 동시에 선택적으로 결정하는지 아니면 취업 후 결혼 혹은 결혼 후 취업하는지, 그와 같은 취업과 결혼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였다(김태홍 외, 2011: 51).¹²⁾ 우선 결혼과 취업을 모두 한 경우 조사 대상자(1,384명)의 초혼과 초직의 순서는 전체 분석자의 71.3%는 취업을 한 이후에 결혼을 하였고, 나머지 28.7%(398명)은 결혼하고 난 뒤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김태홍 외, 2011: 52). 성별로는 여성은 결혼을 먼저하고 취업한 비율(31.7%)이 남성(26.5%)보다 더 많은 특징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김태홍 외, 2011: 52). 취업과 관련한 설명 변수를 보면 지난 기(前期) 취업 상태를 나타내는 변수는 통계적으로 무의미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초직이 정규직인 설명 변수는 통계적으로 정적 관계를 나타냈다. 즉 취업 여부 보다는 정규직 취업 여부가 결혼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규명되어 정규직으로 취업할 경우 초혼 확률은 그렇지 않을 집단에 비해 34.6%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김태홍 외, 2011: 61).

경제활동과 결혼의 연관성을 분석한 다른 연구에 의하면 20대부터 유급 노동을 하는 여성의 미혼 비율은 일하지 않는 여성들에 비해 높고, 그 차이는 20대 후반과 30대 초에서, 그리고 최근 들어 더욱 강화되는 추세를 보인다고 분석한다(이삼식·최효진, 2010: 53). 즉 25~29세 유급노동 여성의 미혼 비율은 1980년대 29.8%에서 2005년 73.1%로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30~34세 여성의 경우도 유급노동 여성인 경우 미혼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2005년 기준으로 30~34세 유급노동 여성의 미혼 비율은 30.1%로 무업 여성의 미혼 비율 10.1%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이삼식·최효진, 2010: 53~54)(표 II-2-4 참조). 이들 결과에 따라 이 연구는 최근 증가하는 만혼 현상은 20대 후반과 30대 취업 여성들이 주도한다(이삼식·최효진, 2010: 54)고 주장한다.

12) 분석자료는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 1차~11차 자료를 이용해 취업 및 결혼 동시 결정 관련 모형을 추정하였다.

〈표 II-2-4〉 여성의 유·무업 미혼율(1980~2005)

단위: %

구분	1970	1975	1980	1985
유업자				
15-19세	98.4	98.0	98.1	98.6
20-24세	85.8	91.1	92.8	95.6
25-29세	29.8	53.7	59.8	73.1
30-34세	4.8	12.9	18.1	30.1
35세 이상	0.5	2.1	2.6	3.6
무업자				
15-19세	98.1	99.3	99.4	99.8
20-24세	42.9	72.9	85.3	92.3
25-29세	6.7	13.1	22.2	39.9
30-34세	1.6	3.1	5.8	10.1
35세 이상	0.3	0.8	1.4	1.6
차이(유업-무업)				
15-19세	0.3	-1.3	-1.4	-1.2
20-24세	42.9	18.2	7.5	3.3
25-29세	23.1	40.5	37.6	33.2
30-34세	3.3	9.8	12.3	20.0
35세 이상	0.2	1.3	1.2	2.0

자료: 통계청(각년도). 인구주택총조사.

출처: 이삼식·최효진(2010). 생애주기 변화와 출산행태간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53.

또한 기혼 여성들의 경제활동 여부는 출산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2000년 인구센서스 결과를 이용하여 산정한 35~39세 기혼 여성의 평균 출생아수는 유급노동을 하고 있는 경우 1.91명으로 일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1.92명, 40~44세는 각각 2.04명, 1.98명, 45~49세는 2.40명, 2.23명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05년 인구센서스 자료 분석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나타낸다(이삼식·정경희, 2010: 62). 출산이행율을 분석하면, 35세~39세의 경우 유급노동 여성에 비해 일하지 않는 여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더디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나, 40대에는 이와는 대조적인 결과를 보이며, 이러한 경향은 2005년도 인구센서스 결과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이삼식·정경희, 2010: 62~63). 따라서 이 연구에서 경제활동에 참여한 여성들이 30대에만 해도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여성들에 비해 출산순위이행율의 수준이 낮고 이행 속도로 급속하게 감소하나, 40대에 들어서는 경제활동 참가 여성 집단이 비경제활동 여성 집단에 비해 출생순위 이행 수준이 높고 이행 속도도 완만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이 연구에서는 경제활동 여성 집단의 경우 결혼이나 출산을 연기하여 뒤늦게 고출산 순위로의 이행률이 높고 그 결과 평균 출생아수가 높게 나타날 수 있으며, 출산 당시 일을 하지 않고 보다 많은 출산을 했던 여성 집단들은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한 이후인 40대에 자영업이나 파트타임 노동 형태로 노동시장에 진입했기 때문으로 해석한다(이삼식·정경희, 2010: 63).

다음으로 입직 시기는 초혼 연령과, 출생아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이삼식·최효진, 2010: 67). 2009년 조사에 의하면, 조사 당시 35세~39세인 1970년~1974년생의 경우 입직 시기가 늦을수록 초혼 연령이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입직 연령이 30~34세인 여성 집단의 초혼 연령은 평균 28.81세로 입직 연령이 16~29세인 여성 집단의 24.73세에 비해 4.08세 늦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같은 연구에서 교육 수준과 취업 상태를 종합하여 초혼 연령과의 관계를 고려한 바에 의하면, 교육 기간이 짧으나 입직 연령이 늦을 경우 그리고 교육 기간이 긴 경우에는 입직 연령과 상관없이 늦게 결혼하는 경향을 보이며, 반대로 교육을 덜 받고 동시에 일찍 경제활동에 참여한 경우는 상대적으로 일찍 결혼하며, 긴 기간에 걸쳐 교육을 받았으나 일을 하지 않는 경우 초혼 연령은 불규칙적으로 나타난다(이삼식·최효진, 2010: 101).

다음으로 최근 미혼 남녀(20~44세) 대상으로 결혼과 출산 행태를 조사한 분석결과에 의하면, 임시·일용직이고 소득이 150만원 미만인 취업 미혼 남성의 결혼 필요도와 결혼 의향도가 전체 취업 미혼 남성 또는 전체 미혼 남성보다 낮은 경향을 보인다(김승권·박종서 외, 2012: 308). 즉 소득·고용 불안정 상태의 취업 미혼남성 중 60%만이 결혼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전체 취업 미혼 남성의 결혼 필요도(67.5%)보다 낮게 나타난다. 더욱이 소득·고용 불안정 상태의 취업 미혼 남성 중 결혼할 의향이 없다는 응답을 보인 경우가 13%로 전체 취업 미혼 남성(9.9%), 전체 미혼 남성(8.8%) 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생산·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미혼 남성 중 13.8%가 결혼할 의향이 없고 임시·일용직 중 14.2%, 근로소득 사업이 100만원 미만인 미혼 남성 중 15.0%가 결혼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같은 조사에서 소득·고용불안정이 미혼 남성의 비혼 의향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미혼 남성이 결혼하지 않는 이유에서 명확히 드러난다고 지적된다. 30대 이상 미혼 남성의 48%가 경제적 이유로 결혼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으며, 결혼을 하기로 했다가 연기한 경험이 있는 미혼 남성의 59.6%가 경제적 이유로

연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김승권·박종서 외, 2012: 308). 이러한 조사 결과는 미혼남성의 경우 결혼을 연기하거나 포기하는 주된 원인이 경제적 이유임을 말해 준다. 이에 더하여 2012년 조사 결과의 첫 자녀 출산 희망 여건 즉 첫 자녀를 가지고 싶은 시기에 대해서는 미혼 남성 38.7%, 미혼 여성 44.5%가 ‘가정을 꾸려갈 만큼 소득이 유지될 때’라고 응답하였고, 미혼 남성의 17.8%가 ‘안정된 직장을 마련한 이후(고용 안정)’라 응답하였다(표 II-3-5 참조). 특히 현재 비취업 미혼남녀의 경우 고용·소득안정 시 자녀를 출산하겠다는 응답은 취업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김승권·박종서 외, 2012: 346).

〈표 II-2-5〉 미혼남녀(20~44세) 첫 자녀 출산 여건 - 1순위

구분	고용 안정	소득 안정	집 장만 후	충분한 부부생활 후	출산 적령기 내	배우자 희망시	부모 희망시	단위: %(명) 계
미혼남성								
2005년	29.5	30.5	3.5	7.9	14.3	11.3	2.9	100.0(1,466)
2009년	38.3	26.6	9.3	9.0	9.5	5.3	2.1	100.0(1,732)
2012년	17.8	38.7	4.8	6.8	14.1	15.0	2.8	100.0(1,855)
미혼여성								
2005년	13.2	41.0	2.1	16.2	20.9	4.7	2.1	100.0(1,205)
2009년	26.6	30.3	8.1	13.8	14.1	5.3	1.7	100.0(1,580)
2012년	8.3	44.5	2.3	19.1	18.3	5.7	1.9	100.0(1,615)

자료: 1) 2005년 자료: 이삼식 외(2005).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2009년 자료: 이삼식 외(2009). 2009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보건복지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김승권·박종서 외(2012). 2012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347.

이외에도 미래 가족환경 변화에 대한 연구에서는 ‘경제불안정’이 가족 변화를 야기하는 주된 변수 중 하나이며, 경제 불안정은 가족의 경제 기능약화 뿐만 아니라 혼인 시기와 첫 자녀 출산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였다(서용석·최호진·정다혜, 2012: 94). 즉 이 연구에서는 불안정한 경제 상황은 미혼 남녀들에게 혼인을 주저하게 만들 것이며, 기혼 남녀에게는 자녀 출산에 대한 불안감을 가중시켜 저출산을 야기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와 유사하게 이명진과 최슬기(2011)의 연구에서는 경제위기로 인해 청년 실업, 임금수준이 하락하여 결혼준비 자금 마련이 어려워졌다고 지적한다. 즉 결혼 자금 부족과 결혼 후 가족유지의 어려움 때문에 결혼을 미루는 현상이 나타

나고 있으며, 그 결과 2008년도 전체 결혼 건수는 감소세로 돌아섰고, 출산을 또한 점차 하락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이명진·최슬기, 2011: 8~9).

이들 연구에 의하면, 경제 위기는 전반적으로 결혼과 출산을 지연시키거나 포기하도록 하며, 경제활동 여부는 여성과 남성에 상반된 영향을 미친다. 즉 남성의 경우는 소득·고용불안정이 결혼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여 입직 시기 특히 정규직 일자리의 확보는 결혼 시기와 출생아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반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그 자체로서 결혼 지연의 주된 요인으로 출산을 지연시킬 수 있다. 단, 만혼인 여성의 경우는 경제활동 참여가 출산이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출산력 제고를 위해서는 미혼 남녀에 대한 질 높은 일자리 제공,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내실화 그리고 만혼 여성에 대한 임신·출산 지원정책의 강화가 요구된다.

나. 출산의 고령화에 따른 출산·양육 환경

결혼 및 출산 시기의 지연은 임신과 출산의 가능성 및 결과에 악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김동식 외, 2011).

만혼화 경향이 출산률에 미치는 영향은 국가별·시기별·연구결과별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김태홍 외, 2011: 47), 단적으로 임신 가능성과 건강한 출산에 관해서는 특히 여성의 연령이 일정 시기, 특히 35세를 넘어가면 위험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는 생물학적 견해가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임신과 출산에 대한 생물학적(biological) 견해는 20대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임신과 출산이 가능하다고 보고, 상대적으로 연령이 낮은 10대나 연령이 높은 30대 이후에는 임신 및 출산 결과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J자형 입장을 보이고 있다(김동식 외, 2011: 17). 특히, 35세 이상의 고령 임신부의 경우 임신중독증, 임신성 당뇨 및 심혈관계, 신경계, 태반조기박리, 미숙아, 과숙아, 저체중아, 거대아 출산, 선천성기형 및 제왕절개 빈도 증가, 쌍태 분만, 영아 및 모성사망 증가 등 주산기 이환율과 사망률이 전반적으로 높다고 보고된다(최원일 외, 2005; 김동식 외, 2011: 17에서 재인용). 같은 측면에서 저체중아출생률과 영아사망률은 40세 이상에서 높게 나타나며, 특히 영아사망률은 산모 연령 40세 이상에서는 25~29세 산모의 출산시보다 2배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최정수, 2010: 5).

주로 이러한 이유로 만혼 부부의 고령 임신과 출산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

요성이 제기된다. 최근 만혼 및 임신의 지연에 의한 생식능력의 저하로 불임이 초래되어 불임치료를 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데, 불임치료는 경제적·신체적 부담과 함께 사회생활에도 지장을 초래하는 등 높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황나미, 2011).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되는 난임부부지원 사업의 비대상자로서 자비를 들여 불임치료를 하고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이들은 대부분 소득수준이 높은 중상층에 속하나 시술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황나미·황정혜·김지은, 2010: 117). 사업 비대상자 여성의 가장 최근 체외수정 시술 지출 비용은 평균 445만원이나 최고 6천만원까지 지출한 경우가 있고, 여성의 나이가 많을수록 비용 지출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황나미 외, 2010: 104). 이러한 비용 부담이 가정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한 경우도 71.3%로 중상층 이상에 속하는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황나미 외, 2010: 117).

불임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보다 더욱 심각한 어려움은 이들의 사회생활이 크게 지장받는다라는 점이다. 황나미 외(2010: 117~119)에 따르면 약 91%는 불임치료를 위한 보조생식술 시술을 받으면서 사회생활의 지장을 받았다고 응답했으며, 불임치료를 위해 사직한 경우가 26.6%에 달하였다. 이들의 취업률은 75.2%로 우리나라 여성취업률보다 훨씬 높은 집단인데(황나미 외, 2010: 89), 이러한 집단에서 불임치료로 인한 경제활동 중단이 적지 않다는 것은 고급 여성인력의 심각한 손실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최정수와 이난희(2011: 16~17)의 연구에서는 난임(불임)부부지원사업 확대에 의한 부정적 측면에도 주목하였다. 난임부부 지원 사업이 확대되면서 시술 건수가 급증하였고 이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그로인한 고위험 신생아를 발생시키는 주요 요인인 조산이나 저체중아의 출생도 높아질 수 있음¹³⁾을 지적하고 있다.

이민자와 김용미(2007)의 연구에서는 35세 이후에 자녀를 출산하는 부모를 ‘늦부모(late parents)’로 정의하였다(이민자·김용미, 2007: 290). 이러한 늦부모가 되는 원인에는 늦둥이 출산, 늦은 결혼, 여성의 사회진출, 경제적·정치적 등의 다양한 이유가 있으나 일반적인 우려와는 달리 출산 및 임신 결과에 있어 그리

13) 난임시술에서는 임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적으로 과배란을 유도하여 시험관 시술시에는 2개 이상의 수정란의 착상을 시도하게 되며, 이로 인해 다태아의 임신 비율이 높다. 다태아 임신에서는 임신주수 37주 미만의 조산과 이로 인한 저체중아의 출산, 선천성 기형 발생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다.

나쁜 결과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이민자·김용미, 2007: 292~293). ‘부모 효능감’이나 남편 등 주변의 도움은 젊은 부모에 비해 오히려 나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다만, 이들은 부모의 건강이나 신체적 활력 저하, 자녀 간의 세대 차이로 인한 공유감 형성의 어려움, 또래 부모들과 정보 교환을 통한 관계 유지의 어려움, 미래 준비를 위한 자녀에 대한 걱정, 직장 여성들에게 있어 자녀 양육이 큰 장애가 되는 점 등의 부정적인 측면을 지닐 수는 있다고 하였다(이민자·김용미, 2007: 304). 비슷한 측면에서 임신결과의 결정요인에는 흔히 생각하듯이 생물학적 요인만이 아닌 산전의료이용 행위, 부모의 학력·직업·소득·축적된 부와 같은 사회경제적 요인, 심리사회적 요인, 사회적 지지 요인, 흡연·음주·약물·영양·운동과 같은 건강행태적 요인, 물리환경적 요인들이 모두 포함되므로 고연령 출산이 반드시 부정적 결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건강하고 주변의 사회경제적·물리적 환경이 갖추어지고 건강서비스를 적절히 이용하고 있는 여성이라면 고령이라 해도 젊은 여성과 비교하여도 임신·결과에서 유의미한 차이는 없을 수 있다고 본다(김동식 외, 2011: 19~28). 김상미와 조영태의 연구(2011)에서는 생물학적 요인과 이러한 사회적 요인의 상호작용에 대한 논의 속에서 지연된 출산이 갖는 의미를 재탐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최근 30세 이상 늦게 출산하는 산모들의 사회경제적 이점이 이들의 생물학적 불이익을 보완하여, 엄마의 고연령과 영아사망 간에 뚜렷한 연관성이 없으며 오히려 영아사망 위험을 감소시키는 보호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김상미·조영태, 2011: 90).

이처럼 고령출산의 위험성 감소와 함께 30대 중·후반~40대에 첫 출산이 이루어지는 늦부모의 양육에도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 존재하나, 20대~30대 초반의 부모들에 비해 은퇴까지의 잔여기간이 짧아 자녀 양육기의 경제적 부담이 클 수 있고 건강 및 체력적인 부담이 크다는 점 등 약점이 존재한다. 이에 늦부모의 증가 추세에 대응한 적절한 출산·양육 지원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3. 출산·양육지원 정책의 현황: 출산의 고령화에 대한 대응 가능성을 중심으로

본 절에서는 난임, 중간경력 취업모의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양육지원 인력의 부족 및 체력 부담, 은퇴 후 자녀양육 부담 증가 등 출산 고령화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각 부처의 출산·양육 지원 정책의 대응가능성을 살펴보도록 한다.

가. 임신 지원 정책

보건복지부에서는 최근 증가한 난임부부의 임신 가능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 등 특정 치료가 필요한 일정 소득계층 이하의 난임 부부에게 시술비 중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임신·출산의 사회·의료적 장애를 제거하고자 하며, 안전행정부는 여성공무원의 불임치료에 대한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있다.

〈표 II-3-1〉 임신 지원 정책 - 난임 부부 지원

정책	지원대상	지원내용	소관 부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난임시술을 필요로 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부부로서 여성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인 자	- 인공수정 시술비 1회 50만원, 3회까지 지원 - 체외 수정 시술비 1회 180만원, 4회까지 지원	보건복지부/보건소
불임치료 특별휴가	- 여성공무원 중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시술자	- 시술 당일 1일의 특별휴가 부여	안전행정부

자료: 보건복지부 마더하기 정책포털 홈페이지(<http://momplus.mw.go.kr>, 검색일 2013.11.28); 「공무원 복무규정」 제 20조.

모든 임산부의 산전·산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분만을 유도하고 태아와 모성의 건강증진을 위해 철분제 및 엽산제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임신·수유부 및 예비 임산부에게 약물, 화학물, 방사선, 알코올 노출 등에 대한 온·오프라인 무료상담 및 정보제공을 하고 있으며, 빈혈, 저체중, 영양불량 등 상대적으로 영양위험 요인이 있는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영양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는 한편 영양보충식품을 일정 기간 동안 지원하고 있다.

〈표 II-3-2〉 임신 지원 정책 - 일반 임산부 지원

정책	지원대상	지원내용	소관 부처
임산부 철분제 및 엽산제 지원	- 보건소에 등록 된 임산부	- 철분제: 전국 시·군·구 보건소에서 임신 5개월 (20주)부터 분만 전까지 무료로 지원 - 엽산제: 임신일로부터 3 개월까지 지원	보건 복지부/ 보건소
한국 마더세이프 전문센터 운영	- 전국민(특히, 예비부부 및 임산부)	- 임신 중 안전한 약물 사용에 대한 온·오프라 인 무료상담제공 - 한국형 임신·수유부 대 상 다빈도 노출, 위험약 물 및 상담사례에 대한 DB 구축	보건 복지부
영양플러스	-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만 6세(72개월) 미만의 영유아 중 영양 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등)이 있는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가구 규모별 최저생계비 대비 200% 미만	- 영양교육 및 상담: 바람 직한 식생활 관리방법 과 모유 수유를 촉진/ 지원하는 내용 - 보충식품 공급: 대상 구 분 및 특성에 따라 6가 지 패키지 중 처방 - 정기적 영양평가: 신체 계측, 생화학적 검사(빈 혈 판정), 영양섭취상태 조사, 영양지식 및 태도 조사, 만족도 조사 등 실시 -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 최저생계비 120% 이 상~200%미만 가정은 공급식품 금액의 10% 부담	보건 복지부/ 보건소

자료: 보건복지부 마더하기 정책포털 홈페이지(<http://momplus.mw.go.kr>, 검색일: 2013.11.28.)

한편 산모에게 임신·출산진료비를 지원하여 임신 및 출산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며, 고용노동부에서는 모성보호를 위해 자연유산한 산모에게 유산·사산 휴가를 유급으로 지원하고 있다.

〈표 II-3-3〉 임신 지원 정책 - 경제적 지원

정책	지원대상	지원내용	소관부처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 건강보험 가입자(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지원 신청자	- 임신기간 동안 받는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에 드는 비용 (보험급여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지원) - 50만원(다태아 임신부는 20만원 추가 지원)의 범위에서 실제 부담한 비용 지원 - 전자바우처(고운맘 카드)로 제공하며 분만 예정일 이후 60일까지 사용할 수 있음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1~3급의 등록된 여성장애인 중 출산한 자	- 출산 시 산모 1인 당 1백만원 지원	보건복지부
유산·사산휴가/급여	- 원칙적으로 자연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라 허용되는 인공임신중절포함)인 경우	- 유산·사산휴가는 임신기간에 따라 휴가기간이 달라짐(5~90일) -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은 90일간 최대 405만원, 대기업은 30일간 최대 월 135만원씩 고용보험에서 지원	고용노동부/고용센터

자료: 보건복지부 마더하기 정책포털 홈페이지(<http://momplus.mw.go.kr>, 검색일: 2013.11.28)

초산 연령 증가에 따라 임신의 어려움도 증가하고, 임신을 하더라도 유산이나 사산 등 ‘임신 소모’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는 다양한 임신 지원 정책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발견된다.

가장 먼저 ‘난임부부 지원(시술비 지원)사업’의 경우 지원대상이 ‘법적 혼인상태’의 부부로서 여성 연령을 만 44세 이하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고, 시술비용을 한 가구당 4회로(체외수정 시술비 기준)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만혼과 고령출산 증가라는 가족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법적 혼인상태’를 기준으로 함은 차치하고라도 공식적으로 폐경이 되기 전까지는 임신이 가능하며, ‘가임기간’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 49세까지로

보고 있음에 반하여 이 정책은 여성에게만 연령 기준을 두고 있어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부분에 지나치게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술 지원 횟수도 4회로 한정하였는데, 난임 부부의 출산 의지는 일반 부부에 비해서 더 높을 수 있고, 후속 출산을 위해서도 난임 시술이 필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시술 지원 횟수가 지나치게 한정되어 있다고 사료된다.

또한 건강한 임신을 위해서라면 ‘임산부 철분제 및 엽산제 지원’을 임산부에 한정하여 지원할 것이 아니라 임신을 준비하는 기간에 있는 여성에게 예방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엽산제는 기형아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수정체의 착상 전에 복용되어야 태아 기형 발생을 예방할 수 있어 최소한 착상전 1개월 전~3개월 전부터는 복용하는 것이 권장되고 임신초기 3개월까지 꾸준한 섭취가 필요하다.¹⁴⁾ 일반적으로 임신을 확인하는 임신 4~8주 이후부터 엽산제를 복용을 하게 되면 엽산제 지원의 취지와 효과는 반감 된다 하겠다. 철분제 또한 임신 후에도 필요하나, 임신률을 높이고 건강한 임신을 위해서 미리 건강검진상 빈혈이 우려되는 미혼여성부터 지원하는 등 생식 건강을 위한 예방 방안의 지원 대상 확대가 요구된다.

이밖에 여성공무원을 위한 ‘불임치료 특별휴가’는 그 취지는 매우 선도적이거나 내용상 매우 미흡하여 확대·개선이 필요하며, 출산휴가·육아휴직, 유·사산 휴가처럼 취업여성을 대상으로 한 일반적인 제도로 확대 도입할 필요가 있다. 불임 치료를 받아야 하는 취업 여성의 경우 당일 1일의 특별 휴가도 도움이 될 수는 있으나 그 취지를 적극 살리고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불임치료를 위한 특별 휴가 제도를 넘어서 ‘휴직’제도까지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전반적으로 현재의 임신지원 정책은 임신 자체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지원은 비교적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나 임신·출산의 고령화에 따른 고위험 임신이 증가하고 있음에 대한 대책은 미흡한 상황이다.

또한 임신 지원 정책의 대상은 결혼한 부부 혹은 임신이 확인된 임산부에 한정되고 있는 바, 전반적인 고령출산화 경향을 고려하면 결혼 전이나 임신 전이라 하더라도 건강한 임신을 계획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의 지원 확대가 요구된다. 예를 들면, 임산부에게 지원되는 ‘고운맘 카드’를 결혼한 예비임산

14) 출처: 뉴시스헬스(2009.4.24).한정열 교수팀 “엽산제 임신 1개월 전부터 복용해야”(www.newsishhealth.com); 매일신문(2013.6.10.).[병을 알자]고령임신과 기형아.(www.imaail.com)

부나 일정 연령 이상의 미혼여성까지 확대하여 생식 건강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의료비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이 될수 있을 것이다.

또한 후술하는 ‘출산 지원 정책’에서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이루어져 고위험 출산에서 나타나는 ‘결과’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으나, 이에 연계하여 ‘고위험 임신’으로 인해 ‘고위험 출산’으로 결과하지 않도록 ‘고위험 임신부’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조산 등을 통한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의 출산은 소요되는 의료비 이상의 고 통과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므로,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예방하기 위한 최대한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나. 출산 지원 정책

고령임신과 출산이 기형아(선천성 이상아) 출산에 주요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¹⁵⁾ 고령의 산모는 인슐린 저항성 증가로 당뇨의 위험이 높아지며 난자의 노화 등으로 기형아 발생이 높아지는데¹⁶⁾ 이와 함께 출산 시에도 어려움이 증가해 제왕절개비율이 높아지고 난산으로 인한 합병증도 증가한다.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고위험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주는 정책을 포함한 출산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임신부가 병·의원이나 조산원이 아닌 곳에서 출산하는 경우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한 만큼 출산가정에 25만원의 출산비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다.

〈표 II-3-4〉 출산 지원 정책 - 출산·의료비 지원

정책	지원대상	지원내용	소관 부처
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미숙아) -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 2,500g 미만의 출생아	(미숙아)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에 기 재된 의료비 중 본인 부담금 지원	보건 복지부/ 보건소

15) 출처: 매일신문(2013.6.10.).[병을 알자]고령임신과 기형아.(www.imaail.com)

16) 출처: wikitree|Social Network News Service(2013.5.27.). “고령출산에 선천기형이 걱정된다면, 주기적으로 산전검사 받으세요!”(www.wikitree.co.kr)

(표 II-3-4 계속)

정책	지원대상	지원내용	소관 부처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 출생 후 28일 이내 질병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아로 진단받은 환자 (소득기준)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 이하의 미숙아 출산가정(셋째아 이상 출생아인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지원금액 : 출생시 체중별 지원(5백~1천만원) (선천성 이상아) - 출생 후 6개월 이내 (퇴원일 기준) 수술 및 치료를 위해 발생한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 - 1회 입원 진료비에 한함(최고 5백만원지원)	보건복지부/보건소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 본인부담금이 100만원 미만의 경우는 전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80%를 추가 지원	보건복지부/보건소
의료기관 외 출산시 출산비 지급	- 병·의원이나 조산원이 아닌 곳(가정, 특정장소 등)에서 출산한 자 - 출산 한지 3년 이내 구비서류 제출자 -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해외출산제외, 본인이 출산하지 않은 입양자녀 제외)	- 25만원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mw.go.kr>, 검색일: 2013.11.28.); 보건복지부 마더하기 정책포털 홈페이지(<http://momplus.mw.go.kr>, 검색일: 2013.11.28.)

고용노동부에서는 출산전후 휴가/급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통해 임신 및 출산을 한 여성근로자를 보호하고 출산친화적인 근로환경을 마련하고자 지원하고 있다.

〈표 II-3-5〉 출산 지원 정책 - 취업부모 출산 전후 휴가 지원

정책	지원대상	지원내용	소관 부처
출산전후 휴가/ 급여	-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임 신 중이거나 출산한 여성 근로자	- 임신 여성 근로자는 출산을 전후하여 90 일간의 산전후 휴가 를 받을 수 있음 (단, 출산후 휴가는 최소 45일 이상 확보, 90일 을 연속하여 사용) -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휴가개시일의 통상임 금을 기준으로 지급	고용 노동부/ 고용센터
배우자 출산휴가	- 배우자가 출산한 모든 근 로자(계약직, 파견직 근로 자도 해당됨)	- 배우자가 출산한 경 우 출산일로부터 3일 간 휴가를 청구할 수 있음 - 유급 3일이며, 필요시 5일(2일은 무급)까지 사용할 수 있음	고용 노동부

자료: 보건복지부 마더하기 정책포털 홈페이지(<http://momplus.mw.go.kr>, 검색일: 2013.11.28.)

저소득 출산가정에는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고자 한다. 도우미의 표준서비스 내용에는 산모의 영양관리(산모 식사), 유방관리/산후체조/좌욕, 산후조리와 관련한 산모의 요청사항(출산과 산모·신생아 관련), 산모에 대한 정신적 안정 및 정서적 지지, 신생아 돌보기 보조, 신생아 건강관리 및 기본 예방접종 안내, 감염 예방·관리, 산모·신생아관련 세탁물 관리, 산모·신생아 방청소가 포함된다.

〈표 II-3-6〉 출산 지원 정책 -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정책	지원대상	지원내용	소관 부처
산모·신생아 도우 미 서비스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 출산 가정 * 사산 및 유산도 포함 (단, 임신 후 만 4개월 이 상 경과자)	- 기본적으로 1일 8시 간, 2주 12일 범위 내 에서 가정방문 도우 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이용권 (바우처) 지급	보건 복지부/ 보건소

(표 II-3-6 계속)

정책	지원대상	지원내용	소관 부처
산모·신생아 도우 미 서비스		· 쌍생아 3주/ 삼태아 이상, 중증장애인(장애 등급 2급이상) 4주 - 평일은 8시간 근무 (09:00~17:00), 토요일은 4시간 근무 (09:00~13:00) - 소득수준에 따라 정 부지원 다름	보건 복지부/ 보건소

자료: 보건복지부 마더하기 정책포털 홈페이지(<http://momplus.mw.go.kr>, 검색일: 2013.11.28.)

출산 지원 중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도 만혼과 고령 출산의 경향을 고려하면 획기적인 확대가 필요한 부분이다. 부부의 연령이 고령화될수록 조부모 등 전통적인 출산 시 지원인력이 고령화되거나, 질병·사망으로 인해 부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에 출산 시 배우자의 도움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에 대한 확대가 요구된다 하겠다. 또한 확대가족의 일원으로부터 출산 시 도움을 받기 어렵거나, 출산 시 지원인력을 산후조리원, 산후도우미 등의 ‘시장’을 통해 확보하기 어려운 저소득 고령 출산 가족을 위해서도 출산 시 남편이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 자녀 양육 비용 부담 경감 정책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저출산 원인 중 하나인 자녀 양육비용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영유아의 보육료·교육비를 지원하고, 또한 방과후 교육 및 시간연장형 보육에 대한 비용도 지원함으로써 취업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있다.

〈표 II-3-7〉 보육/교육/양육비 지원 정책 - 미취학 아동 기관 이용 지원

정책	지원대상	지원내용	소관 부처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 보육료 지원: 만 0~5세가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 보건복지부 ‘아이사랑카드’로 지원	- 정부지원단가 - 만 0세 394,000원 - 만 1세 347,000원 - 만 2세 286,000원	교육부/ 보건 복지부

(표 II-3-7 계속)

정책	지원대상	지원내용	소관 부처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 유아학비 지원: 만 3~5세가 유치원을 다닐 경우, 교육 부 ‘아이즐거운카드’로 지원	만 3세 220,000원 만 4세 220,000원 만 5세 220,000원	교육부 / 보건 복지부
유치원 방과후과정 교육비 지원	- 만3~5세아 유아학비 지원 대상자 중 1일 8시간 이상 의 유치원 방과후 과정을 이용하는 원아	- 국공립유치원 50,000원 - 사립유치원 70,000원	교육부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	- 만0~5세 보육료, 다문화 보 육료 및 장애아 무상보육 료(취학전) 지원아동	(시간연장 보육료) - 기준시간(07:30~19:30) 초과 시간당 2,700원, 장애아동은 3,700원 지원 - 지원한도: 월 60시간	보건 복지부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	(야간보육료 지원 대상) - 야간보육(19:30~익일 07:30)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 는 아동에 한함 -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 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 용하는 경우 (시간제보육료 지원 대상) - 종일제 보육을 이용하지 않 는 아동이 부득이한 경우에 비정기적으로 보육을 받는 경우 - 미취학 영유아 중 법정저소 득층 및 장애아동	(야간보육료) - 지원단가: 만0~4세 종일반 보육료 단가 와 동일 (24시간 보육료) - 24시간 지정 보육시 설에서만 실시 - 24시간 보육료 정부 지원단가: 만 0세 591,000원 만 1세 520,500원 만 2세 429,000원 만 3~5세 330,000원 (휴일보육료) - 정부지원 일 보육료 의 150% - 토요일 제외 (시간제보육료) - 법정저소득층 아동 3,000원, 장애아동 3,900원	보건 복지부
장애아 보육·교육비 지원	- 만12세 이하의 장애아동 -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무관하며 장애인복지카드 (등록증) 발급 아동 대상	- 만 12세 이하 취학 전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비를 전액 지원	교육부/ 보건 복지부

(표 II-3-7 계속)

정책	지원대상	지원내용	소관 부처
장애아 보육·교육비 지원	-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만 3~8세 아동 - 장애인 복지카드(등록증)를 미소지한 만 5세 이하 장애 아동	- 만 3~5세 유치원 과정에 취원하고 있는 특수교육 대상 장애 아에게 교육비 전액 지원 - 지원금액 ·만 0~2세, 만 6~12세: 종일/야간 394,000원, 24시간 591,000원 ·만 3~5세 누리과정 장애아: 종일/야간 414,000원, 24시간 621,000원 ·방과후: 197,000원	교육부/ 보건 복지부
방과후 보육료 지원	- 기준소득액 이하 가구(최저 생계비 120%이하) 및 장애 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 후에 보육시설을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 일반아동: 월 10만원 - 장애아동: 장애아 무상보육료 50% (197,000원)	보건 복지부

자료: 보건복지부 마더하기 정책포털 홈페이지(<http://momplus.mw.go.kr>, 검색일: 2013.11.28.)

또한 영유아가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가구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양육수당 지원 금액은 아동의 연령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되며 그 기준은 수당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표 II-3-8〉 보육/교육/양육비 지원 정책 - 미취학 아동 가정내 양육 지원

정책	지원대상	지원내용	소관 부처
가정양육수당 지원	-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전 만 5세이하 아동 - 소득재산 무관 - '13.3월부터 대상 연령과 계층 확대	- 12개월 미만 월 20만원 - 24개월 미만 월 15만원 - 36개월 미만 월 10만원 - 36개월 이상~취학前까지 월10만원	보건 복지부

(표 II-3-8 계속)

정책	지원대상	지원내용	소관 부처
농어촌양육수당 지원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며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농어업인가구의 취학 전 만 5세이하 아동 - 소득재산 무관	- 12개월 미만 월 20만원 - 24개월 미만 월 17만 7천원 - 36개월 미만 월 15만 6천원 - 48개월 미만 월 12만 9천원 - 48개월 이상~취학 前까지 월10만원	보건 복지부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	-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전 만 5세이하 등록 장애아동 - 소득재산 무관	- 36개월 미만 월 20만원 - 36개월 이상~취학 前까지 월10만원	보건 복지부

자료: 보건복지부 마더하기 정책포털 홈페이지(<http://momplus.mw.go.kr>, 검색일: 2013.11.28.);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mw.go.kr>, 검색일: 2013.11.28.)

그 외에 교육부에서는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11년 이후 출생하는 저소득층의 둘째아 이상 자녀에 대해 고등학교 수업료를 지원하고 둘째아 이상 대학생 자녀에게 우선적으로 국가장학금을 지원해줌으로써 출산율을 제고하고자 한다.

〈표 II-3-9〉 보육/교육/양육비 지원 정책 - 취학연령 이상 자녀 교육 지원

정책	지원대상	지원내용	소관 부처
둘째아 이상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	- '11년 이후 출생하는 저소득층 둘째아 이상 자녀	-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 (2025년부터 시행 예정)	교육부
둘째아 이상 대학생 자녀 국가장학금 우선 지원	- 둘째아 이상 대학생	- 국가근로장학사업 대상 선정 시 경제적 여건이 동일한 경우 다자녀가 구 자녀 우선 선발 - 저소득층에 대한 새로운 국가장학제도신설 시 수혜 가능 인원수가 정해진 장학금의 경우 다자녀가구 자녀에게 우선순위 부여	교육부

자료: 보건복지부 마더하기 정책포털 홈페이지(<http://momplus.mw.go.kr>, 검색일: 2013.11.28.);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mw.go.kr>, 검색일: 2013.11.28.)

현재 자녀 양육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들은 자녀 양육기와 부모의 근로 가능 기간, 즉 소득흐름이 발생하는 기간에 대한 고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30대 후반, 40대 이후에 첫 출산을 시작하는 가족이라면 막내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 부모의 근로소득 단절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요인은 심리적으로도 후속 출산을 꺼리게 하는 요인이 될 소지가 다분하다. 향후 초산 연령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을 고려한다면, 부모의 은퇴 시점에 자녀가 성년에 도달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최소한의 양육비용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하겠다.

라. 취업모 경력단절 방지 대책

출산으로 인한 여성 근로자의 취업중단(이탈/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지원을 하고 있다. 단,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하여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육아휴직급여의 15%는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

또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을 높이기 위하여 출산휴가 중이거나 임신 중인 비정규직 여성을 재고용하거나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거나 육아휴직 근로자 등에 대한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 외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사업주에게 설치비를 지원한다.

〈표 II-3-10〉 취업모의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방지 정책

정책	지원대상	지원내용	소관 부처
육아휴직/급여지원	- 양육대상인 자녀가 만 0~6세(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인 근로자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인 근로자	(기간) - 자녀가 출생한 날부터 만 6세 이하(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기간 동안 자유로이 시기와 기간을 정하여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을 수 있음(1회만 분할 사용 가능)	고용 노동부/ 고용센터

(표 II-3-10 계속)

정책	지원대상	지원내용	소관 부처
육아휴직/급여 지원		- 기간제·파견 근로자의 육아 휴직기간을 기간제 사용기간(파견기간)에서 제외 (급여) - 월 통상임금의 40%(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	고용 노동부/ 고용센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지원	- 만 6세 이하의(07.12.31. 이전 출생자는 1세미만)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둔 근로자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음	-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 - 육아휴직을 1회 분할해서 사용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회 분할해서 사용하거나 육아휴직과 육아기근로시간을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음	고용 노동부/ 고용센터

자료: 보건복지부 마더하기 정책포털 홈페이지(<http://momplus.mw.go.kr>, 검색일: 2013.11.28.)

한편으로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는 주부 등 비경제활동 상태에 있는 경력 단절여성을 노동시장으로 재진입시키고자 2009년부터 여성교육훈련 및 취업지원 인프라가 있는 자치단체와 민간단체 등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경력단절 여성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훈련기관에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일반교양·문화 강좌의 비중이 높아, 취업을 원하는 여성을 지원하는 기능이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제기된다.

〈표 II-3-11〉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 정책

정책	지원대상	지원내용	소관 부처
여성새로일하기 센터 지정·운영	- 임신 육아 및 가사부담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나 경력이 없더라도 취업을 희망하는 모든 여성	-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취업이나 창업이 용이한 직종 중심으로 직업훈련, 주부인턴제, 취업알선 및 취업후 사후관리를 연계하는 종합 취업 지원 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	여성 가족부/ 고용 노동부

(표 II-3-11 계속)

정책	지원대상	지원내용	소관 부처
여성새로일하기 센터 지정·운영	- 교육훈련생 선발시 취업취약계층인 저소득층(최저생계비 150%이하), 여성가장, 결혼이민여성, 장애여성, 북한이탈여성, 고령자(만 55세이상),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다자녀(3자녀 이상)여성을 우선적으로 선발	-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기존 교육훈련기관의 부족한 기능을 보완·활용 - '13년 현재 전국 120개소 지정 운영	여성 가족부 / 고용 노동부
광역새일 지원본부	- 직업이 필요한 모든 여성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새일센터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 - 문화강좌 중심 여성회관의 기능을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강화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개편 - 여성회관의 취업지원 기능 강화 - '13년 현재 전국 10개소 운영	여성 가족부 / 고용 노동부

자료: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mogef.go.kr>, 검색일: 2013.11.28.);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moel.go.kr>, 검색일: 2013.11.28.)

취업모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지원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취업모의 경력단절 방지를 위해 중요성이 적지 않은 '남성의 육아참여'를 실질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향후 가족의 변화를 예상하건대, 만혼과 임신·출산의 고령화는 자녀 양육에 '부부' 외 기타 확대가족의 지원을 받을 가능성을 크게 낮추게 되며, 이 경우 전통적으로 어머니가 양육을 주도하고 기타 확대가족의 지원을 받는 구조는 지속되기 어렵다.

특히 어머니가 취업모인 경우 경력단절 방지를 위해서라면 배우자의 양육 참여 확대를 통해 양육 부담을 부부간에 분담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에 아버지의 양육 참여 확대를 통해 어머니의 경력단절을 방지할 수 있는 정책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Ⅲ. 초산 연령대에 따른 결혼·출산 실태

1. 결혼 실태

본 절에서는 개인의 특성에 따른 결혼에 대한 가치관과 결혼 시기, 결혼 당시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 결혼 실태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가. 결혼에 대한 가치관

1) 결혼의 필요성 및 결혼 적령기

결혼 전에 결혼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조사한 결과 65.1%가 하는 편이 좋다, 10.1%가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으로 나타나 75% 이상이 결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4%는 결혼을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은,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생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생각의 차이는 거주지의 규모, 결혼당시 학력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한편 초혼연령에 따라서는 만 35세 이상의 나이에 결혼한 경우 결혼을 선택으로 생각한 경우가 31.2%로 그 이전에 결혼한 경우에 비하여 그 비율이 높았다.

〈표 III-1-1〉 결혼 전 생각한 결혼의 필요성

단위: %(명)

구분	반드시 해야 한다	하는 편이 좋다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하지 않는 게 낫다	계	$X^2(df)$
전체	10.1	65.1	24.0	0.8	100.0(1,000)	
지역규모						
대도시	10.6	62.6	26.2	0.7	100.0(454)	
중소도시	11.3	66.2	22.0	0.5	100.0(391)	9.198(6)
읍면지역	5.8	69.7	22.6	1.9	100.0(155)	
모 결혼당시 학력						
고졸 이하	10.1	65.9	23.2	0.7	100.0(267)	
전문대졸	8.3	64.7	25.9	1.1	100.0(278)	2.481(6)
4년제대졸 이상	11.2	64.8	23.3	0.7	100.0(455)	

(표 III-1-1 계속)

구분	반드시 해야 한다	하는 편이 좋다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하지 않는 게 낫다	계	$X^2(df)$
모 초혼연령						
만25세 미만	15.7	60.8	21.6	2.0	100.0(51)	na
만25세~30세 미만	12.1	61.9	25.0	1.1	100.0(472)	
만30세~35세 미만	7.6	70.6	21.4	0.5	100.0(384)	
만35세 이상	7.5	61.3	31.2	-	100.0(93)	

주: na는 빈도분포 특성상 유의도 검정이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함.

남녀 각각의 결혼 적령기의 유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는 다음의 <표 III-1-2>와 같다. 남자에 대해서는 52.9%, 여자에 대해서는 59.6%가 적령기가 있다고 응답하여 남자보다 여자에 대해 결혼적령기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편 결혼적령기 유무에 대한 의견은 응답자의 거주 지역, 최종학력, 초혼연령, 초산연령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2> 결혼 적령기 유무

단위: %(명)

구분	여성			남성		
	있다	없다	계	있다	없다	계
전체	59.6	40.4	100.0(1,000)	52.9	47.1	100.0(1,000)
지역규모						
대도시	59.9	40.1	100.0(454)	51.8	48.2	100.0(454)
중소도시	58.1	41.9	100.0(391)	52.7	47.3	100.0(391)
읍면지역	62.6	37.4	100.0(155)	56.8	43.2	100.0(155)
$X^2(df)$	.977(2)			1.177(2)		
모 최종학력						
고졸 이하	61.5	38.5	100.0(265)	54.0	46.0	100.0(265)
전문대졸	57.1	42.9	100.0(275)	53.1	46.9	100.0(275)
4년제대졸 이상	60.0	40.0	100.0(460)	52.2	47.8	100.0(460)
$X^2(df)$	1.151(2)			.221(2)		

(표 III-1-2 계속)

구분	여성			남성		
	있다	없다	계	있다	없다	계
모 초혼연령						
만25세 미만	54.9	45.1	100.0(51)	51.0	49.0	100.0(51)
만25세~30세 미만	57.2	42.8	100.0(472)	52.8	47.2	100.0(472)
만30세~35세 미만	64.3	35.7	100.0(384)	55.5	44.5	100.0(384)
만35세 이상	54.8	45.2	100.0(93)	44.1	55.9	100.0(93)
$X^2(df)$	6.026(3)			3.996(3)		
모 초산연령						
만35세 미만	59.6	40.4	100.0(700)	54.6	45.4	100.0(700)
만35세 이상	59.7	40.3	100.0(300)	49.0	51.0	100.0(300)
$X^2(df)$	.001(1)			2.616(1)		

남녀 각각에 대해 결혼 적령기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 한해 적령기의 범위를 물어본 결과 남성의 경우 평균 28.3~35.5세, 여성의 경우 평균 26.4~33.3세로 남녀 모두 최소와 최대의 차이가 약 7세였고 남녀 간에 약 2세의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응답자의 거주 지역, 초혼연령, 초산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었고 최종 학력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구체적으로 거주 지역의 규모에 따라서는 남녀 모두 최소연령에서만 차이가 나타났는데 남성에 대해서는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다른 지역 거주자들보다 약 1세 정도 더 많게, 여성에 대해서는 도시 지역 거주자들이 읍면 지역보다 약 1세 정도 많게 생각하고 있었다.

응답자의 초혼연령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만 25세 미만의 나이에 결혼한 경우 그 이후에 결혼한 사람들보다 남녀의 결혼적령기 최소 연령을 약 2세 정도 적게 생각하고 있고, 만 35세 이상의 나이에 결혼한 경우는 만 25세 미만의 나이에 결혼한 경우보다 최대 연령을 약 3세 정도 많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만 35세 이후에 결혼을 한 경우도 여성의 결혼적령기의 최대 연령을 34.4세로 보고 있음은 주목할 만하다.

응답자의 초산연령에 따라서는 만 35세 이상의 나이에 출산을 한 경우가 그 이전에 출산한 경우보다 전반적으로 결혼적령기를 약 1세씩 많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3〉 남녀의 결혼 적령기 범위

단위: 명, 세

구분	사례수	여성 결혼 적령기		사례수	남성 결혼 적령기	
		최저	최고		최저	최고
전체	596	26.37	33.25	529	28.26	35.45
지역규모						
대도시	272	26.78 ^a	33.03	235	28.66 ^a	35.31
중소도시	227	26.22 ^a	33.55	206	28.05 ^b	35.61
읍면지역	97	25.59 ^b	33.18	88	27.67 ^b	35.45
F		12.476 ^{***}	2.260		8.687 ^{***}	.605
모 최종학력						
고졸 이하	163	26.27	33.05	143	28.15	35.44
전문대졸	157	26.24	33.17	146	28.15	35.46
4년제대졸 이상	276	26.50	33.42	240	28.40	35.45
F		.994	1.063		.869	.002
모 초혼연령						
만25세 미만	28	24.61 ^a	31.11 ^a	26	26.38 ^a	34.38 ^a
만25세~30세 미만	270	26.29 ^b	32.94 ^b	249	28.01 ^b	35.03 ^a
만30세~35세 미만	247	26.64 ^b	33.60 ^{bc}	213	28.63 ^b	35.78
만35세 이상	51	26.47 ^b	34.39 ^c	41	29.05 ^b	36.98 ^b
F		8.062 ^{***}	11.951 ^{***}		12.441 ^{***}	8.085 ^{***}
모 초산연령						
만35세 미만	417	26.26	33.02	382	28.00	35.13
만35세 이상	179	26.63	33.78	147	28.94	36.29
t		3.635	9.888 ^{**}		21.101 ^{***}	17.782 ^{***}

주: a, b, c집단 간에 차이가 있음.

** $p < .01$, *** $p < .001$

2) 결혼을 위한 경제적 조건

결혼을 위한 경제적 조건 중 배우자의 직업 유무와 내 집 마련에 대한 의식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의 <표 III-1-4>, <표 III-1-5>와 같다. 직업에 대해서는 96.9%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응답하였고, 주택 마련에 대해서는 전세 이상이면 된다가 67.5%로 가장 많았고,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의 집이 있어야 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21.3%로 그 다음 순위를 차지하였다.

이를 거주 지역의 규모, 최종학력, 초혼연령에 따라 살펴 본 결과, 두 조건 모두 지역규모에 따라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대도시와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더 많은 경우 '직업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의 집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읍면지역에 비해 더 많았다. 한편 읍면 지역 거주자들은 월세 또는 반전세 이상이면 된다는 비율이 자가 소유의 집이 있어야 된다는 비율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결혼을 위한 경제적 조건에 대한 기준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지만 특히 만 35세 이상의 나이에 결혼한 경우 자가 소유의 집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30.1%로 그 이전에 결혼한 경우보다 현격히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는 만혼의 이유 중의 하나가 주택마련에 대한 가치관이 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표 III-1-4〉 결혼을 하기위한 경제적 조건 - 직업

단위: %(명)

구분	직업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능력이 있으면 결혼 당시 직업은 없어도 된다	계	$X^2(df)$
전체	96.9	3.1	100.0(1,000)	
지역규모				
대도시	98.0	2.0	100.0(454)	6.616(2)*
중소도시	95.1	4.9	100.0(391)	
읍면지역	98.1	1.9	100.0(155)	
모 최종학력				
고졸 이하	97.0	3.0	100.0(265)	1.321(2)
전문대졸	97.8	2.2	100.0(275)	
4년제대졸 이상	96.3	3.7	100.0(460)	
모 초혼연령				
만25세 미만	92.2	7.8	100.0(51)	4.083(3)
만25세~30세 미만	97.2	2.8	100.0(472)	
만30세~35세 미만	97.1	2.9	100.0(384)	
만35세 이상	96.8	3.2	100.0(93)	

* $p < .05$

〈표 III-1-5〉 결혼을 하기위한 경제적 조건 - 주택 마련

단위: %(명)

구분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의 집이 있어야 한다	전세 이상	월세 또는 반전세 이상	어떤 것이든 상관없다	계	$X^2(df)$
전체	21.3	67.5	7.7	3.5	100.0(1,000)	
지역규모						
대도시	22.5	70.3	4.0	3.3	100.0(454)	
중소도시	23.8	63.7	10.0	2.6	100.0(391)	30.868(6) ^{***}
읍면지역	11.6	69.0	12.9	6.5	100.0(155)	
모 최종학력						
고졸 이하	24.5	62.6	8.3	4.5	100.0(265)	
전문대졸	21.1	66.2	9.8	2.9	100.0(275)	8.258(6)
4년제대졸 이상	19.6	71.1	6.1	3.3	100.0(460)	
모 초혼연령						
만25세 미만	17.6	62.7	11.8	7.8	100.0(51)	
만25세~30세 미만	20.1	68.0	8.7	3.2	100.0(472)	10.840(9)
만30세~35세 미만	21.1	69.0	6.5	3.4	100.0(384)	
만35세 이상	30.1	61.3	5.4	3.2	100.0(93)	

*** $p < .001$

나. 결혼 시기 및 만족도

본 연구의 조사 대상 1,000명 중 재혼인 경우는 단 4명에 불과하고 대부분인 99.6%가 초혼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대상이었던 여성의 초혼연령은 전반적으로 만 25세 이상~30세 미만인 경우가 47.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만 30세 이상~35세 미만인 경우가 38.4%로 많았다. 평균 초혼 연령은 29.6세였고 이는 거주 지역의 규모와 응답자의 결혼 당시 학력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한편 결혼 전 결혼의 필요성에 대해 가졌던 가치관에 따라서는 초혼 연령에 차이가 나타났다.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경우 평균 28.9세에 결혼하였으나, 결혼을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라고 생각했던 경우는 평균 29.9세에 결혼을 하여 결혼을 선택이라고 생각한 경우 1세 정도 늦게 결혼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가치관이

실제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표 III-1-6〉 초혼연령 - 여성

단위: %(명), 세

구분	만25세 미만	만25세 이상~ 30세 미만	만30세 이상~ 35세 미만	만35세 이상	계	평균	F
전체	5.1	47.2	38.4	9.3	100.0(1,000)	29.6	
지역규모							
대도시	4.4	47.1	42.1	6.4	100.0(454)	29.7	
중소도시	5.6	48.8	33.2	12.3	100.0(391)	29.5	.684
읍면지역	5.8	43.2	40.6	10.3	100.0(155)	29.7	
모 결혼당시 학력							
고졸 이하	9.4	44.9	34.8	10.9	100.0(267)	29.4	
전문대졸	5.0	53.2	32.0	9.7	100.0(278)	29.3	2.404
4년제대졸 이상	2.6	44.8	44.4	8.1	100.0(455)	29.9	
모 결혼가치관							
반드시 해야 한다	7.9	56.4	28.7	6.9	100.0(101)	28.9	
하는 편이 좋다	4.8	44.9	41.6	8.8	100.0(651)	29.6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4.6	49.2	34.2	12.1	100.0(240)	29.9	3.031*
하지않게 낫다	12.5	62.5	25.0	-	100.0(8)	27.6	

* $p < .05$

배우자(남편)의 초혼연령은 평균 31.6세로 여성보다 2세 정도 많았고 만 30세 이상~35세 미만인 경우가 51.1%로 가장 많았다. 평균 초혼연령은 거주 지역 규모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었으나 남편의 결혼 당시 학력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었다. 4년제 대학 졸 이상인 경우 평균 31.9세로 초혼연령이 가장 높았고 전문대 졸인 경우 평균 31.1세로 가장 적어 약 1세 정도 차이가 나타났다.

〈표 III-1-7〉 초혼연령 - 배우자(남편)

단위: %(명), 세

구분	만30세 미만	만30세 이상 ~ 35세 미만	만35세 이상	계	평균	F
전체	27.7	51.1	21.2	100.0(1,000)	31.6	

(표 III-1-7 계속)

구분	만30세 미만	만30세 이상 ~ 35세 미만	만35세 이상	계	평균	F
지역규모						
대도시	26.2	55.3	18.5	100.0(454)	31.5	.270
중소도시	30.2	46.8	23.0	100.0(391)	31.7	
읍면지역	25.8	49.7	24.5	100.0(155)	31.7	
부 결혼당시 학력						
고졸 이하	33.1	41.6	25.3	100.0(154)	31.4	3.767*
전문대졸	32.3	47.7	20.0	100.0(220)	31.1 ^a	
4년제대졸 이상	24.8	54.6	20.6	100.0(626)	31.9 ^b	

주: a, b 집단간에 차이가 있음.

* $p <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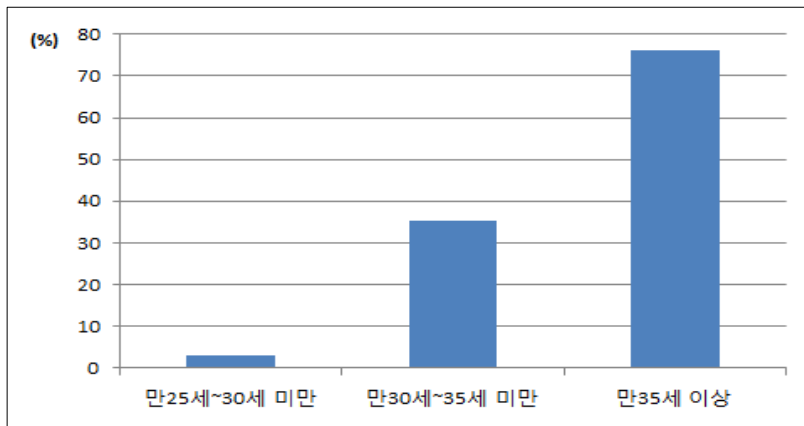
본인이 결혼한 시기의 적절성에 대하여는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67.2%로 가장 많고 22.0%는 ‘늦게 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최종학력과 초혼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학력이 높을수록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학력이 낮을수록 빨리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아졌다. 초혼연령에 따라서 살펴보면 만 25~30세 미만의 나이에 결혼한 경우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81.1%로 가장 많았고, 만 35세 이상의 나이에 결혼한 경우 늦게 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76.3%로 가장 높았다. 한편 만 30~35세 미만의 나이에 결혼한 경우도 35.2%는 본인이 결혼을 늦게 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는 이들이 생각하는 여성의 결혼적령기에 대한 의식 결과(표 III-1-3 참조)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표 III-1-8〉 본인의 결혼 시기의 적절성

구분					단위: %(명)
	빨리 했다	적절하다	늦게 했다	계	$X^2(df)$
전체	10.8	67.2	22.0	100.0(1,000)	
모 최종학력					
고졸 이하	14.7	60.4	24.9	100.0(265)	11.605(4)*
전문대졸	11.6	66.9	21.5	100.0(275)	
4년제대졸 이상	8.0	71.3	20.7	100.0(460)	

(표 III-1-8 계속)

구분	빨리 했다	적절하다	늦게 했다	계	$\chi^2(df)$
모 초혼연령					
만25세 미만	62.7	37.3	-	100.0(51)	480.691(6)***
만25세~30세 미만	15.9	81.1	3.0	100.0(472)	
만30세~35세 미만	-	64.8	35.2	100.0(384)	
만35세 이상	1.1	22.6	76.3	100.0(93)	

* $p < .05$, *** $p < .001$ 

〔그림 III-1-1〕 초혼연령별 본인의 결혼 시기가 늦다고 생각한 비율

본인이 결혼을 늦게 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한하여 늦게 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39.1%는 ‘특별한 이유 없이’ 늦게 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유가 있는 경우 ‘배우자감이 없어서’가 37.7%로 가장 큰 이유를 차지하였다. 그 외에 직장 생활에 방해가 되어서, 독신의 삶을 즐기기 위해서, 경제 형편이 좋지 않아서 등의 이유는 각각 7% 미만으로 적었다. 이러한 이유를 응답자의 특성에 따라 비교해 보면 거주 지역에 따라서는 큰 차이가 보이지 않고, 초혼연령, 결혼당시 학력, 결혼당시 취업상태에 따라서는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만 35세 이상에 결혼한 경우 ‘독신의 삶을 즐기기 위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8.5%로 만 35세 미만에 결혼한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결혼 당시 학력이 높을수록 ‘배우자감이 없어서’나 ‘직장 생활에 방해가 되어서’를 더 많이 응답하였고 특히 4년제 대졸 이상인 경우는 ‘독신의 삶을 즐기기 위해서’도 상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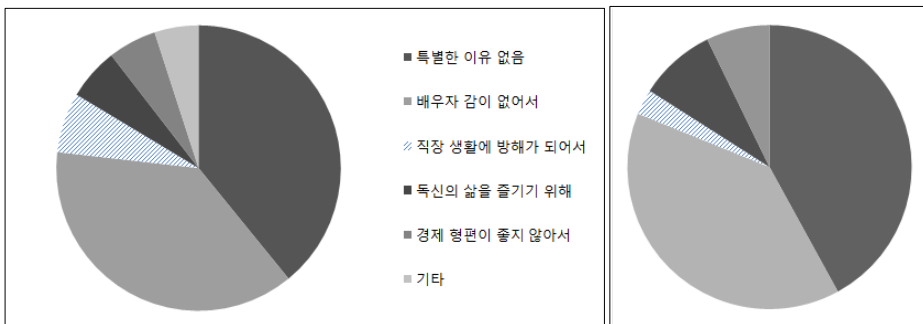
적으로 많았다. 결혼 당시의 취업상태에 따라서는 비취업 상태였던 경우 '경제 형편이 좋지 않아서' 늦어진 경우가 18.4%로 많았다.

〈표 III-1-9〉 결혼을 늦게 한 이유

단위: %(명)

구분	특별한 이유 없음	배우자 감이 없어서	직장 생활에 방해가 되어서	독신의 삶을 즐기기 위해	경제 형편이 좋지 않아서	배우자의 사정으로 안 돼서	취업이 안 돼서	계
전체	39.1	37.7	6.8	5.9	5.5	4.5	0.5	100.0(220)
지역규모								
대도시	36.2	37.1	6.7	6.7	5.7	6.7	1.0	100.0(105)
중소도시	38.4	39.7	8.2	5.5	5.5	2.7	-	100.0(73)
읍면지역	47.6	35.7	4.8	4.8	4.8	2.4	-	100.0(42)
모 초혼연령								
만25세~30세 미만	42.9	42.9	14.3	-	-	-	-	100.0(14)
만30세~35세 미만	37.8	37.0	8.1	5.2	5.2	5.9	0.7	100.0(135)
만35세 이상	40.8	38.0	2.8	8.5	7.0	2.8	-	100.0(71)
모 결혼당시 학력								
고졸 이하	43.3	31.3	1.5	6.0	10.4	7.5	-	100.0(67)
전문대졸	39.0	40.7	8.5	1.7	1.7	6.8	1.7	100.0(59)
4년제대졸 이상	36.2	40.4	9.6	8.5	4.3	1.1	-	100.0(94)
결혼당시 취업상태								
취업	44.4	36.3	6.4	7.0	1.8	4.1	-	100.0(171)
비취업	20.4	42.9	8.2	2.0	18.4	6.1	2.0	100.0(49)

주: 빈도분포 특성상 유의도 검정이 적절하지 않음.



[그림 III-1-2] 결혼을 늦게 한 이유(전체, 만 35세 이상 결혼)

결혼을 늦게 한 것에 대한 만족도를 매우 불만족(1점)~매우 만족(5점)으로 조사한 결과 보통이 66.4%로 가장 많았고 매우 불만족을 포함한 불만족은 23.7%로 만족한 경우의 10.0%보다 더 많았으며 평균은 2.85점이었다. 평균 점수는 최종학력에 따른 차이는 없었고 초혼연령, 초산연령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었다. 결혼을 만 35세 이상의 나이에 한 경우와 첫 출산을 35세 이상의 나이에 한 경우 만족도가 더 낮게 나타났다. 한편 초혼연령과 초산연령을 함께 고려해봤을 때 결혼은 만 30세 이상의 나이에 했지만 출산을 만 35세 이전에 한 경우는 만족도가 비교적 높았고, 출산을 만 35세 이후에 한 경우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표 III-1-10〉 늦은 결혼에 대한 만족도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계	평균	t/F
전체	2.3	21.4	66.4	9.5	0.5	100.0(220)	2.85	
모 최종학력								
고졸 이하	6.1	22.7	56.1	15.2	-	100.0(66)	2.80	
전문대졸	-	20.3	72.9	6.8	-	100.0(59)	2.86	.213
4년제대졸 이상	1.1	21.1	69.5	7.4	1.1	100.0(95)	2.86	
모 초혼연령								
만25세~30세 미만	-	28.6	42.9	28.6	-	100.0(14)	3.00 ^a	
만30세~35세 미만	1.5	14.1	73.3	10.4	0.7	100.0(135)	2.95	7.169 ^{**}
만35세 이상	4.2	33.8	57.7	4.2	-	100.0(71)	2.62 ^b	
모 초산연령								
만35세 미만	-	7.5	73.1	19.4	-	100.0(67)	3.12	
만35세 이상	3.3	27.5	63.4	5.2	0.7	100.0(153)	2.73	19.822 ^{***}
결혼과 출산조합								
30세미만 결혼	-	33.3	41.7	25.0	-	100.0(12)	2.92	
35세미만 출산	-	-	50.0	50.0	-	100.0(2)	3.50	
30세미만 결혼	-	-	50.0	50.0	-	100.0(2)	3.50	8.383 ^{***}
35세이상 출산	-	1.8	80.0	18.2	-	100.0(55)	3.16 ^a	
30세이상 결혼	-	1.8	80.0	18.2	-	100.0(55)	3.16 ^a	
35세미만 출산	-	1.8	80.0	18.2	-	100.0(55)	3.16 ^a	
30세이상 결혼	3.3	27.8	63.6	4.6	0.7	100.0(151)	2.72 ^b	
35세이상 출산	3.3	27.8	63.6	4.6	0.7	100.0(151)	2.72 ^b	

주: 평균은 '매우 불만족' 1점~'매우 만족' 5점으로 하여 산출한 결과임.

a, b 집단간에 차이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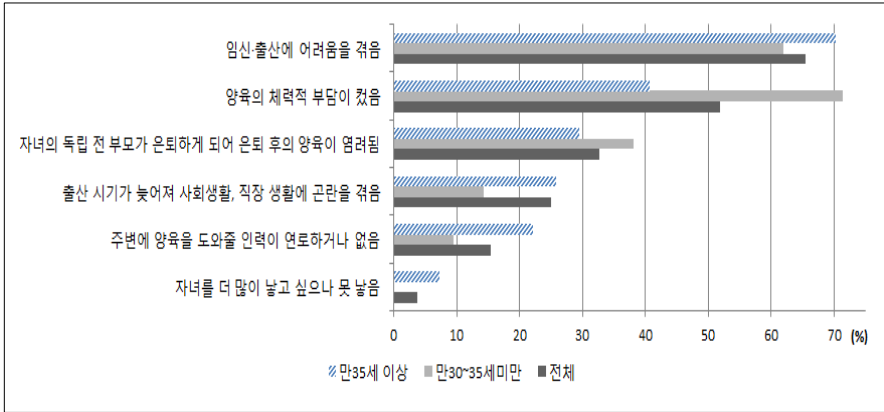
** $p < .01$, *** $p < .001$

늦은 결혼에 대해 불만족하는 경우는 총 52사례였는데 그 중 47사례가 만 30세 이상의 나이에 결혼하고 만 35세 이상의 나이에 출산한 경우로 고령출산을 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불만족 이유를 1, 2 순위로 두 가지를 선택하도록 한 결과 '임신·출산에 어려움을 겪어서'가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양육의 체력적 부담'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초혼연령에 따라 불만족 이유는 달라지는 것으로 보인다. 만 25~30세 미만의 나이에 결혼한 경우는 4명으로 사례가 적었지만 가장 많이 나온 이유는 '출산 시기가 늦어져 사회생활과 직장생활에 곤란을 겪어서'인 반면, 만 30~35세 미만 집단은 '양육의 체력적 부담'이, 만 35세 이상 집단은 '임신·출산의 어려움'이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났다. 또한 만 35세 이상 집단의 경우 다른 집단에 비해 '주변에 양육을 도와줄 인력이 연로하거나 없음'과 '자녀를 더 많이 낳고 싶으나 못 낳아서'를 불만족 이유로 응답하고 있다.

〈표 III-1-11〉 늦은 결혼에 대한 불만족 이유

단위: %, 명

구분	전체			초혼연령		
	1순위	2순위	1+2순위	만25세~ 30세 미만	만30세 ~35세 미만	만35세 이상
임신·출산에 어려움을 겪음	51.9	14.3	65.4	50.0	61.9	70.4
양육의 체력적 부담이 컸음	21.2	32.7	51.9	25.0	71.4	40.7
자녀의 독립 전 부모가 은퇴하게 되어 은퇴 후의 양육이 염려됨	17.3	16.3	32.7	25.0	38.1	29.6
출산 시기가 늦어져 사회생활, 직장 생활에 곤란을 겪음	9.6	16.3	25.0	75.0	14.3	25.9
주변에 양육을 도와줄 인력이 연로하거나 없음	-	16.3	15.4	-	9.5	22.2
자녀를 더 많이 낳고 싶으나 못 낳음	-	4.1	3.8	-	-	7.4
사례수	52			4	21	27



[그림 III-1-3] 늦은 결혼에 대한 불만족 이유

주: 다중응답 결과임.

다. 결혼 당시의 사회경제적 상황

응답자인 여성의 결혼 당시 교육정도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4년제 대졸이었던 경우가 44.5%로 가장 많았고 전문대 졸과 고졸 이하였던 비율은 비슷하게 많았다. 현재의 최종학력과 비교해 보면 결혼 후 학업을 계속하여 학력이 신장된 경우는 1% 미만으로 극소수인 것으로 나타난다. 결혼 당시의 교육정도는 거주 지역 규모와 결혼 당시 취업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현재 대도시에 거주하고 있고 결혼 당시 취업한 상태였던 경우 결혼 당시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이었던 비율이 높았고 읍면 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결혼 당시 비취업 상태였던 경우 결혼 당시 고졸 이하였던 비율이 높았다.

〈표 III-1-12〉 결혼 당시 교육정도 - 여성

단위: %(명)					
구분	고졸 이하	전문대 졸	4년제 대학졸	대학원 이상	계
전체	26.7	27.8	44.5	1.0	100.0(1,000)
모 최종학력					
고졸 이하	100.0	-	-	-	100.0(265)
전문대졸	0.7	99.3	-	-	100.0(275)
4년제대졸		1.1	98.9	-	100.0(448)
대학원졸 이상	-	-	16.7	83.3	100.0(12)

단위: %(명)

계

X²(df)2786.114(9)^{***}

(표 III-1-12 계속)

구분	고졸 이하	전문대 졸	4년제 대학졸	대학원 이상	계	$\chi^2(df)$
지역규모						
대도시	22.2	25.8	50.4	1.5	100.0(454)	22.545(6)**
중소도시	28.1	28.6	42.7	0.5	100.0(391)	
읍면지역	36.1	31.6	31.6	0.6	100.0(155)	
결혼당시 취업상태						
취업	24.2	28.4	46.4	1.0	100.0(785)	11.886(3)**
비취업	35.8	25.6	37.7	0.9	100.0(215)	

** $p < .01$, *** $p < .001$

남편의 경우 결혼 당시 전반적인 교육정도는 4년제 대학 졸인 경우가 60.8%로 가장 많았고 고졸 이하였던 경우는 15.4%로 적어 여성보다 결혼당시 학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후 학업을 계속하여 학력이 신장된 경우가 부인보다는 많지만 1%를 약간 넘는 수로 적다. 남편의 결혼 당시 학력은 거주 지역 규모와 결혼 당시 취업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현재 대도시에 살고 있고 결혼 당시 취업한 상태였던 경우 결혼 당시 4년제 대학 졸 이상의 고학력이었던 경우가 많고, 현재 읍면지역에 살고 있고 결혼 당시 비취업 상태였던 경우 결혼 당시 전문대 졸과 고졸 이하였던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인의 결혼 당시 학력과 비교해보면 전문대졸 이하 학력 여성의 약 50% 정도는 자신보다 더 높은 학력의 남성과 결혼을 하고 4년제 대졸 이상 학력 여성은 대부분이 자신과 유사한 학력의 남성과 결혼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자신보다 낮은 학력의 남성과 결혼한 경우는 3.2% 정도로 소수였다.

〈표 III-1-13〉 결혼 당시 교육정도 - 배우자(남편)

단위: %(명)						
구분	고졸 이하	전문대 졸	4년제 대학졸	대학원 이상	계	$\chi^2(df)$
전체	15.4	22.0	60.8	1.8	100.0(1,000)	
부 최종학력						
고졸 이하	100.0	-	-	-	100.0(150)	2656.011(9)***
전문대졸	1.8	98.2	-	-	100.0(222)	
4년제대졸	-	0.3	99.7	-	100.0(603)	
대학원졸 이상	-	-	28.0	72.0	100.0(25)	

(표 III-1-13 계속)

구분	고졸 이하	전문대 졸	4년제 대학졸	대학원 이상	계	$\chi^2(df)$
지역규모						
대도시	11.2	18.3	68.3	2.2	100.0(454)	30.790(6) ^{***}
중소도시	17.9	22.5	58.1	1.5	100.0(391)	
읍면지역	21.3	31.6	45.8	1.3	100.0(155)	
부 결혼당시 취업상태						
취업	13.5	21.0	63.6	1.9	100.0(928)	54.640(3) ^{***}
비취업	40.3	34.7	25.0	-	100.0(72)	
모 결혼당시 학력						
고졸 이하	53.6	26.2	19.9	0.4	100.0(267)	na
전문대졸	3.2	47.5	48.9	0.4	100.0(278)	
4년제대졸	0.4	3.8	93.5	2.2	100.0(445)	
대학원졸 이상	-	10.0	30.0	60.0	100.0(10)	

주: na는 빈도분포 특성상 유의도 검정이 부적절함을 의미함.

*** $p < .001$

결혼 시 결혼비용 마련을 위한 대출과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도움의 여부 및 금액을 남녀 각각 조사한 결과는 다음의 <표 III-1-14>에서 <표 III-1-17>과 같다. 결혼 시 대출여부는 여성의 경우 95.3%인 대다수가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거주 지역 규모, 결혼당시 취업여부, 결혼 시 연령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 남편의 경우도 대출을 받지 않은 경우가 82.3%로 많았지만 부인보다는 받은 경우가 많았고 이는 거주 지역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도시지역 거주자인 경우 읍면지역보다 대출을 받은 경우가 많았다. 한편 결혼당시의 취업여부와 결혼 시기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었다. 이는 신혼 주택 마련에 대한 지역별 가치관 차이를 반영하는 현상일 수 있다(표 III-1-5 참조).

<표 III-1-14> 결혼 시 대출여부

단위: %(명)

구분	여성			남성		
	받았음	받지 않음	계	받았음	받지 않음	계
전체	4.7	95.3	100.0(1,000)	17.7	82.3	100.0(1,000)

(표 III-1-14 계속)

구분	여성			남성		
	받았음	받지 않음	계	받았음	받지 않음	계
지역규모						
대도시	5.5	94.5	100.0(454)	20.5	79.5	100.0(454)
중소도시	5.1	94.9	100.0(391)	18.7	81.3	100.0(391)
읍면지역	1.3	98.7	100.0(155)	7.1	92.9	100.0(155)
$X^2(df)$	4.833(2)			14.632(2)**		
결혼당시 취업여부						
취업	4.3	95.7	100.0(785)	17.9	82.1	100.0(928)
비취업	6.0	94.0	100.0(215)	15.3	84.7	100.0(72)
$X^2(df)$	1.109(1)			.312(1)		
초혼연령						
만25세 미만	2.0	98.0	100.0(51)	33.3	66.7	100.0(12)
만25세~30세 미만	4.0	96.0	100.0(472)	16.2	83.8	100.0(265)
만30세~35세 미만	5.5	94.5	100.0(384)	19.8	80.2	100.0(511)
만35세 이상	6.5	93.5	100.0(93)	13.7	86.3	100.0(212)
$X^2(df)$	2.478(3)			6.257(3)		

주: 결혼당시 취업여부와 초혼연령은 본인과 배우자 각각 당사자의 변수를 사용함.

** $p < .01$

남녀 각각의 대출금액은 부인의 경우 평균 1,534만원, 남편의 경우 평균 3,131만원으로 남편의 경우 약 2배가량 대출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금액은 여성의 경우 거주 지역 규모, 취업여부, 결혼 시기에 따라서 차이가 없었고 남성의 경우는 결혼 시 연령에 따라서만 차이가 있었는데 결혼 시 연령이 높을수록 대출금액이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15〉 결혼 시 대출금액

단위: 만원, 명

구분	여성		t/F	배우자(남편)		t/F
	평균	사례수		평균	사례수	
전체	1,534.04	47		3,131.07	177	
지역규모						
대도시	1,532.00	25	.213	3,258.06	93	.820
중소도시	1,500.00	20		3,023.29	73	
읍면지역	1,900.00	2		2,772.73	11	

(표 III-1-15 계속)

구분	여성		t/F	배우자(남편)		t/F
	평균	사례수		평균	사례수	
결혼당시 취업여부						
취업	1,450.00	34	-1.152	3127.71	166	-.115
비취업	1753.85	13		3181.82	11	
초혼연령						
만25세 미만	500.00	1	1.000	1425.00 ^a	4	3.256 [*]
만25세~30세 미만	1,410.53	19		2953.49	43	
만30세~35세 미만	1,704.76	21		3118.81 ^b	101	
만35세 이상	1,500.00	6		3672.41 ^b	29	

주: 결혼당시 취업여부와 초혼연령은 본인과 배우자 각각 당사자의 변수를 사용함.

a, b 집단간에 차이가 있음.

* $p < .05$

여성의 결혼비용 마련 시 부모님으로 받은 조력의 여부를 조사한 결과 43.9%가 받은 것으로 나타나, 여성의 경우 대출보다는 부모님의 조력을 받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거주 지역의 규모, 결혼당시 취업여부, 결혼 시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중소도시에 거주하고, 비취업 상태였고,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할수록 부모님으로부터 조력을 받은 경우가 많았다. 남성의 경우 결혼 시 55.8%가 부모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여성에 비해 약 12% 정도 더 많았다. 조력 여부는 거주 지역 규모와 초혼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와 만 35세 이상의 나이에 결혼한 경우 부모님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16〉 부모님의 조력 여부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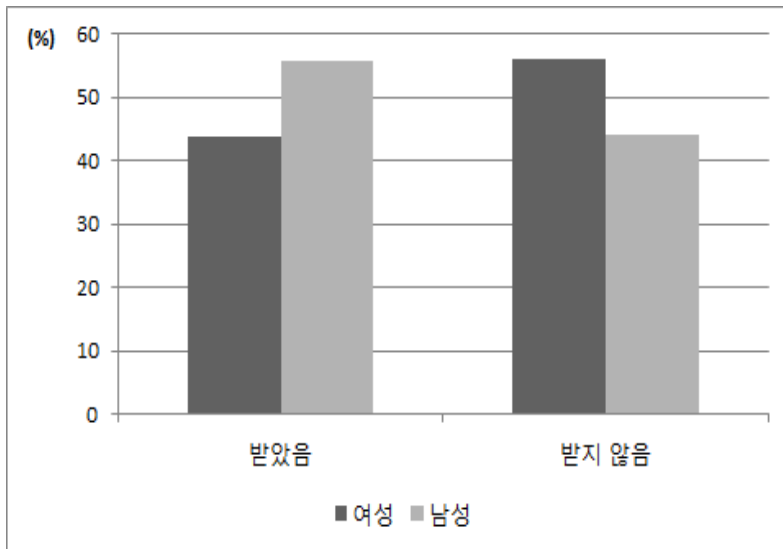
구분	여성			남성		
	받았음	받지 않음	계	받았음	받지 않음	계
전체	43.9	56.1	100.0(1,000)	55.8	44.2	100.0(1,000)
지역규모						
대도시	40.7	59.3	100.0(454)	56.6	43.4	100.0(454)
중소도시	51.4	48.6	100.0(391)	59.1	40.9	100.0(391)
읍면지역	34.2	65.8	100.0(155)	45.2	54.8	100.0(155)
$X^2(df)$	16.706(2) ^{***}			8.938(2) [*]		

(표 III-1-16 계속)

구분	여성			남성		
	받았음	받지 않음	계	받았음	받지 않음	계
결혼당시 취업여부						
취업	41.4	58.6	100.0(785)	55.1	44.9	100.0(928)
비취업	53.0	47.0	100.0(215)	65.3	34.7	100.0(72)
$X^2(df)$	9.256(1)**			2.826(1)		
초혼연령						
만25세 미만	72.5	27.5	100.0(51)	58.3	41.7	100.0(12)
만25세~30세 미만	53.0	47.0	100.0(472)	67.5	32.5	100.0(265)
만30세~35세 미만	33.6	66.4	100.0(384)	55.6	44.4	100.0(511)
만35세 이상	24.7	75.3	100.0(93)	41.5	58.5	100.0(212)
$X^2(df)$	63.186(3)***			32.423(3)***		

주: 결혼당시 취업여부와 초혼연령은 본인과 배우자 각각 당사자의 변수를 사용함.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III-1-4] 결혼 시 부모님의 조력 여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조력 금액은 여성의 경우 평균 약 2,196만원, 남성은 약 4,465만원으로 대출금액과 유사하게 남성이 여성의 약 2배로 나타났다. 이는 남녀 모두 거주 지역 규모, 결혼당시 취업여부, 결혼연령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

〈표 III-1-17〉 결혼 시 부모님의 조력 금액

단위: 만원, 명

구분	여성		t/F	배우자(남편)		t/F
	평균	사례수		평균	사례수	
전체	2,195.90	439		4,465.11	558	
지역규모						
대도시	2,312.43	185		4,671.98	257	
중소도시	2,157.71	201	2.016	4,453.90	231	2.263
읍면지역	1,933.96	53		3,742.57	70	
결혼당시 취업여부						
취업	2137.5	325		4463.31	166	
비취업	2362.28	114	-1.633	3181.82	11	-.043
초혼연령						
만25세 미만	2,391.89	37		5428.57	7	
만25세~30세 미만	2,121.20	250		4391.62	179	
만30세~35세 미만	2,303.88	129	.954	4493.31	284	.243
만35세 이상	2,086.96	23		4446.93	88	

주: 결혼당시 취업여부와 초혼연령은 본인과 배우자 각각 당사자의 변수를 사용함.

라. 출산 관련 부모 요인의 중요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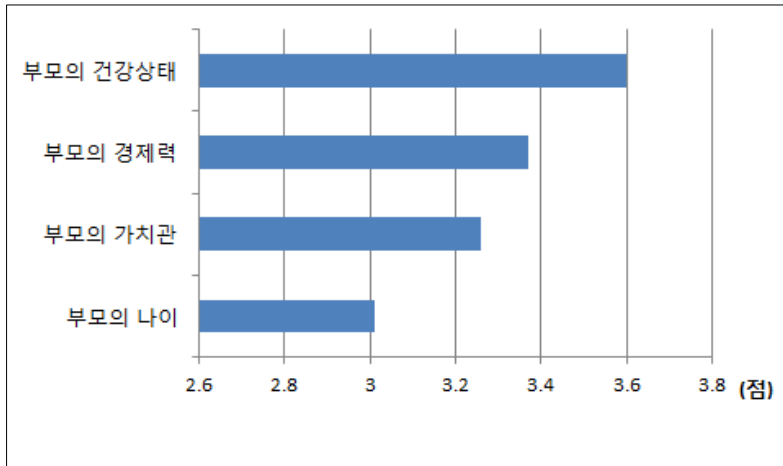
부모의 나이, 건강상태, 가치관, 경제력이 각각 출산에 있어서 중요한 정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네 변인 모두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특히 부모의 건강상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부모의 나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표 III-1-18〉 부모의 제 특성별 출산에 대한 중요도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음	중요함	매우 중요함	계	평균
부모의 나이	0.6	16.5	64.6	18.3	100.0(1,000)	3.01
부모의 건강상태	0.2	1.4	37.0	61.4	100.0(1,000)	3.60
부모의 가치관	0.3	7.4	57.9	34.4	100.0(1,000)	3.26
부모의 경제력	0.1	2.7	57.6	39.6	100.0(1,000)	3.37

주: 평균은 '전혀 중요하지 않음' 1점~'매우 중요함' 4점으로 산출한 결과임.



[그림 III-1-5] 부모의 제 특성별 출산에 대한 중요도

주: '전혀 중요하지 않음' 1점~'매우 중요함' 4점으로 산출한 결과임.

2. 임신·출산 실태

이 절에서는 현재 영유아 자녀 1명이 있는 가구의 대상 영유아의 임신·출산 과정과 결과에 관련된 임신·출산 관련 가치관, 현 자녀를 출산하기까지의 임신·출산력, 임신·출산 당시의 부모의 사회 경제적 상황, 임신·출산 관련 정책의 인지와 수혜 경험, 향후 추가 출산 계획을 모의 초산연령별 비교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가. 임신·출산에 대한 가치관

가장 먼저, 자녀의 임신과 출산을 계획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는 가치관을 살펴보았다.

1) 출산가치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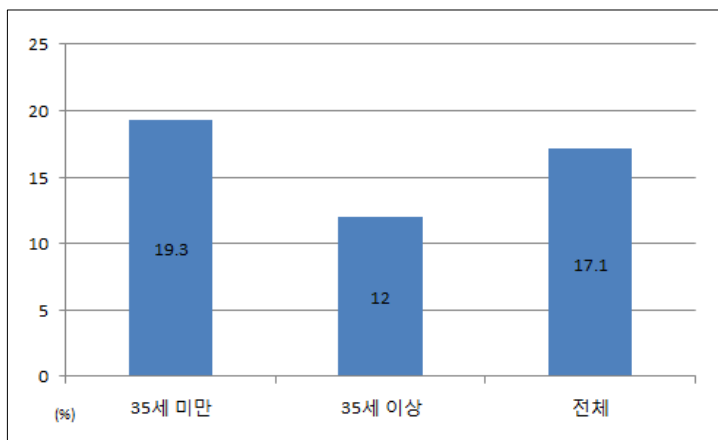
임신·출산과 관련된 가치관으로 가장 먼저 '미혼 부모됨'에 대한 찬반 의견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응답 대상인 기혼 여성들은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를 출산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미혼인 상태에서 자녀를 출산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을 17.1%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미혼 부모됨에 대한 찬반 의견'은 '결혼'을 '출산'의 전제 조건으로 생각하는 문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결혼'과 '출산'을 연계하고 있는 문화가 지배적임을 보여준다.

다만, 어머니의 연령, 초산연령,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서는 이러한 찬반의견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응답자인 1자녀를 둔 어머니의 현재 연령이 높은 경우 연령이 낮은 경우보다 더욱 보수적인 시각을 보여서 미혼인 상태에서 출산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이 높았다. 다만 가장 젊은 연령대인 20대 보다는 오히려 30세 이상 35세 미만의 30대 초반 어머니가 이러한 관점에 가장 관대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령출산 기준인 만 35세를 기준으로 한 어머니의 초산연령대에 따라서는 만 35세 이상에 첫 자녀를 출산한 경우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를 출산해 미혼의 부모가 되는 것에 대해 12.0%만이 찬성하여 35세 미만에 첫 출산을 한 경우의 19.3%가 찬성한 것에 비해 현저히 낮은 비율을 나타냈다.



[그림 III-2-1] 초산 연령별 미혼 부모 됨 찬성 비율

또한 소득이 낮을수록 미혼 부모 됨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서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인 경우 21.4%가 미혼 부모 됨에 찬성하였지만, 가구소득 500만원 이상에서는 찬성률이 9.9%에 불과하였다. 다만, 이러한 가치관 차이는 어

머니의 학력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II-2-1〉 미혼 부모 됨에 대한 생각

				단위: %(명)
구분	찬성한다	반대한다	계	$\chi^2(df)$
전체	17.1	82.9	100.0(1,000)	
모 연령				
만30세 미만	18.3	81.7	100.0(115)	13.941(3)**
만30~35세 미만	21.2	78.8	100.0(452)	
만35~40세 미만	13.9	86.1	100.0(324)	
만40세 이상	8.3	91.7	100.0(109)	
모 초산연령				
만35세 미만	19.3	80.7	100.0(700)	7.863(1)**
만35세 이상	12.0	88.0	100.0(300)	
모 최종학력				
고졸 이하	17.0	83.0	100.0(265)	.338(2)
2년제대졸	18.2	81.8	100.0(275)	
4년제대졸 이상	16.5	83.5	100.0(460)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21.4	78.6	100.0(322)	12.230(3)**
300~400만원 미만	18.2	81.8	100.0(362)	
400~500만원 미만	12.6	87.4	100.0(175)	
500만원 이상	9.9	90.1	100.0(141)	

** $p < .01$

앞서 살펴본 ‘미혼 부모 됨’에 대한 가치관은 ‘자녀 출산’을 위해 관문으로 ‘결혼제도’가 어떠한 영향력을 가지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번에는 ‘출산’의 적령기에 대한 시각을 통해 자녀출산을 하는데 ‘연령’이 어느 정도의 ‘규범’이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결혼, 출산 연령이 매년 높아지는 현실에서 ‘결혼 적령기’에 대한 부담감과 마찬가지로 ‘출산 적령기’를 고려하는 정도에 따라 특정 연령대를 벗어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달라지며, 이로 인해 출산을 가로막는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부분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임신·출산의 적령기에 대한 남녀별 차이를 두고 있는 지도 살펴보았다.

〈표 III-2-2〉 임신·출산 적령기 유무

단위: %(명)

구분	여성		계	남성		계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전체	75.2	24.8	100.0(1,000)	54.0	46.0	100.0(1,000)
모 초산연령						
만35세 미만	76.1	23.9	100.0(700)	57.0	43.0	100.0(700)
만35세 이상	73.0	27.0	100.0(300)	47.0	53.0	100.0(300)
$X^2(df)$	1.112(1)			8.454(2)**		
초혼연령						
만25세 미만	68.6	31.4	100.0(51)	51.0	49.0	100.0(51)
만25세~30세 미만	75.4	24.6	100.0(472)	56.4	43.6	100.0(472)
만30세~35세 미만	76.8	23.2	100.0(384)	54.4	45.6	100.0(384)
만35세 이상	71.0	29.0	100.0(93)	41.9	58.1	100.0(93)
$X^2(df)$	2.630(3)			6.720(3)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78.0	22.0	100.0(322)	60.9	39.1	100.0(322)
300~400만원 미만	76.2	23.8	100.0(362)	53.6	46.4	100.0(362)
400~500만원 미만	75.4	24.6	100.0(175)	49.1	50.9	100.0(175)
500만원 이상	66.0	34.0	100.0(141)	45.4	54.6	100.0(141)
$X^2(df)$	7.981(3)*			12.012(3)**		

* $p < .05$, ** $p < .01$

여성의 임신·출산에 적정한 시기가 있다는 응답은 75.2%, 남성에게 임신·출산 적령기가 있다는 응답은 54.0%로 나타났다. 즉, 현재 영유아 자녀가 있고 자녀가 하나 뿐인 비교적 젊은 기혼 여성들 중 반 이상이 임신·출산에는 적정한 시기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다만, 남녀별로는 차이가 있어서 여성에게 임신·출산 적령기가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더욱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여성의 임신·출산 적령기 여부에 대한 생각은 기혼여성들이 첫 자녀를 출산한 연령이나 초혼연령에 따른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고, 가구소득수준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어서,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여성에게 임신·출산의 적령기가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다.

남성의 임신·출산 적령기에 대해서는 어머니의 초산연령과 가구소득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초산연령이 만 35

세 이상인 경우 남성의 임신·출산의 적령기가 있다는 비율이 47%로 만 35세 미만 초산한 경우의 57%에 비해 10% 낮은 응답을 보여, 남성의 적령기는 중시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여성의 적령기 유무에 대한 응답 경향과 동일하게 가구소득은 낮을수록 남성에게 임신·출산의 적령기가 있다고 생각하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현재 가임 연령대의 기혼 여성 응답자는 남녀모두 임신·출산의 적령기가 있다는 응답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남녀 각각의 임신·출산의 적령기가 있다고 응답한 사례만을 대상으로 그렇다면 이들이 생각하는 남녀의 적절한 임신·출산 시기는 언제라고 생각하는지 질문하였다.

〈표 III-2-3〉 남녀의 임신·출산 적령기 범위

단위: 명, 세

구분	사례수	여성		사례수	남성	
		최저	최고		최저	최고
전체	752	26.12	33.93	540	28.39	36.34
모 초산연령						
35세 미만	533	25.94	33.59	399	28.15	36.08
35세 이상	219	26.55	34.77	141	29.10	37.06
t		9.060**	27.751***		14.913***	9.198**
초혼연령						
만25세 미만	35	24.54	31.71	26	27.50	35.81
만25세~30세 미만	356	25.89	33.60	266	27.94	35.89
만30세~35세 미만	296	26.51	34.23	209	28.96	36.80
만35세 이상	66	26.38	35.55	39	29.08	37.28
F		4.223**	17.859***		8.638***	8.387***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251	25.97	33.50	196	28.43	36.09
300~400만원 미만	276	26.08	34.07	194	28.33	36.52
400~500만원 미만	132	26.02	33.83	86	28.35	36.12
500만원 이상	93	26.75	34.82	64	28.53	36.86
F		1.185	5.228**		.126	2.350

** $p < .01$, *** $p < .001$

<표 III-2-3>에 제시된 응답 결과를 보면, 여성에게 임신·출산 적령기가 있다

고 응답한 사례들은 여성의 적절한 임신·출산 시기는 평균 최저 26세에서 최고 34세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남성에 대해서는 평균 최저 28세에서 최고 36세라 응답하였다. 즉, 여성의 임신·출산 적령기는 남성보다 2년가량 낮게 생각되고 있고 이는 의학적인 측면 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남성에게 특수하게 부과되는 '군복무 의무' 등으로 인해 여성보다 남성의 사회생활 및 결혼이 늦게 시작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응답한 결과로 사료된다.

여성의 적정 임신·출산의 최저·최고 연령의 평균은 응답자의 초산연령, 초혼 연령, 가구소득 수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만 35세 이상 초산을 한 고령출산모인 응답자는 만 35세 미만에 초산한 응답자에 비해 적정 임신·출산연령의 최저·최고 연령이 더 높게 나타나며, 초혼연령이 높아질수록 적정 임신·출산 연령의 최저·최고 연령이 대체로 높게 응답되는 경향을 보였다.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적정 임신·출산 연령의 최저한에 대한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최고 연령은 가구소득 500만원 이상에서 가장 높아 34.82세로 응답되었고 300만원 미만 가구소득 수준에서 가장 낮아 33.5세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남성의 적정 임신·출산의 최저·최고 연령은 가구소득에 따른 차이는 없고 어머니의 초산연령과 초혼연령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여성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초산을 만 35세 이상에 한 고령출산모인 응답자가 만 35세 미만 초산한 경우에 비해 남성의 임신·출산 적령기를 좀 더 높은 연령대로 보는 경향이 있었다. 즉, 적정 임신·출산 연령의 최저한을 29.1세, 최고 연령을 37.1세로 보아 35세 미만 출산 집단에서 28.2세, 36.1세로 잡는 남성의 적정 임신·출산 최저·최고 연령 범위보다 각각 1세 정도 높게 보고 있었다. 초혼연령 또한 높아질수록 남성의 임신·출산 적령기를 높게 보는 경향이 나타났다. 25세 미만에 결혼한 경우 남성의 임신·출산 적령기를 최저 27.5세~35.8세로 보는 반면, 35세 이상 결혼한 경우 최저 29.1세~37.3세로 높게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요컨대 본 연구의 응답자들은 남녀 모두에 대해 전반적으로 임신·출산에도 적정한 시기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시기도 구체적인 연령대로 드러나고 있었다. 특히 임신·출산이 가능하면 이 시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적정기의 최고 한도를 여성은 약 34세, 남성은 36.4세로 보고 있어 일반적으로 '고령 출산'이라 일컬어지는 35세를 전후하여 적령기의 한

계를 규정하는 경향이 엇보였다. 이에 ‘고령’ 혹은 ‘고위험’ 출산의 기준이 되는 만 35세를 기준으로 이를 넘어서는 임신·출산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표 III-2-4〉 고령 임신출산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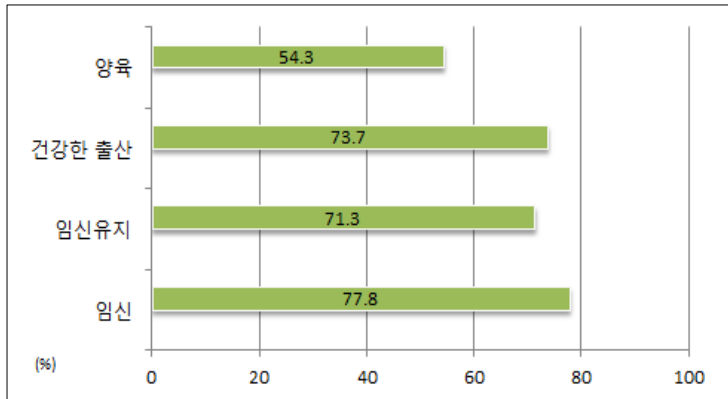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전적으로 동의함	계	평균
부모(특히 어머니)의 나이가 많으면 임신이 어렵다	1.5	20.7	65.5	12.3	100.0(1,000)	2.89
부모(특히 어머니)의 나이가 많으면 임신유지가 어렵다	3.2	25.5	52.8	18.5	100.0(1,000)	2.87
부모(특히 어머니)의 나이가 많으면 건강한 출산이 어렵다	3.2	23.1	55.6	18.1	100.0(1,000)	2.89
부모(특히 어머니)의 나이가 많으면 자녀를 잘 양육하기 어렵다	11.9	33.8	43.7	10.6	100.0(1,000)	2.53

주: 본 질문에 대해 ‘나이가 많다’는 것은 ‘고령’, ‘고위험’ 임신·출산의 기준이 되는 만 35세를 기준으로 생각하고 응답하도록 지시함.

만 35세를 기준으로 ‘고령임신·출산’이라는 개념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이러한 ‘고령임신·출산’은 곧 ‘고위험 임신·출산’으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출산 연령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고령임신·출산’에 대해 실제 향후 후속출산의 가능성도 있는 1자녀 가구의 기혼여성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본 질문의 응답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부모(특히 어머니)의 나이가 많으면 임신, 임신유지, 건강한 출산, 자녀 양육이 어렵다’라는 문구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는지를 ‘1점-전혀 동의하지 않음’에서 ‘4점-전적으로 동의함’까지의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가장 동의율이 낮은 것은 부모가 고령일 경우 ‘자녀를 잘 양육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며, 임신과 임신유지, 건강한 출산이 어렵다는 것에 대해서는 비슷하게 동의율이 높아 70% 이상의 동의율을 보였다. 즉, 응답자들은 대체로 만 35세 이상의 고령의 부모들은 임신과 임신 유지, 건강한 출산을 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부모의 나이가 많을 때 자녀 양육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54.3%만이 동의하여 가장 동의율이 낮았다.



[그림 III-2-2] 고령 부모의 임신·출산·양육의 어려움에 대한 동의율

또한 고령 임신·출산의 어려움을 나타내는 각 문구에 대해 4점 척도로 동의 정도를 측정한 결과 평균 2.53~2.89사이의 3점에 가까운 점수를 나타내어, 부모가 고령일 경우 임신·출산, 나아가 양육의 어려움이 높다는 것에 대부분 동의하는 경향을 보였다.

흥미로운 점은 어려움에 대한 전반적인 동의율은 높으나 ‘전적인 동의’ 비율은 임신보다는 ‘임신 유지’와 ‘건강한 출산’의 어려움에 대해 더 높다는 점이다. 이는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만 35세 이상의 부모들에게서도 임신 자체의 어려움은 개선되는 경향이나, 임신을 하여도 유·사산 등으로 건강한 출산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더욱 우려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어려움에 대한 동의율은 비교적 낮은 편이나 고령출산 부모의 ‘자녀 양육’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응답도 54.3%로 자녀 양육에 있어서도 고령출산 부모들은 약점이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이 드러난다. 즉, 이러한 응답 경향을 통해 우리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고령임신·출산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고령출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출산의 첫 관문인 결혼 연령 자체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분명히 일정 연령을 넘어서면 출산을 주저하게 하거나 포기하게 하여 출산률을 낮추는 주된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 자녀가치관

다음으로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가치관을 살펴보았다. 본 조사의 응답자인 1

자녀를 둔 기혼여성들 중 자녀에 대해 긍정적인 가치관을 가진 비율은 74.3%이며 25.2%는 특별한 선호를 보이지 않고 중립적인 입장을 보였다. 자녀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는 0.5%로 미미하였다.

이러한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가치관은 초산연령과 가구소득에 따른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고, 어머니의 연령과 학력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 35~40세 사이의 어머니에서 자녀의 필요성이 가장 낮게 응답되었고, 학력이 높아질수록 자녀의 필요성은 낮게 응답되었다.

〈표 III-2-5〉 자녀의 필요성

단위: %(명)

구분	자녀가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자녀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다고 생각한다	자녀가 없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계	$\chi^2(df)$
전체	74.3	25.2	0.5	100.0(1,000)	
모 연령					
만30세 미만	77.4	20.9	1.7	100.0(115)	19.441(6)**
만30~35세 미만	77.9	21.9	0.2	100.0(452)	
만35~40세 미만	66.7	32.7	0.6	100.0(324)	
만40세 이상	78.9	21.1	-	100.0(109)	
모 초산연령					
만35세 미만	76.3	23.3	0.4	100.0(700)	4.869(2)
만35세 이상	69.7	29.7	0.7	100.0(300)	
모 최종학력					
고졸 이하	81.5	17.7	0.8	100.0(265)	11.071(4)*
2년제대졸	72.4	27.3	0.4	100.0(275)	
4년제대졸 이상	71.3	28.3	0.4	100.0(460)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77.3	21.7	0.9	100.0(322)	12.216(6)
300~400만원 미만	74.0	26.0	-	100.0(362)	
400~500만원 미만	66.9	32.0	1.1	100.0(175)	
500만원 이상	77.3	22.7	-	100.0(141)	

* $p < .05$, ** $p < .01$

3) 양육가치관

다음으로 자녀가 더 이상 경제적인 효용을 나타내지 못하고 오히려 경제적으로는 부담 요인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자녀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의견을 조사하였다.

〈표 III-2-6〉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 기간

단위: %(명)

구분	성인이 되기 전 까지	대학 졸업 까지	대학원 진학 등 학업을 완전히 마칠 때까지	학업을 마쳤더라도 취업 전 까지	결혼할 때까지	결혼 후에도 때때로 지원할 계획	부모 능력이 되면 가능한 평생 지원	계
전체	10.4	36.2	16.2	19.6	12.7	2.8	2.1	100.0(1,000)
지역규모								
대도시	11.5	38.3	17.0	22.9	7.7	1.1	1.5	100.0(454)
중소도시	9.2	40.4	15.6	12.8	17.9	3.1	1.0	100.0(391)
읍면지역	10.3	19.4	15.5	27.1	14.2	7.1	6.5	100.0(155)
$X^2(df)$	81.505(12)***							
모 초산연령								
만35세 미만	10.3	36.1	16.9	17.4	13.9	2.7	2.7	100.0(700)
만35세 이상	10.7	36.3	14.7	24.7	10.0	3.0	0.7	100.0(300)
$X^2(df)$	12.981(6)*							
모 최종학력								
고졸 이하	15.5	31.3	22.6	17.0	10.2	1.9	1.5	100.0(265)
2년제대졸	9.1	31.3	16.7	21.8	14.5	4.7	1.8	100.0(275)
4년제대졸 이상	8.3	42.0	12.2	19.8	13.0	2.2	2.6	100.0(460)
$X^2(df)$	38.180(12)***							

* $p < .05$, *** $p < .001$

응답 결과 자녀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경제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가장 많아 36.2%가 이에 해당하였다. ‘학업을 마쳤더라도 취업 전 까지’ 지원하겠다는 응답이 19.6%로 그 다음 순위로 나타났고, ‘대학원 진학 등 학업을 완전히 마칠 때까지’ 16.2%, ‘결혼할 때까지’ 12.7%, ‘성인이 될 때까지’

10.4% 순으로 응답되었다. 즉, 성인이 된 자녀라도 ‘대학 졸업’까지는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일반적인 것으로 보인다.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만 지원한다는 의견은 10.4%로 낮은 수준이고, 90% 가까이 연령상으로 성인이 된 후에도 학업과 취업, 결혼이라는 인생의 과업을 어느 정도 마칠 때까지는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비교적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 기간을 길게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 기간을 길게 보는 우리나라 부모의 특성은 노후소득에 대한 사회적 보장이 취약한 현실에서 부모의 노후 대비에 대한 우려를 일으키는 특성이라 하겠다.

이러한 경제적 지원에 대한 관점은 거주 지역, 초산연령, 학력에 따라서도 차이가 났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먼저, 도시지역보다 읍면지역 거주 응답자들이 자녀에 대한 지원 기간을 좀 더 관대하게 보는 경향을 보였다. ‘성인이 되기 전까지만 지원하겠다’는 견해는 대도시 지역 거주자가 11.5%로 중소도시(9.2%)나 읍면지역에서의(10.3%) 견해보다 높게 나타나며 읍면지역 거주자는 대도시·중소도시 거주자에서 가장 응답률이 높은 ‘대학졸업까지 지원하겠다’에 19.4%만이 응답한 반면, ‘결혼 후에도 때때로 지원’ 7.1%, ‘부모 능력이 된다면 평생지원’이 6.5%로 장기간 지원을 생각하는 비율이 도시지역 거주자보다 높았다.

초산연령에 따라서는 만 35세 이상 초산모들이 만 35세 미만 초산모보다 ‘학업을 마쳤더라도 취업 전까지 돕겠다’는 견해가 특히 높아서 24.7%의 응답률을 보였다. 반면 만 35세 미만 초산모들은 ‘결혼 전까지 돕겠다’는 견해가(13.9%) 만 35세 이상 초산모보다(10.0%) 높았다.

학력은 높을수록 ‘대학졸업까지만 지원하겠다’는 응답이 높아 고졸이하는 31.3%가 해당하였고, 4년제 대졸 이상은 42.0%가 이에 응답하여 10%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반면, ‘성인이 되기 전까지만 지원하겠다’는 응답은 고졸이하에서 15.5%, 2년제 대졸 9.1%, 4년제 대졸 8.3%가 응답하여, 학력이 낮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나. 임신·출산력

현재 본 연구의 응답자들은 취학 전 영유아 자녀 1명만을 둔 기혼 여성인데, 이 자녀의 임신이 계획된 것인지, 계획한 것이라면 계획한 출산 시기는 언제인

지, 출산계획에 고려한 사항 및 임신 계획 후 실제 임신까지 소요된 시간, 해당 자녀 출산 전까지 유·사산의 경험이 있는지를 이들의 거주 지역, 초산연령, 초혼연령, 최종학력, 가구소득 등 제 특성에 따라 살펴보았다.

〈표 III-2-7〉 첫 자녀의 임신 계획 여부

단위: %(명)

구분	첫 자녀 임신 계획 여부			첫 자녀 출산계획 시기		
	예	아니오	계	결혼 전	결혼 후	계
전체	35.1	64.9	100.0(1,000)	10.3	89.7	100.0(351)
지역규모						
대도시	39.0	61.0	100.0(454)	13.6	86.4	100.0(177)
중소도시	33.5	66.5	100.0(391)	8.4	91.6	100.0(131)
읍면지역	27.7	72.3	100.0(155)	2.3	97.7	100.0(43)
$X^2(df)$	7.132(2) [*]			5.528(2)		
모 초산연령						
만30세 미만	26.9	73.1	100.0(331)	11.2	88.8	100.0(89)
만30세~35세 미만	42.8	57.2	100.0(369)	10.1	89.9	100.0(158)
만35세 이상	34.7	65.3	100.0(300)	9.6	90.4	100.0(104)
$X^2(df)$	19.473(2) ^{***}			.142(2)		
초혼연령						
만25세 미만	11.8	88.2	100.0(51)	-	100.0	100.0(6)
만25세~30세 미만	35.2	64.8	100.0(472)	9.0	91.0	100.0(166)
만30세~35세 미만	38.8	61.2	100.0(384)	11.4	88.6	100.0(149)
만35세 이상	32.3	67.7	100.0(93)	13.3	86.7	100.0(30)
$X^2(df)$	14.832(3) ^{**}			1.478(3)		
모 최종학력						
고졸 이하	23.4	76.6	100.0(265)	9.7	90.3	100.0(62)
2년제대졸	25.8	74.2	100.0(275)	11.3	88.7	100.0(71)
4년제대졸 이상	47.4	52.6	100.0(460)	10.1	89.9	100.0(218)
$X^2(df)$	56.842(2) ^{***}			.108(2)		

(표 III-2-7 계속)

구분	첫 자녀 임신 계획 여부			첫 자녀 출산계획 시기		
	예	아니오	계	결혼 전	결혼 후	계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28.9	71.1	100.0(322)	9.7	90.3	100.0(93)
300~400만원 미만	35.4	64.6	100.0(362)	10.2	89.8	100.0(128)
400~500만원 미만	37.1	62.9	100.0(175)	10.8	89.2	100.0(65)
500만원 이상	46.1	53.9	100.0(141)	10.8	89.2	100.0(65)
$X^2(df)$	13.285(3)**			.072(3)		

* $p < .05$, ** $p < .01$, *** $p < .001$

첫 자녀의 임신을 계획하였다는 응답은 35.1%로 임신 계획은 하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거주 지역, 초산연령, 초혼연령, 어머니의 학력, 가구소득에 따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먼저, 거주 지역에 따라서는 대도시(39.0%)> 중소도시(33.5%)> 읍면지역(27.7%) 순으로 초산을 계획하였다는 응답이 높았다. 어머니의 초산연령에 따라서는 만 30~34세 사이에 첫 출산을 한 경우에 첫 임신을 계획하였다는 응답이 42.8%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만 35세 이상 첫 출산한 경우(34.7%), 만 30세 미만 첫 출산한 경우(26.9%) 순으로 임신계획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만 30~34세 사이에 결혼을 한 집단에서 첫 임신을 계획한 비율이 가장 높아 38.8%가 이에 해당하였고, 그 다음으로 만 25~30세 미만 초혼 집단에서 35.2%, 만 35세 이상 초혼집단에서 32.3% 순으로 임신을 계획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학력은 높을수록 임신 계획율이 높아 어머니 학력이 4년제 대졸 이상인 경우 47.4%가 임신을 계획한 반면, 고졸 이하에서는 23.4%만이 임신을 계획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구소득 또한 높을수록 첫 임신을 계획한 비율이 높았다. 이처럼 첫 임신을 계획한 비율이 가구의 특성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임신을 계획한 경우 결혼 전과 결혼 후 중 언제로 계획하였는지는 이러한 가구의 특성에 따른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즉, 10.3%만이 결혼 전에 첫 임신을 하기로 계획하였고 대부분인 89.7%는 결혼 후에 첫 임신을 하기로 계획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미혼 부모 됨에 대한 생각이 대체로 부정적이었던 결과를 생각할 때 실제 계획도 사회적 통념을 벗어나지 않는 경향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은 아니지만 초혼연령이 높을수록 결혼 전에 첫 자녀를 출산하기로 계획한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 초혼연령이 만 35세 이상인 경우 결혼 전 첫 자녀 출산을 계획한 비율이 13.3%로 나타났다. 이는 출산은 결혼 후에 해야 한다는 사회적 통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 35세 이상 결혼 시에는 임신·출산의 적령기를 고려하여 결혼 전이라도 먼저 출산하는 것을 계획한 결과라 사료된다.

다음으로 결혼 후에 출산하기로 계획하는 경우 구체적으로 결혼 후 ‘언제’ 출산하고자 계획하였는지를 살펴보았다(표 III-2-8 참조).

〈표 III-2-8〉 결혼 후 첫 자녀 출산 계획 시기

단위: %(명), 년

구분	1년	2년	3년 이상	계	평균	t/F
전체	57.1	27.6	15.2	100.0(315)	1.65	
모 초산연령1						
만30세 미만	67.1	27.8	5.1	100.0(79)	1.42	7.115**
만30세~34세	55.6	31.7	12.7	100.0(142)	1.58	
만35세 이상	51.1	21.3	27.7	100.0(94)	1.96	
모 초산연령2						
만35세 미만	59.7	30.3	10.0	100.0(221)	1.52	12.749***
만35세 이상	51.1	21.3	27.7	100.0(94)	1.96	
초혼연령						
만25세 미만	33.3	50.0	16.7	100.0(6)	2.17	1.969
만25세~30세 미만	55.6	28.5	15.9	100.0(151)	1.65	
만30세~35세 미만	55.3	28.8	15.9	100.0(132)	1.71	
만35세 이상	80.8	11.5	7.7	100.0(26)	1.27	

** $p < .01$, *** $p < .001$

이에 따르면 첫 출산을 결혼 후 1년 이내로 계획한 경우가 57.1%로 가장 많았고, 1~2년 이내가 27.6%, 3년 이후로 계획한 경우는 15.2%로 대부분 결혼 후 2년 이내로 계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첫 출산 계획 시기는 결혼 후 1.65년이었다. 이러한 첫 출산 계획 시기는 모의 초산연령과 초혼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초산연령에 따라서는 만 30세 미만에 초산한 집단은 결혼 후 평균 1.42년 후에 첫 출산을 하기로 계획한 반면, 만 30~34세 미만 초산집단은 결혼 후 평균 1.58년 후, 만 35세 이상 초산집단은 결혼 후 평균 1.96년 후에 첫 출산을 하기로 계획하였던 것으로 나타나 초산연령이 높을수록 결혼 후 첫 자녀 출산 계획 시기가 늦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애초의 계획이 이러했기 때문에 실제 출산 시기에 차이를 가져왔을 것으로 추측되는 부분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은 아니지만 초혼연령에 따른 차이는 이와는 대체로 반대의 경향을 보인다. 즉, 결혼을 늦게 한 집단에서 결혼 후 출산을 계획한 시기는 결혼을 일찍 한 집단보다 빠른 경향을 보이고 있어, 만 25세 미만에 결혼한 집단은 1년 이내 출산하기로 계획한 비율이 33.3%에 불과하고, 평균 결혼 후 2.17년 이후 첫 출산을 하기로 계획한 반면 만 30~34세 결혼한 집단은 결혼 후 1.71년 후, 만 35세 이상 결혼한 집단은 결혼 후 1.27년에 첫 출산을 하기로 계획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만 35세 이상 결혼한 집단은 1년 이내 출산계획을 한 경우가 80.8%에 육박하고 있어 출산을 서두르는 경향을 보였다.

즉, 결혼이 늦은 대신 자녀는 일찍 출산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겠다. 대체로 임신·출산의 적령기가 있다고 생각하므로, 결혼을 늦게 하면 이러한 임신·출산 적령기에서 가능하면 벗어나지 않기 위해 자녀 출산은 서두르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반대로 초산연령이 늦은 집단일수록 결혼 후 출산을 하고자 계획한 시기가 늦어지는 경향을 보인 것은 그러한 계획의 결과로 늦게 출산을 하게 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첫 출산 시기를 계획할 때 고려한 사항은 <표 III-2-9>에 제시되었다. 이에 따르면 첫 출산 시기 계획 시 1순위로는 '경제력'이 31.9%, '부모의 연령'이 31.1%로 비슷하게 가장 많이 고려된 사항이었다. 이밖에 '휴직사용 가능성 등 직장의 여건'이 7.7%, '부모의 건강상태'가 6.3%, '취업·퇴직 계획'이 5.4% 순이었다.

2순위로 고려된 사항으로는 역시 '경제력'이 가장 많이 고려되어 28.9%로 응답되었고, '부모의 연령'이 18.2%, '부모의 건강상태'가 14.0%, '직장의 여건'이 10.7%, '희망자녀수'가 9.7% 순으로 응답되었다.

1,2순위 응답을 통해, 자녀 출산 시기를 계획할 때 우리나라의 부모들은 가구의 경제 상태와 부모 자신의 연령과 건강상태 등을 가장 많이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부모들은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과 임신·출산의 적정시기라는 측면을 살펴 첫 출산 시기를 서두르거나 늦추고자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는 즉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더라도 부모의 연령이 높으면 임신·출산의 적정 시기를 벗어나지 않게끔 서두르는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표 III-2-9〉 첫 출산 시기 계획시 고려사항

단위: %(명)

구분	경제력	부모의 연령	직장의 여건	건강 상태	취업· 퇴직 계획	희망 자녀수	지인의 의견	자녀양육을 도와줄 기관, 사람 유무	기타	특별한 고려사항 없음	계
1순위	31.9	31.1	7.7	6.3	5.4	4.6	3.1	0.9	8.3	0.9	100.0(351)
2순위	28.9	18.2	10.7	14.0	8.8	9.7	3.2	6.5	-	-	100.0(308)

이러한 첫 출산 시기 계획 시 고려사항은 어머니의 초산연령대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만 35세 미만 첫 출산 집단에서 가장 많이 고려하는 사항이 '경제력'인데 반하여 만 35세 이상 초산 집단은 '부모의 연령'을 출산 시기 계획에 가장 많이 고려하고 있어 48.1%가 이러한 사항을 가장 많이 고려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초혼연령대에 따라서도 비슷한 경향을 보여, 결혼을 늦게 한 집단 일수록 출산 시기 계획에 '부모의 연령'을 고려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 결혼 연령이 만 35세 이상인 경우 특히 '부모의 연령'을 고려하는 비율이 70%에 육박하여 자녀 계획에 '부모의 연령'이 절대적인 고려사항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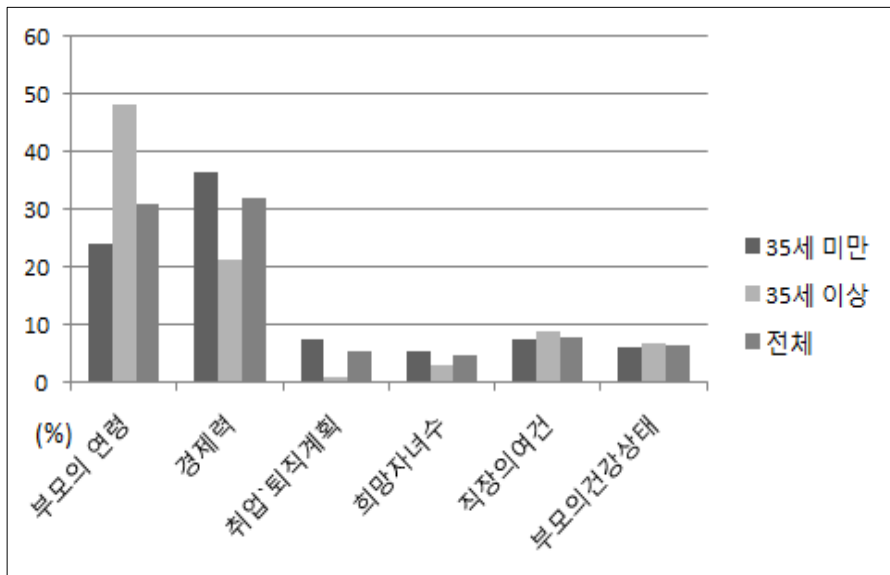
〈표 III-2-10〉 첫 출산 시기를 계획하는데 가장 큰 고려사항 - 1순위

단위: %(명)

구분	경제력	부모의 연령	직장의 여건	부모의 건강 상태	취업· 퇴직 계획	희망 자녀수	지인의 의견	자녀 양육을 도와줄 기관, 사람 유무	특별한 고려 사항 없음	기타	계
전체	31.9	31.1	7.7	6.3	5.4	4.6	3.1	0.9	0.9	8.3	100.0(351)
모 초산연령											
35세 미만	36.4	23.9	7.3	6.1	7.3	5.3	4.0	1.2	1.2	7.3	100.0(247)
35세 이상	21.2	48.1	8.7	6.7	1.0	2.9	1.0	-	-	10.6	100.0(104)
$X^2(df)$						31.405(9)					

(표 III-2-10 계속)

구분	경제력	부모의 연령	직장의 여건	부모의 건강 상태	취업 퇴직 계획	희망 자녀수	자녀 의견	자녀 양육을 도와줄 사람, 기관 유무	특별한 고려 사항 없음	기타	계
초혼연령											
만25세 미만	33.3	-	-	33.3	-	16.7	16.7	-	-	-	100.0(6)
만25세~30세 미만	36.7	24.7	7.2	3.6	5.4	7.2	3.6	1.2	1.2	9.0	100.0(166)
만30세~35세 미만	31.5	31.5	10.1	8.1	6.0	1.3	2.7	0.7	0.7	7.4	100.0(149)
만35세 이상	6.7	70.0	-	6.7	3.3	3.3	-	-	-	10.0	100.0(30)
$X^2(df)$					54.874(27)**						

** $p < .01$, *** $p < .001$ 

[그림 III-2-3] 초산연령별 첫 출산 시기 계획시 고려사항 - 1순위

앞서 첫 '출산'을 결혼 후 1년 이내로 계획한 비율이 57.1%에 달하였는데, 이는 결국 임신이 결혼 후 3개월 이내로 계획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출산 계획을 가지고 임신을 시도하여 실제 자녀 임신은 결혼 후 언제 되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여기서는 첫 임신을 계획하였던 351 사례만을 대상으로 계획 후 실제 임신까지 걸린 기간이 1년 이내인지 여부와 1년 이상 걸린 경우 실제 임신까지 걸린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았다. 실제 임신까지 걸린 기간을 1년을 기준으로 살펴본 이유는 일반적으로 임신 시도 후 '1년'을 초과할 경우 '불임' 혹은 '난임'의 진단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표 III-2-11〉 임신 처음 계획후 실제 자녀 임신까지 기간

구분	임신 계획후 실제 임신까지 걸린 기간			1년 이상시 실제 임신까지 걸린 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계	평균(개월)	계
전체	63.5	36.5	100.0(351)	27.67	100.0(128)
모 초산연령					
만30세 미만	77.5	22.5	100.0(89)	19.95	100.0(20)
만30세~34세	64.6	35.4	100.0(158)	20.88	100.0(56)
만35세 이상	50.0	50.0	100.0(104)	37.96	100.0(52)
$X^2(df), F$	15.816(2)***			9.532***	
초혼연령					
만25세 미만	66.7	33.3	100.0(6)	50.50	100.0(2)
만25세~30세 미만	66.3	33.7	100.0(166)	29.41	100.0(56)
만30세~35세 미만	57.0	43.0	100.0(149)	24.88	100.0(64)
만35세 이상	80.0	20.0	100.0(30)	33.67	100.0(6)
$X^2(df), F$	6.777(3)			1.168	
경력단절경험					
있음	59.4	40.6	100.0(69)	40.00	100.0(28)
없음	63.6	36.4	100.0(217)	24.86	100.0(79)
비해당	67.7	32.3	100.0(65)	21.81	100.0(21)
$X^2(df), F$	.989(2)			5.422**	

** $p < .01$, *** $p < .001$

<표 III-2-11>에 제시된 바에 따르면 임신 계획 후 1년 이내 임신한 경우는 63.5%로 나타났다. 앞서 2년 이내 출산계획이 있었던 경우가 84.7%였었는데, 2년 이내 출산을 위해서 임신이 1년 이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고려하면, 계획한 것보다 임신이 어려운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임신계획 후 1년 이내 임신 여부는 어머니의 초산연령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

즉, 만 30세 미만에 첫 출산을 한 집단에서는 77.5%가 1년 이내 임신하였으나, 만 30~34세 초산 집단에서는 64.6%, 만 35세 이상 초산집단에서는 50%만이 1년 이내 임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혼연령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으나, 만 35세 이상에 결혼한 집단에서 1년 이내 임신한 비율이 80%로 다른 초혼연령대에 비해 크게 높은 경향을 보였는데, 앞서 살펴본 출산계획에서도 만 35세 이상 결혼한 집단에서 출산을 서두르는 경향이 나타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여야 할 결과라 사료된다.

즉, 늦게 결혼한 집단 중에서도 일반적인 임신·출산 적령기 보다 늦게 결혼한 집단 중 자녀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는 경우는 빨리 결혼한 경우에 비해서 임신·출산을 더욱 서두르는 경향이 보이며, 이를 통해 생각보다 빠른 임신에 이르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사료된다. 늦은 결혼으로 임신·출산에 불리하다고 볼 수 있는 집단이지만 빠른 계획과 임신시도로 실제 임신까지 걸리는 시간은 단축되고 있다.

반면, 앞서 살펴보았던 첫 임신의 계획 여부에서 만 35세 이상 초산 집단은 평균보다 낮은 임신계획율을 보였고, 만 35세 이상 초산 집단에서 첫 임신을 계획했던 경우 첫 출산을 하고자 했던 시기가 결혼 후 1.96년으로 가장 계획 시기가 늦었음을 고려할 때 초산연령이 늦은 집단은 고연령으로 인한 임신의 어려움 보다는 실제 임신 계획 자체가 적극적이지 않았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계획 후 임신이 1년 이상 걸린 경우 실제 임신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27.7개월로 약 2년 3개월 이상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임신까지 소요된 평균 기간은 초산연령과 어머니의 경력단절 경험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초산연령이 높을수록 임신까지의 소요 기간이 길어지는 경향을 보여 만 30세 미만 초산 집단에서는 평균 20개월 정도가 소요되었다면, 만 35세 이상 초산 집단에서는 평균 38개월, 약 3년 2개월이 소요되어 격차가 컸다.

또한 어머니가 경력단절 경험이 있는 경우 임신까지의 소요기간이 경력단절 경험이 없는 경우에 비해 길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임신이 잘 되지 않아 경력단절이 일어났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표 III-2-12〉 자녀 출산 전까지 유산·사산 등의 경험 유무

구분	있음	없음	계	단위: %(명)	
				X ² (df)	
전체	9.0	91.0	100.0(1,000)		
모 초산연령					
만30세 미만	5.7	94.3	100.0(331)		
만30세~34세	9.2	90.8	100.0(369)	8.385(2)*	
만35세 이상	12.3	87.7	100.0(300)		
결혼과 출산조합					
30세미만 결혼 35세미만 출산	6.8	93.2	100.0(497)		
30세미만 결혼 35세이상 출산	34.6	65.4	100.0(26)	24.188(3)***	
30세이상 결혼 35세미만 출산	9.4	90.6	100.0(203)		
30세이상 결혼 35세이상 출산	10.2	89.8	100.0(274)		
경력단절 경험					
있음	13.0	87.0	100.0(177)		
없음	7.8	92.2	100.0(617)	4.583(2)	
비해당	9.2	90.8	100.0(206)		

* $p < .05$, *** $p < .001$

첫 자녀를 출산하기까지의 임신·출산력에서 마지막으로 해당 자녀 출산 전 유산이나 사산으로 임신 소모의 경험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표 III-2-12〉에 따르면, 응답대상자중 9.0%가 자녀의 출산 전에 유산이나 사산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초산 전 유·사산의 경험을 초산연령별, 결혼 및 출산 조합 집단별, 어머니의 경력단절 경험별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는데, 초산연령, 결혼 및 출산 조합 집단에 따라 출산 전 유·사산의 경험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즉, 초산연령이 높은 집단일수록 해당 자녀 1명을 출산하기까지 유·사산을 겪은 비율이 높아져, 만 30세 미만 초산 집단은 유·사산 경험이 있는 경우가 5.7%이나 만 30~34세 미만 초산 집단에서는 9.2%, 만 35세 이상 초산 집단에서는 12.3%가 이러한 임신소모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및 출산 시기별 집단 구분에 따라서는 30세 미만에 결혼해 30세 미만에 출산한 집단에서 이러한 유·사산 경험이 가장 낮고, 가장 유·사산 경험이 높은 집단은 만 30세 미만에 결혼했으나 만 35세 이상 초산한 집단이어서 이들의 유·

사산 경험은 34.6%에 달하였다.

즉, 결혼을 빨리 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이 늦어진 이유에는 이러한 유·사산이 결정적인 어려움을 준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결혼을 빨리 했더라도 유·사산이 반복될 때는 보조생식술 비용을 지원하는 일반적인 난임부부 지원 사업 이외 유·사산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료적 조치 지원과 건강한 임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 사료된다.

이밖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지만 경력단절 경험이 있는 집단에서 유·사산의 경험이 있는 비율이 13.0%로 경력단절 경험이 없는 집단의 7.8%에 비해 크게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 또한 유·사산의 경험이 경력단절을 유발하였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에 가임기 취업모의 유·사산을 방지하고 유·사산으로 인한 경력단절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련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다. 임신·출산 당시 상황

1) 임신 방법

다음으로 첫 자녀를 임신·출산한 당시의 상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표 III-2-13〉 첫자녀 임신 방법

단위: %(명)				
자연 임신	과배란 유도 통해	인공 수정 시술을 통해	시험관 시술 을 통해	계
95.8	2.5	0.7	1.0	100.0(1,000)

먼저, 현재 자녀가 한 명인 응답자들의 해당 자녀를 임신한 방법을 살펴보았는데, 95.8%가 ‘자연임신’에 의해 첫 자녀를 임신하였다고 응답하였고, ‘과배란 유도’를 통해가 2.5%, ‘인공수정’이 0.7%, ‘시험관 시술’에 의해서가 1.0%로 나타나 대부분 자연임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대부분 자연임신을 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초산 연령, 결혼과 출산 연령 집단, 가구소득에 따른 임신 방법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표 III-2-14〉 제특성별 자연임신 여부

				단위: %(명)
구분	자연 임신	자연임신 아님	계	$X^2(df)$
전체	95.8	4.2	100.0(1,000)	
모 초산연령				
만35세 미만	98.6	1.4	100.0(700)	44.542(1)***
만35세 이상	89.3	10.7	100.0(300)	
결혼과 출산조합				
30세미만 결혼 35세미만 출산	98.4	1.6	100.0(497)	55.578(3)***
30세미만 결혼 35세이상 출산	76.9	23.1	100.0(26)	
30세이상 결혼 35세미만 출산	99.0	1.0	100.0(203)	
30세이상 결혼 35세이상 출산	90.5	9.5	100.0(274)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98.8	1.2	100.0(322)	16.262(3)**
300~400만원 미만	95.6	4.4	100.0(362)	
400~500만원 미만	94.9	5.1	100.0(175)	
500만원 이상	90.8	9.2	100.0(141)	

** $p < .01$, *** $p < .001$

교차 분석 결과 초산연령에 따라서는 임신 방법에 뚜렷한 차이가 있고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즉, 만 35세 이전에 첫 출산한 집단에서는 이 출산이 자연임신에 의한 것인 경우가 98.6%로 과배란 유도, 인공수정, 시험관 시술 등에 의한 경우는 매우 낮으나, 만 35세 이상 고령출산한 경우는 이러한 의료적 방법에 의해 임신한 경우가 10.7%로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결혼연령과 출산연령의 조합에 의한 집단별로는 만 30세 미만에 결혼했으나 출산은 만 35세 이후에 한 집단에서 자연임신 비율이 뚜렷이 낮게 나타나고 있음이 눈에 띈다. 본 연구에서의 결혼과 출산연령 조합에 의한 집단 구분에 따르면 늦게 출산한 경우 의료적 도움을 받은 경우가 뚜렷이 증가하나, 그 중에서도 결혼이 만 30세 미만으로 늦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초산이 늦은 경우 자연임신 비율이 낮아 단순히 늦은 결혼이 출산의 위험 요인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가구소득은 높을수록 이러한 보조생식술 등 의료기술의 도움에 의한 임신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가구의 경제적 능력에 따른 보조생식술에의 접근성 차이를 보여주는 결과라고 보여지는 부분이다. 비록 난임부부 지원 사업으로 인

해 많은 저소득 가구에서 고가의 비용이 소요되는 시험관 시술에의 접근성이 높아졌지만, 그럼에도 지원의 횟수 제한으로 인해 저소득 가구로서는 지원 한도 내에서 임신이 안 될 경우 더 이상의 시도를 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비용 부담 능력이 높은 고소득 가구에서 보조생식술에 의한 임신 성공률이 결과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여전히 가구소득에 따른 보조생식술 이용에 대한 지원 확대의 필요성이 발견된다고 할 수 있겠다.

〈표 III-2-15〉 인공수정, 시험관 시술을 통한 임신

단위: %(명), 만원

정부 난임부부 지원 사업 수혜여부		인공수정, 시험관시술 소요비용						평균
지원받음	지원받지 않음	500만원 미만	500~700만원 미만	700~1,000만원 미만	1,000만원 이상	계		
58.8	41.2	29.4	29.4	17.6	23.6	100.0(17)	895.88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는 난임부부 지원 사업은 ‘인공수정’과 ‘시험관 시술’의 시술비 비용 지원을 내용으로 한다. 이에 <표 III-2-15>에서 인공수정 또는 시험관 시술로 자녀를 임신하였다고 응답한 17사례를 대상으로 정부의 지원사업의 수혜 여부와 수혜 여부를 불문하고 소요된 총 비용을 응답하도록 하였다. 응답 결과 17사례 중 58.8%가 난임부부 지원 사업의 수혜를 받았으며, 이러한 시술에 소요된 총 비용은 평균 895.9만원에 육박하여 지원사업의 수혜 경험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비용 부담이 컸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출산 당시 상황

다음으로 응답 가구의 첫 출산 방법과 첫 출산 시 산후조리 방법을 응답가구의 제 특성별로 살펴보았다.

<표 III-2-16>에 따르면 이들의 첫 출산은 ‘자연분만’인 경우가 76.0%로 가장 많았으나 ‘계획된 제왕절개’가 15.0%, ‘계획되지 않은 제왕절개’가 9.0%로 제왕절개의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출산 방법은 초산연령과 초혼연령, 가구소득에 따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초산연령이 35세 이상인 경우 자연분만 비율이 62.0%로 35세 미만의 82.0%와 20%의 격차를 보였고, ‘계획된 제왕절개’의 비율이 만 35세 미만의(9.3%) 3배 이상인 28.3%로 제왕절개를 계획적으로 높게 선택하는 경향을 보였다.

초혼연령이 높을수록 자연분만률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며, 가구소득이 높아질수록 자연분만률은 낮아지고 '계획된' 제왕절개의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경향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음에 눈에 띈다.

〈표 III-2-16〉 출산방법

단위: %(명)

구분	자연분만	계획된 제왕절개	계획되지 않은 제왕절개	계	X ² (df)
전체	76.0	15.0	9.0	100.0(1,000)	
모 초산연령					
만35세 미만	82.0	9.3	8.7	100.0(700)	62.058(2) ***
만35세 이상	62.0	28.3	9.7	100.0(300)	
초혼연령					
만25세 미만	84.3	9.8	5.9	100.0(51)	38.060(6) ***
만25세~30세 미만	80.1	10.8	9.1	100.0(472)	
만30세~35세 미만	75.0	16.1	8.9	100.0(384)	
만35세 이상	54.8	34.4	10.8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79.8	10.9	9.3	100.0(322)	19.483(6) **
300~400만원 미만	79.6	13.0	7.5	100.0(362)	
400~500만원 미만	69.1	20.6	10.3	100.0(175)	
500만원 이상	66.7	22.7	10.6	100.0(141)	

** $p < .01$, *** $p < .001$

다음으로 현재 영유아 자녀 1명이 있는 응답가구의 해당 자녀 출산 시 산후조리 방법을 살펴보면, 57.9%는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여 산후조리원 이용이 보편화되는 경향을 보였으나 그밖에는 친정부모 등 친인척의 도움을 받아 산후조리를 했다는 응답이 37.6%로 친인척의 도움 또한 산후조리의 주된 방법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현재 우리나라 산모의 주된 산후조리방법은 산후조리원 이용 혹은 친인척의 도움을 받은 산후조리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산후조리방법의 차이는 거주지역의 규모, 가구소득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나 초산연령과 초혼연령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이 대도시나 중소도시인 경우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읍면지역 거주시 친정부모 등 친인척 도움으로 산후조리를 했다는 응답이 54.2%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지역규모별 산후조리 인프라의 차이가 일부 반영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산후조리원 이용률이 높아져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에서 47.5%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친인척의 도움을 받은 경우는 44.7%이나 500만원 이상 가구에서는 73.0%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24.1%만이 친정부모 등의 도움을 받아 산후조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17〉 산후조리방법

단위: %(명)

구분	친정 부모 친인척 도움	산후 도우미	산후 조리원	배우자의 도움	계	$\chi^2(df)$
전체	37.6	3.6	57.9	0.9	100.0(1,000)	
지역규모						
대도시	30.0	2.9	66.1	1.1	100.0(454)	35.599(6) ***
중소도시	39.9	4.1	55.5	0.5	100.0(391)	
읍면지역	54.2	4.5	40.0	1.3	100.0(155)	
모 초산연령						
만35세 미만	39.3	3.4	56.4	0.9	100.0(700)	2.874(3)
만35세 이상	33.7	4.0	61.3	1.0	100.0(300)	
초혼연령						
만25세 미만	45.1	5.9	47.1	2.0	100.0(51)	11.279(9)
만25세~30세 미만	40.5	2.5	56.4	0.6	100.0(472)	
만30세~35세 미만	34.1	4.9	59.9	1.0	100.0(384)	
만35세 이상	33.3	2.2	63.4	1.1	100.0(93)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44.7	5.3	47.5	2.5	100.0(322)	45.409(9) ***
300~400만원 미만	40.1	2.5	57.5	-	100.0(322)	
400~500만원 미만	30.3	3.4	65.7	0.6	100.0(175)	
500만원 이상	24.1	2.8	73.0	-	100.0(141)	

*** $p < .001$

3) 임신·출산 관련 문제 경험

다음으로 첫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태아와 임신부의 건강, 신생아의 건강, 산모의 건강 문제 등을 겪은 경험이 있는지를 살펴 본 결과는 <표 III-2-18>에 제시된 바와 같다.

임신·출산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 중 임신우울증, 임신성 고혈압·갑상선 질환·당뇨·빈혈·임신중독증 등 ‘임산부의 건강 문제’의 경험 비율이 가장 높아서 응답 사례 중 7%에서 이러한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산모의 출산·회복시의 건강 문제’가 3.0%, 전치태반·태반조기박리·양수와 소증·양수과다증·자궁근무력증 등 ‘태아의 건강문제’ 2.6%의 순으로 문제를 경험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이러한 임신·출산과정에서의 문제 경험 비율이 매우 높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전체 출산에서 2~3%, 많게는 7%에 이르는 문제 경험률이 무시할 수 있는 비율 또한 아닐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이러한 문제를 경험한 사례에서 일반적인 임신 중 검진 혹은 일반적인 출산 비용 이외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된 경우가 각 문제별로 적게는 58.6%에서 많게는 89.5%까지 나타나므로 문제 경험시 비용 부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임신 중 혹은 출산 후 자녀의 건강 문제가 있었을 경우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데, 자녀의 건강 문제와 관련된 비용은 자녀가 성장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비용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하겠다.

<표 III-2-18> 첫 자녀 임신·출산 시 문제 경험 및 비용 발생 정도

단위: %(명)

구분	문제 경험	계	비용 발생	전체
임산부의 건강 문제	7.0	100.0(1,000)	58.6	100.0(70)
태아의 건강문제	2.6	100.0(1,000)	76.9	100.0(26)
37주 미만의 출산	1.9	100.0(1,000)	68.4	100.0(19)
2.5kg 미만의 저체중아 출산	2.4	100.0(1,000)	75.0	100.0(24)
기타 자녀의 건강문제	0.6	100.0(1,000)	83.3	100.0(6)
산모의 출산·회복시 건강문제	3.0	100.0(1,000)	70.0	100.0(30)
자녀의 신생아집중치료실 또는 미숙아실 입원	1.9	100.0(1,000)	89.5	100.0(19)

이러한 문제 중 가장 경험 비율이 높았던 ‘임산부의 건강 문제’ 경험을 응답자 가구의 제 특성에 따라 살펴보았다.

〈표 III-2-19〉 임산부의 건강문제 - 문제경험여부

				단위: %(명)
구분	예	아니오	계	$\chi^2(df)$
전체	7.0	93.0	100.0(1,000)	
모 초산연령1				
만30세 미만	3.6	96.4	100.0(331)	26.827(2)***
만30세~35세 미만	4.9	95.1	100.0(369)	
만35세 이상	13.3	86.7	100.0(300)	
모 초산연령2				
만35세 미만	4.3	95.7	100.0(700)	26.406(1)***
만35세 이상	13.3	86.7	100.0(300)	
초혼연령				
만25세 미만	3.9	96.1	100.0(51)	19.061(3)***
만25세~30세 미만	4.0	96.0	100.0(472)	
만30세~35세 미만	9.1	90.9	100.0(384)	
만35세 이상	15.1	84.9	100.0(93)	
결혼과 출산조합				
30세미만 결혼 35세미만 출산	3.6	96.4	100.0(497)	27.708(3)***
30세미만 결혼 35세이상 출산	11.5	88.5	100.0(26)	
30세이상 결혼 35세미만 출산	5.9	94.1	100.0(203)	
30세이상 결혼 35세이상 출산	13.5	86.5	100.0(274)	
경력단절 경험				
있음	11.9	88.1	100.0(177)	8.561(2)*
없음	5.5	94.5	100.0(617)	
비해당	7.3	92.7	100.0(206)	

* $p < .05$, *** $p < .001$

〈표 III-2-19〉에 따르면 초산연령, 초혼연령, 결혼과 출산연령의 조합 집단별, 경력단절 경험 여부별 임산부의 건강 문제 경험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초산연령에 따라서는 초산연령이 높을수록 임산부의 건강문제를 경험한

비율이 높고, 특히 만 35세를 기점으로 임신부의 건강문제 경험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만 35세 미만 초산한 경우 임신부의 건강문제를 경험한 비율은 4.3%이나 만 35세 이상 초산 집단에서는 13.3%가 임신부의 건강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초혼연령도 높아질수록 임신부의 건강문제 경험비율이 높아지고 있고 결혼과 출산연령의 조합 집단별로는 만 30세 이상 만혼에 만 35세 이상 고령 출산 집단에서 이러한 문제 경험 비율이 가장 높으나, 그 다음으로는 30세 미만에 결혼하였으나 35세 이상에 출산한 집단에서 임신부의 문제 경험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들이 임신·출산에 있어 만혼 및 고령출산 집단에 이어 취약성이 높은 집단인 것으로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과거 출산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 경험이 있는 집단에서 임신부의 건강문제를 경험한 비율이 11.9%로 높게 나타나는 바, 이러한 문제 경험이 경력단절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을 추측케 하는 부분이다.

라. 임신·출산 관련 정책 수혜 경험

만혼과 함께 초산연령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앞서 분석한 것처럼 임신·출산에서의 어려움을 겪는 부부는 향후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신과 출산, 그리고 양육에서의 어려움이 증가하면서 증가하는 비용 부담과 부족한 양육지원 자원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임신·출산 지원 정책 또한 급격히 증가하였는바, 최근 임신·출산 경험이 있는 본 연구의 대상자에게 이러한 임신출산지원정책을 알고 있는지 여부와 수혜 경험을 살펴보았다.

〈표 III-2-20〉 임신·출산지원정책의 인지 및 수혜

단위: %(명)

구분	인지			수혜경험		
	인지	비인지	계	있음	없음	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56.9	43.1	100.0(1,000)	2.6	97.4	100.0(569)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고운맘카드지원)	91.3	8.7	100.0(1,000)	78.2	21.8	100.0(913)
아동의료비 지원 (예방접종비 등)	86.6	13.4	100.0(1,000)	68.6	31.4	100.0(866)

(표 III-2-20 계속)

구분	인지			수혜경험		
	인지	비인지	계	있음	없음	계
출산장려금(일시금) 지원	88.1	11.9	100.0(1,000)	38.9	61.1	100.0(881)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67.5	32.5	100.0(1,000)	9.0	91.0	100.0(675)

임신·출산지원 정책 중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정책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고운맘카드 지원)’으로 91.3%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이밖에 ‘출산장려금(일시금) 지원’은 88.1%가, ‘아동의료비(예방접종비 등) 지원’은 86.6%가 인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67.5%)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56.9%)의 인지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는데 이는 이 지원들은 보편적으로 지원되지 않고 일정 소득 이하 등 특정 대상에게만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이처럼 각 임신·출산지원정책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사례들을 대상으로 실제 지원을 받은 경험을 살펴보았는데, 수혜경험이 가장 많은 정책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고운맘카드)’으로 이를 알고 있는 913사례 중 78.2%가 지원받은 경험이 있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이를 알고 있는 569사례 중 2.6%만이 지원받은 경험이 있어 가장 수혜 사례가 적은 지원이었다. 인지율이 높은 지원이 수혜 경험 또한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출산장려금’의 경우 인지율이 88.1%로 매우 높았음에도 실제 수혜 경험은 38.9%로 비교적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지자체별로 시행되는 일시금 형태로서 대부분의 산모들이 이러한 현금 지원에 대한 관심은 높으나, 지자체별 시행여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제 수혜 받은 경우는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임신출산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율은 초산연령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III-2-21 참조).

〈표 III-2-21〉 초산연령별 임신·출산지원 정책 인지율

단위: %(명)

구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아동의료비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계
전체	56.9	91.3	86.6	88.1	67.5	100.0(1,000)
모 초산연령						
만35세 미만	55.3	90.7	85.7	88.9	68.7	100.0(700)
만35세 이상	60.7	92.7	88.7	86.3	64.7	100.0(300)

다음으로 이러한 임신·출산 지원정책 수혜 경험에 있는 사례들의 만족도를 살펴보았다.

〈표 III-2-22〉 임신·출산지원정책 수혜시 만족도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만족	매우 만족	총합		계	평균
					불만족	만족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20.0	80.0	-	20.0	80.0	100.0(15)	2.80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고운맘카드지원)	1.3	17.9	70.7	10.1	19.2	80.8	100.0(714)	2.90
아동의료비 지원 (예방접종비 등)	1.7	16.0	69.0	13.3	17.7	82.3	100.0(594)	2.94
출산장려금(일사금) 지원	0.9	16.6	72.0	10.5	17.5	82.5	100.0(343)	2.92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0.0	13.1	70.5	16.4	13.1	86.9	100.0(61)	3.03

‘매우 불만족·1점’에서 ‘매우 만족·4점’에 이르는 4점 척도로 측정해 보았는데, 모든 정책에 대해 80% 이상이 매우 만족을 포함한 ‘만족한다’는 견해를 보여 만족하는 경우가 대다수였고, 4점 척도로 측정한 만족도의 평균 점수는 평균 2.8점~3.03점에 분포하였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으로 지원 받은 사례는 61 사례에 불과하였으나 평균 3.03점으로 수혜자의 만족도는 가장 높았으며 또한 수혜 사례수가 15 사례에 불과하였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2.8점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마. 후속출산계획

본 연구의 응답자들은 모두 미취학 연령대 자녀 1명만을 둔 한자녀 가구의 어머니이다. 현재 자녀가 있으나 향후 추가 출산 계획을 할 가능성이 충분한 경우로 후속출산계획 여부와 후속출산계획 자녀수 등 후속출산 관련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살펴보았다.

현재 둘째 자녀를 임신 중인 경우를 포함해 추가 자녀를 출산할 계획이 있는 경우는 전체 1,000사례 중 40%에 해당하였으며 ‘낳지 않겠다’는 응답이 34.3%, ‘생각중’으로 유보적인 입장이 25.7%로 나타났다.

〈표 III-2-23〉 향후 자녀출산계획

단위: %(명), 명

구분	후속출산계획 여부					후속출산계획 자녀수	
	현재 임신중임	낳겠다	낳지 않겠다	생각중	계	평균	계
전체	4.3	35.7	34.3	25.7	100.0(1,000)	1.1	100.0(400)
모연령							
만30세 미만	6.1	54.8	17.4	21.7	100.0(115)	1.1	100.0(70)
만30~35세 미만	5.3	48.0	23.5	23.2	100.0(452)	1.1	100.0(241)
만35~40세 미만	3.7	20.4	42.6	33.3	100.0(324)	1.1	100.0(78)
만40세 이상	-	10.1	72.5	17.4	100.0(109)	1.0	100.0(11)
$X^2(df)$, F			169.072(9) ^{***}			-.293	
모 초산연령							
만35세 미만	5.4	44.0	26.1	24.4	100.0(700)	1.1	100.0(346)
만35세 이상	1.7	16.3	53.3	28.7	100.0(300)	1.1	100.0(54)
$X^2(df)$, t			98.670(3) ^{***}			.020	
초혼연령							
만25세 미만	7.8	45.1	27.5	19.6	100.0(51)	1.1	100.0(27)
만25세~30세	5.9	48.1	20.6	25.4	100.0(472)	1.1	100.0(255)
만30세~35세	2.1	25.8	45.3	26.8	100.0(384)	1.1	100.0(107)
만35세 이상	3.2	8.6	62.4	25.8	100.0(93)	1.2	100.0(11)
$X^2(df)$, F			122.915(9) ^{***}			.541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5.3	45.7	24.2	24.8	100.0(322)	1.1	100.0(164)
300~400만원	2.5	35.4	36.2	26.0	100.0(362)	1.1	100.0(137)
400~500만원	6.3	26.9	44.0	22.9	100.0(175)	1.1	100.0(58)
500만원 이상	4.3	24.8	40.4	30.5	100.0(141)	1.1	100.0(41)
$X^2(df)$, F			40.710(9) ^{***}			.311	
현취업상태							
취업	3.9	28.6	40.9	26.6	100.0(259)	1.1	100.0(84)
취업중단	4.9	37.0	31.4	26.7	100.0(535)	1.1	100.0(224)
취업한적없음	3.4	41.3	33.5	21.8	100.0(206)	1.1	100.0(92)
$X^2(df)$, F			12.790(6) [*]			-.984	

* $p < .05$, *** $p < .001$

자녀를 더 출산하겠다는 경우 평균 1.1명 정도를 출산하고자 하였는데, 후속 출산계획은 현재 어머니의 연령, 초산연령, 초혼연령, 가구소득, 현재 취업상태에 따른 교차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어머니의 현재 연령이 높을수록, 초산을 만 35세 이상에 한 경우, 초혼연령이 높을수록 추가 자녀를 출산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고, 가구소득은 높을수록 추가 자녀를 낳지 않겠다는 응답이 대체로 높았다.

취업상태에 따라서는 현재 취업중인 경우 추가 자녀 출산 계획이 없는 경우가 40.9%로 가장 많고 취업한 적이 없는 경우 추가로 출산하겠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41.3%).

어머니의 연령이나 초산연령, 초혼연령 등 부모의 연령에 따라 자녀 출산, 특히 첫 자녀 출산 후의 추가 자녀 출산 의지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출산 관련 부모 요인 중 건강상태, 가치관, 경제력에 비해 '나이'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난 것과는 다소 배치되는 결과이다(표 III-1-18 참조).

이는 연령보다는 다른 요인들이 출산에 더 중요한 요인이라 생각하면서도, 정작 본인의 자녀 출산 계획에 있어서는 나이에 의해 좌우되고 있는 상황을 보이는 것으로 보인다.

〈표 III-2-24〉 임신 시도시 보조생식술을 받을 의사

구분	그렇다	아니다	계	단위: %(명)
				$\chi^2(df)$
전체	17.5	82.5	100.0(400)	
모 초산연령				
만35세 미만	18.2	81.8	100.0(346)	.890(1)
만35세 이상	13.0	87.0	100.0(54)	

추가 출산 계획 의지가 확실한 사례를 대상으로 임신 시도 시 임신이 잘 안 될 경우 배란유도, 인공수정, 시험관 시술 등 '보조생식술'까지 시도할 생각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는데, 총 400사례 중 17.5%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터부 시되던 보조생식술 이용에 대한 인식은 비교적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보조생식술을 받을 의사는 초산 집단에 따른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고 만 35세 미만에 첫 자녀를 출산한 집단에서(18.2%) 출산을 더 급하게 생각할 수 있는 만 35세 이상 초산 집단(13.0%)보다 오히려 보조생식술 이용에 더 적극적인 경향을 보임이 흥미롭다.

또한 추가출산 계획을 하는 경우 ‘터울’을 고려하는 경우가 40.8%로 나타났는데(표 III-2-25 참조), 이는 어머니의 연령, 초산연령, 현재 취업상태와 경력단절 경험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먼저, 어머니의 연령이 높을수록 터울을 고려하는 비율이 현격히 낮아져서 현재 만 30세 미만 어머니의 경우 50.0%가 터울을 고려하고 있으나, 만 35~40세 미만 어머니는 19.2%이 고려하며, 만 40세 이상 어머니는 단지 18.0%만 터울을 고려한다고 응답했다.

첫 자녀를 만 35세 이상 출산한 어머니와 만 35세 미만에 출산한 어머니 사이에도 터울 고려 여부는 차이가 났다. 만 35세 이상 초산한 경우 추가 자녀 출산 시에 터울을 고려한다는 응답은 18.5%에 불과하였다.

현재 취업중인 경우 터울을 고려하는 비율이 47.6%로 가장 높고, 취업한 적이 없는 경우 26.1%만이 터울을 고려하여 가장 낮은 고려 비율을 보였다.

또한 과거에 경력단절 경험이 있는 경우에 추가 자녀 출산 시 터울을 고려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48.1%).

이러한 경향을 보면 현재 연령이 높거나 첫 자녀를 늦게 출산한 어머니는 추가 출산을 하고자 할 경우 터울을 고려하지 않고 되도록 빠른 임신을 하고자 할 것으로 짐작된다. 반면 현재 연령이 낮거나 첫 자녀를 출산한 연령이 낮은 경우는 추가 자녀 출산을 하고자 하는 시기를 터울을 고려해 계획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현재 취업중이거나 과거 경력단절 경험이 있는 경우 일-가정의 양립 등의 이유로 출산 시기를 계획할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표 III-2-25〉 자녀출산 시 터울 고려

구분	터울 고려 여부			계획하는 터울	
	고려함	고려하지 않음	계	평균	계
전체	40.8	59.3	100.0(400)	2.8	100.0(163)
모연령					
만30세 미만	50.0	50.0	100.0(70)	2.8	100.0(35)
만30~35세 미만	46.1	53.9	100.0(241)	2.8	100.0(111)
만35~40세 미만	19.2	80.8	100.0(78)	3.0	100.0(15)
만40세 이상	18.2	81.8	100.0(11)	3.0	100.0(2)
$\chi^2(df)$, F	22.574(3) ^{***}			-.468	

(표 III-2-25 계속)

구분	터울 고려 여부			계획하는 터울	
	고려함	고려하지 않음	계	평균	계
모 초산연령					
만35세 미만	44.2	55.8	100.0(346)	2.8	100.0(153)
만35세 이상	18.5	81.5	100.0(54)	2.8	100.0(10)
$X^2(df, t)$	12.779(1)***			.032	
현취업상태					
취업	47.6	52.4	100.0(84)	2.9	100.0(40)
취업중단	44.2	55.8	100.0(224)	2.8	100.0(99)
취업한적이없음	26.1	73.9	100.0(92)	2.7	100.0(24)
$X^2(df, F)$	10.936(2)**			.637	
경력단절경험					
있음	48.1	51.9	100.0(77)	2.9	100.0(37)
없음	44.2	55.8	100.0(231)	2.9	100.0(102)
비해당	26.1	73.9	100.0(92)	2.7	100.0(24)
$X^2(df, F)$	11.003(2)**			.450	

** $p < .01$, *** $p < .001$

이처럼 터울의 고려 여부는 응답 가구의 특성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으나, 터울을 고려한다고 응답한 사례에서 계획하는 터울은 응답가구의 특성에 따른 뚜렷한 차이는 없었다. 즉, 평균 2.8년의 터울을 두고 추가 자녀를 출산하고자 하고 있었다.

추가자녀 출산 시 터울을 두고자 하는 경우, '경제력'을 가장 많이 고려하며 (41.1%), 그 외에는 '부모의 건강상태' 8.6%, '부모의 연령' 7.4%, '희망자녀수' 6.7%, '자녀양육을 도와줄 사람이나 기관 유무' 6.1%의 순으로 고려한다고 응답되었다.

〈표 III-2-26〉 터울 계획 시 고려사항

단위: %(명)

부모의 연령	경제력	취업· 퇴직 계획	희망 자녀수	직장의 여건	부모의 건강 상태	자녀의 의견	자녀 양육을 도와줄 사람 또는 기관 유무	특별히 고려한 사항 없음	기타	계
7.4	41.1	0.6	6.7	3.1	8.6	0.6	6.1	22.7	3.1	100.0(163)

다음으로 현재 자녀를 더 낳지 않겠다고 생각하거나 고민 중인 이유를 살펴 보았다. 1순위로 중시하는 이유로 가장 많이 응답된 것은 ‘양육비 부담 때문에’ 였으며 48.3%로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가 이를 선택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부모의 나이가 많아서’가 21.2%, ‘자녀 양육과 (직장)사회생활의 양립이 어려워서’ 11.0%, ‘자녀 양육이 (체력적으로) 힘들어서’가 10.7%로 비교적 많이 응답되었다.

2순위로 추가 자녀출산을 하지 않거나 망설이게 하는 이유 중 가장 주요한 이유는 ‘자녀양육이 (체력적으로) 힘들어서’로 25.3%가 응답하였고, ‘자녀 양육과 (직장)사회생활의 양립이 어려워서’ 18.5%, ‘양육비 부담’ 18.0%, ‘부모의 나이가 많아서’ 12.0% 순으로 나타나서 1순위와 2순위로 중시하는 이유들은 동일하나 순서에는 차이가 있었다.

즉, 자녀가 하나 있는 가구에서 후속 자녀 출산을 하지 않거나 주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양육비 부담’ 등 경제적 이유이나, 2순위로는 ‘자녀 양육으로 인한 체력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었고, 이와 함께 ‘일과 가정의 양립 가능성’, ‘부모의 연령’을 생각할 때 추가 자녀 출산이 어렵다고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표 III-2-27〉 자녀를 더 낳을 생각이 없거나 고민 중인 이유

구분	단위: %(명)	
	1순위	2순위
양육비 부담 때문에	48.3	18.0
자녀양육이 (체력적으로) 힘들어서	10.7	25.3
자녀 양육과 (직장)사회생활과의 양립이 어려워서	11.0	18.5
이미 원하는 자녀수에 도달하여서	2.8	3.0
부모의 나이가 많아서	21.2	12.0
부모의 건강상 문제 때문에	0.7	5.1
지인(조부모등)이 만류하여서	0.5	1.2
자녀양육을 도와줄 사람 또는 기관이 마땅치 않아서	3.3	11.5
취업이나 퇴직 계획 때문에	1.5	5.4
계	100.0(600)	100.0(574)

자녀 출산을 하지 않을 생각이거나 망설이게 하는 이유의 1순위 응답을 응답 가구의 제 특성별로 살펴보았다.

〈표 III-2-28〉에 따르면 현재 대체로 어머니의 연령이 낮을수록 ‘양육비 부담’ 때문에 자녀를 더 못 낳는다는 비율이 높아 현재 만 30세 미만의 어머니 중

62.2%, 만 30~34세 미만 어머니의 65.9%가 '양육비 부담 때문에' 추가 자녀 출산을 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보였고, 반면 만 40세 이상 어머니 중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자녀를 출산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23.5%에 불과하였다. 즉,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의 부부들이 추가 자녀를 출산하지 않으려는 주된 이유는 자녀 출산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임을 보여준다. 반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부모의 나이가 많아서'가 추가 출산을 하지 않는 주요 이유로 부상하고 있어, 만 30세 미만 어머니들 중에는 '나이가 많아서' 추가 자녀를 낳지 않겠다는 응답이 전무하나, 만 35세 이상에서 이러한 응답 비율이 급증하여 만 35~40세 미만 어머니는 27.2%가, 만 40세 이상인 경우는 56.1%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자녀를 더 낳지 않겠다고 응답하였다.

〈표 III-2-28〉 자녀를 더 낳을 생각이 없거나 고민 중인 이유 - 1순위

단위: %(명)

구분	양육비 부담 때문에	부모의 나이가 많아서	일가정 양립이 어려 워서	체력 부담 때문에	자녀 양육을 도와줄 사람 또는 기관이 마땅치 않아서	이미 원하는 자녀 수에 도달 하여서	취업 이나 퇴직 계획 때문에	부모의 건강상 문제 때문에	지인 (조부모 등)이 만류 하여서	기타	계
전체	48.3	21.2	11.0	10.7	3.3	2.8	1.2	0.7	0.5	0.3	100.0(600)
모연령											
만30세 미만	62.2	-	13.3	6.7	11.1	4.4	-	2.2	-	-	100.0(45)
만30~34세 미만	65.9	2.4	12.3	10.4	4.3	2.4	1.9	-	0.5	-	100.0(211)
만35~40세 미만	40.7	27.2	12.2	11.8	2.4	2.8	1.2	0.8	0.4	0.4	100.0(246)
만40세 이상	23.5	56.1	4.1	10.2	-	3.1	-	1.0	1.0	1.0	100.0(98)
모 초산연령											
만35세 미만	60.7	6.5	13.6	9.0	4.8	2.8	1.4	0.8	0.3	-	100.0(354)
만35세 이상	30.5	42.3	7.3	13.0	1.2	2.8	0.8	0.4	0.8	0.8	100.0(246)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60.1	13.9	3.2	13.3	4.4	2.5	1.3	0.6	0.6	-	100.0(158)
300~400만원 미만	53.3	20.4	7.6	10.2	3.1	2.7	1.3	0.9	0.4	-	100.0(225)
400~500만원 미만	42.7	23.9	16.2	9.4	2.6	3.4	-	-	0.9	0.9	100.0(117)
500만원 이상	25.0	31.0	25.0	9.0	3.0	3.0	2.0	1.0	-	-	100.0(100)

(표 III-2-28 계속)

구분	양육비 부담 때문에	부모의 나이가 많아서	일가정 양립이 어려워서	체력 부담 때문에	자녀 양육을 도와줄 사람 또는 가관이 마땅치 않아서	이미 완성 하는 자녀 수에 도달 하셔서	취업 이나 퇴직 계획 때문에	부모의 건강상 문제 때문에	지인 (조부모 등)이 만류 하여서	기타	계
현취업상태											
취업	40.0	17.1	28.0	6.3	4.0	2.9	0.6	0.6	-	0.6	100.0(175)
취업중단	53.4	21.5	3.2	11.9	2.9	3.5	1.9	0.6	0.6	0.3	100.0(311)
취업한적 없음	47.4	26.3	6.1	14.0	3.5	0.9	-	0.9	0.9	-	100.0(114)

주: 빈도분포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정이 적절하지 않음.

그러나 부모의 자녀 양육과 관련해 ‘나이’라는 측면에서 약점이 될 수 있는 건강상의 문제는 연령이 높은 경우에 두드러지지 않고 있고, ‘체력부담’ 문제도 현재 연령이 높은 어머니에게서 특별히 문제시 되지는 않고 있어 앞서 ‘임신·출산의 적령기’라는 측면에서 나타난 출산시기에 대한 가치관이 나이가 많은 어머니의 출산을 주저하게 하는 주요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령 초산’의 여부에 따른 추가출산을 하지 않으려는 이유에도 비슷한 경향이 발견되어 초산을 일찍 한 집단에서는 ‘양육비 부담’ 등 경제적 이유로(60.7%) 추가 출산을 하지 않으려 하나, 고령 초산 집단에서는 이보다는 ‘나이가 많아서’가 가장 주된 출산 포기 이유가(42.3%) 되고 있음이 드러난다. 다만, 고령초산 집단은 초산은 빨랐던 경우도 포함된 현재 연령이 높은 어머니에 비해 ‘체력부담’도 추가출산을 주저하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고, ‘나이’만이 아니라 ‘양육비 부담’도 30.5%로 이유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초산’ 지연 자체로 인한 경제적·체력적 부담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가구소득 수준은 낮을수록 ‘양육비 부담 때문에’ 추가출산을 하지 않겠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 300만원 미만에서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추가출산을 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60.1%에 달한다. 반면 500만원 이상 소득 가구에서는 25.0%가 이에 해당하였다.

‘일-가정 양립이 어려워져서’라는 응답은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높아지는 추가출산 포기 이유로서, 어머니의 취업으로 인해 가구소득이 높는데, 이러한 경우 추가 출산을 할 경우 자녀 양육과 직장생활 양립이 어려워질 수 있어 경제적 여

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더 낳지 않으려 하게 되는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경향은 현재 어머니의 취업상태별 차이에서 뚜렷이 나타난다. 현재 취업 상태가 아닌 경우 일-가정 양립 때문에 추가 자녀를 출산하지 못한다는 응답은 현저히 낮게 나타난다. 다만, 현재 어머니가 취업중인 경우에도 양육비 부담은 '일-가정 양립이 어렵다'는 이유보다 더 큰 출산을 주저하는 이유로 나타난다. 이는 어머니가 취업을 하여도 가구소득이 그리 높지 않은 가구가 많으며, 어머니 취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양육비 부담도 가중되어 나타나는 결과라 사료된다.

〈표 III-2-29〉 정부 출산양육지원 확대 시 자녀출산 계획

단위: %(명)				
구분	그렇다	아니다	모르겠음	계
전체	16.2	51.0	32.8	100.0(600)
모 초산연령				
만35세 미만	19.5	44.9	35.6	100.0(354)
만35세 이상	11.4	59.8	28.9	100.0(246)
$X^2(df)$	14.175(2)**			
초혼연령				
만25세 미만	12.5	41.7	45.8	100.0(24)
만25세~30세 미만	23.0	39.6	37.3	100.0(217)
만30세~35세 미만	11.9	54.9	33.2	100.0(277)
만35세 이상	13.4	70.7	15.9	100.0(82)
$X^2(df)$	32.794(6)***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16.5	50.0	33.5	100.0(158)
300~400만원 미만	15.1	49.8	35.1	100.0(225)
400~500만원 미만	14.5	54.7	30.8	100.0(117)
500만원 이상	20.0	51.0	29.0	100.0(100)
$X^2(df)$	2.656(6)			
현취업상태				
취업	20.0	52.9	27.4	100.0(175)
취업중단	11.9	48.6	39.5	100.0(311)
취업한적이없음	21.9	55.3	22.8	100.0(114)
$X^2(df)$	17.616(4)**			

** $p < .01$, *** $p < .001$

다음으로 전체 응답사례 중 향후 자녀를 더 출산하지 않겠다거나 망설이고 있는 등 추가출산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600사례만을 대상으로 정부의 출산양육 지원이 더 확대된다면 추가로 출산할 수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표 III-2-29>에 나타난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출산양육지원 정책이 확대되면 추가로 더 출산할 수 있겠다는 응답은 16.2%로 나타났고, 51.0%는 정책에 상관없이 더 출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러한 응답 결과를 긍정적으로 해석한다면 대부분 본인의 상황에 따라 출산을 계획하나 약 16% 정도는 정책을 통해 출산율을 증진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정부 정책에 상관없이 추가 출산을 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51.0%이며, 32.8%는 잘 모르겠다는 응답으로 지원 내용과 범위에 따라 추가적인 출산률 증진의 가능성도 엿보였다.

정부정책 확대에 따른 추가출산 가능성을 초산연령, 초혼연령, 가구소득, 현재 취업 상태에 따라 교차 분석한 결과, 초산연령, 초혼연령, 현재 취업 상태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즉, 초산연령이 만 35세 미만인 경우, 초혼연령이 만 25~30세 미만인 경우, 현재 취업중인 경우에서 정부지원 확대에 따라 추가 출산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전통적으로 선호되는 시기에 결혼과 출산이 이루어져서 가임능력에 있어 어려움이 적을 가능성이 높은 집단이나 취업으로 인한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으로 인해 출산의지가 낮을 가능성이 높아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을 감소시킬 수 있는 지원을 통한 출산율 증진 효과가 큰 목표 집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현재의 결혼 적령기에 결혼하고 임신·출산의 적령기에 출산하는 집단이 점차 감소하는 것이 추세임을 고려하면, 정책 지원의 효과가 높은 집단뿐 아니라 결혼과 출산이 늦어지는 집단의 출산율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또한 동시에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3. 초혼 및 초산연령별 집단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의 결혼(초혼) 연령과 출산(초산) 연령을 기준으로 응답자를 4개의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기준이 되는 초혼 연령은 기존의 연구에서 '만혼'의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만 30세를 기준으로 하며, 초산 연령은 '고령, 고위험 출산'의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만 35세를 기준으로 하였다.

이에 결과적으로 '만 30세 미만 결혼하여 만 35세 미만 초산한 집단', '만 30세 미만 결혼하였으나 만 35세 이상에 초산한 집단', '만 30세 이상 결혼하여 만 35세 미만 초산한 집단', '만 30세 이상 결혼하여 만 35세 이상에 초산한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이를 다른 용어로 풀어보면 '만 30세 미만 결혼 & 만 35세 미만 초산 집단 = 결혼적령기 결혼, 출산적령기 출산 집단', '만 30세 미만 결혼 & 만 35세 이상 초산 집단 = 결혼적령기 결혼, 고령 출산', '만 30세 이상 결혼 & 만 35세 미만 초산 집단 = 만혼, 출산적령기 출산 집단', '만 30세 이상 결혼 & 만 35세 이상 초산 집단 = 만혼, 고령 출산 집단'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응답대상인 현재 미취학 자녀 1명이 있는 가구의 어머니 중 '결혼적령기 결혼, 출산적령기 초산 집단'이 49.7%로 비중이 가장 크고, 다음으로 '만혼, 고령 출산 집단'이 27.4%에 해당하며, '만혼, 출산적령기 초산 집단'이 20.3%, '결혼적령기 결혼, 고령출산 집단'이 2.6%로 나타났다.

〈표 III-3-1〉 초혼 및 초산연령별 집단 구분

		단위: %(명)
구분	비고	계
결혼적령기 결혼, 출산적령기 출산 집단	만 30세 미만 결혼, 만 35세 미만 초산	49.7(497)
결혼적령기 결혼, 고령출산 집단	만 30세 미만 결혼, 만 35세 이상 초산	2.6(23)
만혼, 출산적령기 출산 집단	만 30세 이상 결혼, 만 35세 미만 초산	20.3(203)
만혼, 고령 출산 집단	만 30세 이상 결혼, 만 35세 이상 초산	27.4(274)
계		100.0(1,000)

이러한 결혼과 출산 연령 조합의 집단 구분에 따라 이들 가구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표 III-3-2〉 초혼 및 초산연령별 집단의 특성

단위: %(명)

구분	결혼적령기 출산적령기	결혼, 초산	결혼적령기 고령출산	결혼, 출산적령기 초산	만혼, 고령출산	전체
학력						
고졸이하	26.8		46.2	21.7	27.7	26.5
2년제대졸	30.4		26.9	22.7	25.9	27.5
4년제 대졸이상	42.9		26.9	55.7	46.4	46.0
X ² (df)		16.483(6)***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41.6		15.4	29.1	19.0	32.2
300~400만원 미만	34.0		26.9	40.4	38.0	36.2
400~500만원 미만	14.5		34.6	14.8	23.4	17.5
500만원 이상	9.9		4.3	15.8	19.7	14.1
X ² (df)		61.560(9)***				
경력단절경험						
있음	17.9		26.9	14.8	18.6	17.7
없음	59.4		53.8	68.0	62.0	61.7
비해당	22.7		19.2	17.2	19.3	20.6
X ² (df)		6.822(6)				
계	100.0(497)		100.0(26)	100.0(203)	100.0(274)	100.0(1,000)

*** $p < .001$

이러한 초혼 및 초산연령 집단별로 학력과 가구소득의 차이가 나타났는데, 학력이 가장 높은 집단은 만 30세 이후에 결혼하고 만 35세 이전에 출산한 ‘만혼, 출산적령기 출산 집단’이어서 4년제 대졸이상의 비율이 55.7%였고, 가장 학력이 낮은 집단은 ‘결혼적령기 결혼, 고령출산 집단’으로 4년제 대졸 이상의 비율이 26.9%에 불과하여 다른 집단이 4년제 대졸 이상이 40%이상인 것과 대조되었다.

가구소득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500만원 이상 고소득 가구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만혼, 고령출산 집단’으로 19.7%가 이에 해당하였고 ‘만혼, 출산적령기 출산 집단’은 15.8%가 500만원 이상 고소득 가가로 ‘만혼’인 경우 공통적으로 고소득 가구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300만원 미만 가구의 비중이 가장 큰 집단은 ‘결혼적령기 결혼, 출산적

령기출산 집단'으로 41.6%가 이에 해당하였는데, 이는 만 30세 미만 결혼하고 만 35세 미만 출산한 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현재 연령 자체가 낮은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결혼적령기 결혼, 고령출산 집단'은 500만원 이상 고소득 가구의 비중은 가장 낮았지만(4.3%), 400~500만원 미만의 비중은 가장 높고(34.6%), 300만원 미만 저소득 가구의 비중도 15.4%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출산·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 경험의 특성을 살펴보면, 초혼 & 초산 연령 집단에 따른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결혼적령기결혼, 고령출산 집단'에서 이러한 경력단절 경험이 있는 경우가 가장 많이 나타나며(26.9%), '만혼, 고령출산 집단'도 18.6%로 '고령출산'한 경우의 경력단절 경험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4. 소결

이 장에서는 20~49세 이하 가임연령대 여성 중 현재 영유아 자녀 1명만을 두고 있는 가구들의 결혼 및 임신·출산 실태를 분석하였으며, 초혼연령과 초산 연령에 따른 차이에 집중하여 결혼과 출산 연령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실태의 원인과 이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이에 본 절에서는 이러한 실태 분석 결과의 요약 및 이로부터 얻어진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결혼 실태 및 이에 따른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본 연구의 응답자들의 4명 중 3명은 결혼 전 결혼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고(75.2%), 선택적 입장인 경우가 24.0%이나 '하지 않는 게 낫다'는 부정적 입장이었던 경우는 희소하였다(0.8%). 또한 결혼 적령기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여성에 대해 59.6%, 남성에게 대해 52.9%로 나타나 결혼적령기에 대한 인식은 비교적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적령기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여성의 경우 최저 25.4세~최고 33.3세, 남성 최저 29.3세~최고 35.5세 정도로 나타나, 최고 연령이 현재의 평균 초혼연령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미 결혼을 한 사례들이 본 연구의 응답 대상임을 고려할 때, 결혼적령기에 대한 인식률도 낮은 편이며 결혼적령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적정하다고 보는 최

저·최고 연령대도 비교적 높은 편이며, 최저·최고 연령대의 범위도 7세 이상으로 넓은 편으로 나타나 결혼의 개별성과 다양성에 대한 인식이 드러나고 있다.

둘째, 본 연구의 응답자들 만 30세 이상 결혼하거나 혹은 본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결혼적령기를 벗어나 결혼한 것으로 보이는 만 35세 이상에 결혼한 집단 등 만혼 집단에서는 결혼과 관련해 그들만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었다.

만 35세 이상의 나이에 결혼한 경우 그 이전에 결혼한 사례에 비해 결혼에 대해 선택적 입장을 지닌 경우가 많아서, 31.2%가 결혼 전에 ‘결혼은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는 입장을 보였고 결혼 시 경제적 조건으로 주택 마련에 대하여 본인이나 배우자 소유의 집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다(30.1%). 또한 독신의 삶을 즐기기 위해서 결혼을 늦게 한 경우도 다른 집단에 비해 많은 편이었다. 하지만 이들은 결혼 시 부모님으로부터 조력을 받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았고 그들의 배우자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러한 만혼 집단의 특징은 더 많은 젊은 세대에 확산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로써 향후 결혼 연령이 늦어지는 집단이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결혼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기준에서의 ‘만혼’은 향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이러한 늦은 결혼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만혼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실제 결혼 연령이 높을수록 본인의 결혼이 늦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아 만 25세~30세 미만에서 ‘결혼이 늦었다’고 생각한 비율은 3%에 불과하나 만 30세 이상 결혼에서 35.2%, 만 35세 이상 결혼에서 76.3%로 ‘결혼이 늦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급증하였다. 이처럼 본인이 결혼을 늦게 했다고 생각하는 경우 중 23.7%가 늦은 결혼에 대해 불만족스러워하고 있었는데 그들 대부분이 만 30세 이상의 나이에 결혼을 한 경우였고 특히 출산을 만 35세 이상의 나이에 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불만족의 이유는 초혼 연령에 따라가 차이가 있었는데 만 30세 이상~35세 미만 집단의 경우 양육의 체력적 부담을, 만 35세 이상 집단은 양육보다 임신·출산의 어려움을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그 외에 만 35세 이상의 나이에 결혼한 집단은 사회생활·직장생활에서의 곤란, 주변의 양육 지원 인력의 노쇠나 부재, 추가 출산의 어려움을 그 이전에 결혼한 경우에 비해 더 많이 응답하였다.

그런데, 이들은 흔히 생각하듯이 ‘개인주의’적인 사고 때문에 결혼이 늦어졌다기보다는 ‘특별한 이유가 없이’ 늦어진 경우가 많았고(39.1%), ‘배우자감이 없어

서'도 37.7%에 해당하였다. 이처럼 본인이 원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이유 없이', '배우자감이 없어서' 결혼이 늦어지는 경향이 뚜렷하다는 것은 학업과 취업 등 인생 과업을 밟아가는 바쁜 과정에서 배우자를 찾는 것조차 여유가 없는 안타까운 실태가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출산에 있어 '나이'는 상대적으로 덜 중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혼의 문제점으로 임신·출산의 어려움, 양육의 체력적 부담, 추가출산의 어려움 등 임신·출산과 관련된 문제점이 가장 많이 지적되는 부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나이'보다는 '건강상태'나 '경제력'을 출산에 있어 더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었다. 즉, 이러한 인식은 만혼 시대에 결혼적령기와 임신·출산적령기를 강조하는 것보다는 가임연령대의 건강관리와 경제적 부담 경감이 자녀 출산을 촉진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임을 시사한다 하겠다.

다음으로 임신·출산과 관련된 실태 및 시사점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영유아 1명을 두고 있는 가임연령대의 어머니들은 자녀의 필요성 등 출산과 관련한 가치관에 있어 비교적 긍정적 경향을 보였으나, 출산을 '결혼'의 연장선상에서 생각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초산 연령이 높은 어머니에게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었는데, '결혼'이 출산의 관문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만혼 경향은 분명히 출산을 저하를 유발하는 주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응답 대상 어머니들에게는 출산에 대한 '연령' 규범이 뚜렷하게 드러났고, 이에 대한 필요 이상의 편견이 출산 의지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음이 발견되었다. 남녀, 특히 여성에게 있어 결혼적령기 뿐 아니라 임신·출산의 적령기가 있다는 응답이 75%를 상회하고 있었고, 만 35세 이상의 '고령 임신·출산'에 대해 임신, 임신유지, 건강한 출산, 자녀 양육 등 모든 면에서 취약성이 많다는 점에 동의하는 비율이 높았다.

흥미로운 점은 '임신·출산 적령기'가 있다는 응답 비율이 '결혼적령기'가 있다는 응답 비율보다도 더 높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또한 적절한 임신·출산 시기로 응답한 연령대도 여성은 26~34세, 남성 28~36세로 '결혼적령기'와 거의 동일한 연령대로 나타나, 자녀 출산 계획이 있는 경우라면 '임신·출산 적령기'에 맞춰 결혼을 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연령'을 중시하는 경향은 첫 출산 시기 계획과 후속출산 계획에 있어서도 드러났다. 첫 출산 시기를 계획할 때 부모의 연령의 높고 낮음에 따라 출

산 시기를 계획했다는 비율이(31.1%) '경제력'(31.9%)다음으로 높았으며, 후속출산을 하지 않겠다는 이유 역시 '부모의 나이가 많아서(21.2%)'로 '양육비 부담(48.3%)'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35세 이상 초산한 고령출산모 집단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셋째, 고령초산모의 경우는 난임으로 인해 초산이 늦어진 경우가 아닌 늦은 결혼과 출산계획 자체가 늦음으로 인해 고령초산모가 된 경우가 일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35세 미만 초산모 집단에 비해 임신·출산계획을 했더라도 계획보다 임신·출산이 늦어지는 경우는 더 많은 것으로 보이며, 유·사산 등 임신 기간 중의 어려움을 겪은 경우도 두드러지고 있어 결혼이 늦지 않은 경우 임신·출산 계획을 적극적으로 세우도록 도움을 줄 필요가 있음이 드러났다.

넷째, 고령초산모 집단 중 특히 결혼은 빨랐으나 비의도적으로 초산이 늦어진 집단이 가장 취약성이 큰 집단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유·사산 비율은 34.6%에 이르고, 자연 임신률도 30세 이상 늦게 결혼하여 초산이 늦어진 집단의 90.5%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76.9%로 나타나, 결혼 시기가 빠르거나 여성의 연령이 낮더라도 적극적인 난임 극복 지원이 필요한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고령출산 가족의 후속자녀 출산 계획 비율은 18.0%에 불과하여 35세 미만 초산 집단의 49.4%에 비해 크게 낮았으며, 가임연령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많아서' 못 낳는다는 응답이 주된 출산 포기 이유로 나타났다. 고령출산의 위험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출산에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나이'의 중요성보다는 '건강'이나 '경제력'의 중요성이 더욱 높게 나타난 결과를 고려할 때 건강과 경제력을 갖춘 고령출산 가족에서 '연령'에 대한 과도한 편견으로 인해 출산을 포기하지 않도록 고령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위험'에서 '가능성'으로 조정할 필요가 제기된다.

IV. 초산연령대에 따른 자녀 양육 실태 및 요구

이 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실시한 ‘가족변화에 따른 출산 양육 실태조사’에서 나타나는 영유아의 기관 이용 등 자녀 양육 실태와 취업 관련 실태 및 요구, 그리고 일·가정 양립지원제도 이용 실태 및 수요를 특히 모의 초산연령에 주목하여 분석하였다.

1. 기관 이용 실태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현재 1일 3시간 이상 이용하는 기관이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54.8%가 이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이용 실태를 살펴보면, 우선 모의 연령별로는 만 30세 미만, 만 30~35세 미만, 만 35~40세 미만의 기관 이용률이 각각 24.3%, 49.3%, 63.3%로 연령이 높을수록 이용률이 높고, 만 40세 이상인 모의 경우 해당 비율은 84.4%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또한 기관 이용률은 모의 초산연령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초산연령이 만 35세 이상인 경우는 61.0%로, 만 35세 미만에 비해 약 9%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기관 이용률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300만원 미만인 경우는 39.1%이나 500만원 이상인 경우는 67.4%로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취업모의 기관 이용률은 68.7%로 취업을 중단하였거나 미취업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IV-1-1〉 기관 이용 여부

구분	이용 중임	이용하지 않음	계	단위: %(명)	
				X ² (df)	
전체	54.8	45.2	100.0(1,000)		
모연령					
만30세 미만	24.3	75.7	100.0(115)		
만30세~35세 미만	49.3	50.7	100.0(452)	96.455(3)	***
만35세~40세 미만	63.3	36.7	100.0(324)		
만40세 이상	84.4	15.6	100.0(109)		

(표 IV-1-1 계속)

구분	이용 중임	이용하지 않음	계	$\chi^2(df)$
모 초산연령1				
만30세 미만	54.1	45.9	100.0(331)	7.601(2) [*]
만30세 이상~35세 미만	50.4	49.6	100.0(369)	
만35세 이상	61.0	39.0	100.0(300)	
모 초산연령2				
만35세 미만	52.1	47.9	100.0(700)	6.651(1) [*]
만35세 이상	61.0	39.0	100.0(300)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39.1	60.9	100.0(322)	67.759(3) ^{***}
300만원~400만원 미만	54.4	45.6	100.0(362)	
400만원~500만원 미만	74.3	25.7	100.0(175)	
500만원 이상	67.4	32.6	100.0(141)	
현취업상태				
취업	68.7	31.3	100.0(259)	28.083(2) ^{***}
취업 중단	49.0	51.0	100.0(535)	
취업한 적이 없음	52.4	47.6	100.0(206)	

주: 기관 이용은 1일 3시간 이상 기준이며, 해당 기관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기타 영유아 대상 학원(놀이학교, 영어 유치원)을 포함함.

* $p < .05$, *** $p < .001$

현재 기관을 이용 중인 경우 해당 기관 유형으로는 전반적으로 어린이집 69.3%, 유치원 29.9%로 나타난다. 구체적으로는 민간어린이집 40.1%, 사립유치원 23.4%, 국공립어린이집 18.8% 순이며, 특히 국공립어린이집의 이용율이 전체 이용율에 비해 높은 경향을 보인다.

〈표 IV-1-2〉 자녀 이용 기관

단위: %(명)

유치원			어린이집					기타	계
국공립	사립	소계	국공립	법인	민간	가정	직장		
6.6	23.4	29.9	18.8	5.7	40.1	4.4	0.4	69.3	0.7 100.0 (548)

주: '기타' 기관은 유치원·어린이집 이외 영유아 대상 학원(일명 놀이학교, 영어유치원 등)을 말함.

현재 기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기관 이용 시 가장 큰 불만 사항이 무엇인지를

(표 IV-1-3 계속)

구분	비용 부담이 큼	불편한 운영시간	긴급 상황시 이용 가능성 낮음	프로그램 질적 수준이 낮음	원하는 기관에 입소하기 어려움	교사의 신뢰성이 떨어짐	불만 사항 없음	기타	계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29.4	5.6	2.4	4.8	12.7	3.2	41.3	0.8	100.0(126)
300만원~400만원 미만	28.4	16.2	5.1	1.5	13.2	3.0	30.5	2.0	100.0(197)
400만원~500만원 미만	30.0	17.7	2.3	4.6	13.1	2.3	30.0	-	100.0(130)
500만원 이상	20.0	25.3	16.8	5.3	4.2	6.3	20.0	2.1	100.0(95)
X ² (df)					65.255(21) ^{***}				
현 취업상태									
취업	22.5	25.8	12.4	3.4	7.3	3.9	23.0	1.7	100.0(178)
취업 중단	29.0	12.2	1.5	3.4	12.2	3.1	37.4	1.1	100.0(262)
취업한 적이 없음	32.4	7.4	5.6	4.6	16.7	3.7	28.7	0.9	100.0(108)
X ² (df)					56.167(14) ^{***}				
경력단절 경험									
있음	25.0	20.8	2.1	4.2	13.5	5.2	28.1	1.0	100.0(96)
없음	26.7	16.9	7.0	3.2	9.3	2.9	32.6	1.5	100.0(344)
비해당	32.4	7.4	5.6	4.6	16.7	3.7	28.7	0.9	100.0(108)
X ² (df)					17.923(14)				

* $p < .05$, *** $p < .001$

2. 자녀 양육지원 관련 사회적 관계망 실태

이 절에서는 자녀 양육지원 시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관계망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출산 당시 양육지원 인력 유무, 조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여부, 양육지원 인력 이용 실태, 그리고 부부간 양육 분담 실태 등을 살펴보았다.

가. 출산 시 양육지원 인력

첫 자녀 출산 당시를 기준으로 주된 양육지원 인력인 조모의 생존 여부를 조사한 결과, 친조모와 외조모가 사망한 비율은 각각 6.9%와 8.1%로 나타났다. 조모의 사망률은 초산 연령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으나, 초산연령 만35세 미만에 비해 만 35세 이상인 경우 약간 높은 경향을 보였다.

〈표 IV-2-1〉 첫 자녀 출산 당시 조모의 생존 여부

단위: %(명)

구분	친조모			외조모		
	사망함	생존함	계	사망함	생존함	계
전체	6.9	93.1	100.0(1,000)	8.1	91.9	100.0(1,000)
모 초산연령						
만35세 미만	6.4	93.6	100.0(700)	8.0	92.0	100.0(700)
만35세 이상	8.0	92.0	100.0(300)	8.3	91.7	100.0(300)
$X^2(df)$		.807(1)			.031(1)	
초혼연령						
만25세 미만	11.8	88.2	100.0(51)	13.7	86.3	100.0(51)
만25세~30세 미만	5.9	94.1	100.0(472)	6.4	93.6	100.0(472)
만30세~35세 미만	6.8	93.2	100.0(384)	10.2	89.8	100.0(384)
만35세 이상	9.7	90.3	100.0(93)	5.4	94.6	100.0(93)
$X^2(df)$		3.694(3)			7.205(3)	

다음으로 조모의 양육지원 가능 여부를 추론하기 위해 첫 자녀 출산 당시 조모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초산연령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 초산당시 친조모가 만 65세 이상 노인인 비율은 초산연령이 만 35세 미만인 경우 35.3%, 만 35세 이상인 경우는 57.2%이며, 또한 초산당시 외조모가 만 65세 이상인 비율은 초산연령 만 35세 미만 28.7%, 만 35세 이상 51.3%로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이에 따라 초산 연령이 만 35세 이상인 모의 경우는 친조모와 외조모의 양육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만 35세 미만 초산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희박할 것으로 추측된다.

〈표 IV-2-2〉 첫 자녀 출산 당시 조모의 연령대

단위: %(명)

구분		만50세 미만	만50세 ~55세 미만	만55세 ~60세 미만	만60세 ~65세 미만	만65세 ~70세 미만	만70세 ~75세 미만	만75세 ~80세 미만	만80세 이상	계
친 조 모	전체	0.8	4.5	32.4	20.5	32.8	5.9	3.1	-	100.0(931)
	모 초산연령									
	만35세 미만	0.8	6.0	40.2	17.9	29.5	4.1	1.7	-	100.0(655)
	만35세 이상	0.7	1.1	14.1	26.8	40.6	10.1	6.5	-	100.0(276)
$X^2(df)$		92.178(6)***								
외 조 모	전체	0.5	7.1	23.9	33.0	19.5	11.6	3.7	0.7	100.0(919)
	모 초산연령									
	만35세 미만	0.5	9.8	28.0	33.1	17.4	8.2	2.8	0.3	100.0(644)
	만35세 이상	0.7	0.7	14.5	32.7	24.4	19.6	5.8	1.5	100.0(275)
$X^2(df)$		72.024(7)***								

*** $p < .001$

보다 구체적으로 첫 자녀 출산 당시 조모의 건강 상태를 조사한 결과, 경미한 질환이나 장애가 있는 경우는 20.6%이고, 해당 비율은 초산 연령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초산연령이 만 35세 이상인 경우 친조모와 외조모가 질병이 있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31.2%와 30.5%로 평균에 비해 약 10%p 높게 나타난다. 따라서 앞서 조모의 연령을 통해 예상한 바와 같이 초산 연령이 만 35세 이상인 경우는 친조모와 외조모의 높은 유병률 등으로 인해 이들로부터 양육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판단된다.

〈표 IV-2-3〉 첫 자녀 출산 당시 조모의 건강 상태

단위: %(명)

구분	건강함	경미한 질병·장애 있음	중환 질병·장애 있음	계	$X^2(df)$
전체	78.7	20.6	0.6	100.0(931)	25.051(2)***
친조모	모 초산연령				
만35세 미만	82.9	16.3	0.8	100.0(655)	
만35세 이상	68.8	30.8	0.4	100.0(276)	

(표 IV-2-3 계속)

구분	건강함	경미한 질병·장애 있음	중한 질병·장애 있음	계	$\chi^2(df)$
전체	78.5	20.9	0.7	100.0(931)	
외조모					
모 초산연령					
만35세 미만	82.3	16.8	0.9	100.0(644)	24.117(2)***
만35세 이상	69.5	30.5	-	100.0(275)	

*** $p < .001$

나. 조부모와의 경제적 관계

양육비용 부담과 관련하여 현재 조부모와 외조부모에 대한 정기적인 생활비 지원 여부와 지원 수준을 각각 조사하였다. 전반적으로 지원율과 지원 수준은 외조부모에 비해 친조부모에서 더 높게 나타나, 전체 응답자의 15.1%가 지원하고 있고, 해당 지원액은 평균 22만원으로 조사되었다.

모의 특성별로는 우선 모의 연령이 높을수록 생활비 지원율이 증가하고 지원 수준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친조부모를 기준으로 만 30세 미만인 모의 경우 지원율은 7.4%로 평균에 비해 낮고, 지원액도 16만3천원으로 평균에 비해 낮다. 반면에 만 40세 이상인 모의 경우 지원율은 21.2%, 지원액은 23.1만원으로 평균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을 보인다. 그러므로 특히 고령 출산모의 경우는 부모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 비용이 추가됨에 따라 자녀 양육비용 측면에서 더 큰 부담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한편 월 가구소득별로는 400만원 이상 가구에서 평균에 비해 높은 지원율을 보이며, 500만원 이상 가구의 지원액은 평균보다 약 6만원 가량 높은 28만4000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취업모인 경우 지원율은 24.9%, 지원액은 23만9천원으로 미취업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IV-2-4〉 조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

단위: %(명), 만원

구분	친조부모				외조부모			
	지원 여부		지원 수준		지원 여부		지원 수준	
	지원율	계	지원액	사례수	지원율	계	지원액	사례수
전체	15.1	100.0(931)	22.0	(141)	10.0	100.0(931)	18.1	(92)

(표 IV-2-4 계속)

구분	친조부모				외조부모			
	지원 여부		지원 수준		지원 여부		지원 수준	
	지원율	계	지원액	사례수	지원율	계	지원액	사례수
모연령								
만30세 미만	7.4	100.0(108)	16.3	(8)	3.7	100.0(107)	20.0	(4)
만30~35세 미만	14.6	100.0(419)	21.5	(61)	8.7	100.0(412)	16.1	(36)
만35~40세 미만	16.7	100.0(305)	22.9	(51)	11.4	100.0(298)	19.7	(34)
만40세 이상	21.2	100.0(99)	23.1	(21)	17.6	100.0(102)	18.6	(18)
$X^2(df), F$	8.569(3)*		-1.226		12.664(3)**		.859	
모 초산연령								
만35세 미만	13.3	100.0(655)	20.5	(87)	7.9	100.0(644)	16.2	(51)
만35세 이상	19.6	100.0(276)	24.3	(54)	14.9	100.0(275)	20.5	(41)
$X^2(df), t$	5.964(1)*		2.722		10.451(1)**		1.628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9.7	100.0(288)	17.5	(28)	5.6	100.0(286)	14.4	(16)
300만원~ 400만원 미만	11.7	100.0(343)	18.6	(40)	7.8	100.0(333)	14.6	(26)
400만원~ 500만원 미만	20.2	100.0(163)	22.0	(33)	12.6	100.0(167)	16.4	(21)
500만원 이상	29.2	100.0(137)	28.4	(40)	21.8	100.0(133)	24.5	(29)
$X^2(df), F$	34.178(3)***		5.588**		29.740(3)***		2.405	
현취업상태								
취업	24.9	100.0(249)	23.9	(62)	16.7	100.0(251)	21.2	(42)
취업중단	11.2	100.0(493)	21.5	(55)	7.3	100.0(481)	15.4	(35)
취업한적이없음	12.7	100.0(189)	18.1	(24)	8.0	100.0(187)	15.7	(15)
$X^2(df), F$	25.420(2)***		.962		17.404(2)***		1.478	

* $p < .05$, ** $p < .01$, *** $p < .001$

다. 자녀 양육지원 인력 이용 실태

현재 부모 이외에 자녀를 정기적으로 돌봐주는 사람이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전반적으로 돌봐주는 사람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8%로 나타났으며, 이는 초산연령, 결혼과 출산 연령간의 조합, 월 가구소득, 모의 취업 상태에 따라 유

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우선 초산연령대별로는 만 35세 이상인 경우 돌봐주는 사람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6.3%로 만 35세 미만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만 30세 이상 연령에 결혼하여 만 35세 이상 연령에 출산한 경우 해당 비율은 15.3%에 불과하였다. 또한 월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정기적으로 돌봐주는 사람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 300만원 미만인 경우는 8.7%에 불과하나, 500만원 이상인 경우는 48.2%로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이처럼 만 35세 이상 고령출산모의 경우는 돌봄 지원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며, 이는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더욱 그러하므로 특히 가구소득이 낮은 고령 출산모의 경우 자녀 양육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

〈표 IV-2-5〉 부모 외 자녀를 정기적으로 돌봐주는 사람 유무

구분	있음	없음	계	단위: %(명)	
				X ² (df)	
전체	20.8	79.2	100.0(1,000)		
모 초산연령					
만35세 미만	22.7	77.3	100.0(700)	5.190(1)*	
만35세 이상	16.3	83.7	100.0(300)		
결혼과 출산조합					
30세미만 결혼 35세미만 출산	19.5	80.5	100.0(497)	17.762(3)***	
30세미만 결혼 35세이상 출산	26.9	73.1	100.0(26)		
30세이상 결혼 35세미만 출산	30.5	69.5	100.0(203)		
30세이상 결혼 35세이상 출산	15.3	84.7	100.0(274)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8.7	91.3	100.0(322)	97.670(3)***	
300만원~400만원 미만	18.2	81.8	100.0(362)		
400만원~500만원 미만	26.3	73.7	100.0(175)		
500만원 이상	48.2	51.8	100.0(141)		
현 취업상태					
취업	52.5	47.5	100.0(259)	214.356(2)***	
취업중단	8.8	91.2	100.0(535)		
취업한적이없음	12.1	87.9	100.0(206)		

* $p < .05$, *** $p < .001$

다음으로 현재 부모 외에 자녀를 돌봐주는 사람이 있는 경우, 어떠한 인력인지 모두 응답하게 한 결과, 조부모 즉 친조부모와 외조부모가 각각 48.1%와 47.1%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해당 비율을 모의 연령에 따라 살펴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여, 특히 만 40세 이상인 경우는 평균에 비해 약 10%가량 낮은 수준이었다. 반면 에 이들은 기타 친인척과 비혈연 인력이 돌봐주는 비율이 공히 15.8%로 평균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인다. 이처럼 만 40세 이상 모는 이외 연령대와 비교하여 조부모의 양육지원을 받기 어려워 기타 친인척과 비혈연 인력의 도움을 받는 비율이 높으므로 양육비용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을 떠안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표 IV-2-6〉 현재 부모 외 자녀를 정기적으로 돌봐주는 사람

단위: %(명)

구분	친조부모	외조부모	기타 친인척	비혈연 인력	계
전체	48.1	47.1	7.2	5.8	100.0(208)
모연령					
만30세 미만	47.4	47.4	5.3	-	100.0(19)
만30세~35세 미만	49.0	50.0	3.8	5.8	100.0(104)
만35세~40세 미만	50.0	45.5	10.6	4.5	100.0(66)
만40세 이상	36.8	36.8	15.8	15.8	100.0(19)
모 초산연령					
만35세 미만	52.2	45.9	6.9	3.8	100.0(159)
만35세 이상	34.7	51.0	8.2	12.2	100.0(49)

주: 비혈연 인력은 베이비시터, 아이돌보미, 이웃탁아모 등을 포함함.

다중응답 결과임.

다음으로 자녀를 돌봐주는 이가 있는 경우 비용 지불 여부와 금액에 관하여 질문한 결과, 지불하는 경우는 46.5%이며, 해당 비용은 평균 50만5천원으로 조사되었다.

초산연령대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으나, 만 35세 이상인 경우가 59.2%로 만 35세 미만인 경우에 비해 지불하는 비율이 높고 해당 비용 수준도 약 4만원 가량 높다. 또한 월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지불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고 해당 비용도 높은 경향을 보이며, 모가 취업한 경우는 60.3%가 지불한다고 응답하여 미취업모와 뚜렷한 차이를 나타낸다.

〈표 IV-2-7〉 자녀를 돌봐주는 사람에 대한 비용 지불 여부 및 금액

단위: %(명), 만원

구분	지불함	지불하지 않음	계	평균	t/F
전체	46.6	53.4	100.0(208)	50.5	
모초산연령					
만35세 미만	42.8	57.2	100.0(159)	49.2	.744
만35세 이상	59.2	40.8	100.0(49)	53.5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7.1	92.9	100.0(28)	55.0	6.779***
300만원~400만원 미만	27.3	72.7	100.0(66)	43.3	
400만원~500만원 미만	58.7	41.3	100.0(46)	38.7	
500만원 이상	73.5	26.5	100.0(68)	59.2	
현 취업 상태					
취업	60.3	39.7	100.0(136)	52.1	1.348
취업중단	21.3	78.7	100.0(47)	42.0	
취업한적이없음	20.0	80.0	100.0(25)	40.0	

*** $p < .001$

평소 급한 일이 생길 경우 자녀 양육을 도와줄 사람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해당 인력을 모두 응답하게 하였다. 전반적으로 남편(배우자)이 65.1%로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외조부모 36.8%, 친조부모 33.3%, 이웃이나 친구 14.7% 순이며, 도움 사람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4.4%로 나타났다.

〈표 IV-2-8〉 급한 일이 생길 경우 자녀 양육을 도와 줄 수 있는 사람

단위: %, 명

구분	남편 (배우자)	외 조부모	친 조부모	이웃/ 친구	기타 친인척 (조부모 제외)	파출부, 가사 도우미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음	사례수
전체	65.1	36.8	33.3	14.7	6.8	1.2	4.4	1,000
모초산연령								
만35세 미만	64.3	40.0	36.9	13.7	7.1	0.6	13.7	700
만35세 이상	67.0	29.3	25.0	17.0	6.0	2.7	17.0	300

주: 다중응답 결과임.

이를 초산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35세 이상인 경우는 배우자라고 응답한 비율

이 상대적으로 높은 67.0%인 반면, 조부모라고 응답한 비율은 낮고, 이웃이나 친구라고 응답한 비율은 17.0%로 높게 나타난다. 또한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도 만 35세 미만에 비해 높은 17.0%를 보인다. 이는 만 35세 이상 고령출산모는 조부모의 양육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워 남편의 양육 참여나 이웃 및 친지의 양육지원이 보다 절실한 실정임을 말해준다.

〈표 IV-2-9〉 육아 관련 지식이나 조언의 습득 경로

단위: %(명)

구분	친구, 동료	육아관련 사이트	친지	없음	기타	계	$X^2(df)$
전체	48.8	24.4	21.3	3.8	1.7	100.0(1,000)	
모연령							
만30세 미만	46.1	24.3	26.1	2.6	0.9	100.0(115)	26.778(12)**
만30~35세 미만	49.3	25.7	21.2	2.2	1.5	100.0(452)	
만35~40세 미만	45.1	23.1	24.4	5.6	1.9	100.0(324)	
만40세 이상	60.6	22.9	7.3	6.4	2.8	100.0(109)	
모초산연령							
만35세 미만	48.3	24.7	22.6	2.7	1.7	100.0(700)	9.233(4)
만35세 이상	50.0	23.7	18.3	6.3	1.7	100.0(300)	
모 최종학력							
고졸이하	47.9	24.2	20.0	4.5	3.4	100.0(265)	19.068(8)*
2년제 대졸	55.6	23.3	17.1	2.2	1.8	100.0(275)	
4년제대졸이상	45.2	25.2	24.6	4.3	0.7	100.0(460)	

* $p < .05$, ** $p < .01$

육아관련 지식이나 조언이 필요한 경우 주로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는지를 질문한 결과, 전반적으로는 친구 또는 동료 48.8%, 육아관련 사이트 24.4%, 친지 21.3% 순으로 조사되었다.

모의 연령별로는 만 40세 이상에서 두드러진 차이를 보여 친구 또는 동료로부터 도움을 얻는 비율은 60.6%로 압도적으로 높은 반면, 친지라고 응답한 비율은 7.3%에 불과하였다. 초산 연령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으나, 만 35세 미만인 경우 친지로부터 받는 도움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고, 만 35세 이상인 경우는 도움을 받는 사람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6.3%로 상대적으로 높다. 또한 4년제 대졸 이상 학력의 모는 친지로부터 도움을 받는 정도가 높고, 4년제

대졸 미만인 경우는 친구나 동료로부터 도움을 받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이는 학력이 낮은 고령출산모의 경우 자녀 양육 시 지원 인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함을 암시한다.

라. 부부의 양육 분담

1) 양육 참여 정도

부부의 양육 시간을 1일 기준으로 주중과 주말로 구분하여 각각 조사하였다.

〈표 IV-2-10〉 부부의 주중/주말 양육 시간

단위: 분

구분	주중(1일 평균)		주말 (1일 평균)	
	본인	배우자	본인	배우자
전체	497.4	94.6	600.8	227.4
모초산연령				
만35세 미만	508.8	94.7	608.3	222.5
만35세 이상	471.0	94.2	583.2	238.9
<i>t</i>	5.917 [*]	3.784	.019	2.284
현 취업상태				
취업	297.5	92.8	560.2	252.1
취업중단	571.3	94.8	619.1	225.5
취업한적이없음	557.0	96.0	604.4	201.4
F	-21.046 ^{***}	-4.20 ^{***}	-.438	1.971 [*]

* $p < .05$, *** $p < .001$

우선 주중 1일 평균 양육참여 시간을 살펴보면, 응답자인 모와 배우자(남편)는 각각 약 8시간 18분과 약 1시간 36분으로, 어머니의 양육 시간이 아버지에 비해 대략 7시간 정도 긴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모의 특성별로 살펴보면, 초산 연령이 만 5세 이상인 경우는 약 7시간 54분으로 만 35세 미만인 경우에 비해 약 40분 정도 짧게 나타난다. 또한 취업모의 양육 시간은 미취업모의 절반 수준인 약 5시간으로 조사되었다.

주말 양육 시간은 본인은 약 10시간, 배우자는 약 3시간 48분으로 주중과 마찬가지로 약 7시간의 격차를 보인다. 초산연령별로는 주중 양육 시간과 마찬가지로

지로 만 35세 이상인 경우가 상대적으로 약간 더 짧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으며, 배우자의 경우는 모가 취업한 경우 해당 시간이 약 4시간 12분으로 미취업모에 비해 길게 나타난다.

남편의 자녀 양육 참여 정도를 평가하게 한 결과, 부족한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4.8%로 가장 높고, 충분하다고 응답한 비율(충분한 편+매우 충분)은 36.9%에 불과하였다(표 IV-2-11 참조).

초산 연령이 만 35세 이상인 경우 충분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40.0%로 약간 높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으므로 조부모 등 지원인력이 미흡한 실정에서 모의 자녀 양육 시 어려움이 예상된다. 또한 남편의 양육 참여 수준은 모의 취업 상태별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취업모의 일·가정 양립 고충을 짐작케 한다.

〈표 IV-2-11〉 배우자(남편)의 자녀 양육 참여 정도

						단위: %(명), 점	
구분	매우부족	부족한 편	충분한 편	매우충분	계	평균	t/F
전체	8.3	54.8	34.7	2.2	100.0(1,000)	2.31	
모초산연령							
만35세 미만	8.3	56.1	33.6	2.0	100.0(700)	2.29	1.264
만35세 이상	8.3	51.7	37.3	2.7	100.0(300)	2.34	
현 취업상태							
취업	8.5	54.1	33.6	3.9	100.0(259)	2.33	
취업중단	7.5	54.4	36.4	1.7	100.0(535)	2.32	.098
취업한 적 없음	10.2	56.8	31.6	1.5	100.0(206)	2.24	

주: 평균은 '매우 부족' 1점~'매우 충분' 4점으로 산출한 결과임.

2) 양육 참여 충분/불충분 이유

배우자의 자녀 양육 참여가 부족하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배우자가 자녀 양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를 중요도에 따라 1, 2순위를 답하도록 하였다. 1순위 응답으로는 '직장 일이 바빠서'가 77.3%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그 다음으로는 '육아에 관심이 있으나 아이 돌보기를 어려워해서' 10.0%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해당 응답은 2순위에서 가장 높은 응답률인 38.1%를 나타냈다.

(표 IV-2-13 계속)

구분	직장일이 바빠서 (절대적 시간이 부족)	육아에 관심이 있으나 아이 돌보기를 어려워 해서	평소에 자녀 (육아)에 관심이 없어서	자녀 양육을 부부 공동의 일이라 생각하지 않아서	개인적인 여가나 취미 활동으로 바빠서	다른 가족들이 아이 돌보기를 모두 하기 때문에	기타	계
모초산연령								
만30세 미만	79.0	7.1	1.9	6.7	4.3	-	1.0	100.0(210)
만30세~34세	71.4	13.3	9.1	3.7	1.2	1.2	-	100.0(241)
만35세 이상	83.3	8.9	2.2	3.9	1.1	0.6	-	100.0(180)
$X^2(df)$			37.545(12)***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74.4	9.7	2.9	8.7	3.9	0.5	-	100.0(207)
300만원~ 400만원 미만	75.1	11.4	8.2	3.7	0.8	0.4	0.4	100.0(245)
400만원~ 500만원 미만	79.2	8.9	4.0	2.0	4.0	1.0	1.0	100.0(101)
500만원 이상	89.7	7.7	-	1.3	-	1.3	-	100.0(78)
$X^2(df)$			36.569(18)**					

* $p < .05$, ** $p < .01$ *** $p < .001$

〈표 IV-2-14〉 배우자(남편)의 자녀 양육 참여가 충분한 이유

단위: %(명)		
구분	1순위	2순위
평소에 자녀(육아)에 관심이 많아서	35.0	28.4
직장의 근로 조건이 여유가 있어서	30.9	7.9
자녀 양육을 부부 공동의 일로 생각해서	18.7	33.9
아이 돌보기를 어려워하지 않아서	11.7	21.6
부부 외에 자녀 양육을 도울 인력이 없어서	3.5	7.9
기타	0.3	0.3
계	100.0(369)	100.0(366)

배우자의 자녀 양육 참여가 충분하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배우자가 자녀 양육에 참여하는 이유를 중요도에 따라 1, 2순위를 답하도록 하였다. 1순위 응답으로는 '평소에 육아에 관심이 많아서' 35.0%, '직장의 근로조건이 여유가 있어서' 30.9%로 유사한 응답률을 나타냈고, 다음으로 '자녀 양육을 부부 공동의 일

로 생각해서' 18.7%, '아이 돌보기를 어려워하지 않아서' 11.7% 순으로 조사되었다. 2순위는 '자녀 양육을 부부 공동의 일로 생각해서' 33.9%, '평소에 육아에 관심이 많아서' 28.4% 순으로 나타났다(표 IV-2-14 참조).

〈표 IV-2-15〉 제특성별 배우자의 자녀 양육 참여가 충분한 이유 - 1순위

단위: %(명)

구분	직장의 근로 조건이 여유가 있어서	평소에 자녀 (육아)에 관심이 많아서	자녀 양육을 부부 공동의 일로 생각해서	아이 돌보기를 어려워하 지 않아서	부부 외에 양육을 도울 인력이 없어서	기타	계
전체	30.9	35.0	18.7	11.7	3.5	0.3	100.0(369)
모연령							
만30세 미만	25.6	25.6	23.3	18.6	7.0	-	100.0(43)
만30~35세 미만	38.0	37.3	17.5	5.4	1.8	-	100.0(166)
만35~40세 미만	27.7	36.1	13.4	16.0	5.9	0.8	100.0(119)
만40세 이상	17.1	31.7	34.1	17.1	-	-	100.0(41)
X ² (df)			33.630(15)**				
모 초산연령							
만35세 미만	32.9	36.5	18.1	8.4	4.0	-	100.0(249)
만35세 이상	26.7	31.7	20.0	18.3	2.5	0.8	100.0(120)
X ² (df)			11.155(5)*				

* $p < .05$, ** $p < .01$

남편의 자녀 양육 참여가 충분한 이유를 1순위 기준으로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모의 연령과 초산연령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 즉 만 40세 이상 모의 경우는 '자녀양육을 부부 공동의 일로 생각해서'가 34.1%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반면, '직장의 근로조건이 여유가 있어서'는 17.1%로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또한 초산연령이 만 35세 이상인 경우는 '아이 돌보기를 어려워하지 않아서' 라고 응답한 비율이 18.3%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만 35세 이상 고령 출산모의 배우자의 직장 내 일·가정 양립 여건이 만 35세 미만 출산모의 배우자에 비해 더 용이한 상황은 아니지만 만 35세 미만 연령대에 출산한 부부에 비해 양육을 어려워하지 않는 경향이 있음을 암시한다. 늦은 연령에 자녀를 출산함으로써 자녀에 대한 관심이 더 컸을 수

도 있고, 또한 양육지원인력이 부족한 양육 환경으로 인해 자녀 출산 초기부터 배우자가 양육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것도 한 가지 이유가 될 것이라 사료된다.

3. 일·가정 양립 실태

이 절에서는 부부의 첫 취업 시기 등 취업력과 종사상 지위, 그리고 취업모의 일·가정 양립지원 실태 및 관련 제도 이용 현황과 수요를 살펴보았다.

가. 취업 상태 및 계획

1) 취업력

정규직 기준으로 본인과 배우자(남편)의 첫 취업 시기와 결혼 전후 취업 여부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결혼 전에 취업한 비율은 본인은 78.5%, 배우자는 92.8%이고, 해당 연령은 각각 23.5세와 26.9세로 나타났다.

이를 초산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만 30세 이상인 경우는 만 30세 미만인 경우에 비해 결혼 전에 정규직으로 첫 취업한 비율이 높아 80%를 상회하며, 이는 배우자에서도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또한 초혼연령이 만 25세 미만인 경우는 결혼 후에 첫 번째 정규직 취업 비율이 이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본인과 배우자가 공히 9.8%였다. 즉 초산연령이 만 30세 이상인 모는 본인과 배우자 모두 결혼 전에 정규직에 취업한 비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반면, 초혼연령이 만 25세 미만인 모는 본인과 배우자 모두 결혼 후에 정규직에 취업한 비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경향이 있다.

〈표 IV-3-1〉 부부의 첫 취업 시기(정규직 기준)

구분	본인				배우자			
	결혼전	결혼후	정규직 취업한 적 없음	계	결혼전	결혼후	정규직 취업한 적 없음	계
전체	78.5	0.9	20.6	100.0(1,000)	92.8	1.8	5.4	100.0(785)
평균(세)	23.5	27.8	-		26.9	27.9	-	

(표 IV-3-1 계속)

구분	본인				배우자				
	결혼전	결혼후	정규직 취업한 적 없음	계	결혼전	결혼 후	정규직 취업한 적 없음	계	
모초산연령									
만30세 미만	73.4	2.1	24.5	100.0(331)	90.0	3.9	6.0	100.0(243)	
만30세~34세	81.6	0.3	18.2	100.0(369)	93.8	1.1	5.1	100.0(301)	
만35세 이상	80.3	0.3	19.3	100.0(300)	94.7	0.3	5.0	100.0(241)	
$X^2(df)$		13.493(4)**			13.768(4)**				
초혼 연령									
만25세 미만	60.8	9.8	29.4	100.0(51)	78.4	9.8	11.8	100.0(31)	
만25세~30세 미만	77.5	0.6	21.8	100.0(472)	93.4	1.9	4.7	100.0(366)	
만30세~35세 미만	82.8	0.3	16.9	100.0(384)	94.5	1.0	4.4	100.0(318)	
만35세 이상	75.3	-	24.7	100.0(93)	90.3	-	9.7	100.0(70)	
$X^2(df)$		56.551(6)***			30.550(6)***				

** $p < .01$ *** $p < .001$

다음으로 정규직 기준으로 결혼 당시 취업 여부와 결혼 후 총 경력을 조사한 결과, 결혼 당시 취업 중이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62.5%, 결혼 후 총 경력은 평균 24.6개월로 나타났다.

이를 모의 제 특성별로 살펴보면, 초산연령이 만 30세 미만인 경우는 결혼 당시 취업 중이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68.8%로 만 30세 이상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고, 결혼 후 총 경력은 만 35세 이상인 경우가 29.9개월로 가장 길게 나타난다. 또한 결혼 당시 취업 중인 비율은 현재 취업 중인 모에서 94.6%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결혼 후 총 경력은 49.3개월로 조사되었다.

〈표 IV-3-2〉 모의 취업 특성

구분	결혼당시 취업여부(정규직 기준)			결혼 후 총경력	
	취업중	비취업	계	평균(개월)	계
전체	62.5	37.5	100.0(794)	24.6	100.0(792)

단위: %(명)

(표 IV-3-2 계속)

구분	결혼당시 취업여부(정규직 기준)			결혼 후 총경력	
	취업중	비취업	계	평균(개월)	계
모초산연령					
만30세 미만	68.8	31.2	100.0(250)	21.5	100.0(250)
만30세~35세 미만	59.9	40.1	100.0(302)	22.9	100.0(301)
만35세 이상	59.1	40.9	100.0(242)	29.9	100.0(241)
$X^2(df)/F$		6.280(2) [*]		6.275 ^{**}	
모 최종학력					
고졸 이하	59.9	40.1	100.0(192)	22.8	100.0(192)
2년제 대졸	58.8	41.2	100.0(221)	22.8	100.0(221)
4년제 대졸 이상	65.9	34.1	100.0(381)	26.5	100.0(379)
$X^2(df)/F$		3.685(2)		1.670	
현 취업상태					
취업	94.6	5.4	100.0(259)	49.3	100.0(259)
취업중단	46.9	53.1	100.0(535)	12.6	100.0(533)
취업한적이없음	-	-	0.0(0)	-	0.0(0)
$X^2(df)/F$		169.210(1) ^{***}		19.138 ^{***}	

* $p < .05$, ** $p < .01$ *** $p < .001$

2) 취업 상태 및 향후 취업 의향

가) 종사상 지위

응답자의 현재 종사상 지위는 상용직(출산, 육아휴직 포함)이 79.2%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계약직 10.0%, 임시직과 자영업자가 공히 4.2%로 나타난다.

이를 응답자 제 특성별로 살펴보면, 우선 초산연령대별로는 만 35세 이상인 경우 상대적으로 상용직 비율이 낮고 계약직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이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다. 초혼연령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만 35세 이상인 모는 상용직 비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은 66.7%인 반면, 계약직과 임시직 비율은 각각 14.8%와 11.1%로 평균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또한 경력 단절 경험이 있는 모는 현재 상용직으로 일하는 비율이 현저히 낮아 57.5% 수준에 그치고 있다.

〈표 IV-3-3〉 모의 현재 종사상 지위

단위: %(명)

구분	상용직	계약직	자영 업자	임시직	무급가족 종사자	일용직	계
전체	79.2	10.0	4.2	4.2	1.5	0.8	100.0(259)
모초산연령							
만35세 미만	80.1	8.8	4.4	4.4	1.7	0.6	100.0(181)
만35세 이상	76.9	12.8	3.8	3.8	1.3	1.3	100.0(78)
$X^2(df)$	1.440(5)						
모 최종학력							
고졸 이하	72.1	8.2	8.2	6.6	1.6	3.3	100.0(61)
2년제대졸	73.8	13.1	3.3	6.6	3.3	-	100.0(61)
4년제대졸 이상	84.7	9.5	2.9	2.2	0.7	-	100.0(137)
$X^2(df)$	16.067(10)						
초혼연령							
만25세 미만	75.0	-	-	-	16.7	8.3	100.0(12)
만25세~30세 미만	79.5	11.4	5.3	3.0	0.8	-	100.0(132)
만30세~35세 미만	83.0	8.0	4.5	4.5	-	-	100.0(88)
만35세 이상	66.7	14.8	-	11.1	3.7	3.7	100.0(27)
$X^2(df)$	43.216(15)**						
경력단절 경험							
있음	57.5	20.0	10.0	7.5	2.5	2.5	100.0(40)
없음	83.1	8.2	3.2	3.7	1.4	0.5	100.0(219)
비해당	-	-	-	-	-	-	0.0(0)
$X^2(df)$	14.451(5)*						

주: 상용직은 출산 휴가, 육아휴직 포함

* $p < .05$, ** $p < .001$

한편 배우자의 종사상 지위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상용직 비율은 84.9%로 모에 비해 약간 높고, 계약직 비율은 6.3%로 약간 낮은 수준을 보인다.

이는 모의 연령과 초산연령대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 즉 모의 연령이 40대 이상인 경우 배우자가 상용직 비율은 만 40세 미만에 비해 낮은 79.6%에 그친다. 또한 초산연령이 만 35세 미만인 경우는 계약직 비율이 평균에 비해 약간 높은 7.6%, 만 35세 이상인 경우는 자영업자 비율이 평균에 비해 약간 높은 10.2%로 나타난다.

〈표 IV-3-4〉 부의 현재 종사상 지위

단위: %(명)

구분	상용직	자영 업자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무급가족 종사자	계
전체	84.9	7.2	6.3	1.0	0.5	0.1	100.0(946)
모연령							
만30세 미만	82.2	7.5	7.5	1.9	0.9	-	100.0(107)
만30~35세 미만	86.2	5.1	6.5	1.2	0.7	0.2	100.0(428)
만35~40세 미만	85.6	6.4	7.3	0.6	-	-	100.0(313)
만40세 이상	79.6	18.4	1.0	-	1.0	-	100.0(98)
$X^2(df)$	31.766(15)**						
모초산연령							
만35세 미만	84.6	5.9	7.6	1.2	0.6	0.2	100.0(661)
만35세 이상	85.6	10.2	3.5	0.4	0.4	-	100.0(285)
$X^2(df)$	12.474(5)*						
초혼연령							
만25세 미만	75.6	11.1	6.7	4.4	2.2	-	100.0(45)
만25세~30세 미만	86.9	4.7	6.9	0.7	0.7	0.2	100.0(450)
만30세~35세 미만	83.4	9.0	6.5	1.1	-	-	100.0(367)
만35세 이상	85.7	10.7	2.4	-	1.2	-	100.0(84)
$X^2(df)$	24.528(15)						

주: 상용직은 출산 휴가, 육아휴직 포함

* $p < .05$, ** $p < .01$

나) 취업 관련 의향

현재 취업모를 대상으로 언제까지 일을 계속할 의향이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전반적으로 '정년 등 일할 수 있을 때까지' 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37.8%였고, 그 다음으로는 '경제적 여건이 좋아질 때까지' 29.0%, '건강이 허락할 때 까지' 16.2% 순으로 응답되었다.

이를 초산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만 35세 이상인 경우는 '정년 등으로 일할 수 있을 때까지'라고 응답한 비율이 46.2%로 상대적으로 높고, 만 35세 미만인 경우는 '자녀 출산때까지'와 '곧 그만둘 계획'이라는 응답이 평균에 비해 높게 나타나서, 만 35세 이상 고령출산모의 경제활동 의지가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IV-3-5〉 모의 향후 취업 지속 의향

단위: %(명)

구분	(정년 등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최대 기한 까지	경제적 여건이 좋아질 때까지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	자녀 (추가) 출산 전까지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아도 될 때까지	곧 그만들 계획임	기타	계
전체	37.8	29.0	16.2	6.9	5.8	3.5	0.8	100.0(259)
모초산연령								
만35세 미만	34.3	29.3	16.6	8.8	5.5	4.4	1.1	100.0(181)
만35세 이상	46.2	28.2	15.4	2.6	6.4	1.3	-	100.0(78)
$X^2(df)$	7.679(6)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15.4	61.5	7.7	-	7.7	7.7	-	100.0(13)
300~400만원 미만	25.0	37.5	19.6	10.7	5.4	1.8	-	100.0(56)
400~500만원 미만	25.3	35.4	19.0	8.9	6.3	5.1	-	100.0(79)
500만원 이상	55.9	16.2	13.5	4.5	5.4	2.7	1.8	100.0(111)
$X^2(df)$	40.516(18)**							
경력단절 경험								
있음	17.5	52.5	10.0	5.0	5.0	10.0	-	100.0(40)
없음	41.6	24.7	17.4	7.3	5.9	2.3	0.9	100.0(219)
비해당	-	-	-	-	-	-	-	0.0(0)
$X^2(df)$	21.824(6)**							

** $p < .01$

향후 취업할 계획 및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향후 취업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0.1%,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40.9%로 조사되었다. 취업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주된 애로사항으로는 '자녀를 믿고 맡길 곳이 없음' 40%, '학력과 경력에 맞는 적당한 직장을 구하기 어려움'이 31.9%로 나타났다.

〈표 IV-3-6〉 향후 취업 계획 및 애로사항

단위: %(명)

향후 취업 계획 유무				취업 계획 시 애로사항						
있음	없음	잘 모름	계	학력과 경력에 맞는 직장을 구하기 어려움	나이가 많음	자녀를 믿고 맡길 곳이 없음	장기간 의 경력단 절	취업 정보를 얻기 어려움	직업 훈련이 나 교육 기회가 부족함	계
40.1	40.9	19.0	100.0(337)	31.9	8.9	40.0	6.7	6.7	5.9	100.0(135)

나. 경력단절 실태 및 사유

경력단절 실태와, 경력단절 경험이 있는 응답자에 한하여 재취업 여부 및 재취업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유, 그리고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 여부 등을 질문하였다.

우선 전체 응답자 중 경력단절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2.3%였고, 평균 횟수는 약 1회로 조사되었다. 또한 첫 번째 경력단절을 기준으로 해당 시점은 첫째 임신 전후가 대부분으로, 첫째 임신 중 50.8%, 첫째 임신 전 42.9%로 나타났다.

〈표 IV-3-7〉 자녀 임신·출산 또는 양육관련 경력단절 경험

단위: %(명), 회

경력단절 경험 유무			경력단절 평균 횟수	첫 번째 경력단절 시기			
있음	없음	계		첫째 임신전	첫째 임신중	첫째출산후 둘째임신전	계
22.3	77.7	100.0(794)	1.02	42.9	50.8	6.2	100.0(177)

이를 응답자 제 특성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초산연령대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만 35세 이상인 경우는 첫째 임신 전에 경력단절한 비율이 65.5%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만 30세 미만인 경우는 첫째 임신 중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8.8%로 상이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만 30세 미만에 결혼하여 35세 미만에 출산한 경우는 첫째 임신 중에 경력단절한 비율이 62.9%로 압도적

으로 높은 반면, 만 30세 이상 결혼하여 만 35세 이상 출산한 경우는 첫째 임신 전에 경력단절 한 비율이 60.8%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만 35세 이상 고령출산모는 임신 전에 경력단절 경향이 높음을 말해준다.

그 밖에도 초혼 연령이 만 25세 미만인 경우와 만 35세 이상인 경우는 첫째 임신 중에 경력 단절한 비율이 각각 69.2%와 61.1%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3-8〉 제특성별 출산·양육으로 인한 첫 번째 경력단절 시기

단위: %(명)

구분	첫째 임신전	첫째 임신중	첫째 출산 후 둘째 임신 전	계	X ² (df)
전체	42.9	50.8	6.2	100.0(177)	
모초산연령					
만35세 미만	31.9	58.8	9.2	100.0(119)	20.148(2) ***
만35세 이상	65.5	34.5	-	100.0(58)	
결혼과 출산 조합					
30세미만 결혼 35세미만 출산	28.1	62.9	9.0	100.0(89)	26.631(6) ***
30세미만 결혼 35세이상 출산	100.0	-	-	100.0(7)	
30세이상 결혼 35세미만 출산	43.3	46.7	10.0	100.0(30)	
30세이상 결혼 35세이상 출산	60.8	39.2	-	100.0(51)	
모 최종학력					
고졸 이하	43.1	56.9	-	100.0(51)	11.931(4) *
2년제대졸	30.9	56.4	12.7	100.0(55)	
4년제대졸 이상	52.1	42.3	5.6	100.0(71)	
초혼 연령					
만25세 미만	30.8	69.2	-	100.0(13)	13.849(6) *
만25세~30세 미만	33.7	56.6	9.6	100.0(83)	
만30세~35세 미만	58.7	36.5	4.8	100.0(63)	
만35세 이상	38.9	61.1	-	100.0(18)	

* $p < .05$, *** $p < .001$

첫 번째 경력단절 경험을 기준으로 해당 사유를 질문한 결과, ‘일·가정 양립이 어려워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42.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임신을 준비하기 위해’ 30.5%, ‘건강상의 문제로’ 13.6%, ‘인공 수정, 시험관 시술과 병행하기 어려워’ 4.0%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IV-3-9〉 첫 번째 경력단절 사유

단위: %(명)

일가정 양립이 어려워서	임신을 준비하기 위해	건강상의 문제로	인공 수정 시험관 시술과 병행하기 어려워	자녀 출산 양육으로 인한 직장 내 불이익을 경험 하여서	임신, 출산을 이유로 해고됨	수입보다 아이 맡기는 비용이 많이 들어서	기타	계
42.4	30.5	13.6	4.0	3.4	2.8	1.7	1.7	100.0(177)

이들 경력단절 사유를 제 특성별로 살펴보면, 초산연령이 만 35세 이상인 경우는 통계적으로 검증은 불가능하나 ‘임신을 준비하기 위해’ 경력단절한 비율이 50%로 만 35세 미만의 해당 비율인 21.0%에 비해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난다. 반면에 만 35세 미만인 경우는 ‘일·가정 양립이 어려워’ 직장을 그만둔 비율이 48.7%로 평균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만 35세 이상 고령출산모는 임신을 위해 직장을 그만두는 상황이 상대적으로 많으므로 이들에 대한 임신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말해준다.

또한 초혼연령이 만 35세 이상인 경우는 초산연령에서와 마찬가지로 임신을 준비하기 위해 직장을 그만둔 비율이 38.9%로 이의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3-10〉 제특성별 첫 번째 경력단절 사유

단위: %(명)

구분	임신 준비를 위해	건강상 문제로	인공 수정, 시험관 시술과 병행 어려움	아이 맡기는 비용이 많이 들어서	일가정 양립이 어려 워서	출산· 양육에 따른 직장 내 불이익을 경험 해서	임신, 출산을 이유로 해고됨	기타	계
전체	30.5	13.6	4.0	1.7	42.4	3.4	2.8	1.7	100.0(177)
모초산연령									
만35세 미만	21.0	14.3	4.2	2.5	48.7	5.0	1.7	2.5	100.0(119)
만35세 이상	50.0	12.1	3.4	-	29.3	-	5.2	-	100.0(58)

(표 IV-3-10 계속)

구분	임신 준비를 위해	건강 상 문제로	인공 수정, 시험관 시술과 병행 어려움	아이 맡기는 비용이 많이 들어서	일가정 양립이 어려 워서	출산· 양육 에 따른 작장 내 불이익을 경험 해서	임신, 출산을 이유로 해고됨	기타	계
초혼연령									
만25세 미만	15.4	7.7	15.4	-	53.8	-	7.7	-	100.0(13)
만25세~30세 미만	20.5	13.3	4.8	2.4	50.6	7.2	-	1.2	100.0(83)
만30세~35세 미만	44.4	15.9	1.6	1.6	28.6	-	4.8	3.2	100.0(63)
만35세 이상	38.9	11.1	-	-	44.4	-	5.6	-	100.0(18)

주: 빈도분포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정이 적절하지 않음.

한편 경력단절 경험이 있는 응답자에 한하여 재취업 여부를 질문한 결과, 재취업한 경우는 26%로 조사되었다. 또한 재취업하지 않은 응답자의 경우 해당 사유로는 ‘취업할 경우 자녀 양육과 병행하기 어려워서’ 66.4%, ‘일을 하고 싶으나 적당한 일자리가 없어서’ 16.8%로 나타나,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이 경력단절 여성이 재취업을 포기하는 주된 원인으로 지적된다.

〈표 IV-3-11〉 출산·양육에 따른 경력 단절 이후 재취업 여부 및 사유
단위: %(명)

재취업 여부			재취업하지 않은 이유					
재취업 함	재취업 하지 않음	계	자녀 양육과의 병행이 어려워서	적당한 일자리 가 없어서	일을 하고 싶지 않아서	건강이 좋지 않아서	기타	계
26.0	74.0	100.0(177)	66.4	16.8	12.2	2.3	2.3	100.0(131)

다. 일·가정 양립지원제도 이용 실태 및 애로사항

1) 일·가정 양립 시 어려움

현재 취업 중인 모를 대상으로 각 항목별로 자녀 양육과 직장 일의 양립 시

어려움이 어느 정도인지를 조사하였다.

전반적으로 '업무로 인해 어린 자녀와 충분한 시간을 가지지 못하는 데서 겪는 어려움'이 많다고 응답한 비율(매우 많음+약간 많음)이 59.4%(평균 2.37점, 만점 5점)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출퇴근 시간에 맞춰 어린 자녀를 기관이나 대리 양육자에게 맡기는 데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52.9%(평균 2.57점)가 어려움이 많다고 응답하였다. 이외에도 예상치 못한 야간 근무 등과 긴급 상황 시에 도움을 받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44.0%와 34.4%였으며, 어린 자녀의 양육에 따른 승진이나 주요 업무에서 배제되는 데서 겪는 어려움은 상대적으로 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V-3-12〉 취업모의 일과 자녀 양육 병행 시 어려움

단위 : %(명), 점

구분	매우 많음	약간 많음	보통	거의 없음	전혀 없음	계	평균
출퇴근 시간에 맞춰 어린 자녀를 기관이나 대리양육자에게 맡기는데 겪는 어려움	11.6	41.3	30.5	12.0	4.6	100.0(259)	2.57
예상치 못한 야근, 근무, 회식 등 발생으로 겪는 어려움	11.2	32.8	35.5	18.9	1.5	100.0(259)	2.67
긴급 상황 시 도움을 받을 곳이 없어 겪는 어려움	10.0	24.3	37.1	27.0	1.5	100.0(259)	2.86
어린 자녀 양육으로 인해 승진 기회, 주요 업무 등에서 배제되는 데서 겪는 어려움	3.9	23.9	37.8	32.0	2.3	100.0(259)	3.05
업무로 인해 어린 자녀와 충분한 시간을 가지지 못하는 데서 겪는 어려움	18.5	40.9	26.3	13.1	1.2	100.0(259)	2.37

주: 평균은 '매우 많음' 1점~'전혀 없음' 5점으로 산출한 결과임.

위의 항목 중 '긴급 상황 시 도움을 받을 곳이 없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초혼 연령대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만 35세 이상인 경우 어려움이 많다고 응답한 비율이 59.3%(평균 2.37점)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만 25세 미만인 경우도 해당 비율이 41.7%로 높은 수준을 보인다. 이는 만 25세 미만과 마찬가지로 만 35세 이상 고령 출산모의 경우도 조부모 등 지원인력이 미흡하여 긴급 보육이 필요한 경우 고충이 크다는 것을 말해준다(표 IV-3-13 참조).

〈표 IV-3-13〉 긴급 상황 시 도움을 받을 곳이 없어 겪는 어려움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많음	약간 많음	보통	거의 없음	전혀 없음	계	평균	F
전체	10.0	24.3	37.1	27.0	1.5	100.0(259)	2.86	
초혼연령								
만25세 미만	25.0	16.7	58.3	-	-	100.0(12)	2.33	4.206**
만25세~30세 미만	8.3	24.2	37.1	28.0	2.3	100.0(132)	2.92	
만30세~35세 미만	6.8	21.6	37.5	34.1	-	100.0(88)	2.99	
만35세 이상	22.2	37.0	25.9	11.1	3.7	100.0(27)	2.37	

주: 평균은 '매우 많음' 1점~'전혀 없음' 5점으로 산출한 결과임.

** $p < .01$

2) 일·가정 양립지원제도 이용 실태 및 만족도

한번이라도 취업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휴직제도 등 각종 일·가정 양립지원제도의 사용 경험과 사용 경험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과 이용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우선 이용률을 살펴보면, 휴가/휴직제도의 이용이 두드러져, 산전후 휴가 20.8%, 배우자 출산휴가 18.1%, 육아휴직 10.2%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난임 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제, 배우자 육아휴직 등은 1% 미만의 저조한 이용률을 보였다.

이용 기간은 이용률이 가장 높은 산전후 휴가의 경우 평균 2.8개월로 나타나며, 배우자 출산휴가는 평균 5.1일로 현행 법정 휴가 기간인 5일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육아휴직은 6.5개월로 현행 법정 보장 기간인 1년의 절반가량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배우자 육아휴직 이용 시간은 평균 3개월로 모의 절반 수준이었다. 이는 배우자 출산휴가는 최소 5일이 요구되며, 남성에게만 할당하는 휴직 제도를 모색할 경우 해당 기간으로는 3개월 이하가 고려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이용 만족도는 배우자 육아휴직이 5점 만점에 평균 4.17점으로 가장 높고, 직장어린이집 4.0점 배우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3.80점, 유급 수유 시간 3.75점, 유급 태아 검진 시간 3.67점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배우자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 등 남성 대상 자녀 양육지원제도를 강화하고, 유급 수유 시간과 태아 검진 시간의 보장에도 주력할 필요가 있다.

〈표 IV-3-14〉 취업 경험자의 일·가정 양립지원제도 이용 경험

단위: %(명), 점

구분	이용 경험		이용기간	이용 만족도					평균
	이용율	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유·사산휴가	1.9	100.0(794)	15.80일	-	33.3	33.3	26.7	6.7	3.07
난임(불임)휴직	0.3	100.0(794)	1.00개월	-	-	50.0	50.0	-	3.50
유급 태아 검진 시간	1.1	100.0(794)	-	-	-	44.4	44.4	11.1	3.67
산전후 휴가	20.8	100.0(794)	2.82개월	2.4	9.7	36.4	47.9	3.6	3.41
배우자 출산휴가	18.1	100.0(794)	5.10일	2.8	17.4	42.4	36.1	1.4	3.16
육아휴직	10.2	100.0(794)	6.51개월	3.7	14.8	23.5	55.6	2.5	3.38
배우자 육아휴직	0.8	100.0(794)	3.00개월	-	-	-	83.3	16.7	4.17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0.3	100.0(794)	3.00개월	-	50.0	-	50.0	-	3.0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0.6	100.0(794)	1.80개월	-	-	40.0	40.0	20.0	3.80
유급 수유시간	0.5	100.0(794)	-	-	-	25.0	75.0	-	3.75
가족돌봄 휴직제	-	100.0(794)	-	-	-	-	-	-	-
유연근무제	0.3	100.0(794)	-	-	-	50.0	50.0	-	3.50
유연근무제(배우자)	0.4	100.0(794)	-	33.3	-	-	33.3	33.3	3.33
직장어린이집	0.1	100.0(794)	6.00개월	-	-	-	100.0	-	4.00

주: 이용 만족도는 해당 제도의 이용 경험이 있는 경우에 한해 조사한 결과임.

평균은 '매우 불만족' 1점~'매우 만족' 5점으로 산출한 결과임.

다음으로 정부 육아지원사업의 인지 여부와 이용 경험, 그리고 이용 시 도움 정도를 각각 조사하였다(표 IV-3-15 참조).

우선 제도별 인지율을 살펴보면, 만 3~5세 무상보육·교육지원 96.9%, 영아 무상보육료 지원 90.3%, 양육수당 89.5%로 보육·교육비 지원과 현금지원에 대한 인지도가 확연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아이돌보미 지원이 60%선의 인지도를 나타내며, 보육정보센터나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추진 중인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에 대한 인지도는 가장 낮은 수준인 약 38%선에 그쳤다.

제도 이용률은 양육수당제도가 53.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영아 보육료지원과 누리과정 지원이 각각 31.7%와 38.0%로 나타났고, 아이돌보미와 보육정보센터 그리고 공동육아나눔터는 6%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이용률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이용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해당 제도의 도움 정도를 질문한 결과, 보육정보센터가 만점 4점에 3.16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만 3~5세 보육·교육비 지원 3.11점, 영아 무상보육료 지원 3.09점, 양육수당 3.03점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보육정보센터의 경우 인지도와 이용률은 매우 낮은 수준이나 이용 만족도는 매우 높으므로 인프라 확충을 통해 지역

내 육아지원사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IV-3-15〉 정부 육아지원사업의 인지/수혜/도움 정도

단위 : %(명)

구분	인지율 ¹⁾	이용 경험		이용 시 도움 정도					평균 ²⁾
		이용	계	전혀 도움 안됨	도움 안됨	도움됨	많이 도움됨	계	
양육수당	89.5	53.3	100.0(895)	1.5	8.6	75.7	14.3	100.0(477)	3.03
영아 무상보육료 지원	90.3	31.7	100.0(903)	-	5.9	79.0	15.0	100.0(286)	3.09
만3~5세 누리과정 무상보육·교육비 지원	96.9	38.0	100.0(990)	1.3	5.6	73.7	19.4	100.0(376)	3.11
시간제 아이돌보미	67.8	5.9	100.0(678)	-	17.5	77.5	5.0	100.0(40)	2.88
영아 종일제 아이 돌보미	60.4	2.2	100.0(604)	30.8	-	53.8	15.4	100.0(13)	2.85
건강가정지원센터 공동육아나눔터	37.7	1.6	100.0(377)	-	50.0	50.0	-	100.0(6)	2.50
보육정보센터 (영유아플라자)	38.2	5.0	100.0(382)	-	15.8	52.6	31.6	100.0(19)	3.16

주: 1) 전체 1,000사례를 대상으로 인지율을 산정함.

2) 평균은 '전혀 도움이 안됨' 1점~'많이 도움이 됨' 5점으로 산출한 결과임.

한편 이용 경험의 50%를 넘는 양육수당에 한하여 초산 연령대별로 인지율, 수혜율, 양육 도움 정도를 살펴보았다.

〈표 IV-3-16〉 초산 연령대별 양육수당 인지/수혜/도움 정도

단위: %(명), 점, 명

구분	인지율	계	수혜 경험		양육 도움 정도(평균)	사례수
			수혜	미수혜		
전체	89.5	100.0(1,000)	53.3	46.7	3.03	477
모초산연령						
만35세 미만	90.0	100.0(700)	58.3	41.7	3.06	367
만35세 이상	88.3	100.0(300)	41.5	58.5	2.93	110
$X^2(df)/t$	-	-	21.012(1) ^{***}		5.020 [*]	

주: 평균은 '전혀 도움이 안 됨' 1점~'많이 도움이 됨' 5점으로 산출한 결과임.

* $p < .05$, *** $p < .001$

우선 제도 인지율은 초산 연령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수혜 경험은 차이를 보여 만 35세 미만이 58.3%로 만 35세 이상에 비해 약 17%p 높게 나타났다. 또한 양육 도움 정도는 수혜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 35세 미만에 초산을 한 모가 평균 3.06점으로 만 35세 이상에 비해 높았다.

초산연령에 따른 양육수당에 대한 인지율 차이는 보이지 않으나, 수혜율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는 점은 앞서 확인된 높은 기관 이용률과 관련이 있다고 보여 진다. 이는 만 35세 이상 고령출산모의 경우 체력부담, 지원인력 부족 등 가정 내 직접 양육에 더 큰 어려움이 있어 기관 이용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기관보육 서비스의 이용이 용이하도록 보육·교육 기관의 양적 확대 환경 개선 등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결과라 하겠다.

4. 소결

지금까지 살펴본 초산연령대별 양육 실태 및 애로사항에 의하면, 고령출산모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의 시사점을 모색할 수 있다.

우선 고령 출산모의 취업과 양육 특성을 살펴보면, 고령출산 가족에서의 ‘양육지원 자원’의 취약성이 드러났다.

만 35세 이상 고령출산모의 기관 이용율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조부모 등 지원인력이 현저히 부족한 상황에서 비롯된 것으로, 가정 내 양육이 상대적으로 보다 어려운 상황임을 말해준다. 다시 말해 고령출산모는 첫 출산 당시 만 65세 이상 노인에 해당하는 조모 비율이 현저히 높고 이들의 유병율이 높아 주된 사적 육아지원 인력인 조모의 지원을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어서 기관 이용을 선호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이 같은 돌봄 지원 인력의 부족은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보다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가구소득이 낮은 고령출산모 가구의 양육 시 어려움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여 진다.

특히 만 35세 이상 고령출산모들이 ‘긴급 보육 시 지원인력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므로 아이돌보미 등 개인양육지원과 기관보육의 우선 지원 대상으로 저소득층 고령출산모가 고려될 수 있다고 본다.

다음으로, 출산의 고령화 경향이 심화될 것을 고려할 때 배우자의 양육 참여를 용이하게 하여 '부부' 중심의 양육이 가능토록 사회적 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지원인력의 부족으로 배우자인 남성의 양육 참여가 보다 절실한 실정임으로 남성 대상 양육지원제도의 활용이 용이하도록 직장 환경을 조성하고, 아버지 교육 등 남성 대상 양육지원 프로그램의 주된 대상으로 포괄되어야 할 것이다. 앞서 다룬 바에 의하면, 배우자의 양육 참여 수준은 초산연령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으므로 이에 보다 주력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남성의 양육 참여가 어려운 주된 이유로는 '직장일이 바빠서'가 약 77%로 압도적으로 높은 응답율을 보이므로 남성의 양육 참여를 활발히 유도하기 위해서는 노동 문화의 개선이 일차적인 과제라고 하겠다.

또한 고령출산모의 취업과 관련해서는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과 불안정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취업을 증진과 관련해 출산 후의 일-가정 양립과 임신 전에도 일-가정 양립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모의 취업과 관련하여 만 40세 이상 모와 만 35세 이상 고령출산모는 이외 연령대에 비해 상용직 비율이 낮고 계약직이나 임시직 비율이 높아 휴직제도 등 일-가정 양립지원 제도를 활용하기 어렵고, 임금 수준이 낮을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된다. 이 같은 경제적 불안정성은 초산연령 만 35세 이상인 모의 배우자의 상용직 비율이 낮다는 점을 감안할 때 더욱 우려되는 부분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초산연령이 만 35세 이상인 모는 경제활동에 대한 의지가 높아 취업을 지속하려는 비율이 이외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나므로 재취업 등에 대한 지원 노력이 요구된다. 이들 고령출산모 가구의 취업 보장은 만 40세 이상 모는 높은 조부모 연령으로 인해 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비율이 높고, 양육 시 도움을 주는 인력에게 비용을 지불하는 비율과 해당 비용 수준이 이외 연령대에 비해 높은 데서도 필요성이 제기된다. 즉 고령 출산모는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불안정한 고용으로 인해 자녀 양육비용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모의 경력단절의 주된 사유로 '일-가정 양립 시 어려움'이 지적되고, 취업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항으로 '자녀 양육이 용이한 일자리'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점을 고려하면, 고령출산모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일차적 과제는 가족친화적인 직장 환경의 조성이라 하겠다. 보다 구체적으로 취업 지속

에 효과적이고 이용 시 만족도와 도움 정도가 크다고 응답한 제도로는 휴직제도, 유연근무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순으로 지적되므로 이들 제도의 내실화에 보다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지역 내 육아지원사업 기관인 보육정보센터는 낮은 인지도와 이용률에도 불구하고 이용 시 도움 정도는 매우 높게 평가되므로 해당 기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해당 인프라를 확충하여 접근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또한 초산연령이 만 35세 이상인 모는 임신을 준비하기 위해 경력단절한 비율이 높고, 취업 유지를 위해 필요한 지원으로 난임(불임)휴가 사용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나므로 임신 전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V. 고령출산 가족의 출산·육아 실태 심층 분석

1. 고령출산 가족의 특성

만 35세 이상의 나이에 첫 자녀를 출산한 가족을 본 연구에서는 ‘고령출산가족’으로 정의하였는데, 이 절에서는 이러한 고령출산가족의 생애주기 유형과 고령출산의 이유를 살펴보았다.

가. 고령출산 가족의 생애주기 유형

본 연구를 위해 실시한 영유아 자녀가 1명 있는 20~49세 이하 기혼여성에는 만 35세 이상의 연령에 첫 출산을 한 고령출산모 집단이 300사례 포함되었다.

이들을 앞서 살펴본 초혼연령과 초산연령에 따른 집단 구분으로 보면 만 30세 미만 결혼적령기에 결혼하였으나 출산은 만 35세 이상에 첫 출산이 이루어진 집단과 만 30세 이상 만혼에 출산도 만 35세 이상 출산한 집단의 2가지 유형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2가지 생애주기 유형은 전체 고령출산 가족 내에서 각각 8.7%(26사례), 91.3%(274사례)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35세 이상에 초산을 하는 집단은 임신이 어려워 출산이 지연된 경우보다는 결혼이 늦어짐으로 인해 초산도 지연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일반적으로 결혼이 늦어진 경우 결혼이 빨랐던 집단보다 임신의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은 높을 수 있지만, 결혼이 빨랐던 경우라도 임신과 출산의 어려움으로 인해 비자발적인 고령출산 가족이 될 가능성은 존재하며 오히려 이러한 경우의 심적·신체적 고통이 더 클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나. 고령출산의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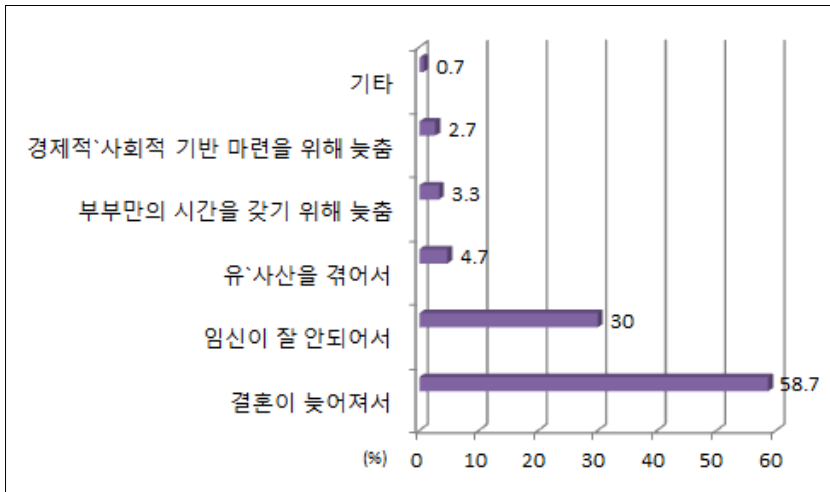
다음으로 만 35세 이상 ‘고령’ 혹은 ‘고위험’으로 지칭되는 늦은 연령에 첫 출산을 하게 된 이유를 살펴보았다.

만 35세 이후 초산을 한 300사례를 대상으로 응답하도록 한 결과, ‘결혼이 늦

어저서'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여 약 60%에 가까운 응답자는 결혼이 늦어짐으로 인해 고령출산을 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고, 약 30%는 '임신이 잘 안되어서' 고령출산 가족이 되게 된 것으로 응답하였다.

이밖에 '유·사산을 겪어' 출산이 늦어지게 되었다는 응답이 4.7%이며, '부부만의 시간을 가지기 위해', '경제적·사회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임신·출산을 미룬 경우는 6% 정도로 많지 않았다.

즉, 결혼이 출산의 관문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늦은 결혼' 자체가 고령 출산을 유발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이며, 원하는 시기에 임신이 잘 되지 않는 문제가 또 하나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었다.



[그림 V-1-1] 35세 이상 고령 초산의 이유

이러한 이유는 고령출산 가족의 생애주기 유형에 따라서도 차이가 난다. 즉, 만 30세 미만의 결혼적령기에 결혼했으나 자녀 출산은 만 35세 이후에 하게 된 '결혼적령기 결혼, 고령출산 집단'에서는 '임신이 잘 안되어서', '유·사산을 겪어서'가 주된 고령출산 이유로 이들은 곧 '난임부부'로서 분류될 수 있는 집단임이 드러났다. 면담 사례 중 40세 이후에 첫 자녀를 출산한 사례에서 이러한 경우가 발견된다.

28세에 결혼을 했는데... 1년 피임후 가지려고 했는데 뜻대로 안되어서...포기하고 있다가 15년만에 저희 딸이 생긴거예요.(사례 5. 28세 결혼, 42세 초산모)

신혼초부터 준비는 했었는데 잘 안됐었거든요.(사례 7. 29세 결혼, 42세 초산모)

이들은 특히 시험관 시술 등을 수차례 시행했음에도 쉽게 임신이 되지 않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거나, 임신이 되어도 유·사산을 겪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험관 시술을) 7번 시도해서 성공했어요...지원도 받지만, 그 후에 들어가는 것도 많고 부담되죠. 안 되는 사람들은 계속 해야 하니까 부담되죠.(사례 7. 29세 결혼, 42세 초산모)

아이를 가졌다가 5개월에 잘못되고...(시험관 시술을) 13번까지 하니까 돈도 너무 많이 들고...(사례 5. 28세 결혼, 42세 초산모)

결혼이 30세 이상에 이루어진 ‘만혼, 고령출산 집단’은 무엇보다 ‘결혼 자체가 늦어져 출산이 늦어졌다’라는 것이 고령출산의 주된 이유였다(63.5%). 이처럼 ‘만혼, 고령출산 집단’의 가장 큰 고령 출산의 이유는 ‘만혼’ 자체이나, ‘임신이 잘 안되어서’의 이유도 26.3%로 낮지 않았는 바, 결혼이 늦어져 임신 시도가 늦어지는 상황에서 결혼이 늦어지더라도 ‘임신’이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예방적 생식 건강관리와 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면담 사례 중 만 47세의 나이에 첫 자녀를 출산한 한 사례는 결혼을 38세로 늦게 했고 자녀 출산에 대한 의지도 강하지 않았으나, 난임부부 지원 사업의 대상이 된 것을 계기로 자녀 출산을 계획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사업이 출산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저소득 가구에 출산 의지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 하겠다.

(지원이 생긴 다음) 시작을 했어요. 그 전엔 돈 때문에 생각을 안해봤는데 지원이 있다고 해서 애기를 낳아 봐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됐고, 4회 지원 받으면서 아이가 생겼어요. 지원 받고 (성공까지) 한 2년 걸린 것 같아요.(사례 14. 38세 결혼, 47세 초산모)

이러한 고령출산의 이유를 가구소득별로 살펴보면, 결혼이 늦어져서라는 응답은 모든 소득대에서 높게 나타나나, 300만원 미만 소득 가구에서는 ‘임신이 잘 안되어서’라는 응답 비율이 46.4%로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나 주목된다. 또한 500만원 이상 고소득 가구에서는 ‘유·사산을 겪어서’라는 비율이 10.0%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경력단절 경험에 따라서는 경력단절 경험이 있는 경우 ‘임신이 잘 안되어서’, ‘유·사산을 겪어서’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바, 이러한 이유로 경력단절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표 V-1-1〉 만 35세 이상 고령 초산 이유

단위: %(명)

구분	결혼이 늦어져서 (결혼 후에는 곧 임신함)	임신이 잘 안되어서	유산· 사산을 겪어 출산이 늦어짐	부부만의 시간을 가지기 위해 임신을 늦춤	경제적, 사회적 기반 마련을 위해 임신을 늦춤	기타	계
전체	58.7	30.0	4.7	3.3	2.7	0.7	100.0(300)
결혼&초산집단별							
결혼적령기 결혼, 고령출산	7.7	69.2	11.5	3.8	3.8	3.8	100.0(26)
만혼, 고령출산	63.5	26.3	4.0	3.3	2.6	0.4	100.0(274)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41.1	46.4	3.6	3.6	5.4	-	100.0(56)
300~400만원	66.7	26.1	2.7	2.7	0.9	0.9	100.0(111)
400~500만원	57.5	28.8	4.1	2.7	5.5	1.4	100.0(73)
500만원 이상	61.7	23.3	10.0	5.0	-	-	100.0(60)
경력단절 경험							
있음	50.0	34.5	8.6	1.7	3.4	1.7	100.0(58)
없음	59.2	29.9	3.8	3.8	2.7	0.5	100.0(184)
비해당	65.5	25.9	3.4	3.4	1.7	-	100.0(58)

2. 고령출산 가족의 당면문제

가. 임신·출산문제

1) 임신의 어려움

먼저 만 35세 미만 초산 집단과의 비교를 통해 만 35세 이상 고령 출산(초산) 가족에서 나타나는 임신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고령출산의 기준이 되는 만 35세 미만의 초산 가족과 비교시 만 35세 이상 고령출산 가족의 임신 특성은 ‘임신의 어려움’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임신 계획율은 만 35세 미만 초산 집단과 별 차이가 없었고, 임신을 계획한 경우 출산 시기를 결혼 후 2년 이내로 계획하는 하는 경우가 70%를 상회하여 임신은 결혼 후 1년 이내로 계획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실제 결혼 후 1년 이내 임신율은 50%에 불과하였다. 또한 임신이 1년 이내 되지 않은 경우 임신까지 걸린 기간이 만 35세 미만에서 평균 20.6개월임에 비하여 만 35세 이상 초산시 38개월가량 소요된 것으로 나타나, 1년 이상 임신이 되지 않은 경우 임신을 하기까지의 기간이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보조생식술을 이용한 임신 비율이 10.7%로 만 35세 미만에 비해 7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는 바, 실제 출산이 늦어짐에 따라 ‘난임’을 겪었던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 V-2-1〉 고령초산여부에 따른 임신 특성

단위: %

구분	임신 계획률	결혼 후 2년 이내 출산계획률 (A)	결혼 후 1년 이내 임신률 (B)	계획대비 임신률 (1년 내 임신 기준) ^{주)}	1년이상 걸린 경우 실제 임산까지 걸린 기간 (개월)	보조생식술 이용 임신률
전체	35.1	84.7	63.5	75.0	27.67	4.2
만35세 미만	35.3	90.0	69.2	76.9	20.63	1.4
만35세 이상	34.7	72.4	50.0	69.1	37.96	10.7

주: B/A로 산출함

2) 건강한 임신·출산의 어려움

〈표 V-2-2〉 초산연령별 첫 자녀 임신출산 시 문제 경험율

단위: %(명)

구분	임산부 건강문제	태아 건강문제	3주 미만 출산	25kg 미만 저체중아 출산	기타 자녀건강 문제	출산· 회복시 건강문제	신생아 집중치료실, 미숙아실 입원	전체
전체	7.0	2.6	1.9	2.4	0.6	3.0	1.9	100.0(1,000)
모초산연령								
만35세 미만	4.3	1.7	1.7	1.9	0.4	1.4	1.6	100.0(700)
만35세 이상	13.3	4.7	2.3	3.7	1.0	6.7	2.7	100.0(300)

첫 임신·출산 시 문제 발생률을 문제별·초산연령별로 비교해 보면, 만 35세 미만 초산한 경우에 비해 만 35세 이상 초산한 경우 모든 문제의 경험 비율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표 V-2-2 참조). 만 35세 이상 초산모 집단에서는 임신 과정에서 산모 자신과 태아의 건강 문제를 경험한 비율이 높고 산후회복기에 어려움을 겪은 경우가 만 35세 미만 초산 집단보다 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이러한 다양한 문제 유형 중 하나라도 경험한 비율을 살펴보았는데, 전체 1,000사례 중에서는 12.3%가 앞의 7가지 임신·출산 과정 중의 문제 중 한 가지라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만 35세 이상 초산한 경우 이러한 문제 경험 비율은 22.3%로 8.0%의 문제 경험율을 보이는 만 35세 미만 초산모에 비해 문제를 경험할 위험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음이 확인된다. 즉,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첫 출산이 늦어진 고령출산 집단에서는 임신의 어려움을 겪었을 뿐 아니라 임신과정과 출산 시, 출산 후 회복 시에도 어려움을 크게 겪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표 V-2-3〉 고령초산여부에 따른 임신·출산 시 문제 경험

단위: %(명)

구분	임신·출산시 문제 경험	문제 경험하지 않음	계	$X^2(df)$
전체	12.3	87.7	100.0(1,000)	
모초산연령				
만35세 미만	8.0	92.0	100.0(700)	39.995(1)***
만35세 이상	22.3	77.7	100.0(300)	

*** $p < .001$

특히, 이러한 문제 경험율은 고령출산모의 생애주기 유형과 취업여부에 따라 서로 차이가 나타나는데, 먼저 만 30세 미만 결혼한 고령출산 집단 중 42.3%가 임신·출산 시 문제를 경험한 경우로 만 30세 이상 결혼한 고령출산 집단(20.4%)에 비해 문제를 경험한 비율이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 이는 단지 나이가 임신·출산시의 문제와 위험의 결정 요인은 아니며 적정 연령대에 결혼한 부부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임신·출산의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고 이로 인한 비자발적인 출산 지연이 초래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취업중인 어머니에게서 이러한 임신·출산 시 문제 경험 비율이 32.1%로 비취업모에(18.9%)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학업과 취업

으로 인해 남녀의 결혼연령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그로 인해 학업 또는 취업 중에 임신을 겪을 고령임산부가 증가할 상황에서, 취업 및 학업 중의 임산부의 건강한 임신유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 V-2-4〉 고령출산모의 특성별 임신·출산 시 문제 경험

단위: %(명)

구분	임신·출산시 문제 경험	문제 경험하지 않음	계	$X^2(df)$
전체	22.3	77.7	100.0(300)	
결혼&초혼연령				
결혼적령기 결혼, 고령출산	42.3	57.7	100.0(26)	6.548(1)*
만혼, 고령출산	20.4	79.6	100.0(274)	
모 취업 여부				
취업중	32.1	67.9	100.0(78)	5.739(1)*
비취업	18.9	81.1	100.0(222)	

* $p < .05$

이처럼 고령임산부들은 임신·출산 과정에서 젊은 임신부들에 비해 더 많은 위험성을 지니며 임신·출산과정의 문제를 실제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남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이유로 고령임산부에게는 임신 중의 다양한 검사가 권유될 수 있어 담당 의료진으로부터 권유받은 검사들을 초산연령별로 살펴보았다.

<표 V-2-5>에 나타난 결과에 따르면 태아의 이상이 의심될 때 많이 시행하는 검사들을 담당 의료진으로부터 권유받은 비율은 초산연령에 따라 높아지며, 특히 만 35세를 기점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이 발견된다. 가장 많이 권유받고 시행한 양수검사의 경우 만 30세 미만 초산 집단에서 33.5%가 권유받고 시행하였고, 만 30~34세 초산집단에서 38.8%로 약간의 증가 경향을 보였으나 만 35세 이상 초산 집단에서는 61.7%가 이 검사를 권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권유받은 비율이 낮았던 '신경관결손 검사'도 만 30세 미만 초산모는 0.3%, 만 30~34세 미만 초산모는 1.4%인 반면 만 35세 이상 초산모는 4.0%가 권유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태아의 건강이나 출산 후 신생아의 건강에 문제를 겪은 비율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만 35세 이상 초산모라 하더라도 5% 이상을 넘는 경우가 없다는 것을 고려할 때, 적게는 4%에서 많게는 60%가 넘는 고령 임산부가 특정 검사를 권유받은 경험이 있다는 사실은 만 35세 이상의 임신이 의료진으로부터 위험성이 큰 임신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

다 하겠다.

〈표 V-2-5〉 첫 임신 시 담당의사로부터 권유받은 검사

단위: %, 명

구분	음모막 검사	양수 검사	제대혈 검사	정밀 초음파 (표적 초음파 검사)	신경관 결손 검사	없음	기타	사례수
전체	12.2	43.9	12.2	33.7	1.8	44.2	0.2	1,000
모초산연령								
만30세 미만	5.1	33.5	9.4	24.5	0.3	55.9	-	331
만30세~34세	11.9	38.8	10.8	37.1	1.4	45.5	-	369
만35세 이상	20.3	61.7	17.0	39.7	4.0	29.7	0.7	300

주: 다중응답 결과임.

이는 고령출산모와의 면담에서도 드러났는데 의료진의 검사 권유는 이들에게 경제적 부담 뿐 아니라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이가 있으신 분들 위주로 검사 추가하는 것이 있더라구요. 양수검사라든가. 거의 100만원 가까이 하는 걸로 들었거든요. 의사가 권하는데 찝찝해서 안하기도 그렇고...(사례 6. 32세 결혼, 35세 초산모)

(임신·출산시) 큰 어려움은 없었는데 35세니까 조금만 정상치에서 벗어나면 검사 하자고 그러잖아요.(추가 비용으로) 100만원 정도?(소요되었어요)(사례 8. 30세 결혼, 35세 초산모)

제가 나이도 있고 하니까 여러 검사를 권하는데, 저는 우선 피검사를 해보고 다른 검사를 하겠다 했어요. 피검사를 했는데 수치가 너무 좋게 나왔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양수검사를 하라, 정밀 초음파를 하라 이렇게 하시고.(사례 13. 38세 결혼, 40세 초산모)

다음으로 전체 사례를 대상으로 만 35세를 기준으로 한 과거 유·사산 경험 비율과 첫 출산 시 제왕절개에 의한 출산 비율을 살펴보았다.

<표 V-2-6>에 나타난 바에 따르면 만 35세 이상 초산 집단에서 과거 유·사산을 경험한 비율이 12.3%로 높아져 과거 임신유지에 문제를 겪었던 사례가 많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유·사산 경험 자체가 초산 연령을 늦추는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측되는 부분이다.

〈표 V-2-6〉 고령초산여부에 따른 임신유지·출산방법 특성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유·사산 경험 비율	제왕절개비율	
			계획된 제왕절개	계획되지 않은 제왕절개
전체	1,000	9.0	15.0	9.0
모초산연령				
만35세 미만	700	7.6	9.3	8.7
만35세 이상	300	12.3	28.3	9.7

아이를 두 번 유산했거든요. 늦게 결혼을 하니까 몸이 노화가 되어서 그런지 조금 후회는 했어요. 좀 더 일찍 할 걸.(사례 3. 35세 결혼, 37세 초산모)

출산 방법에 대해서는 만 35세 이상 초산 집단이 만 35세 미만 초산 집단에 비해 제왕절개 출산을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계획하지 않은 응급 제왕절개’의 비율에서의 차이는 미미하나, ‘계획된 제왕절개’가 만 35세 이상 초산모에게서 현저히 높아지는 경향을 보여 주목된다.

이는 고령출산의 위험성과 어려움에 대한 우려로 실제 필요보다 과도하게 고령초산모에게서 ‘예방적인 측면에서의’ 제왕절개가 시행되었을 것으로 추측되는 부분이다.

이는 고령출산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이에 의해 조장된 고령출산모 자신의 우려, 그리고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의료진의 욕구와 상업적 의도의 합작으로 유발된 결과일 수 있다.

초산연령이 높아질수록 위험성이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위험성을 줄이고 출산율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일환으로 과도하게 유발된 ‘고령출산’에 대한 사회적 경고는 출산을 저하를 우려하는 측면에서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만혼 현상을 거스를 수 없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더 출산을 하락을 부추기는 요인이 될 수 있다.

3) 낮은 출산 의지

현재 임신 중인 경우를 포함해 둘째 자녀 이상의 후속출산 계획이 있는지 여부를 어머니의 초산연령별로 살펴보았을 때, 만 35세 이상에 첫 자녀를 출산한 집단에서는 후속출산을 계획하는 경우가 18.0%로, 만 35세 미만 초산모의 후속출산계획률이 50% 가까이 되는데 비해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

〈표 V-2-7〉 초산연령에 따른 후속출산계획 여부

단위: %(명)

구분	계획 있음	계획 없음	계
전체	40.0	60.0	100.0(1,000)
모초산연령			
만35세 미만	49.4	50.6	100.0(700)
만35세 이상	18.0	82.0	100.0(300)

다음으로 만 35세 이상에 초산한 고령출산모만을 대상으로 가구소득과 어머니의 취업여부별 후속출산계획을 살펴보았는데, 이에 따른 후속출산계획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어머니의 현재 연령에 따라서는 후속출산계획의 차이가 있어서, 만 40세 미만 어머니의 경우 22.5%가, 만 40세 이상은 이에 절반에 못 미치는 10.1%만이 추가자녀를 출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표 V-2-8〉 고령출산모의 제 특성별 후속출산계획 여부

단위: %(명)

구분	계획 있음	계획 없음	계	$X^2(df)$
전체	18.0	82.0	100.0(300)	
모연령				
만35~40세 미만	22.5	77.5	100.0(191)	7.254(1)**
만40세 이상	10.1	89.9	100.0(109)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17.9	82.1	100.0(56)	.688(3)
300~400만원 미만	18.0	82.0	100.0(111)	
400~500만원 미만	20.5	79.5	100.0(73)	
500만원 이상	15.0	85.0	100.0(60)	
모 취업 여부				
취업중	14.1	85.9	100.0(78)	1.085(1)
비취업	19.4	80.6	100.0(222)	

** $p < .01$

현재 1자녀만이 있는 가구임에도 이처럼 고령출산가족의 추가 자녀 출산 의지는 매우 낮게 나타나는 바, 출산계획이 없는 이유를 살펴보았다.

〈표 V-2-9〉 고령출산 가족의 추가 자녀 출산 계획이 없는 이유

단위: %(명)

구분	양육비 부담 때문에	체력 부담 때문에	일-가정 양립이 어려워서	원하는 자녀수에 도달 하여서	부모의 나이가 많아서	자녀 양육을 도와줄 사람 또는 기관이 마땅치 않아서	기타	계
전체	30.5	13.0	7.3	2.8	42.3	1.2	2.8	100.0(246)
모연령								
만35~40세 미만	35.1	14.9	9.5	2.7	33.1	2.0	2.7	100.0(148)
만40세 이상	23.5	10.2	4.1	3.1	56.1	-	3.1	100.0(98)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39.1	19.6	2.2	2.2	34.8	-	2.2	100.0(46)
300~400만원 미만	37.4	11.0	3.3	2.2	42.9	-	3.3	100.0(91)
400~500만원 미만	24.1	13.8	6.9	5.2	43.1	3.4	3.4	100.0(58)
500만원 이상	17.6	9.8	19.6	2.0	47.1	2.0	2.0	100.0(51)
모 취업 여부								
취업중	26.9	9.0	19.4	1.5	37.3	4.5	1.5	100.0(67)
비취업	31.8	14.5	2.8	3.4	44.1	-	3.4	100.0(179)

주: 빈도분포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표 V-2-9>에 따르면 고령출산 가족에서 추가 자녀 출산을 계획하지 않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도 ‘부모의 나이가 많아서’로 42.3%가 이에 해당하였고, 그 다음으로 ‘양육비 부담’ 30.5%, ‘자녀양육이 체력적으로 힘들어서’가 13.0%로 주된 이유는 ‘부모의 나이’, ‘양육비 부담’, ‘체력 부담’으로 요약되었다. 반면, ‘이미 원하는 자녀 수에 도달하였다’라는 이유는 2.8%에 불과하여 1자녀에 대한 만족으로 인해 추가 자녀 출산 계획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닌, 경제적 부담, 부모의 나이와 체력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추가 자녀를 출산을 포기한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점은 어머니 자신의 연령 뿐 아니라 아버지의 연령과 업무 부담과 스트레스 등을 이유로 후속출산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이는 사례 면담에서 극명히 드러난다.

(저는 충분히 둘째를 낳을 수 있는 연령이라 생각하지만) 아빠도 회사일이 한창 바쁠 때고 해서 스트레스도 많고 심리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힘들지 않을까 해요. 애 가지려고 하는 것도 스트레스니까요.(사례 13. 38세 결혼, 40세 초산모)

이는 고령출산가족들은 부부 외의 양육 지원 인력이 부족하므로, 부부의 상황이 양육에 충분히 참여하기 어려운 때라 판단되면 신체적 연령이 높아서가 아니라 사회적 연령이 양육에 적합하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자녀 출산을 포기하게 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고령출산 가족은 이처럼 신체적·사회적 ‘나이’를 자녀 출산 포기의 주된 이유로 호소하나, 47세에 초산한 한 면담 사례는 오히려 추가 출산을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있었고, 나이 때문이 아닌 양육비, 봐줄 곳이 없는 문제를 출산의지 저하의 주된 이유로 지적하였다.

애 보육 때문인 것 같아요. 애한테 들어가는 돈도 많고 봐줄만한 곳도 없고...(사례 14. 38세 결혼, 47세 초산모)

이밖에도 늦은 출산으로 인해 부모의 은퇴 후의 자녀 양육을 걱정하는 견해도 사례 면담에서 나타나고 있다.

원래 회사에서 자녀 학자금이 나와요. 근데 출산이 늦다보니 애가 대학갈 때쯤 은퇴를 해야 해요. 사실 그때 제일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저희도 노후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사례 13. 38세 결혼, 40세 초산)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은 못하였지만 어머니의 연령, 가구소득,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후속출산 계획이 없는 이유에는 차이가 나타났다(표 V-2-9 참조). 현재 어머니의 연령이 만 40세 이상일 경우 ‘나이가 많아서’가 56.1%로 절대적인 추가 출산 포기의 이유였으며, 현재 연령이 만 35~40세 미만인 경우는 ‘양육비 부담’이 가장 큰 이유였다(35.1%). 가구소득은 높아질수록 ‘양육비 부담 때문에’ 자녀 출산을 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여 500만원 이상 가구에서는 단지 17.6%만이 이러한 경제적 부담이 후속출산계획을 하지 않는 이유였다. 가구소득이 높아질수록 양육비 부담보다는 ‘나이 때문에’ 자녀를 낳지 않으려 한다는 응답률이 높아지고 있고,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때문에’의 이유가 높아져 500만원 이상 가구에서는 19.6%가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때문에 후속자녀를 더 출산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가구소득이 높은 가구는 고령출산 가족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부모의 연령이 더 높고 어머니의 취업을 통해 소득이 높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양육비 등 경제적 부담은 덜하나, 자녀를 추가 출산할 경우 높은 소득의 원인이 되는 어머니의 일-가정 양립이 어려워질 수 있고, 연령 또한 높은 편으로 출산

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추측된다. 이처럼 고령출산 가족에서는 어머니가 취업중인 경우 경력도 높은 경우가 많아 경제적 자원이 풍부하고 경제적으로 안정화될 수 있으나, 자녀 출산으로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높으므로 상대적으로 자녀 양육을 위한 풍족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자녀 출산 의지는 낮게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령출산 가족의 후속출산계획 여부와 후속출산을 하지 않으려는 이유를 살펴해보았는데,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통해 고령출산 가족에서는 가구소득이 높아도, 어머니가 취업중이 아니어도 추가 자녀 출산의지는 낮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는 만혼 등으로 고령초산이 심화될 상황에서 출산을 회복을 어렵게 하는 특징으로 우려를 자아낸다.

그러나 면담 대상이었던 47세의 초산모와 36세의 초산모는 흔히 말하는 고령출산인 35세를 넘긴 나이이지만 후속 출산을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있어서, 모든 고령 출산모가 후속출산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님을 보여주었다.

건강관리나 경제적으로 괜찮으면... 신체 나이가 젊어지기 때문에 인공수정, 시술관 이런 것도 성공률이 높은 것 같아요. 주변에 보면. 중요한건 건강, 의지랑 경제적인거죠.(사례 4. 30세 결혼, 35세 초산모)

최소 2명(계획해요). 제가 나이가 많으니까 더 낳고 싶어요. 제가 나이가 많으니까 서로 의지할 수 있는 (형제가 필요한 것 같아요) 경제적인 부분은 어떻게라도 하면 할 수 있으니까.(사례 14. 38세 결혼, 47세 초산모)

나. 양육문제: 지원인력 부족

앞서 자녀양육 지원과 관련된 사회 관계망을 분석하였을 때, 만 35세 이상에 초산을 한 고령출산 가족의 경우 조모로부터 양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반적으로 친조모와 외조모가 자녀 양육의 주요한 지원 인력으로 기능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들의 연령대가 곧 양육 지원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는데, 고령출산 가족의 친조모, 외조모의 연령이 만 35세 미만 초산 가족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만 35세 미만 초산 가족의 조모들은 법적으로 분류되는 '노인'에 해당되는 경우가 친조모 35.3%, 외조모 28.7%였음에 반하여, 만 35세 이상 초산 가족의 조모들은 65세 이상 노인층이 친조모 57.2%, 외조모 51.3%로 나타났고, 이들의 유병률 또한 만 35세 미만 초산 가구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

은 경향을 보였는 바, 연령과 건강을 고려할 때 조모로부터의 양육지원의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생각된다.

고령출산 가족은 조부모로부터 양육지원을 받을 가능성은 낮게 나타나는 반면, 오히려 조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하는 부담이 가중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사례 면담에서도 나타난다.

이제는 오히려 저희가 부모님을 모시고 챙겨드려야 되는데 애를 봐달라고 할 수가 없죠.(사례 13. 38세 결혼, 40세 초산모)

또한 고령출산 가족은 부부 외에 자녀를 돌봐줄 다른 사람이 없다는 경우가 83.7%이며, 만 35세 미만 출산한 가족의 77.3%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고, 이는 두 집단의 모 취업 비율이 만 35세 미만 초산 집단 25.9%, 만 35세 이상 초산한 고령출산가족이 26.0%로 유사한 상태에서 나타난 결과로 고령출산 가족의 양육지원인력의 취약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취업중인 고령초산모는 자녀의 정기적인 돌봄을 위해서는 만 35세 미만 초산모에 비해 어린이집, 유치원 등 ‘기관’ 이용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출산의 고령화 경향을 고려하면 조부모 등 친인척의 양육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점차 낮아지므로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기관과 아이돌보미 등 사회적인 양육지원시스템의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고령출산모와의 면담에서도 자녀를 맡길 기관이나 인력이 양육과 관련된 주된 걱정거리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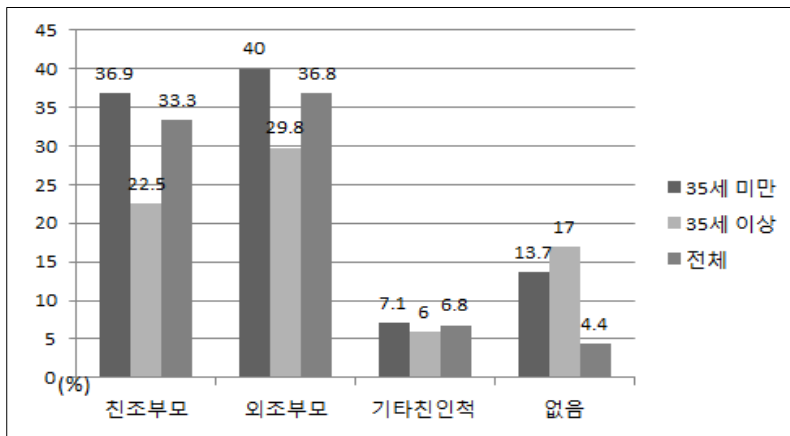
(앞으로 걱정되는게 있다면)지금은 안보내고 있지만 어린이집을 주변에 알아봤어요. 직접 보니 생각보다 너무 수준이 안 되는데가 많아요....이 정도는 될거다 하는 것보다 너무 수준이 낮아서... 좋은 데는 사람들이 대기를 하고.. 도우미 쓰는 문제도 그렇고. 계속 맞벌이 하니까 유치원을 가고 해도 초등학교까지는 손길이 필요하잖아요.(사례 6. 32세 결혼, 35세 초산모)

〈표 V-2-10〉 취업모의 고령출산여부에 따른 기관 이용

구분	이용 중임 ^{주)}	이용하지 않음	계	단위: %(명)
				$\chi^2(df)$
전체	68.7	31.3	100.0(259)	
모초산연령				
만35세 미만	66.3	33.7	100.0(181)	.243(1)
만35세 이상	74.4	25.6	100.0(78)	

주: 기관 이용은 유치원, 어린이집, 기타 영유아 대상 학원을 포함해 1일 3시간 정기적으로 이용함을 의미함.

한편 [그림 V-2-1]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고령출산모는 조부모 등을 정기적인 양육지원인력으로 도움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낮을 뿐 아니라, 급한 일이 있을 때 조부모 등 친인척을 통한 도움을 받을 가능성도 낮고 주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비율이 35세 미만의 초산모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양육지원인력의 취약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출산고령화 경향의 지속 시 정기적인 자녀 양육 지원 뿐 아니라 부정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양육 지원 욕구에 부응하는 사회적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그림 V-2-1] 고령출산 여부별 위급상황 시 자녀 양육 지원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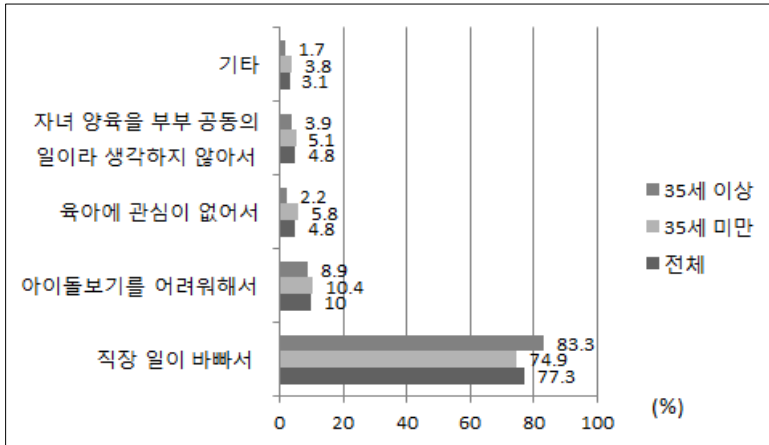
전반적으로 기존의 사적 관계망에 의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지므로, 정기적·부정기적인 자녀 양육 욕구에 대한 사회적 지원 시스템의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고령출산모와의 면담에서도 고령출산모를 위한 추가적인 배려보다는 사회 전반적인 양육 시스템의 개선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내가 늦게 결혼 했고 늦게 애 낳은 건 제 선택이니까. 나이가 많아서 추가적인 배려를 해준다는 건 기준도 명확치 않고 좋지 않다고 봐요. 그것보다는 사회 전반적 시스템을 개선해서 어려움 없이 추가 출산까지 할 수 있게 해 주는게 좋겠어요.(사례 13. 38세 결혼, 40세 초산모)

이와 함께, 향후 조부모 등의 양육 지원이 점차 어려워질 것을 감안하면 자녀 양육은 사회적인 지원시스템의 강화와 함께 부부 중심의 육아가 가능한 문화의 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고령출산 여부를 불문하고 남편의 양육 참여에 대해 약 60% 이상은 불만족하고 있으며, 불만족하는 경우 남편의

양육참여가 불충분한 가장 큰 이유로 '직장일이 바빠 절대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을 꼽고 있다. 특히 고령출산 가족의 경우 배우자의 연령도 높고 결혼 후의 취업경력도 더 높아 상용직으로 직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업무 부담과 책임이 더 큰 위치에 있을 수 있어 이러한 이유로 양육 참여가 어렵다는 비율이 초산 연령이 낮았던 가구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그림 V-2-2 참조).



[그림 V-2-2] 배우자(남편)의 양육 참여가 부족한 이유 - 1순위

배우자의 양육 참여의 어려움은 아래 사례 면담에서도 드러난다.

아빠도 회사일이 한창 바쁠 때고 해서 스트레스도 많고 심리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힘들지 않을까 해요. ...아빠들도 육아 휴직을 꼭 받을 수 있게 해주면 애를 낳겠죠. 아무래도 애가 클 때 하나 있는 것보다 둘셋이 있는게 나으니까.(사례 13. 38세 결혼, 40세 초산모)

또한 취업중인 여성으로 30대 중반을 넘어 자녀를 출산할 때의 어려움으로 배우자 양육 참여 부족의 이유와 유사한 이유가 사례 면담에서 제기되었다.

맞벌이를 하는 직장 여성은 35세 이상이면 직장에서 거의 10년 이상 일한거니까, 중간관리자급 이상이 되거든요. 오히려 그게 (출산하는데) 부담이 돼요. 계속 일해왔던 패턴도 있고 해서. 그 단계 전에 애를 낳고 휴직하는게 나은 것 같아요.(사례 6. 32세 결혼, 35세 초산모)

이에 주변의 지원인력예의 의존을 떠나 부부 중심의 양육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직장에서의 위치에 상관없이 일-가정의 양립을 중시하고 배려하는 직장문화의 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 일-가정 양립

본 연구의 대상인 1자녀를 둔 기혼 여성들의 취업 특성은 아래 <표 V-2-11>에 나타난 바와 같다.

전체적으로 약 80%가 지금까지 어떠한 형태라도 취업 경험에 있으나, 현재 취업중인 경우는 25.9%에 불과하여 영유아를 둔 기혼여성의 저조한 취업률이 전형적으로 드러나고 있고, 취업중인 경우 상용직 비율은 만 35세 미만 초산모에 비해 만 35세 이상 고령 초산모의 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결혼 전 정규직 취업률에 있어서는 만 35세 이후 초산한 고령 초산모 집단이 더욱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결혼 당시 정규직 취업률은 두 집단 모두 현저히 낮아진 상태로, 취업한 미혼 여성들 중 상당 비율이 결혼 전에 취업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경향은 결혼 연령이 상대적으로 늦은 고령 초산모 집단에서 더욱 두드러지고 있었다.

결혼 후 총 경력에 있어서는 현재 연령이 높은 고령 초산모 집단의 총 경력이 약 7.7개월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임신·출산·양육과 관련된 이유로 경력단절을 겪은 비율이 만 35세 미만 초산모 집단보다 고령초산모 집단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들이 출산·양육 등으로 인한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을 더 많이 경험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40세에 출산후 현재 자녀를 직접 돌보며 취업을 중단중인 한 사례는 고령 출산이 여성에게 경력적으로 더 치명적이라고 보고 있었다.

(늦게 아이를 낳는게) 여자에게 완전 치명적이죠. 젊었을 때는 쌓아놓은 경력이 적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고 다시 재취업을 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쌓아놓은 경력도 많고 내가 쌓아놓은 지위로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늦게 아이를 낳으면 여러 부분을 포기해야 해요.(사례 13. 38세 결혼, 40세 초산모)

<표 V-2-11> 고령초산여부에 따른 취업 특성

단위: %(명)

구분	취업상태			정규직 취업률		결혼 후 경력	
	취업 경험률 (n=1,000)	현재 취업률 (n=1,000)	현재 상용직 비율 (n=259)	결혼 전 (n=1,000)	결혼당시 (n=1,000)	결혼 후 총 경력 (n=792)	취업 경험자 중 경력단절 경험률 (n=794)
전체	79.4	25.9	79.2	78.5	49.6	24.6개월	22.3

(표 V-2-11 계속)

구분	취업상태			정규직 취업률		결혼 후 경력	
	취업 경험률 (n=1,000)	현재 취업률 (n=1,000)	현재 상용직 비율 (n=259)	결혼 전 (n=1,000)	결혼당시 (n=1,000)	결혼 후 총 경력 (n=792)	취업 경험자 중 경력단절 경험률 (n=794)
모초산연령							
만35세 미만	78.9	25.9	80.1	76.9	58.4	22.2	21.6
만35세 이상	80.7	26.0	76.9	80.6	47.7	29.9	2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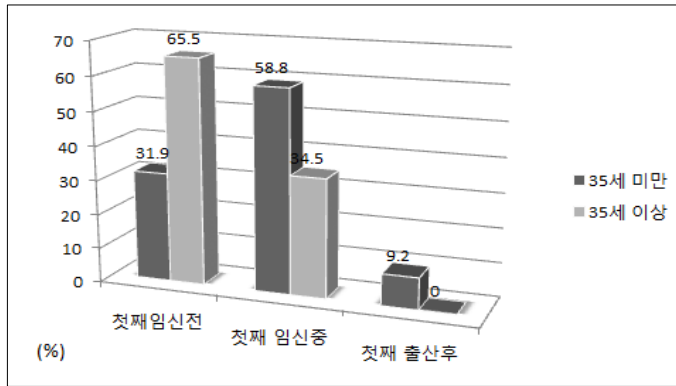
이에 경력단절을 겪은 경우 경력단절의 시기와 경력단절의 주요 이유를 고령출산 여부에 따라 살펴보았다. 만 35세 미만 초산 집단에서의 임신·출산·양육으로 인해 가장 많이 경력이 단절된 시기는 [그림 V-2-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첫째 임신 중'으로 58.8%가 이때 경력이 단절되었으나, 이에 비해 만 35세 이상 고령출산 집단에서는 '첫째 임신 전'에 65.5%가 취업을 중단하여 취업모의 연령이 높을 때 임신 자체의 어려움으로 인한 경력단절 위험이 큼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사례 면담에서도 만 35세 이상 고령출산모들은 난임, 혹은 유·사산 등의 이유로 취업을 중단한 경우가 종종 발견되었다.

(주변에서 얘기를 많이 들었죠)시험관 하다보면 일일이 다 말 못하고 그냥 회사를 쉬더라고요. 난임 때문에 애를 가지려고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더라고요.(사례 13. 38세 결혼, 40세 초산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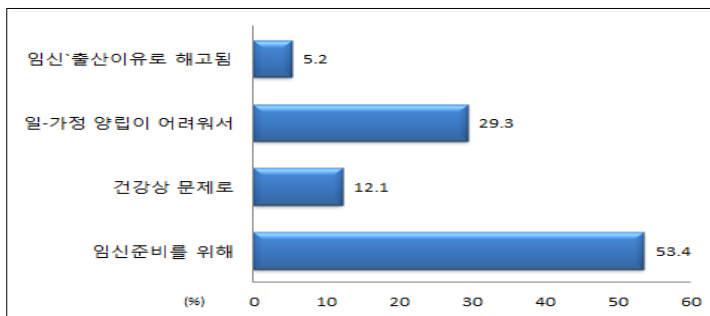
제가 직장생활을 했는데 안생기니까 그만 두기를 종용하더라고요. 그만 두고 병원을 다닌거죠.(사례 7. 29세 결혼, 42세 초산모)

이들은 출산 후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을 겪기 이전에 임신을 하기 위한 경력단절을 경험함으로써 출산 후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만으로 취업모의 일-가정 양립과 출산율을 증진시키는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V-2-3] 고령출산 여부에 따른 첫 번째 경력단절 시기

고령초산모의 경력단절 이유는 '임신준비를 위해'가 53.4%로 가장 응답 비율이 높았는데, 이는 주요 경력단절 시기가 첫째 임신 전이라는 응답과 같은 맥락에서 고령초산모에게 '임신의 어려움'이 크며, 이것이 고령의 취업모에게 경력단절을 일으키는 가장 큰 위험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결혼이 늦어 초산이 늦어질 취업모에게 있어 자녀 출산 후의 '일-가정(자녀양육) 양립' 뿐 아니라 임신 전의 '일-가정(임신·출산 준비)의 양립'이 가능한 취업 환경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하겠다.



[그림 V-2-4] 고령초산모의 경력단절 이유

3. 고령출산가족의 일-가정 양립 지원 요구

가. 경력단절 방지를 위한 지원

여기서는 먼저 경력단절을 경험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이용할 수 있었다면 취업을 지속하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제도가 무엇인지를 중요도 순으로 1, 2순위를 답하도록 하였다.

1순위 응답으로는 ‘유연근무제’가 31.1%로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는 ‘육아휴직 사용’ 26.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13.0%, ‘직장어린이집 이용’ 7.3%, ‘난임휴가 이용’ 6.8% 순으로 조사되었다. 2순위 응답으로는 본인의 ‘육아휴직’과 ‘유연근무제’ 사용이 공히 17.1%로 가장 높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가 16.5%로 유사한 수준의 수요를 보였다.

〈표 V-3-1〉 경력단절경험자가 이용하였다면 취업유지에 도움이 되었을 제도

구분	단위: %(명)	
	1순위	2순위
유연 근무제 이용	31.1	17.1
귀하의 육아휴직 이용	26.6	17.1
귀하의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 이용	13.0	16.5
직장어린이집 이용	7.3	12.4
난임 휴가 이용	6.8	1.2
유·사산휴가 이용	4.0	4.1
가족간호휴가제 이용	2.8	4.1
유급 태아 검진시간 이용	2.3	2.9
배우자의 육아휴직 이용	2.3	8.8
배우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이용	1.7	5.3
아이돌보미 이용	1.7	9.4
유치원 이용	0.6	1.2
계	100.0(177)	100.0(1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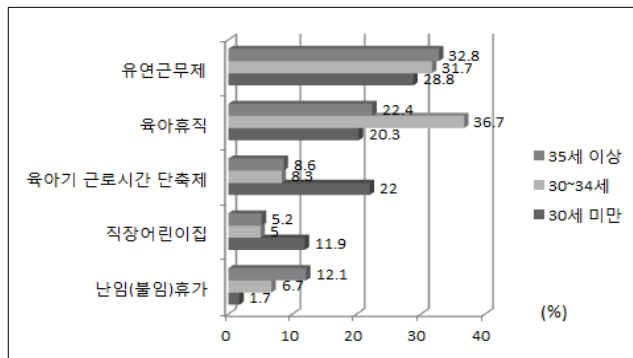
1순위 응답을 기준으로 초산연령대별 취업 지속에 효과적인 제도를 분석하면, 전반적으로 유연근무제와 육아휴직 사용이 가장 높은 수요를 보인 가운데, 30세 미만인 경우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만 35세 이상인 경우는 난임(불임) 휴가 이용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아 각각 22.0%와 12.1%를 나타낸다. 특히 만 35세 이상 고령출산모의 경우 첫 자녀를 임신하기 전에 이미 경력단절을 겪은 비율이 높았고, 그 주요 이유가 ‘난임’이었기 때문에 임신을 하기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난임(불임) 휴가’의 사용이 용이해진다면 이들의 경력단절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임을 보여준다. 근무시간과 형태, 장소 등을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선택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에 대한 요구가 만 35세 이상 초산모에게서 특히 높게 응답된 것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표 V-3-2〉 초산연령대별 취업 유지에 도움이 되었을 제도 - 1순위

단위: %, 명

구분	전체	모 초산연령			$\chi^2(df)$
		30세 미만	30세 이상 ~35세 미만	35세 이상	
유연 근무제 이용	31.1	28.8	31.7	32.8	29.563(22)
귀하의 육아휴직 이용	26.6	20.3	36.7	22.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13.0	22.0	8.3	8.6	
직장 어린이집 이용	7.3	11.9	5.0	5.2	
난임 (불임) 휴가 이용	6.8	1.7	6.7	12.1	
유·사산 휴가 이용	4.0	6.8	-	5.2	
가족간호 휴가제 이용	2.8	-	3.3	5.2	
배우자의 육아휴직	2.3	3.4	3.3	-	
유급 태아 검진시간 이용	2.3	3.4	1.7	1.7	
배우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1.7	1.7	1.7	1.7	
아이 돌보미 이용	1.7	-	1.7	3.4	
유치원 이용	0.6	-	-	1.7	
사례수	177	59	60	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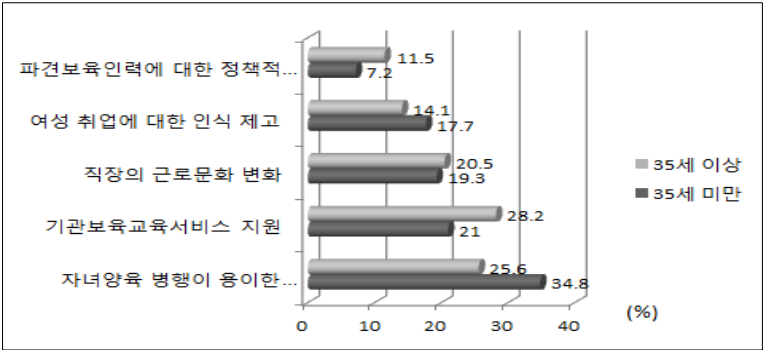
〔그림 V-3-1〕 초산연령대별 이용하였다면 취업 유지에 도움이 되었을 제도

나. 고령출산 가족의 양육 지원

현재 취업중인 어머니를 대상으로 향후 취업을 지속하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항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전체적으로는 ‘시간제 정규직 등 자녀 양육과 병행하기 용이한 일자리의 확대’가 32.0%로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는 기관교육·보육서비스 지원 23.2%, 정시 퇴근과 가족친화적인 인식 등 직장 근로문화의 변화 19.7%, 여성 경제활동의 중요성 등 사회적 인식 변화 16.6% 순으로 지적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는 초산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어, 만 35세 미만 초산 집단에서 ‘자녀 양육과 병행이 용이한 일자리의 확대’에 대한 요구가 34.8%로 가장 높게 나타난 것과는 달리, 만 35세 이상 초산 집단에서는 ‘기관 교육·보육 서비스 지원’이 28.2%로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V-3-3〉 취업 유지에 도움이 되는 사항

단위: %(명)							X ² (df)
구분	자녀 양육 병행이 용이한 일자리의 확대	기관 보육 ·교육 서비스 지원	직장 근로 문화 변화	여성 취업에 대한 인식 변화	파견보 육 인력 지원	계	
전체	32.0	23.2	19.7	16.6	8.5	100.0(259)	
모초산연령							4.328(4)
만35세 미만	34.8	21.0	19.3	17.7	7.2	100.0(181)	
만35세 이상	25.6	28.2	20.5	14.1	11.5	100.0(78)	



〔그림 V-3-2〕 취업 유지에 도움이 되는 사항

만 35세에 첫 자녀를 출산하고 출산휴가만 이용한 후 직장에 복귀한 한 사례는 어떠한 지원보다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시설’과 정시퇴근 문화를 여성의 일-가정 양립에 도움이 되는 지원으로 꼽았다.

아이 대리양육비로 200만원 이상 들어가는데 양육수당 20만원...기저귀 값은 하겠네요....돈보다는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시설, 회사에서 애를 봐줄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하는데...적어도 직장에 시설이 있으면 아무래도 더 안심되죠. 모니터할 수 있으니까.(사례 8. 30세 결혼, 35세 초산모)

정시 퇴근을 하면 해결되는 것들이 많아요. 8시 반 출근해서 5시 반 퇴근하면, 아이를 맡기는 시간도 좀 줄고요. 아이를 키우는데 있어서 아이랑 보내는 시간이 중요하잖아요.(사례 8. 30세 결혼, 35세 초산모)

이는 앞서 고령 초산 집단에서 조부모 등 전통적인 양육 지원의 인력 자원이 양적으로, 질적으로 미약한 것으로 드러난 결과와 상통하는 요구라 할 수 있는 바, 이러한 가족 내 자원예의 의존이 이미 고령출산 가족에서 어렵다는 현실이 드러나며, 이로 인해 ‘믿을 수 있는 질 높은 기관’이 앞으로 취업모에게 가장 중요한 양육지원의 자원이 될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언제든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불안정한 가족 자원 보다는 ‘믿을 수 있는 질 높은 기관’으로 요약될 수 있는 체계적인 사회적 양육 지원 시스템의 정착과 지원 확대가 이들의 자녀양육-취업활동의 양립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임을 의미하는 결과라 하겠다.

만혼 등의 이유로 초산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취업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여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녀 출산 전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방적 일-가정 양립 지원과 질 높은 기관 보육을 포함한 사회적 양육 지원 시스템의 정착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 소결

본 장에서는 만혼과 출산 지연이 일반화되는 상황에서도 특히 ‘고령출산’이라 일컬어지는 ‘만 35세’ 이상에 출산한 일명 ‘고령출산 가족’의 출산·양육 특성과 요구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실태와 요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령출산 가족도 크게 두 가지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즉, 결혼

은 비교적 빨라 만 30세 이전에 이루어졌으나, 출산이 매우 늦어진 '적령기결혼, 고령출산 가족 유형'과 결혼 자체도 30세 이후로 만혼에 해당하며 출산도 만 35세 이후에 한 '만혼, 고령출산 가족 유형'이었다. 이들의 고령출산 이유와 어려움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각각의 유형에 맞는 적절한 '맞춤형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둘째, '적령기결혼, 고령출산 가족' 유형은 가장 취약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는 고령출산 가족 유형이었다. 이들은 임신 자체의 어려움으로 출산이 늦어졌으며, 임신 소모의 경험도 높았다. 또한 이러한 이유로 현재 모의 경력단절 경험도 높아 가구소득도 낮은 구간에 속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만혼에 의한 자연스러운 생식능력 저하가 아닌, 적정 임신·출산 연령에서도 난임 위험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 난임 방지 지원과 예방적 측면의 건강관리 대책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고령출산 가족은 임신·출산에 대한 '연령' 규범을 과도하게 인식하며, 이에 고령출산 가족 중에서도 경제적 여유와 양육 능력을 갖춘 경우에도 후속 출산계획률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어, 고령출산에 대한 경고보다도 적극적인 임신·출산을 지원하는 방향으로의 선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고령출산모에게 각종 검사를 권유하는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난 것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의료진의 태도는 고령 임신을 선택해야 하는 많은 만혼 가구 등에 실제의 위험성보다 과도한 우려를 일으킴으로써 출산을 주저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고, 고령 임신·출산 가구에 임신을 준비하는 과정에 비용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 실제 고령출산에 따르는 위험성은 임신부 자신의 임신 중 혹은 산후 회복에서의 문제에서 더 크게 나타나며, 태어나 자녀의 문제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므로 고령출산을 준비해야 하는 가족에게는 사회적으로 과도한 경고를 하여 임신을 포기하게 하기 보다는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고령출산 가족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은 사회적인 양육지원 시스템의 구축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적인 양육지원 자원으로 기능하는 조부모 등의 연령과 건강 상태 등이 고령출산 가족에게서는 매우 취약하며, 조부모에의 경제적 지원률은 오히려 높아 자녀 양육 부담과 조부모 부양 등 경제적 부담조차 큰 것으로 나타나므로, 기관교육·보육 시스템 및 파견인력 등의 사회적 양육 지원을 통해 이들의 경력단절 방지 및 취업유지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VI. 정책 제언

1. 정책의 기본 방향

본 연구에서는 결혼 시기의 지연과 함께 자연스럽게 증가 일로에 있는 ‘출산의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이 지향해야 할 방향으로 1) 비자발적인 출산 지연 방지, 2) 고령출산 가족의 건강한 다자녀 출산 지원, 3) 고령출산 시의 취약점 보완을 먼저 제시하였다.

가. 비자발적 출산 지연 방지

결혼 및 출산은 자발적인 의지와 계획에 의해서만이 아닌 비자발적인 이유에 의해서도 지연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35세 이상에 초산을 한 소위 ‘고령출산가족’이 늦게 출산한 이유로 ‘결혼이 늦어져서’와 ‘임신이 안 되어서’가 가장 주된 이유로 각각 58.7%, 30.0%가 이에 해당하였다. ‘임신이 안 되어서’는 대표적인 비자발적인 출산 지연의 사유라 하겠으며, ‘결혼이 늦어져서’는 ‘결혼 지연’의 사유에 따라 자발적 혹은 비자발적인 출산 지연의 이유에 모두 해당될 수 있다. 이밖에 ‘유·사산을 겪어서’도 4.7%가 해당하였는데, 이러한 경우도 비자발적인 출산 지연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비자발적으로 출산 지연이 된 경우는 흔히 말하는 ‘난임부부’가 해당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신 및 임신유지의 어려움으로 경력단절 경험도 높아 개인적으로 소요되는 의료비를 제외하고도 소위 높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독특한 결혼 문화로 인해 결혼이 늦어지는 경우는 늦은 결혼으로 인해 비자발적인 출산 지연이 초래된 경우라 할 수 있다.

출산을 증진 및 고령산모의 주산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결혼과 출산이 적정한 시기에 이루어지도록 정책적 개입을 할 필요도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처럼 비자발적으로 출산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는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둘 것을 기본 방향으로 제안한다.

나. 고령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와 건강한 다자녀 출산 지원

출산이 점차 고령화되는 사회에서의 출산지원 정책은 고령출산에 따른 위험성을 방지·완화하여 고령출산가족이라도 건강하게 다자녀를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일반 국민에 대해서도 위험성만을 강조하여 고령출산은 피하거나 포기하여야만 하는 것으로 인식시킬 것이 아니라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위험성은 줄이고 건강한 임신·출산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출산에 생물학적인 위험성이 있는 것은 물론 사실이나, 경제적 여유와 자녀 양육참여에 대한 아버지의 긍정적 태도 등 오히려 고령출산 가족에서 양육의 강점도 발견되었다. 고령출산에서 나타날 수 있는 생물학적인 위험성도 영양가 높은 음식의 섭취,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 추구 등 고연령 출산모가 가질 수 있는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완화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Carolan, 2003, 김상미·조영태, 2011: 71에서 재인용).

향후 만혼 부부와 출산 지원이 더욱 증가할 것을 고려한다면, 고령출산에 대한 과도한 경고로 고령출산 가족이 후속 출산을 포기하게 하기 보다는 고령출산 가족의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는 것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 고령출산의 위험성에 대한 꾸준한 교육과 생식 건강관리를 병행하여 제공하여 고령출산으로도 얼마든지 건강한 출산이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다. 고령출산가족의 취약성 보완

현재 만 35세 이상의 ‘고령’에 첫 출산을 시작한 ‘고령출산가족’은 표준적인 가족생활주기와는 다른 시기에 가족생활주기의 각 단계를 밟게 될 것으로, 동연령대의 보편적인 가족들이 직면하게 되는 것과는 다른 과업을 각 연령대에 수행하게 됨으로써 겪게 되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흔히 여성의 결혼적령기라 인식되는 20대 중후반~30대 초반에 결혼하여 ‘노산’이 되기 전인 만 35세 이전에 자녀를 출산하고 양가의 조부모 등으로부터 양육 지원을 받으며 양육하고 은퇴 전에 자녀가 성인기에 도달하며, 은퇴 전에 노후생활의 대비를 완료할 수 있는 기존의 표준적 가족생활주기에서 5~10년의 시기가 늦어짐으로 인한 취약성이 존재한다.

이에 출산의 고령화라는 가족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고령출산 가족이 가

질 수 있는 출산·양육에 있어서의 취약성을 보완하는 방향을 지향하여야 할 것이다.

2. 출산의 고령화에 대응한 출산·육아 지원 방안

가. 임신·출산 지원

1) 신혼부부 주택 지원 대상 확대

본 연구를 위한 조사 결과, 자신의 결혼 시기가 늦었다고 생각하는 경우 불만족 비율이 높게 나타나며, 임신·출산이 어려워진다는 것이 늦은 결혼에 대한 주된 불만족 이유였다. 결혼이 임신·출산의 관문이 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출산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는 비자발적으로 결혼이 늦어지지 않도록 하는 지원 방안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결혼 시 부모의 조력을 받은 경우가 많고 결혼을 위한 경제적 조건으로 주택마련에 대한 기준도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즉, 우리나라의 특수한 고비용의 결혼문화와 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결혼을 지연시키는 한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이 결혼연령을 앞당기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초년생의 능력으로 결혼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우리나라의 독특한 결혼 문화로 인한 비자발적 결혼 지연이 출산의 고령화에 일부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여기서는 결혼비용 중 가장 부담이 되는 ‘신혼부부 주택’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결혼 준비에 있어 가장 큰 부담으로 지적되는 ‘주택’ 마련에 대한 지원은 그 성격상 결혼 후가 아닌 결혼 예정 시에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원대상은 결혼 후의 부부(가족)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결혼예정자에게로 지원대상의 확대가 요구된다.

특히 국민주택규모인 85m²이하의 분양이나 임대주택의 일정비율을 공급하는 ‘신혼부부주택 특별공급’의 경우 ‘혼인기간 5년 이내인 무주택 세대주로 혼인기간 내에 출산한 자녀(입양포함)가 있거나 임신 중인 경우’라고 지원 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결혼예정자는 지원 대상에서 빠져있을 뿐 아니라 혼인기간 내의

임신이나 자녀(입양자녀 포함)가 있는 대상으로 한정하여 신혼부부의 주택마련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여 결혼을 장려하기에는 한계점을 보이고 있다. 이는 동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신혼부부 주택구입·전세자금 지원'에서 혼인기간 5년 이내인 가구뿐 아니라 2개월 이내 결혼예정자와 배우자예정자로 구성될 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고 혼인기간 내의 자녀나 임신 여부에 대한 조건이 없음을 고려하여 이에 상응하는 조건 이상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2) 난임 부부 지원 사업의 개선

본 연구의 응답 대상자 중 인공수정, 시험관 시술 등을 통해 임신을 했다는 비율은 그리 높지 않았지만 이러한 방법으로 임신한 경우 평균 소요비용은 900 만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적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가에서 지원하는 난임부부 지원 사업의 수혜를 받았던 경우에도 만족도가 4점 만점에 2.8점으로 다른 임신·출산지원 정책에 비해 낮은 편이었다.

이는 지원 대상이 소득기준에 따라 한정되며, 지원 횟수도 4회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연령 기준 또한 여성의 연령 만 44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출산의지가 있는 가임기 여성의 기회를 박탈하는 측면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난임부부 지원 사업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단기적으로는 현재의 소득기준에 부합하는 난임부부에 대해 법적 혼인상태 여부, 여성 연령 기준을 삭제하여 가임기 부부라면 법률혼 여부를 불문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시술비 지원 횟수도 현재의 4회에서 점진적으로 제한이 없도록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현재의 시술비 지원 횟수 내에서 임신에 성공하더라도 후속자녀 출산이 어려울 수 있다. 시술 시도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임신을 원하는 난임부부가 부담 없이 인공수정·시험관 시술을 꾸준히 시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원을 통해 첫 임신에 성공한 부부가 후속 자녀도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 횟수를 확대하여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야 하는데, 소득기준의 상향뿐 아니라, 인공수정, 시험관 시술비의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모든 난임부부의 시술비용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미혼남녀대상 생식건강 교육 및 생식건강유지 지원

「2013년 모자보건사업안내」에 따르면 모성건강을 위한 해당 사업에는 현재 임신부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사업만이 포함되어, 예비 부모의 생식보건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이 부재한 것을 알 수 있다(보건복지부, 2013: 7).

만혼으로 인해 출산이 지연되어 출산에 어려움을 겪는 부부가 더욱 증가할 것을 고려하면, 미혼남녀 대상의 예비적 생식건강 증진 프로그램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단순 성교육이 아닌 예비부모로서의 건강 유지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초·중·고 시기에도 전문 강사에 의해 제공하며, 주기적 건강체크가 이루어지는 학령기에 비해 건강관리가 개별화되는 대학생 등 성인기 남녀를 위한 건강검진 및 교육을 주기적으로 제공할 것을 제안한다. 소아과에서 이루어지는 ‘영유아 건강검진’처럼 만 18세 이후에는 산부인과에서 남녀 모두에게 결혼과 임신 계획이 늦어지더라도 어떻게 건강을 유지하며 건강하게 임신·출산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건강검진과 교육을 상설화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빈혈은 임신율을 떨어뜨리며, 엽산 부족 시 유산률이 증가하므로, 임신부 뿐 아니라 임신을 계획하는 예비 임신부, 나아가 향후 자녀 출산의 계획이 있는 미혼 여성에게도 미리 엽산과 철분제 복용에 대한 복약지도가 필요할 것이다.

나. 양육 지원

1) 사회적 양육 지원 서비스 체계 강화

만 35세 이상에 첫 자녀를 출산한 대표적 고령출산 가족은 출산이 이보다 빠른 가족에 비해 조부모 등 전통적인 양육지원 인력을 활용하기 어려운 특징이 드러났다. 이들의 조부모는 만 35세 미만 초산한 경우에 비해 연령이 높고, 유병률 또한 높아서 이들로부터 양육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난다.

고령출산 가족에서 어떠한 양육지원 요구보다도 어린이집·유치원 등 기관의 보육·교육서비스에 대한 정책적 지원 확대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다.

사회적 양육 지원 서비스 체계로는 기관의 교육·보육 서비스와 파견 인력에

대한 지원을 들 수 있는데,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의 확대로 질 높은 기관의 접근성을 높이고, 2013년 9월부터 시행된 어린이집 평가인증 공개처럼 기관의 정보 공개를 통해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도 추가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보완적인 방안이지만, 기관 이외의 양육 지원 자원이 취약한 고령의 어머니를 위한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나 아이돌보미 이용에 대한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사회적 양육 지원에 대한 접근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 이는 기존의 입소 우선순위 사항에 대한 보완 항목으로 사용하여 동일 순위 시 연령에 따라 부가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활용하는 정도가 적절할 것으로 보이며, 반드시 '초산' 연령일 필요는 없고, 현재 연령을 기준으로 부가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영유아를 둔 어머니의 연령을 50세 이상, 45세~50세 미만, 40~45세 미만, 35~40세 미만, 35세 미만 등으로 차등화하여 35세 미만 어머니를 기준으로 5세 간격으로 0.25점의 부가 점수를 부여하여 기존의 입소우선 순위에 따라 동일순위에 해당할 때 활용하는 식이다.

2) 긴급 양육 지원 서비스 강화

본 연구를 위한 조사 결과 고령초산모의 경우 정기적인 자녀 돌봄이 필요한 경우 조부모 등 사적 인력보다는 주로 기관을 통해 이러한 욕구를 해결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에서 자녀 양육에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어려움을 크게 호소하고 있었다. 이는 조부모 등 확대 가족의 성원들이 정기적인 돌봄에 도움을 주지는 않더라도, 긴급 시 양육지원인력으로는 주된 역할을 하고 있는 현실에서, 고령출산가족에서 긴급 시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사적 지원체계가 더욱 취약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긴급한 자녀 돌봄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융통성 있는 양육지원 서비스의 강화가 필요하다.

현재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파견인력으로는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는 '아이돌보미'가 있으나, 예약제로 이용되고 있고 인력풀의 한계로 긴급 상황시 도움을 받기는 어려운 구조에 있다.

무엇보다 '아이돌보미'의 인력풀을 확충하여 긴급 시 신속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시간제로 이용 가능한 어린이집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시간제어린이집은 시간제 보육실을 별도로 설치한 시설 또는 정원대비 현원이 모두 차지 않은 시설에서 지정되고, 이러한 시설을 서울

시 보육포털서비스에서 확인하고 예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지역 내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은 시간제 보육실을 전용으로 설치할 만큼 규모가 큰 경우가 많지 않고, 정원 내에서 일반 아동과 통합보육을 하는 것은 정원의 유동성이 많아 안정적인 시간제 어린이집으로 기능하기 어렵다.

‘단시간’의 꾸준한 보육 수요가 아닌 ‘일시’의 ‘긴급’ 돌봄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운영의 융통성이 무엇보다 중요할 수 있어 기존의 보육 정원 내에서 시간제 보육 수요를 감당하기 보다는 시간제 보육 정원을 추가로 인정하고 정규 교사가 아닌 ‘보육도우미’ 등의 인력에 의한 시간제 보육을 허가하는 등 보육 정원에 융통성을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3) 부부 중심의 양육 활성화: 근로 문화의 개선

본 연구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 출산이 심화될수록 조부모 등의 양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희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즉, 기관보육 등 사회적인 자녀 양육 지원시스템을 통해 맞벌이 부부의 일반적인 보육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자녀를 양육하면서 다양하게 발생하는 욕구에는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을 뜻한다. 결국 결혼과 출산연령이 높아질수록 자녀 양육에 ‘부부’ 자신의 참여가 가능한 형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환아의 간호, 병원 진료 동행, 부모 상담 등 자녀를 양육하면서 단지 기관보육에 맡겨 해결할 수 없는 ‘양육자의 손길’이 필요한데, 이를 취업 여부를 불문하고 어머니 혼자 감당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다양한 자녀 양육의 욕구 해결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휴가 제도를 아버지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의 조성이 필요하며, 이와 함께 퇴근 시간의 엄수로 부부 모두 자녀양육에 참여할 수 있는 근로 문화의 조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시 퇴근 문화의 조성권장, 아버지 육아휴직 활용, 자녀 양육과 근로의 양립을 가능케 하는 다양한 유연근무제의 도입 등을 권장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러한 문화가 정착된 기업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의 홍보와 세제 지원 등으로 가족친화기업이 실질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4) 은퇴 후 미성년 자녀 양육비용 부담 경감 방안

어머니 연령 만 35세 이상에 초산을 한 가족의 경우, 아버지의 연령은 이보다 높은 경우가 많아 부모의 은퇴 이후까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의 부담이 지속될 수 있다. 이는 부모의 노후대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후속출산을 포기하는 경제적 이유가 될 수 있다. 부모 은퇴 후 가계의 위축은 미성년 자녀의 건전한 발달과 육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를 위한 조사에서 응답대상 부모들은 대부분 자녀에게 대학 졸업시까지 지원하는 지원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심층 면담에서는 후속 자녀를 출산할 경우 자녀가 미성년인 상황에서 부모의 은퇴가 도달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는 사례가 있었다.

현재 직장에서 지원되는 자녀학자금 등 기업복지차원에서의 자녀 양육 지원도 부모의 은퇴 전이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고령출산 가족은 이러한 측면의 수혜에서도 출산이 빠른 가족에 비해 불리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아동의 연령에 연동한 미성년 자녀 양육 지원 방안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으로 이하에서는 이를 단기·중장기 방안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한다.

가) 의무교육 이상의 교육 기간에 대한 교육비 지원 대상 확대

현재 교육법상 6년간의 초등 의무교육과 3년간의 중등 의무교육이 실시되고 있고, 이에 대해서는 수업료가 면제된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고등학교 교육을 받는 것은 선택이 아닌 의무교육에 준하는 사항이 되고 있다. 즉, 법적인 의무교육 기간은 아니나 고등학교 교육은 이미 보편화되어 있는 상황이다. 현재 2011년 이후 출생한 저소득층의 둘째아 이상의 자녀의 고등학교 입학 시에는 수업료가 면제되도록 되어 있으며, 다자녀 가구의 둘째아 이상 자녀는 대학생에 대한 국가장학금을 우선 지원받도록 되어 있다.

이처럼 의무교육 기간 이상의 교육을 받는 자녀를 위해 소득기준, 다자녀 기준 등을 두고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의무교육기간을 초과한 교육비용 즉, 고등학교 3년과 대학 교육 기간의 교육비용에 대한 지원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고령출산 가구의 양육비를 경감할 수 있는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즉, 이러한 의무교육 이상의 교육 기간에 대한 교육비 지원 대상을 부모가 은퇴한 저소득 가구의 고등학교, 대학교 자녀에게도 확대함으로써 출산이

낮은 가구의 양육비, 특히 교육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나) 중장기 방안: 아동수당 도입

중장기적으로 좀 더 보편적인 방식으로 고령출산 가족의 은퇴 후 양육비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식으로 현재 일본, 영국, 핀란드, 프랑스, 스웨덴 등의 여러 국가에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는 ‘아동수당’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동의 연령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아동 수당은 “아동이 있는 유자녀 가족의 소득을 보전하여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고 아동의 건전한 발달과 육성을 도모”하는 취지의 대표적인 제도이다(최성은, 2010: 318). 일반적으로 일정연령의 아동이 있는 가족에 아동수당을 지급하는데, 국가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의무 교육을 받고 있는 시기 또는 최소노동연령에 기준을 두고 있다(유해미, 2010: 10). 급여 지급 방식은 소득에 연계 혹은 소득에 무관하게 지급하는 등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다(유해미, 2010: 10-13).

현재 우리나라에는 차상위 계층 이하의 만 18세 미만 장애아에 대한 장애아동수당이 비록 장애아가 있는 가족에 대한 소득 보전 방법으로 한정되나, 유사한 형태와 취지로 도입되어 있다.

미취학 아동으로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이 존재하나, 이와는 별개로 가족주기의 지연으로 인해 부모의 은퇴 후에도 성인기 이전의 적절한 양육 지원과 교육의 필요성이 있는 아동이 점차 증가할 수 있을을 고려해 해외 사례에 준하는 연령에 도달할 때까지의 양육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현금 지원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아동수당(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VI-2-1〉 아동수당(안)

구분	내용	비고
대상	취학 이후 만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지원 (연금소득이 있는 가구의 경우 연금을 소득 산정 시 포함)
수급 기간	자녀가 만 18세에 도달할 때까지	자녀당 지급
급여 수준	10~20만원	해외사례(영국, 독일) 등에 준하며, 현재 ‘양육수당’ 지급액 수준에 준하도록 설계
양육수당과의 중복 가능성	불가	미취학 연령대는 ‘양육수당’ 또는 ‘보육·교육비 지원’ 중 선택, 취학 이후 만 18세 미만까지 ‘아동수당’ 지급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아동수당’ 제도는 특히 고령출산 가구가 증가하여 부모의 은퇴 후에도 미성년 자녀의 양육 부담이 있는 경우가 증가할 것을 예상하여 제시하고 있으나, 반드시 은퇴한 가구가 아니더라도 미성년 자녀가 있는 모든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만 18세에 도달 전인 미성년 자녀 각각에 대해 지급하며, 급여수준은 현재 해외에서 운영하는 영국이 주당 £ 20.30(≒3만 4,963원)으로(국회도서관, 2012: 21) 월 14만원 정도이며, 독일의 월 EUR184(≒264,660원)인(국회도서관, 2012: 28) 아동수당 수준을 고려하며, 현재 미취학아동에 대한 양육수당이 10~20만원 수준임을 감안하여 월 10~20만원 수준으로 지급함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미취학 연령의 아동에 대해서는 기관 이용 시 ‘보육·교육비 지원’과 기관 미이용시 ‘양육수당’ 중 선택하는 현재의 지원 방식을 유지하여 ‘아동수당’은 실질적으로 취학연령 이후의 아동이 성년에 도달할 때까지의 양육비 지원 방안으로 도입하도록 한다.

다. 취업모 경력단절 방지 방안

1) 난임휴가 도입: 난임으로 인한 취업모 경력단절 방지

본 연구에서 ‘고령출산 가족’으로 분류되었던 만 35세 이상 초산모 집단의 주요한 고령 출산의 이유는 ‘임신이 잘 안되어서’였으며, 이러한 이유로 ‘첫 자녀 임신 전에’ 취업을 중단한 경우가 많았다. 즉, 취업모 중 첫 자녀 임신의 어려움으로 인해 결국 경력단절을 겪은 사례들이 많았는데, 이러한 경향은 30세 이후 결혼하여 출산을 준비하는 고령 취업모가 증가할수록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일반적으로 ‘불임’으로 간주되는 임신 계획 후 1년이 지나도록 임신이 되지 않은 취업모에게는 신청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난임 휴가’ 도입이 고려되어야 한다. 난임 휴가는 현재 일부 민간 기업에서 도입된 사례가 있다. 공공 부문에서는 현재 안전행정부에서 여성공무원을 위한 ‘불임치료 특별휴가’로 시술 당일 1일의 특별휴가를 도입하고 있으나¹⁷⁾, 난임 극복을 위한 시술을 위해서는 빈번한 병원 방문과 휴식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시술당일이 아닌 좀 더 장기간의 휴가를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도입이 필요하다.

난임 휴가의 도입은 두 가지 형태로 가능하다. 독립적인 휴가 제도로써 ‘난임

17) <II-5-1> 참조

휴가'의 도입과 기존의 임신·출산 관련 '휴가·휴직'의 종합 개편안으로 다양한 사유에 대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임신부와 예비 임신부에 대한 휴가의 목적과 대상, 사용 가능 횟수와 사유의 차이를 두어야 하므로, 한 가지 휴가 제도로 확대 개편하는데도 무리가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난임 극복과 취업모 경력단절 방지를 위한 독립적인 휴가 형태의 도입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난임'에 초점을 둔 휴가는 <표 VI-2-2>와 같은 형태가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표 VI-2-2> 난임휴가(안)

구분	내용	비고
필요성	취업중 자녀를 출산한 여성과의 형평성 제고	·자녀 임신·출산을 하지 못한 경우 산전후휴가, 육아휴직의 기회에서 배제됨.
신청대상	적극적 ^{주)} 임신 시도 후 1년이 지난 경우 누구나 신청 가능	·법률혼, 사실혼 불문 ·인공수정 혹은 체외수정시술(시험관)의 필요성, 혹은 임신을 위한 정밀 검진과 수술 등이 필요하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혹은 의료기관 방문 기록(1년 이상의 임신 시도 증빙)제출
사용 기간	기본 6개월 사용 후 사유에 따라 1년까지 연장 가능	·6개월 사용 후 임신이 안 된 경우, 모연령 35세 이상과 연령을 불문하고 3년 이상 임신 시도 중인 경우 최대 6개월 연장 가능
급여	유급	·최초 6개월 유급(통상임금)
권리/의무	휴가 사용 중 임신한 경우 잔여기간 사용 가능	-

주: 임신 준비를 위한 검사 등 의료기관 진료를 받은 경우

난임 휴가의 신청 대상은 법률혼·사실혼을 불문하고 자녀 출산을 원하는 부부가 적극적 임신 시도 후 1년이 경과한 경우로, 임신 준비를 위한 병원 방문 등 적극적 임신 시도에도 불구하고 1년이 경과하여 임신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된 경우로 한정한다. 즉, 의료기관의 관련 진단서 또는 의료기관 방문 기록을 제출하도록 하여, 난임 휴가의 오용을 방지하도록 한다.

사용 기간은 기본적으로 6개월에 한하나, 모연령 35세 이상이거나 난임기간이 3년 이상으로 긴 경우 추가적으로 6개월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난임 휴가 사용 중 임신이 된 경우 잔여기간은 임신 초기의 안정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여 임신 유지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급여의 경우 산전후 휴가나 유·사산 휴가에 준하여 '통상임금'을 지급하며, 육아휴직의 선이용 형태로 활용가능한 제도로 도입할 경우 육아휴직급여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임신을 하지 못한 취업여성의 경우 임신·출산을 한 여성이 이용할 수 있는 산전후휴가, 육아휴직의 기회에서도 배제되므로 이러한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다. 독립적인 제도로 도입하지 않고 기존의 임신·출산관련 제도와 연계한 형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출산 후 회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산전후휴가와 연계보다는 육아휴직과의 연계가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즉, 육아휴직과 연계하여 육아휴직 사용 가능 기간인 1년 내에서 미리 이용하는 형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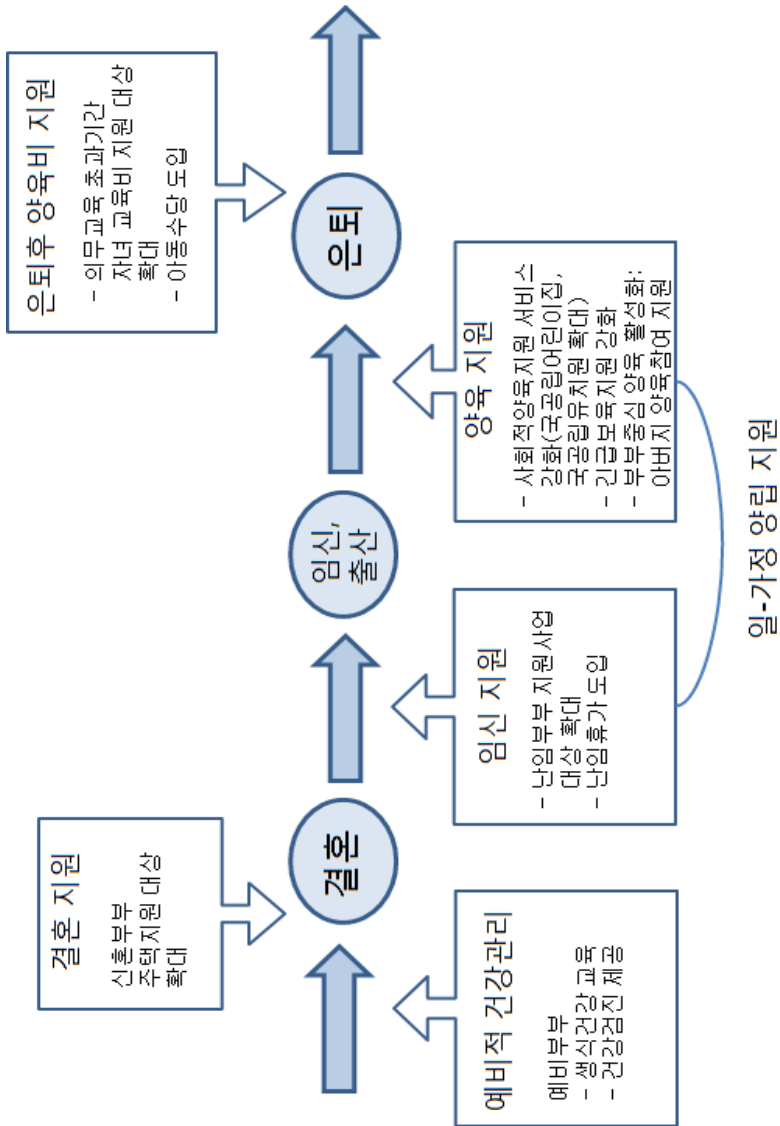
2)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 강화

본 연구를 위한 조사 결과, 35세 이상에 출산한 고령출산모는 출산·양육의 문제로 경력단절을 경험한 경우가 많았으나, 그럼에도 취업의지는 높게 나타나고 있어 경력단절이 된 여성을 위한 취업 지원 방안 강화의 필요성이 드러났다.

이를 위해 일차적으로 저소득층, 여성 가장 등 가장 취약한 경력단절 여성에 한정되어 교육·훈련 기회와 비용이 지원되는 여성 새로일하기 센터 취업 지원 프로그램의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각 지역에 분포하는 여성 직업훈련·교육 기관들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상당부분이 일반 여성을 위한 문화·교양 강좌로 할애되고 있는데, 국가 예산이 지원되는 이러한 직업훈련·교육기관에서는 무엇보다 취업지원 위주의 프로그램의 편성과 이에 연계한 취업 지원 서비스로 취업을 원하는 경력단절 여성의 욕구에 부합할 수 있도록 내실화가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정책방안을 생애주기의 흐름에 따라 정리해 보면 다음의 [그림 VI-2-1]과 같다.



[그림 VI-2-1] 생애주기에 따른 정책방안

참고문헌

- 국회도서관(2012). 주요국의 영유아보육법.
- 김상미·조영태(2011).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산모의 고연령이 영아 사망에 미치는 영향: 교육수준을 중심으로. 보건과 사회과학, 제29집, 69-97.
- 김승권·김유경·김혜련·박종서·손창균·최영준·김연우·이가은·윤아름(2012). 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승권·박종서·김유경·김연우·최영준·손창균·윤아름(2012). 2012년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 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동식·김영택·김태희(2011). 고령 임신부의 임신결과 및 정책지원 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은정·김지연·이성림·김태현·조영태·이지혜(2010).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자녀가 치와 출산을 관계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태홍·김동식·김은지·배호중·민현주(2011). 저출산에 대한 만혼의 영향과 정책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혜영·김상돈·박선애(2012). 가족관련 가치 및 의식의 변화와 가족의 미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박상화·임달오·한정호(2009). 우리나라 35세 이상 고령출산 추이(1981-2007). 인구학연구논집, 22, 159-166.
- 보건복지부(2013). 2013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 서용석·최호진·정다혜(2012). 미래환경 스캐닝을 통해서 본 가족환경변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신윤정(2013). EU국가의 출산율 및 가족 구조 동향과 시사점.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177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유영주(1984). 한국도시가족의 가정생활주기 모형 설정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 111-129.
- 유해미(2010). 아동수당제도 도입 시 쟁점 및 정책과제. 현안보고서, 83. 국회입

법조사처.

- 이명진·최슬기(2011).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가족환경 변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이민자·김용미(2007). 늦부모와 일반 부모의 부모 효능감, 양육행동, 사회적 지원에 관한 비교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회지, 49, 289-309.
- 이삼식·정경희 외(2010). 저출산 원인과 파급효과 및 정책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삼식·정운선·김희경·최은영·박세경·조남훈·신인철·도세록·조숙경·강주희(2005).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삼식·최효진(2010). 생애주기변화와 출산행태 간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교육·경제활동 및 결혼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삼식·최효진·오영희·서문희·박세경·도세록(2009). 2009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보건복지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정원(2007). 유자녀 취업 여성의 후속출산의도에 관한 연구: 합리적·가치적 선택 모형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장미혜·송효진·이인선(2012). 30~40대 여성의 생활 실태와 정책적 대응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정옥분·정순화·홍계옥(2005). 결혼과 가족의 이해. 시그마프레스(주).
- 조희금·송혜림·박정윤·권태희·김경화·김주현·기혜영·윤소영·윤진숙·이진숙·정민자(2010). 2010년 제2차 가족실태조사. 여성가족부.
- 최성은(2010). 아동수당 재원조달의 국제비교와 재원조달 방안 연구. 사회보장연구. 26(2), 317-341.
- 최정수(2010). 모성건강 추이의 저출산정책에 대한 함의.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65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최정수·이난희(2011). 출산관련행태 변화에 따른 신생아건강 동향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통계청(2000-2011). 경제활동인구연보.
- 통계청(1993, 1996, 2000-2012). 인구동향조사(혼인).

통계청(1990, 2000-2012). 인구동향조사(출생).

통계청(1970, 1975, 1980, 1985, 1990, 2000, 2005). 인구주택총조사.

황나미(2011). 불임치료 여성의 신체적·정신적 및 사회경제적 부담 실태와 요구도.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74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황나미·황정혜·김지은(2010). 저출산 극복을 위한 불임부부 지원 사업 현황과 정책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황지영(2003). 35세 이상 고령산모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임상적 연구. 동국의학, 10(2), 298-306.

Jokinen, K. (2013). Families and Family Policies in Finland- A Future Scenario.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해외학자 초청 국제심포지움: 가족의 미래와 여성·가족정책전망(III) The Future of the Family and Foresight for Woman and Family Policies in Korea, 143-157.

[신문기사]

뉴스시스헬스(2009.4.24.). 한정열 교수팀 “엽산제 임신 1개월 전부터 복용해야”(www.newsishhealth.com에서 인출)

매일신문(2013.6.10.).[병을 알자]고령임신과 기형아.(www.imaeil.com에서 인출)

wikitree|Social Network News Service(2012.5.27). 고령출산에 선천기형이 걱정된다면, 주기적으로 산전검사 받으세요.(www.wikitree.co.kr에서 인출)

[참고 웹사이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moel.go.kr>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홈페이지 <http://www.korean.go.kr>

두산백과사전 홈페이지 <http://www.doopedia.co.kr>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mw.go.kr>

보건복지부 마더하기 정책포털 홈페이지 <http://momplus.mw.go.kr>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http://mogef.go.kr>

Abstract

A Study on the Measures to Support Childbirth and Rearing for Families with Late Childbirths

Jeongwon Lee Haemi Yoo Moonjeong Kim

The present study focuses on one of the major familial changes that influence the childbirth and childrearing environment, the aging of birth giving mothers, and consequently suggest measures to support these families with childbirth and rearing. The research is based on the perspective that with supporting policies and governmental effort the decrease in childbirth rates will be less affected by late birthgiving practices.

Literature on the current status of childbirth and rearing, the causes of late birthgiving, the current policies of childbirth and rearing were reviewed. In order to estimate the births and childrearing practices, work-family balance, and needs of families having their first child when the mother is 35 or older, 1,000 families with a child of age from 0 to 5 across the nation excluding Jeju Island were surveyed. Among them 300 families had mothers who had their first child at 35 or older.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to 15 families whose mother had their first child around 35. All the data were analyzed comprehensively.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main causes of late childbirth were late marriages and difficulty in conception.

Secondly, mothers who had their first child at 35 or older did so because of their late marriage. Most of these subjects believed that the male partner must be employed and had higher standards for their first home, which may have led them to wait until they found a partner who had fulfilled their financial demands. Couples who had married later received less financial support from their parents for their wedding, which might explain the delay

due to preparing for the wedding and housing expenses.

Thirdly, approximately 8.7% of couples who have their first child later had problem in conception. Among these couples, a number of women quit their jobs due to this problem which makes this group especially vulnerable.

Fourth, among the subjects who have been employed that experienced a career gap had so mostly during their pregnancies. However, late birth givers experienced career gaps before their conception, making difficulty in conception the main cause of a career gap.

Also, the proportion of late birth giving families who had plans for more children were considerably lower. The main reasons for this was because of 'the old age of the parents (42.3%)' and 'the burden of the cost of childrearing (30.5%)'.

Lastly, families of late birth givers had less labor force such as grand parents, which yielded to a higher usage of childcare centers/kindergartens. Because parents of new mothers above the age 35 were relatively older and had more health problems, the necessity to lessen the burden of childrearing on the grandparents has been raised. As a substitute, the demand for more regular and non-regular care from institutes and higher quality of care had become high.

The present study suggests three basic courses: 1. the prevention of involuntary delay in childbirth, 2. support for multiple childbirths in late birth giving families, and 3. the supplement of the vulnerabilities of late childbirths.

First, in order to prevent involuntary delay in childbirth, the expansion of subjects to the 'housing support service for newly wedded couples' to prevent late marriages, removal of the 'confirmation of legal registration of marriage' and 'females under 44 years of age' criteria when selecting subjects for pregnancy support service, and the inclusion of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in the health insurance were suggested. Furthermore, predicting a steady rise in the number of late birthgivers, education on reproduction and regular health screenings for elementary to college students was also

proposed.

Secondly, to supplement the lack of childcare resources when giving birth late, social childcare services such as the provision of increased numbers of centers and babysitters is required along with the expansion of policies that support paternal childcare.

부 록

부록 1. 출산·양육 실태조사 질문지

부록 2. 심층면담 질문지

부록 1. 출산·양육 실태 조사 질문지

가족변화에 따른 출산·양육 실태조사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대리서치연구소 면접원 ○○○입니다.

육아정책연구소는 육아정책연구를 보다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국가 정책연구기관입니다.

본 연구소는 출산수준 제고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지원 내실화를 위하여 「가족변화에 대응한 출산·육아지원 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전국의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결혼 및 출산과 관련한 실태와 요구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가족의 특성에 따른 출산·육아지원 정책 개선 방안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본 설문지의 모든 문항에는 맞고 틀리는 답이 없으므로 귀하의 솔직한 의견을 있는 그대로 대답하여 주시면 됩니다.

귀하가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제①, ②항에 의거하여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며, 조사결과를 연구 목적 외에 다른 어떤 용도로도 이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어 응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사주관기관 : 육아정책연구소 정책연구실

담당연구원 김 문 정
연 락 처 02)398-7719

조사대행기관 : (주)현대리서치연구소

담당연구원 이 민 영
실사연구원 최 영 희
연 락 처 02)3218-9658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

- 1)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 2)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는 통계작성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설문 작성 방법>

- 1) 설문 내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보기번호에 ☒ 표시 해주시거나 ☐ 빈칸에 내용을 기록해 주십시오.

지역 현황	지역코드	지역				
		☐ 1) 서울	☐ 2) 부산	☐ 3) 대구	☐ 4) 인천	☐ 5) 광주
		☐ 6) 대전	☐ 7) 울산	☐ 8) 경기	☐ 9) 강원	☐ 10) 충북
		☐ 11) 충남	☐ 12) 전북	☐ 13) 전남	☐ 14) 경북	☐ 15) 경남
지역 구분	☐ 1) 대도시 ☐ 2) 중소도시 ☐ 3) 군지역(읍면동 포함)					
가구주소	시/도	군/구	읍/면/동	상세주소(※번지까지 기입)		
면접상황	면접일시	월 일 (오전/오후) 시 분 ~ 시 분 (약 _____분간)				
	면접원 성명					

수퍼바이저	검증	에디팅	코딩
-------	----	-----	----

SQ1. 귀하께서는 현재 자녀 중 미취학 자녀가 있습니까?

☐ 1) 예 ☐ 2) 아니오 **설문중단**

SQ2. 현재 자녀 수가 1명입니까?

☐ 1) 예 ☐ 2) 아니오 **설문중단**

SQ3. 현재 귀하의 혼인상태는 어떻게 됩니까?

☐ 1) 유배우(혼인중) ☐ 2) 이혼·사별·별거·미혼 **설문중단**

SQ4. 자녀의 출생년월과 연령은 어떻게 됩니까?

년

월

|

만

세

* 자녀 연령 만 0~5세 외에는 면접중단

SQ5. 자녀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1) 남자 ☐ 2) 여자

SQ6. 첫 출산시 귀하의 연령은 몇 살이었습니까?

만

세

☐ 1) 만 25세 미만 ☐ 2) 만 25세 ~ 30세 미만

☐ 3) 만 30세 ~ 35세 미만 ☐ 4) 만 35세 이상

I. 응답가구 특성

※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인 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인	배우자(남편)
Q1. 출생년월 * 양력	년 월	년 월
Q2. 최종학력	☐ 1) 고졸 이하 ☐ 2) 전문(2~3년)대졸 ☐ 3) 4년제 대졸 ☐ 4) 대학원 이상	☐ 1) 고졸 이하 ☐ 2) 전문(2~3년)대졸 ☐ 3) 4년제 대졸 ☐ 4) 대학원 이상
Q3. 근로소득 * 세금 공제전 금액	월 평균 원	월 평균 원
Q4. 귀하의 월평균 가구 소득은 얼마 입니까? * 세금 공제전 금액	월 평균 원	
Q4-1. 만약 구체적인 액수를 말씀해 주시기 곤란하시면 아래 보기 중 하나만 골라 주십시오.	☐ 1) 100만원 미만 ☐ 2)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 3) 15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 4) 200만원 이상~250만원 미만 ☐ 5) 2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 6)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 7)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 8) 500만원 이상~700만원 미만 ☐ 9) 7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 ☐ 10) 1,000만원 이상	

* 학력: 중퇴의 경우 전단계 학력의 졸업으로 표기 (예: 대학교중퇴 → 1) 고졸 이하에 표기)

* 근로소득 : 소득이 없을 경우 '0'으로 표기 / 세금공제 전 금액으로 표기

* 가구소득 : 부부의 근로소득, 금융소득, 임대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한 금액으로 표기 / 소득이 없을 경우 '0'으로 표기

※ 다음은 첫째 자녀 출산 당시 귀댁 자녀의 친조모와 외조모에 관한 질문입니다.

	친 조 모	외 조 모
Q5. 첫 자녀 출산 당시 조모의 생존여부	☐ 1) 돌아가셨음 ☞ 문 9로 ☐ 2) 생존해 계셨음	☐ 1) 돌아가셨음 ☞ 문 9로 ☐ 2) 생존해 계셨음
Q6. 첫 자녀 출산 당시 조모의 연령대 < 연령대 보기 >	 1) 만 50세 미만 3) 만 55세~60세 미만 5) 만 65세~70세 미만 7) 만 75세~80세 미만	 2) 만 50세~55세 미만 4) 만 60세~65세 미만 6) 만 70세~75세 미만 8) 만 80세 이상
Q7. 첫 자녀 출산 당시 조모의 건강상태	☐ 1) 건강함 ☐ 2) 경미한 질병·장애 있음 ☐ 3) 중한 질병·장애 있음	☐ 1) 건강함 ☐ 2) 경미한 질병·장애 있음 ☐ 3) 중한 질병·장애 있음

* 경미한 질병·장애는 거동이나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

※ 다음은 현재 귀댁에서 조부모댁/외조부모댁에 대한 정기적 생활비 지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조 부모 댁	외 조 부모 댁
Q8. 경제적 지원 여부 (귀댁 → 조부모/외조부모댁)	☐ 1) 지원함 ☞ 문 8-1로 ☐ 2) 지원하지 않음	☐ 1) 지원함 ☞ 문 8-1로 ☐ 2) 지원하지 않음
Q8-1. 월평균 지원 금액	월 평균 원	월 평균 원

* 경제적 지원 : 양육을 도와주는 것과 상관없이 정기적으로 용돈이나 생활비를 지원하는 경우

II. 결혼

Q9. 귀하께서는 결혼 전에 결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 ☐ 1) 반드시 해야 한다 ☐ 2) 하는 편이 좋다
☐ 3)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 4) 하지 않는게 낫다

Q10. 귀하는 결혼을 언제 하셨습니까? 결혼 당시의 귀하와 배우자(남편)의 나이를 적어 주십시오. 재혼 이상의 경우 초혼연령과 재혼연령을 모두 기입해 주십시오.

	본 인	배 우 자 (남 편)
Q10-1. 결혼 형태	☐ 1) 초혼 ☞ 문 10-2 응답후, 문11-1로 ☐ 2) 재혼 ☞ 문 10-2, 문 10-3 응답	☐ 1) 초혼 ☞ 문 10-2 응답후, 문11-1로 ☐ 2) 재혼 ☞ 문 10-2, 문 10-3 응답
Q10-2. 초혼 연령	만 세	만 세
Q10-3. 재혼 연령	만 세	만 세

Q11-1. 귀하는 결혼에 적절한 시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Q11-2. 적절한 시기가 있다면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남녀로 구분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남자	여자
Q11-1. 결혼 적령기 여부	☐ 1) 적령기가 있다 ☒ 문 11-2로 ☐ 2) 적령기가 없다	☐ 1) 적령기가 있다 ☒ 문 11-2로 ☐ 2) 적령기가 없다
Q11-2. 결혼 적령시기	최소 만 세 이상 최대 만 세 이하	최소 만 세 이상 최대 만 세 이하

Q12. 귀하께서 결혼한 나이는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재혼이상인 경우 초혼 나이를 기준으로 응답

- ☐ 1) 빨리 했다 ☒ 문 13으로 ☐ 2) 적절하다 ☒ 문 13으로 ☐ 3) 늦게 했다 ☒ 문 12-1로

Q12-1. 결혼을 늦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 1) 직장생활에 방해가 되어서 ☐ 2) 배우자감이 없어서 ☐ 3) 배우자의 사정으로 미룸
☐ 4) 경제형편이 좋지 않아서 ☐ 5) 취업이 안 되어서 ☐ 6) 독신의 삶을 즐기기 위해
☐ 7) 특별한 이유 없음 ☐ 8) 기타 (구체적으로 : _____)

Q12-2. 결혼을 늦게 한 것에 만족하십니까?

- ☐ 1) 매우 불만족 ☒ 문 12-2-1로 ☐ 2) 불만족 ☒ 문 12-2-1로 ☐ 3) 보통
☐ 4) 만족 ☐ 5) 매우 만족

Q12-2-1. 불만족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불만족하는 사항을 순서대로 2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 1) 임신·출산에 어려움을 겪음
2) 양육의 체력적 부담이 컸음
3) 출산시기가 늦어져 사회생활, 직장생활에 곤란을 겪음
4) 자녀의 독립 전 부모가 은퇴하게 되어 은퇴 후의 양육이 염려됨
5) 자녀를 더 많이 낳고 싶으나 못 낳음
6) 주변에 양육을 도와줄 인력이 연로하거나 없음
7) 기타 (구체적으로 : _____)

1순위	2순위

Q13. 귀하와 남편의 결혼 당시 교육정도는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 1) 고졸이하 2) 2~3년제 대학졸 3) 4년제 대학졸 4) 대학원 이상

본인	배우자

Q14. 귀하와 배우자는 결혼비용 마련을 위해 대출이나 부모의 조력을 받았습니까? 받은 경우 그 비용(초혼기준)을 적어 주십시오.

	본인	배우자(남편)
Q14-1. 대출 여부	☐ 1) 받았음 → ☐ 2) 받지 않았음 ↓ 비용 _____ 원	☐ 1) 받았음 → ☐ 2) 받지 않았음 ↓ 비용 _____ 원
Q14-2. 부모님의 조력 여부	☐ 1) 받았음 → ☐ 2) 받지 않았음 ↓ 비용 _____ 원	☐ 1) 받았음 → ☐ 2) 받지 않았음 ↓ 비용 _____ 원

* 다음은 결혼을 위한 경제적 조건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Q15. 귀하는 결혼을 하기 위해서 배우자(남편)가 반드시 직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1) 그렇다. 직업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 2) 아니다. 능력이 있으면 결혼 당시 직업은 없어도 된다

Q16. 귀하는 결혼을 하기 위해서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의 집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그렇다.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의 집이 있어야 한다
- ☐2) 아니다. 전세 이상이면 된다
- ☐3) 아니다. (전)월세 이상이면 된다
- ☐4) 아니다. 어떤 것이든 상관없다
- ☐5) 기타 (구체적으로 : _____)

Q17. 출산을 하는데 있어 관련 있는 다음의 항목들이 각각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귀하의 의견과 가장 가까운 번호를 골라 응답란에 적어 주십시오.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음	중요함	매우 중요함
	1	2	3	4
1) 부모의 나이	☐ 1)	☐ 2)	☐ 3)	☐ 4)
2) 부모의 건강상태	☐ 1)	☐ 2)	☐ 3)	☐ 4)
3) 부모의 가치관	☐ 1)	☐ 2)	☐ 3)	☐ 4)
4) 부모의 경제력	☐ 1)	☐ 2)	☐ 3)	☐ 4)

III. 임신과 출산

※ 다음은 귀하의 임신 · 출산 · 자녀 관련 가치관에 대한 질문입니다.

Q18. 귀하는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산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미혼 부모됨'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으로 결혼을 정한 상태에서의 혼전 임신은 해당 안됨

- ☐1) 찬성한다
- ☐2) 반대한다

Q19. 귀하는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그렇다. 자녀가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 ☐2) 자녀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다고 생각한다
- ☐3) 자녀가 없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Q20. 귀하는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언제까지 할 생각하십니까?

- ☐1) 성인이 되기 전까지(18세 기준,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졸업시)
- ☐2) 대학 졸업까지
- ☐3) 대학원 진학 등 학업을 완전히 마칠 때 까지
- ☐4) 학업을 마치더라도 취업 전까지
- ☐5) 결혼할 때까지
- ☐6) 결혼 후에도 때때로 지원할 계획(출산, 집마련, 병환 등 목돈 필요시)
- ☐7) 부모 능력이 되면 가능한 평생지원

Q21-1. 귀하는 임신출산에 적당한 시기(적령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Q21-2. 적당한 시기(적령기)가 있다면 초산기준으로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남녀로 구분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남자	여자
Q21-1. 임신 · 출산의 적령기 여부	☐ 1) 적령기가 있다 문 21-2로 ☐ 2) 적령기가 없다	☐ 1) 적령기가 있다 문 21-2로 ☐ 2) 적령기가 없다
Q21-2. 임신 · 출산의 적정시기	최소 만 세 이상 최대 만 세 이하	최소 만 세 이상 최대 만 세 이하

Q22. 귀하는 다음과 같은 생각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나이가 많다'는 것은 의의적으로 '고령' 혹은 '고위험' 임신·출산의 기준이 되는 '만35세'를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전적으로 동의함
	1	2	3	4
1) 부모(특히 어머니)의 나이가 많으면 임신이 어렵다	☐ 1)	☐ 2)	☐ 3)	☐ 4)
2) 부모(특히 어머니)의 나이가 많으면 임신유지가 어렵다	☐ 1)	☐ 2)	☐ 3)	☐ 4)
3) 부모(특히 어머니)의 나이가 많으면 건강한 출산이 어렵다	☐ 1)	☐ 2)	☐ 3)	☐ 4)
4) 부모(특히 어머니)의 나이가 많으면 자녀를 잘 양육하기 어렵다	☐ 1)	☐ 2)	☐ 3)	☐ 4)

※ 다음은 임신·출산력에 대한 질문입니다.

Q23. 귀댁의 첫 자녀 출산까지의 임신력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Q23-1. 첫 자녀의 임신은 계획한 것입니까?	☐ 1) 예 문 23-2로 ☐ 2) 아니오 문 23-5로	
Q23-2. 임신 계획시 첫 자녀 출산 시기를 언제로 계획하셨습니다?	☐ 1) 결혼 전 ☐ 2) 결혼 후 년 이내	
Q23-3. 귀댁의 첫 출산 시기를 계획하는데 있어 가장 크게 고려한 사항은 무엇입니까? 가장 크게 고려한 순서대로 2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 고려사항 보기 >	1) 부모의 연령 3) 취업·퇴직 계획 5) 직장 여건(휴직 사용 가능성 등) 6) 부모의 건강상태 7) 지인(조부모 등)의 의견 8) 자녀 양육을 도와줄 사람 또는 기관 유무 9) 기타 () 10) 특별히 고려한 사항은 없음 2) 경제력 4) 희망자녀수 1순위 2순위	
Q23-4. 임신을 처음 계획한 후 실제 해당 자녀의 임신까지 얼마나 걸렸습니까?	☐ 1) 1년 미만 ☐ 2) 1년 이상 년 개월	
Q23-5. 해당 자녀의 출산 전까지 유산·사산 등의 경험이 있습니까?	☐ 1) 그렇다 ☐ 2) 아니다	

Q24. 다음은 출산 당시 상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Q24-1. 출산 방법	☐ 1) 자연분만 ☐ 2) 계획된 제왕절개 ☐ 3) 계획되지 않은 제왕절개		
Q24-2. 산후조리방법	☐ 1) 친정부모 등 친인척 도움 ☐ 2) 산후 도우미 ☐ 3) 산후조리원 ☐ 4) 배우자의 도움 ☐ 5) 기타 (구체적으로 :)		
Q24-3. 출산당시 본인 연령	☐ 1) 만35세 미만 문 26로 ☐ 2) 만 35세 이상 문 25로		

● Q24-3에서 2) 응답자(초산 연령 35세 이상)만

Q25. 귀하가 첫 자녀를 만 35세 이상에 출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결혼이 늦어져서(결혼 후에는 곧 임신함)
☐2) 임신이 잘 안되어서
☐3) 유산·사산을 겪어 출산이 늦어짐
☐4) 부부만의 시간을 가지기 위해 임신을 늦춤
☐5) 경제적·사회적 기반 마련을 위해 임신을 늦춤(취업준비, 학업, 주택마련 등을 위해)
☐6) 부부간의 자녀관 차이로 임신 계획이 늦어짐
☐7) 직장에서의 업무부담 때문에 시기를 늦춤
☐8) 기타 (구체적으로 :)

● 전체 응답자

Q26. 귀댁의 첫 자녀는 어떻게 임신했습니까?

☐ 1) 자연임신 **☞ 문 27으로**☐ 2) 과배란 유도를 통해 **☞ 문 27으로**☐ 3) 인공수정 기술을 통해 **☞ 문 26-1로**☐ 4) 시험관 기술을 통해 **☞ 문 26-1로**

Q26-1. 귀댁은 첫 자녀 임신시 정부의 '난임부부 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았습니까?

* 난임부부 지원사업 : 보건복지부에서 2010년부터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금전적인 부담으로 불임시술이 어려운 부부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

☐ 1) 그렇다☐ 2) 아니다

Q26-2. 귀댁에서 첫 자녀의 임신을 위해 인공수정, 시험관 시술에 소요된 비용은 총 얼마입니까?

 원☐ 1) 100만원 미만☐ 2) 100~300만원 미만☐ 3) 300~500만원 미만☐ 4) 500~700만원 미만☐ 5) 700~1,000만원 미만☐ 6) 1,000~1,500만원 미만☐ 7) 1,500~2,000만원 미만☐ 8) 2,000만원 이상

Q27. 귀하는 첫 자녀 임신·출산시 다음과 같은 문제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각 문제 경험과 관련해 일반적인 임신 중 검진·출산비용 외 발생한 추가 비용이 있다면 표기에 주십시오.

구 분	Q27-1. 문제 경험 여부	Q27-2. 비용 발생 여부
	1) 예 → 2) 아니오 ↓	1) 예 2) 아니오
1) 임신부의 건강 문제(임신우울증, 고혈압, 갑상선 질환, 임신성 당뇨, 임신성 빈혈, 임신중독증 등)	☐ 1) ☐ 2)	☐ 1) ☐ 2)
2) 태아의 건강문제(전치태반, 태반조기박리, 양수과소증, 양수과다증, 자궁근무력증 등)	☐ 1) ☐ 2)	☐ 1) ☐ 2)
3) 37주 미만의 출산	☐ 1) ☐ 2)	☐ 1) ☐ 2)
4) 2.5kg 미만의 저체중아 출산	☐ 1) ☐ 2)	☐ 1) ☐ 2)
5) 기타 자녀의 건강문제(기형, 선천성 질환 등)	☐ 1) ☐ 2)	☐ 1) ☐ 2)
6) 산모의 출산·회복시 건강문제	☐ 1) ☐ 2)	☐ 1) ☐ 2)
7) 자녀의 신생아집중치료실 또는 미숙아실 입원	☐ 1) ☐ 2)	☐ 1) ☐ 2)

Q28. 귀하는 첫 자녀 임신 시 담당의사를 통해 다음 중 필요하다고 권유받은 검사가 있습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골라 주십시오.

☐ 1) 용모막검사☐ 2) 양수검사☐ 3) 제대혈검사☐ 4) 정밀초음파(표적 초음파 검사)☐ 5) 신경관결손검사☐ 6) 기타 ()☐ 7) 없음

* 용모막검사 : 임신초기 태반(용모막) 조직을 일부 떼어 시행하는 염색체검사의 일종임
 * 양수검사 : 임신기간 중 태아의 문제나 염색체 이상을 알아보기 위해 산모의 양수를 채취해 시행하는 검사임
 * 제대혈검사 : 탯줄로부터 태아의 혈액을 채취하여 태아의 염색체, 유전자를 검사하거나 혈우병 또는 풍진바이러스 감염여부를 검사함
 * 정밀초음파(표적초음파검사) : 태아의 특정부위(신체적, 구조적) 이상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고해상력 초음파를 이용한 표적검사임
 * 신경관결손검사 : 신경관결손 고위험군으로 판정된 경우 양수내 태아단백질과 아세틸콜린에스테라제를 동시에 검사하여 신경관결손을 진단하는 검사

※ 다음은 귀댁의 출산계획 및 관련 정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Q29. 다음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출산양육지원 정책입니다. 각 정책에 대한 인지 여부, 수혜 경험 여부, 만족도에 대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Q29-1. 인지	Q29-2. 수혜경험	Q29-3. 만족도			
	1) 알고 있음 → 2) 잘 모름 ↓	1) 있음 → 2) 없음 ↓	1) 매우 불만족 3) 만족	2) 불만족	3) 매우 만족	4) 매우 만족
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1) ☐ 2)	☐ 1) ☐ 2)	☐ 1) ☐ 2) ☐ 3) ☐ 4)			
2)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고운맘카드지원)	☐ 1) ☐ 2)	☐ 1) ☐ 2)	☐ 1) ☐ 2) ☐ 3) ☐ 4)			
3) 아동의료비 지원(예방접종비 등)	☐ 1) ☐ 2)	☐ 1) ☐ 2)	☐ 1) ☐ 2) ☐ 3) ☐ 4)			
4) 출산장려금(일시금) 지원	☐ 1) ☐ 2)	☐ 1) ☐ 2)	☐ 1) ☐ 2) ☐ 3) ☐ 4)			
5)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 1) ☐ 2)	☐ 1) ☐ 2)	☐ 1) ☐ 2) ☐ 3) ☐ 4)			

Q30. 귀하께서는 향후 자녀를 더 낳을 계획이십니까?

- ☐1) 현재 임신중임 ➡ 문 30-1로 ☐2) 낳겠다 ➡ 문 30-1로
☐3) 낳지 않겠다 ➡ 문 30-4로 ☐4) 생각 중임 ➡ 문 30-4로

Q30-1. 귀하께서는 후속 출산을 계획하신다면 몇 명이나 더 낳을 생각이십니까?

명

* 현재 임신중인 아이를 포함하여 응답함

Q30-2. 귀하는 자녀를 가지려고 할 때 임신이 잘 되지 않는다면 보조생식술을 받을 생각이 있습니까?

* 보조생식술 : 배란유도, 인공수정, 시험관시술
 * 현재 임신중인 아이를 포함하여 응답함, 현재 임신중인 둘째 자녀를 보조생식술을 통해 임신한 경우 1)그렇다 에 응답

- ☐1) 그렇다 ☐2) 아니다

Q30-3. 귀하는 자녀 출산에 있어 터울을 고려하십니까?

- ☐1) 그렇다. 현재 터울 조절을 하여 임신하였거나 향후 터울을 조절하여 출산할 계획이다 ➡ 문 30-3-1로
☐2) 아니다 ➡ IV. 문 31로

Q30-3-1. 귀하가 계획했거나 하려고 하는 자녀출산 간격(터울)은 몇 년입니까?

년

Q30-3-2 터울을 계획할 때, 가장 크게 고려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 ☐1) 부모의 연령 ☐2) 경제력 ☐3) 취업·퇴직 계획
☐4) 희망자녀수 ☐5) 직장의 여건(휴직 사용 가능성 등) ☐6) 부모의 건강 상태
☐7) 지인(조부모 등)의 의견 ☐8) 자녀 양육을 도와줄 사람 또는 기관 유무
☐9) 기타 (구체적으로 : _____)
☐10) 특별히 고려한 사항은 없음

➡ 응답후, IV 문 31로 이동

Q30-4. 자녀를 더 낳을 생각이 없거나 고민 중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만 응답하여 주십시오.

- 1) 양육비 부담 때문에 2) 자녀 양육이(체력적으로) 힘들어서
 3) 자녀 양육과 (직장)사회생활의 양립이 어려워서 4) 이미 원하는 자녀수에 도달하여서
 5) 부모의 나이가 많아서 6) 부모의 건강상 문제 때문에
 7) 지인(조부모 등)이 만류하여서
 8) 자녀 양육을 도와줄 사람 또는 기관이 마땅치 않아서
 9) 취업이나 퇴직 계획 때문에
 10) 기타 (구체적으로 : _____)

1순위	2순위

Q30-4-1. 정부의 출산양육지원이 확대된다면 자녀를 더 낳을 수 있겠습니까?

- ☐1) 그렇다 ☐2) 아니다 ☐3) 모르겠음

IV. 자녀 양육 및 일-가정 양립 실태

※ 다음은 귀댁의 자녀 양육 실태에 대한 질문입니다.

Q31. 현재 해당 자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1일 3시간 이상 영유아 대상 기관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 ☐1) 이용중임 ➡ 문 31-1로 ☐2) 이용하지 않음 ➡ 문 32로

Q31-1. 현재 해당 자녀는 어떤 기관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 ☐1) 국공립유치원 ☐2) 사립유치원 ☐3) 국공립어린이집
☐4) 법인어린이집 ☐5) 민간어린이집 ☐6) 가정어린이집
☐7) 직장어린이집 ☐8) 부모협동어린이집 ☐9) 기타(영유아대상 학원, 놀이학교, 영어유치원 등)

Q31-2. 기관을 이용하는데 있어 불만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가장 큰 불만사항 한 가지만 골라주십시오.

- ☐1) 비용 부담(추가비용 발생 등)이 큼 ☐2) 기관운영시간(방학, 등하원 시간 등)이 이용에 불편함
☐3) 긴급 상황시 이용 가능성(아근, 회식, 출장 시 등)이 낮음
☐4)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이 낮음 ☐5) 원하는 기관에 입소하기 어려움
☐6) 교사의 신뢰성이 떨어짐 ☐7) 접근성이 낮음
☐8) 기타 (구체적으로 : _____) ☐9) 불만사항 없음

Q32. 현재 부모 이외 해당 자녀를 정기적으로 돌봐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 ☐1) 있다 ➡ 문 32-1로 ☐2) 없다 ➡ 문 33로

Q32-1. 부모 외에 해당자녀를 돌봐주는 분은 다음 중 누구입니까? 여러분일 경우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1) 친조부모 ☐2) 외조부모 ☐3) 기타 친인척
☐4) 비혈연인력(배이비시터, 아이돌보미, 이웃탁아도 등) ☐5) 기타 (_____)

Q32-2. 자녀를 돌봐주는 분에게 그 대가로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까? 있다면, 월평균 얼마를 지불합니까?

- ☐1) 지불함 (월평균 _____ 원) ☐2) 지불하지 않음

Q33. 평소 귀하에게 급한 일이 생길 경우 자녀 양육을 도와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다면 누구입니까?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1) 남편(배우자) ☐2) 친조부모 ☐3) 외조부모
☐4) 기타 친인척(조부모 제외) ☐5) 파출부, 가사도우미 ☐6) 이웃/ 친구
☐7) 지역사회 공동육아 모임 인원 ☐8) 기타 (구체적으로 : _____)
☐9)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음

Q34. 육아 관련 지식이나 조언이 필요한 경우 주로 누구(어디)의 도움을 받습니까?

- ☐1) 친지 ☐2) 친구, 동료 ☐3) 육아관련 사이트
☐4) 육아관련 전문가 ☐5) 관련 서적 ☐6) 기타 (구체적으로 : _____)
☐7) 없음

Q35. 귀하와 자녀의 아버지(배우자)는 주중과 주말에 자녀를 돌보는데 하루 평균 어느 정도 시간을 보내십니까?

* 자녀를 돌보는 시간에는 '취침'시간은 제외하고 응답해 주십시오.

	본인	배우자(남편)
1) 주중	하루평균 시간 분	하루평균 시간 분
2) 주말	하루평균 시간 분	하루평균 시간 분

Q36. 귀하는 배우자(남편)의 자녀 양육 참여 정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1) 매우 부족하다 ☒ 문 36-1로
☐ 3) 충분한 편이다 ☒ 문 36-2로

- ☐ 2) 부족한 편이다 ☒ 문 36-1로
☐ 4) 매우 충분하다 ☒ 문 36-2로

Q36-1. 배우자(남편)의 자녀 양육 참여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배우자가 자녀 양육에 잘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 1) 직장일이 바빠서(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해서) 2) 평소에 자녀(육아)에 관심이 없어서
3) 자녀 양육을 부부공동의 일이라 생각하지 않아서 4) 육아에 관심이 있으나 아이 돌보기를 어려워해서
5) 다른 가족들이 아이 돌보기를 모두 하기 때문에 6) 개인적인 여가나 취미활동으로 바빠서
7) 기타 (구체적으로 : _____)

1순위	2순위

☒ 응답후, Q37으로 이동

Q36-2. 배우자(남편)의 자녀 양육 참여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배우자가 자녀 양육에 잘 참여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 1) 직장의 근로조건이 여유가 있어서(정시 출퇴근 가능한 직장분위기, 유연근무제 사용 가능 등)
2) 평소에 자녀(육아)에 관심이 많아서
3) 자녀 양육을 부부 공동의 일이라 생각하여서 4) 아이돌보기를 어려워하지 않아서
5) 부부 외에 자녀 양육을 도울 수 있는 인력이 없어서 6) 기타 (구체적으로 : _____)

1순위	2순위

Q37. 귀하는 자녀 양육과 관련해 현재 느끼고 있는 어려움 혹은 향후 걱정되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다음의 각 항목에 대해 각각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해당사항 없음
	1	2	3	4	9
1) 자녀 양육이 체력적으로 힘들	☐ 1)	☐ 2)	☐ 3)	☐ 4)	☐ 9)
2) 가계 소득에 비해 자녀 양육비 부담이 큼	☐ 1)	☐ 2)	☐ 3)	☐ 4)	☐ 9)
3) 직장 일과 자녀 양육의 병행이 어려움	☐ 1)	☐ 2)	☐ 3)	☐ 4)	☐ 9)
4) 자녀 또래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어려움	☐ 1)	☐ 2)	☐ 3)	☐ 4)	☐ 9)
5) 조부모 등 양육을 지원할 인력이 노쇠하거나 없음	☐ 1)	☐ 2)	☐ 3)	☐ 4)	☐ 9)
6) 배우자의 양육 지원을 받기 어려움	☐ 1)	☐ 2)	☐ 3)	☐ 4)	☐ 9)
7) 자녀를 믿고 맡길만한 기관이나 인력이 부족함	☐ 1)	☐ 2)	☐ 3)	☐ 4)	☐ 9)
8) 자녀 양육·교육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가 부족함	☐ 1)	☐ 2)	☐ 3)	☐ 4)	☐ 9)
9) 부모의 은퇴 후 독립전의 자녀 양육비 부담이 우려됨(예:학자금 등)	☐ 1)	☐ 2)	☐ 3)	☐ 4)	☐ 9)

Q38. 다음은 부모의 취업력 및 일-가정 양립실태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인	배우자(남편)
Q38-1. 첫 취업 시기 (정규직 기준)	☐ 1) 결혼 전 만 세 ☒ 문 38-2로 ☐ 2) 결혼 후 만 세 ☒ 문 38-2로 ☐ 3) 정규직으로 취업한 적이 없음 ☒ 문 43-3-2로	☐ 1) 결혼 전 만 세 ☒ 문 38-2로 ☐ 2) 결혼 후 만 세 ☒ 문 38-2로 ☐ 3) 정규직으로 취업한 적이 없음
Q38-2. 결혼당시 취업여부 (정규직 기준)	☐ 1) 취업 중 ☐ 2) 비취업 ☐ 3) 학생	☐ 1) 취업 중 ☐ 2) 비취업 ☐ 3) 학생
Q38-3. 결혼 후(총 경력)	총 년 개월	총 년 개월
Q38-4. 현재직업	1) 관리자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 사무종사자 4) 서비스종사자 5) 판매직종사자 6) 농·임·어업 숙련종사자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8)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9) 단순노무종사자 10) 기타 (본인 : _____, 배우자 : _____) 11) 비해당(비취업) ☒ 문 42로 이동	
Q38-5. 현재종사상 지위	1) 상용직(출산휴가, 육아휴직 중 포함) 2) 계약직 3) 임시직 4) 일용직 5) 무급가족종사자 6) 자영업자	

● Q38-4. 본인의 현재직업에서 1)~10) 응답자만

Q39. 귀하께서 현재 취업 중인 경우, 귀하께서는 언제까지 일을 계속하실 예정이십니까?

- ☐1) 곧 그만둘 계획임
- ☐2) 자녀(추가) 출산 전까지
- ☐3) 경제적 여건이 좋아질 때까지
- ☐4) (정년 등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최대 기한까지
- ☐5)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
- ☐6)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아도 될 때까지
- ☐7) 기타 (구체적으로 : _____)

Q40. 귀하께서 현재 취업 중인 경우, 다음 각 항목에 대해 현재 자녀 양육과 직장일의 양립 상황에서 겪는 어려움은 각각 어느 정도 입니까?

	매우 많음	약간 많음	보통	거의 없음	전혀 없음
	1	2	3	4	5
1) 출퇴근 시간에 맞춰 어린 자녀를 기관이나 대리양육자에게 맡기는데서 겪는 어려움	☐ 1)	☐ 2)	☐ 3)	☐ 4)	☐ 5)
2) 예상치 못한 야간 근무, 회식 등 발생으로 겪는 어려움	☐ 1)	☐ 2)	☐ 3)	☐ 4)	☐ 5)
3) 긴급 상황시 도움을 받을 곳이 없어 겪는 어려움	☐ 1)	☐ 2)	☐ 3)	☐ 4)	☐ 5)
4) 어린 자녀 양육으로 인해 승진기회, 주요 업무 등에서 배제되는데서 겪는 어려움	☐ 1)	☐ 2)	☐ 3)	☐ 4)	☐ 5)
5) 업무로 인해 어린자녀와 충분한 시간을 가지지 못하는데서 겪는 어려움	☐ 1)	☐ 2)	☐ 3)	☐ 4)	☐ 5)

Q41. 귀하께서 현재 취업 중인 경우, 향후 취업을 지속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영역은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직장의 근로 문화의 변화(정식 퇴근 문화, 유연한 근로 형태, 가족의 가치 존중 등)
- ☐2) 여성의 취업에 대한 인식 변화(여성 경제활동의 중요성 인식 등)
- ☐3) 자녀양육과 병행하기 용이한 일자리의 확대(시간제 정규직 등)
- ☐4) 가정 파견 개인양육지원 인력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자격 관리, 인력풀 확충 등)
- ☐5) 기관의 보육·교육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기관 서비스 비용 지원, 서비스 다양화와 질 관리 등)
- ☐6) 기타 (구체적으로 : _____)

Q43-2. 경력 단절 경험이 있다면, 귀하가 이용할 수 있었다면 취업을 지속하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것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 | | |
|-------------------------|-------------------------------|
| 1) 유·사산 휴가 이용 | 2) 난임(불임)휴가 이용 |
| 3) 유급 태아검진시간 이용 | 4) 귀하의 육아휴직 이용 |
| 5) 귀하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이용 | 6) 배우자의 육아휴직 이용 |
| 7) 배우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이용 | 8) 유연근무제(출퇴근 시차제, 재택근무제 등) 이용 |
| 9) 어린이집 이용(일반) | 10) 유치원 이용 |
| 11) 직장어린이집 이용 | 12) 가족간호휴가제 이용 |
| 13) 아이돌보미 이용 | 14)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

1순위	2순위

Q43-3. 경력 단절 경험이 있다면, 출산·양육으로 인해 직장을 그만 둔 후 재취업하였습니까?

☐ 1) 예 **☞ 문 44으로**

☐ 2) 아니오 **☞ 문 43-3-1로**

Q43-3-1. 경력 단절 경험이 있다면, 재취업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
|---|--|
| ☐ 1) 일을 하고 싶지 않아서 | ☐ 2) 일을 하고 싶으나 적당한 일자리가 없어서 |
| ☐ 3) 취업할 경우 자녀 양육과 병행하기 어려워서 | ☐ 4) 주변 사람들의 반대로 |
| ☐ 5) 건강이 좋지 않아서 | ☐ 6) 기타 (구체적으로 : _____) |

Q43-3-2. 귀하는 향후 취업할 계획이 있습니까?

☐ 1) 예 **☞ 문 43-3-3으로**

☐ 2) 아니오 **☞ 문 44으로**

☐ 3) 잘 모름 **☞ 문 44으로**

Q43-3-3. 취업을 계획함에 있어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 | | |
|---|--|
| ☐ 1) 학력과 경력에 맞는 직장을 구하기 어려움 | ☐ 2) 나이가 많아 어려움 |
| ☐ 3) 자녀를 믿고 맡길 곳이 없어 적극적 구직활동이 어려움 | ☐ 4) 오랜기간 경력단절로 취업의 자신감이 떨어짐 |
| ☐ 5) 취업 정보를 얻기 어려움 | ☐ 6) 원하는 일자리에 맞는 직업훈련이나 교육기회가 부족함 |
| ☐ 7) 기타(구체적으로 : _____) | |

Q44. 귀하는 다음의 정부지원 사업을 알고 이용한 적이 있습니까? 이용한 적이 있는 경우 자녀 양육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구 분	Q44-1. 인지	Q44-2. 이용(수혜)경험	Q44-3. 이용(수혜)시 자녀 양육 도움정도
	1) 안다 → 2) 모른다 ↓	1) 이용(수혜) → 2) 미이용(미수혜) ↓	1) 전혀 도움 안 됨 2) 도움 안 됨 3) 도움 됨 4) 많이 도움 됨
1) 양육수당	☐ 1) ☐ 2)	☐ 1) ☐ 2)	☐ 1) ☐ 2) ☐ 3) ☐ 4)
2) 영아 무상보육료 지원	☐ 1) ☐ 2)	☐ 1) ☐ 2)	☐ 1) ☐ 2) ☐ 3) ☐ 4)
3) 만 3~5세 어린이집·유치원 무상보육·교육비 지원 (누리과정 지원)	☐ 1) ☐ 2)	☐ 1) ☐ 2)	☐ 1) ☐ 2) ☐ 3) ☐ 4)
4) 시간제 아이돌보미	☐ 1) ☐ 2)	☐ 1) ☐ 2)	☐ 1) ☐ 2) ☐ 3) ☐ 4)
5) 영아 종일제 아이돌보미	☐ 1) ☐ 2)	☐ 1) ☐ 2)	☐ 1) ☐ 2) ☐ 3) ☐ 4)
6) 건강가정지원센터 공동육아나눔터	☐ 1) ☐ 2)	☐ 1) ☐ 2)	☐ 1) ☐ 2) ☐ 3) ☐ 4)
7) 보육정보센터(영유아플라자)	☐ 1) ☐ 2)	☐ 1) ☐ 2)	☐ 1) ☐ 2) ☐ 3) ☐ 4)

Q45. 향후 귀댁의 자녀 양육에 도움이 될 만한 지원이 있다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응답자 현황]

성 명		전 화	()-()-()	휴 대 폰	()-()-()
-----	--	-----	-------------------------	-------	-------------------------

육아정책연구소에서는 미취학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의 보다 자세한 의견을 여쭙보기 위해 향후 면담조사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면담조사에 응해 주시는 분들에게는 소정의 사례비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응해 주실 분은 1) 동의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동의

☐2) 비동의

◆ 긴 시간 동안 설문 에 응답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부록 2. 심층면담 질문지

「가족변화에 대응한 출산·육아지원 방안 연구」

심층면담 질문지 - 부모용

- 심층인터뷰 취지 및 목적: 결혼, 출산 및 양육 실태, 애로사항, 요구 파악
- 심층인터뷰 진행 방식: 주요 질문사항/응답 방식/소요 시간(대상별 약 1시간 반)
- ※ 개인정보 협조 요청

1. 결혼
1) 결혼관 - 귀하는 결혼 전 결혼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혼 후에도 결혼전과 동일한 생각이십니까? - 결혼이 개인의 자아실현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결혼이 개인의 자아실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면 둘 중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결혼을 하는데 갖추어야 할 조건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있다면 무엇이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 결혼시기 - 현재 귀하와 배우자의 나이는 몇 살이십니까? 결혼은 언제 하셨습니다까? - 현 배우자와 만난지 얼마나 지난 후에 결혼하셨습니다까? - 결혼을 그 시기에(연령에)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3) 결혼적령기에 대한 생각 - 결혼에 바람직한 시기(적령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있다면 몇 세 정도이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적령기 보다 늦게 결혼한 경우) 본인의 적령기 보다 늦게 결혼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적령기에 비해 결혼이 늦어짐으로 인한 장단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결혼을 원하나 원하는 시기보다 늦어지는 경우 어떠한 이유로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비자발적인 결혼 지연의 요인, 특히 사회구조적 요인) - 세대간 적절한 결혼시기, 결혼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어떤 이유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4) 만혼에 대한 생각 - 전반적으로 결혼 시기가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만혼이 출산을 저하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결혼 연령을 앞당기기 위해 필요한 조건(지원)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2. 임신·출산
1) 자녀관 - 귀하는 결혼한 부부에게 자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 자녀와 부모개인의 삶 중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 임신·출산시기 - 첫째 아이 임신은 몇 살 때 하셨습니까? 결혼 후 몇 개월(몇 년) 후입니까? - 첫째 아이 임신은 계획된 임신입니까? 임신 계획 후 임신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까? - 결혼 후 첫 임신을 늦게 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계획된 임신 지연인지?) - 늦은 결혼 연령이 임신 지연과 관련이 있다고 보십니까?
3) 임신·출산 적정 시기에 대한 생각 - 임신·출산에 바람직한 시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남녀차이가 있는지?) 임신·출산에도 적령기가 있다면 몇 세 정도이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결혼 후 본인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시기보다 임신·출산이 자발적, 비자발적으로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4) 임신 및 출산 방법 및 임신·출산 관련 애로사항 - 임신(임신까지, 임신기 포함), 출산에 어려움을 겪으셨습니까? 어떤 어려움을 겪으셨습니까?(건강, 경제적, 주변의 조력 등) - 고령 임신, 출산이 임신기와 출산기의 어려움과 관련이 있다고 보십니까? - 취업중인 직장에서는 임신·출산을 돕는 제도를 갖추고 있었습니까? 이러한 부분이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 고령 임신·출산으로 인해 임신·출산시 젊은 부모들에 비해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5) 임신·출산 관련 정책 인지 및 수혜 경험 여부 및 만족도 - 정부지원: 고운맘카드, 불임시술비 지원, 신생아도우미파견 등 - 직장지원: 출산휴가 사용 여부, 사용 기간(배우자 포함) - 지자체지원: 출산장려금 등 - 가장 도움이 된 지원은?
6) 자녀수 및 출산 계획 - 귀댁의 이상적인 자녀수와 계획 자녀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 추가 출산 계획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시기는 언제이며, 그때쯤으로 계획하는 이유는? - 추가 출산 의향이 없는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녀를 더 원하나 추가 출산을 포기하는 경우)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결혼이 늦어진 것이(혹은 결혼은 늦지 않았으나 첫 자녀 출산이 늦어진 것이) 귀댁의 출산 계획에 영향을 미쳤습니까?
7) 늦부모의 출산 - 첫 임신이 늦어지는 고령 출산 가족도 다자녀 출산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 혹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만혼 또는 첫 임신, 출산이 늦어짐으로 인한 고령 출산 가족의 다자녀 출산을 위해 필요한 조건(지원)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정부, 기업, 가정)

3. 양육

1) 양육방식
- 현재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고 계십니까?(주양육자, 기관 이용 여부 등), 자녀가 여러 명일 경우 각각 말씀해 주십시오. - 자녀를 그렇게 양육하는 이유는?
2) 양육비용
- 가구소득대비 자녀양육에 드는 비용의 비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부담 정도는 어떻습니까? - 출산이 늦어짐으로 인해 젊은 부모 가구에 비해 자녀 양육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추가적인 양육 비용이 발생한다면 주로 어떤 부분입니까?
3) 양육지원인력
- 귀댁의 자녀 양육을 도와줄 수 있는 친인척이 주변에 있습니까? 있다면 누구이며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 양육관련 정보나 도움을 얻을 사람이 주변에 있습니까? 있다면 누구입니까? - 임신 출산이 늦어짐으로 인해 주변 친인척으로부터 양육지원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 자녀를 잠시 맡기는 등 다른 사람의 양육 조력이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4) 양육시 애로사항
- 귀댁에서 자녀 양육과 관련해 걱정되거나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노후대비 대비 자녀양육비용 부담, 자녀에 대한 조력 가능 시기, 체력 부담 등) - 자녀 출산이 비교적 늦은 가구의 경우 양육과 관련해 자녀 출산이 이른 가구보다 어려운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5) 양육 관련 정책 인지 및 수혜 경험, 만족도, 개선사항
- 정부지원: 양육수당, 보육료지원 등 - 직장지원: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직장어린이집, 보육수당 등 - 지자체지원: 아동수당 등 - 고령 출산·양육 가구에 대해 젊은 부모 가구에 비해 추가적인 양육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있다면 어떤 부분입니까?

4. 일가정 양립

1) 현재 취업 여부
- (현재 미취업 중)과거에 취업 경험이 있으십니까? 취업 경험이 있으시다면 언제, 어떤 이유로 취업을 중단하였습니까? 향후 취업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 (현재 취업중) 어떤 일에 종사하십니까? 향후 직장 생활 지속 계획은 어떻습니까?
2) 부모의 은퇴 시기
- 부모님의 현 직장 은퇴 시기는 언제쯤으로 예상하십니까? 이와 관련해 자녀 양육에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까? 자녀 양육과 관련해 적절한 은퇴 시기는 언제쯤입니까?
3)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경험 - 임신, 출산, 자녀 양육과 관련해 직장 생활과 병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어려움이었습니까? - 이러한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어떠한 지원이 있었다면 도움이 되었겠습니까?(정부, 기업, 가정)

5. 정책 지원 요구

- 1) 임신·출산·양육 지원에 대한 요구(개선사항 or 제안 사항)
- 귀덕에서 자녀를 더 출산하는데 도움이 될 지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 귀덕의 자녀 양육에 도움이 될 지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부모 일반사항>

면담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신 내용은 보다 나은 보육을 위하여 통계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니,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주지역	☐ ① 서울 ☐ ② 부산 ☐ ③ 대구 ☐ ④ 인천 ☐ ⑤ 광주 ☐ ⑥ 대전 ☐ ⑦ 울산 ☐ ⑧ 경기 ☐ ⑨ 강원 ☐ ⑩ 충북 ☐ ⑪ 충남 ☐ ⑫ 전북 ☐ ⑬ 전남 ☐ ⑭ 경북 ☐ ⑮ 경남 ☐ ⑯ 제주
지역규모	☐ ① 대도시(특별시/광역시) ☐ ② 중소도시 ☐ ③ 읍면지역
연령	☐ 본인 만()세 ☐ 배우자 만()세
결혼연령	☐ 본인 만()세 ☐ 배우자 만()세
첫출산연령	☐ 본인 만()세 ☐ 배우자 만()세
첫취업연령	☐ 본인 만()세 ☐ 배우자 만()세
최종 학력	본인 ☐ 고졸 미만 ☐ 고졸 ☐ 전문대졸 ☐ 4년제대학졸 ☐ 대학원 이상 배우자 ☐ 고졸 미만 ☐ 고졸 ☐ 전문대졸 ☐ 4년제대학졸 ☐ 대학원 이상
맞벌이 여부	☐ 맞벌이 ☐ 맞벌이 아님
직업 및 근로형태	본인 직업 () 배우자 직업 ()
소득	가구 월평균 소득 월 () 만원 본인의 월평균 소득 월 () 만원
가족 유형	☐ 한부모+자녀 ☐ 부부+자녀 ☐ 조부모+부모+자녀 ☐ 조부모+자녀 ☐ 친인척+자녀 ☐ 기타()
자녀수	() 명
자녀연령(만나이)	첫째()세 둘째()세 셋째()세
임신 방법	① 자연임신 ② 과배란 유도 자연임신 ③ 인공수정 ④ 시험관 시술 ⑤ 기타() 첫째 () 둘째 () 셋째 () ③,④ 해당시 '난임부부지원사업'지원 해당 여부 (해당 / 비해당)

연구보고 2013-31

가족변화에 대응한 출산·육아 지원 방안 연구
-출산의 고령화를 중심으로-

발행일 2013년 12월

발행인 이 영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주 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33 안국빌딩 7층, 8층, 10층, 11층

전화: 02) 398-7700

팩스: 02) 730-3313

<http://www.kicce.re.kr>

인쇄처 삼신인쇄 02) 2285-5756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ISBN 978-89-97492-59-6 93330

